예산결산득벌위원외					
회계년도	예산	결산	추경		
2024	0				

공통요구자료	II -1
공통요구자료	I I −1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Ⅱ-1)

2024. 1.



목 차

Ι.	총 괄 표	· 1
Π.	일반회계	· 5
1.	총 괄	· 7
2.	세 입	15
	토지대여료 (11-51-511)	17
	건물대여료 (11-51-512)	18
	기타관유물대여료 (11-51-513)	19
	기타재산이자수입 (11-54-546)	20
	과태료 (12-56-563)	21
	변상금 (12-57-571)	22
	위약금 (12-57-572)	23
	기타경상이전수입 (12-59-596)	24
	기타잡수입 (13-69-691)	25
	토지대여료 (14-51-511)	26
	건물대여료 (14-51-512)	28
	입장료수입 (14-64-641)	30
	기타잡수입 (14-69-691)	31
3.	세 출	33
<	〈 문화재정책기반구축 〉	35
	(1) 문화재보존관리정책강화 (1131-301)	37
	(2) 국유문화재관리 (1131-302)	45

	(3)	역사문화권기반조성 (1131-308)	··· 51
	(4)	문화유산 연구 기반시설 구축 (1131-313)	···· 56
	(5)	문화유산 스마트 보존 활용 기술 개발(R&D) (1131-314)····································	60
	(6)	기후변화 대응 문화유산 보존관리 기술개발(R&D) (1131-317)·············	66
	(7)	무형문화재보호 (1132-301)	···· 71
	(8)	무형유산원운영 (1132-303)	···· 79
<	문호	하유산교육연구 〉·····	85
	(1)	해양문화유산 연구활용 (1232-301)	···· 87
	(2)	수중문화재 발굴 및 보존처리 (1232-303)	···· 94
	(3)	한국전통문화대학교운영 (1233-301)	·· 103
	(4)	전통문화교육원운영지원 (1234-301)	·· 109
	(5)	정보전산센터운영(정보화) (1235-501)	·· 115
<	문호	타재보존관리 〉······	·· 119
	(1)	사적관리 (2132-301)	• 121
	(2)	고도 보존 및 육성 (2132-302)	·· 126
	(3)	문화재수리기술진흥 (2132-303)	·· 132
	(4)	칠백의총시설관리운영 (2132-306)	• 139
	(5)	현충사 유적관리 (2132-307)	144
	(6)	만인의총시설관리운영 (2132-309)	• 149
	(7)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운영 (2132-310)	·· 154
	(8)	동아시아역사도시진흥원 건립 (2132-314)	159
	(9)	천연기념물 및 명승 보호 (2133-301)	·· 163
) 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 보조) (2134-701)	
	(11)) 유형문화재관리 (2135-301)	·· 172
	(12)) 근대 및 국가민속문화재 관리 (2135-302)	·· 177
) 국유문화재 위탁관리 지원 (2135-304)	. 107

<	궁능원관리 >	189
	(1) 경복궁종합정비 (2231-301)	191
	(2) 덕수궁복원정비 (2231-302)	195
	(3) 영녕릉 보존정비 (2231-304)	199
	(4) 궁궐문화재관리운영 (2232-301)	204
	(5) 조선왕릉보존관리 (2232-302)	213
	(6) 전통수목양묘사업소운영 (2232-304)	221
	(7) 궁능유적관리수입대체경비(2232-651)	224
	(8) 궁능원 활용콘텐츠 개발·운영(2233-301)····································	228
<	문화재보호 >	235
	(1) 매장문화재보존 (2332-301)	237
	(2) 매장문화재보호및관리지원 (2332-302)	243
	(3) 문화재예방관리강화 (2334-301)	248
<	문화재연구원운영 〉	257
	(1) 문화재연구원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R&D)(3102-101)···································	259
	(2) 문화재연구원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R&D) (3118-211)···································	263
	(3) 문화재연구원기본경비(R&D) (3118-251)····································	268
<		
	문화재국제교류 >	273
	문화재국제교류 〉 (1) 문화재국제교류 (3331-301)	
		275
	(1) 문화재국제교류 (3331-301)	275283
	(1) 문화재국제교류 (3331-301) (2) 문화재국제협력(ODA) (3331-302)	275283289
	(1) 문화재국제교류 (3331-301) (2) 문화재국제협력(ODA) (3331-302) (3)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운영 (3331-303)	275283289294
〈	(1) 문화재국제교류 (3331-301) (2) 문화재국제협력(ODA) (3331-302) (3)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운영 (3331-303) (4)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 (3331-304)	275283289294301
<	(1) 문화재국제교류 (3331-301) (2) 문화재국제협력(ODA) (3331-302) (3)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운영 (3331-303) (4)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 (3331-304) (5) 국외문화재환수및활용 (3331-306)	275283289294307

	(3)	한국문화재재단지원 (3431-306)	324
	(4)	문화재 사회적 기업 육성 (3431-310)	328
	(5)	문화유산 방문자센터 건립 (3431-312)	332
	(6)	국립고궁박물관 운영 (3433-301)	336
	(7)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운영 (3433-302)	344
<	해양	양문화재연구소운영 〉	349
	(1)	해양문화재연구소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 (3502-102)	351
	(2)	해양문화재연구소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3518-212)	355
	(3)	해양문화재연구소기본경비(3518-252)	359
<	궁	능유적본부운영 〉	363
	(1)	궁능유적본부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 (3601-101)	365
	(2)	궁능유적본부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3618-211)	368
	(3)	궁능유적본부기본경비 (3618-251)	371
<	군요	화재행정지원 〉	375
〈		화재행정지원 〉 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 (7101-101)································	
〈	(1)		377
〈	(1)(2)	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 (7101-101)	377 380
〈	(1)(2)(3)	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 (7101-101)································	377380383
〈	(1)(2)(3)(4)	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 (7101-101)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 (7101-102) 본청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7111-201)	377380383386
〈	(1)(2)(3)(4)(5)	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 (7101-101)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 (7101-102) 본청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7111-201) 본청기본경비 (7111-251)	377380383386389
〈	(1)(2)(3)(4)(5)(6)	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 (7101-101)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 (7101-102) 본청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7111-201) 본청기본경비 (7111-251) 한국전통문화대학교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7118-201)	377 380 383 386 389 393
〈	(1)(2)(3)(4)(5)(6)(7)	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 (7101-101)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 (7101-102) 본청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7111-201) 본청기본경비 (7111-251) 한국전통문화대학교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7118-201) 국립고궁박물관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7118-202)	377 380 383 386 389 393 396
<	 (1) (2) (3) (4) (5) (6) (7) (8) 	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 (7101-101)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 (7101-102) 본청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7111-201) 본청기본경비 (7111-251) 한국전통문화대학교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7118-201) 국립고궁박물관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7118-202) 현충사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7118-204)	377 380 383 386 389 393 396 399
<	 (1) (2) (3) (4) (5) (6) (7) (8) (9) 	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 (7101-101)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 (7101-102) 본청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7111-201) 본청기본경비 (7111-251) 한국전통문화대학교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7118-201) 각립고궁박물관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7118-202) 현충사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7118-204) 철백의총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7118-206)	377 380 383 386 389 393 396 399 402
〈	 (1) (2) (3) (4) (5) (6) (7) (8) (9) (10 	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 (7101-101)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 (7101-102) 본청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7111-201) 본청기본경비 (7111-251) 한국전통문화대학교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7118-201) 국립고궁박물관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7118-202) 현충사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7118-204) 철백의총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7118-206) 무형유산원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7118-207)	377 380 383 386 389 393 396 399 402 405

	(13)	현충사기본경비 (7118-254)	414
	(14)	칠백의총기본경비 (7118-256)	417
	(15)	무형유산원기본경비(7118-257)	420
	(16)	만인의총기본경비 (7118-260)	423
	(17)	문화재 정책대변 (7132-301)	426
	(18)	문화재행정효율성증진및성과관리 (7132-302)	431
	(19)	전산운영경비(정보화) (7133-303)	437
	(20)	문화재 행정정보 융합체계 구축(정보화)(7134-503)	······ 441
	(21)	문화재디지털대전환(정보화) (7134-508)	448
]	Ⅲ. 지역	역균형발전특별회계······	455
	1. 총	괄	457
	2. 세	입	461
	〈 지역	지원계정	463
	기타	-재산이자수입 (11-54-546)······	465
	기타	-경상이전수입 (12-59-596)······	466
]	Ⅳ. 문호	화재보호기금 ⋯⋯⋯⋯⋯⋯⋯⋯⋯⋯⋯⋯⋯⋯⋯⋯⋯⋯⋯⋯⋯⋯⋯⋯⋯⋯⋯⋯⋯⋯⋯⋯⋯⋯⋯⋯	······ 467
	1 총	괄	469
	2 수	입	481
	기타	·재산이자수입······	483
	기타	·경상이전수입······	484
	입장	'료수입	485
	여유	-자금회수(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486
	기극	- - 저입금(복궈기금) ····································	487

3.	지 출	489
	(1) 문화재보호 민간참여 활성화(1136-301)	491
	(2) 남북간 문화재 교류협력 (1136-302)	496
	(3) 천연기념물 보호관리단체 지원 (1136-303)	502
	(4) 일반문화재 조사 및 보존관리 지원(1136-304)	507
	(5) 문화재 정책연구기관 운영지원 (1136-307)	512
	(6) 불교문화재 연구시설 건립 (1136-308)	515
	(7) 문화유산교육 활성화 (1138-302)	519
	(8) 문화유산채널 구축·운영(1138-303)······	524
	(9)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1138-311)	528
	(10) 문화재연구원운영지원(R&D) (1236-301)····································	531
	(11) 문화유산조사연구(R&D) (1236-302)······	538
	(12) 문화재 돌봄사업 (2133-301)	545
	(13)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2331-301)	549
	(14) 궁능방재시스템구축(2331-303)	555
	(15)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2332-301)	560
	(16) 국내외 문화재 긴급매입 및 관리 지원 (2332-302)	564
	(17) 군부대 주둔지 문화재조사 보호 (2334-301)	567
	(18) 소규모·긴급 매장문화재 조사 지원 (2334-302)····································	571
	(19) 기금운영비 (2376-201)	576
	(20)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예수이자상환 (8990-891)	580
	(21) 복권기금 전출 (8999-840)	583
	(22) 비통화금융기관예치 (9701-972)	586

I. 총 괄 표

	2	
_	Z	_

I . 총괄표

1.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총괄표

□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

구분	2022결산	2023예산	2024	예산	증	감
1 也	2022년 년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
세입	46,204	51,272	5 2, 515	52,515	1,243	2.4
세출	1,031,314	1,187,825	1,190,095	1,206,701	18,876	1.6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

구분 2022결산		2023예산	2024	예산	증	감
1 1	2022 년 년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
세입	132	-	902	902	902	순증
세출	9,675	2,100	-	-	△ 2, 100	순감

□ 기금

(단위: 백만원, %)

기금명 202	2022결산	2023계획		2024	증감		
	2022결산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В-А	%
문화재보호기금	167,775	168,955	168,955	169,982	169,982	1,027	0.6

2.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상 신규사업(세부사업 기준) 내역

<일반회계 : 총 1개 신규 세부사업>

다이지어면	계별시어면	202	4년	담당부서	담당자성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정부안	확정	- 함성구시 -	(연락처)	
문화재보호행정 기반조성	기후변화 대응 문화유산 보존관리 기술개발(R&D)	1,514	1,514	정책 총괄과	홍영주 (042-481-311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해당없음

<문화재보호기금 : 총 1개 신규 세부사업>

rl이 zl 어떤	계별체어면	202	4년	담당부서	담당자성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정부안	확정	김성구시	(연락처)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200	200	무형 문화재과	박선영 (042-481-4964)

Ⅱ. 일 반 회 계

- 6 -	
-------	--



_	8	_
---	---	---

Ⅱ. 일반회계

1. 총 괄

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그 법	2022 એ કો	2023	2024	예산	증 7	감
구분	2022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
총 계	46,204	51,272	52,515	52,515	1,243	2.4
51. 관유물대여료	4,176	1,873	1,831	1,831	△42	△2.2
토지대여료(51-511)	2,672	1,055	1,044	1,044	△11	△1.0
건물대여료(51-512)	1,491	805	774	774	$\triangle 31$	△3.9
기타관유물대여료(51-513)	13	13	13	13		0.0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2,903	2,600	3,000	3,000	400	15.4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	2,903	2,600	3,000	3,000	400	15.4
56. 벌금,몰수금및과태료			5	5	5	
과태료(56-563)			5	5	5	
징계부과금(56-564)						
57. 변상금및위약금	919	3,606	3,606	3,606		
변상금(57-571)	670	3,506	3,506	3,506		
위약금(57-572)	249	100	100	100		
59. 기타경상이전수입	29,551	30,000	30,000	30,000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29,551	30,000	30,000	30,000		
65. 면허료및수수료	43					
면허료및수수료(65-651)	43					
69. 잡수입	194	100	100	100		
기타잡수입(69-691)	194	100	100	100		
51. 관유물대여료		1,565	2,423	2,423	858	54.8
토지대여료(51-511)		594	1,730	1,730	1,136	191.2
건물대여료(51-512)		971	693	693	△278	△28.6
64. 입장료수입	7,920	11,328	11,350	11,350	22	0.2
입장료수입(64-641)	7,920	11,328	11,350	11,350	22	0.2
69. 잡수입	497	200	200	200		
기타잡수입(69-691)	497	200	200	200		
72. 토지및무형자산매각대	1					
토지매각대(72-721)	1					

나.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2023	2024	예사·	(단위: 백 증 2	i
구분	2022결산	²⁰²³ 본예산(A)	정부안	^{게 년} 확정(B)	(B-A)	□ %
 총 계	1,031,314	` ′	1,190,095	1,206,701	18,876	1.6
[1131] 문화재보호행정기반조성	40,476		89,817	90,017	△14,114	△13.6
문화재보존관리정책강화 (1131-301)	17,253	50,504	62,255	62,255	11,751	23.3
국유문화재관리(1131-302)	1,293	1,412	1,613	1,613	201	14.2
역사문화권기반조성 (1131-308)	6,968	26,962	1,485	1,685	△25,277	△93.8
문화유산 연구 기반시설 구축 (1131-313)	4,663	12,278	14,755	14,755	2,477	20.2
문화유산 스마트 보존 활용 기술 개발 (R&D)(1131-314)	10,569	12,975	8,195	8,195	△4,780	△36.8
기후변화 대응 문화유산 보존관리 기술개발(R&D)(1131-317)	-	-	1,514	1,514	1,514	순증
[1132] 무형문화재전승	49,950	59,325	66,142	63,972	4,647	7.8
무형문화재보호(1132-301)	18,172	16,797	11,319	11,319	△5,478	△32.6
무형유산원운영(1132-303)	31,778	42,528	54,823	52,653	10,125	23.8
[1232] 해양문화유산연구	11,643	12,968	17,370	17,370	4,402	33.9
해양문화유산 연구활용 (1232-301)	5,006	4,503	7,265	7,265	2,762	61.3
수중문화재발굴및보존처리 (1232-303)	6,637	8,465	10,105	10,105	1,640	19.4
[1233] 한국전통문화대학교운영지원	21,644	19,310	19,457	19,457	147	0.8
한국전통문화대학교운영 (1233-301)	21,644	19,310	19,457	19,457	147	0.8
[1234] 전통문화교육원운영	2,966	3,381	5,624	5,724	2,343	69.3
전통문화교육원운영지원 (1234-301)	2,966	3,381	5,624	5,724	2,343	69.3
[1235] 한국전통문화대학교정보화	1,098	951	1,443	1,443	492	51.7
정보전산센터운영(정보화) (1235-501)	1,098	951	1,443	1,443	492	51.7
[2132] 기념물문화재 보존강화	56,842	69,868	50,386	52,706	△17,162	△ 24.6
사적관리(2132-301)	1,129	1,167	1,412	2,412	1,245	106.7
고도 보존 및 육성(2132-302)	19,872	19,455	18,361	20,161	706	3.6

7 H	2022 21 4]	2023	2024	예산	증 7	가
구분 	2022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
문화재수리기술진흥(2132-303)	11,371	26,808	8,555	8,837	△17,971	△67.0
칠백의총시설관리운영 (2132-306)	4,643	2,632	1,949	1,949	△683	△25.9
현충사유적관리(2132-307)	3,925	5,471	3,523	3,523	△1,948	△35.6
만인의총시설관리운영 (2132-309)	6,888	4,052	6,918	6,951	2,899	71.5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운영 (2132-310)	9,014	9,033	8,773	8,773	△260	△2.9
동아시아 역사도시 진흥원 건립 (2132-314)	-	1,250	895	100	△1,150	△92.0
[2133] 자연문화재보호	5,894	3,980	3,961	3,961	△19	△ 0.5
천연기념물 및 명승 보호 (2133-301)	5,894	3,980	3,961	3,961	△19	△0.5
[2134] 문화재보수정비	391,500	463,400	510,341	517,341	53,941	11.6
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보조) (2134-701)	391,500	463,400	510,341	517,341	53,941	11.6
[2135] 유형문화재보존관리	14,675	13,933	10,053	10,623	△3,310	△ 23.8
유형문화재관리(2135-301)	3,408	4,583	4,564	4,564	△19	$\triangle 0.4$
근대 및 국가민속문화재관리 (2135-302)	7,023	4,856	3,294	3,864	△992	△20.4
국유문화재위탁관리 지원 (2135-304)	2,744	2,744	2,195	2,195	△549	△20.0
역사문화 기념관 건립 (2135-306)	1,500	1,750	-	-	△1,750	순감
[2231] 궁능원종합정비	15,225	23,912	16,447	16,447	△ 7,4 65	△31.2
경복궁종합정비(2231-301)	3,587	11,553	4,178	4,178	△7,375	△63.8
덕수궁복원정비(2231-302)	8,551	9,339	9,339	9,339	-	-
영녕릉 보존정비(2231-304)	3,087	3,020	2,930	2,930	△90	△3.0
[2232] 궁능원시설관리운영	69,396	93,136	89,346	89,346	△3,790	△4.1
궁궐문화재관리운영(2232-301)	25,450	25,858	33,701	33,701	7,843	30.3
조선왕릉보존관리(2232-302)	32,748	32,022	43,607	43,607	11,585	36.2

7 13	2022 24 3	2023	2024	예산	증 7	감
구분 	2022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
전통수목양묘사업소운영(2232-304)	397	416	417	417	1	0.2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2232-307)	-	23,512	-	-	△23,512	순감
궁능유적관리수입대체경비 (2232-651)	10,801	11,328	11,621	11,621	293	2.6
[2233] 궁능원활용활성화	29,040	20,824	22,624	22,624	1,800	8.6
궁능원 활용콘텐츠 개발운영 (2233-301)	29,040	20,824	22,624	22,624	1,800	8.6
[2332] 매장문화재보존관리	20,348	22,441	11,736	11,736	△10,705	△ 47.7
매장문화재보존 (2332-301)	7,517	10,891	6,212	6,212	△4,679	△43.0
매장문화재보호및관리지원 (2332-302)	10,110	9,214	5,524	5,524	△3,690	△40.0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관리 (2332-304)	2,721	2,336	-	-	△2,336	순감
[2334] 문화재안전관리체계강화	2,083	2,514	2,459	2,459	△ 55	△ 2.2
문화재예방관리강화 (2334-301)	2,083	2,514	2,459	2,459	△55	△2.2
[3102] 문화재연구원인건비	14,505	15,931	16,303	16,303	372	2.3
문화재연구원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 (R&D)(3102-101)	14,505	15,931	16,303	16,303	372	2.3
[3118] 문화재연구원기본경비	2,490	2,606	2,840	2,840	234	9.0
문화재연구원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R&D)(3118-211)	1,645	1,718	1,919	1,919	201	11.7
문화재연구원기본경비(R&D) (3118-251)	845	888	921	921	33	3.7
[3331] 국제교류및세계유산등재	92,416	55,845	56,410	62,196	6,351	11.4
문화재국제교류(3331-301)	1,464	1,512	2,549	2,549	1,037	68.6
문화재국제협력(ODA)(3331-302)	3,725	4,791	13,088	13,088	8,297	173.2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운영 (3331-303)	3,064	2,784	2,874	2,874	90	3.2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 (3331-304)	46,636	39,783	29,266	35,052	△4,731	△11.9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보조) (3331-305)	30,094	-	-	-	-	
국외문화재환수및활용(3331-306)	7,433	6,975	8,633	8,633	1,658	23.8
[3431] 문화재활용활성화	82,836	79,187	74,116	74,916	△ 4,27 1	△5.4

7 12	202271	2023	2024	2024예산		증 감	
구분	2022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	
문화유산 활용 진흥(3431-301)	51,192	50,827	42,483	43,083	△7,744	△15.2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개발보급 (3431-304)	14,326	17,032	13,777	13,777	△3,255	△19.1	
한국문화재재단지원(3431-306)	12,118	9,828	13,656	13,656	3,828	38.9	
문화재사회적기업육성 (3431-310)	500	500	500	500	-	-	
문화유산 방문자센터 건립 (3431-312)	4,700	1,000	3,700	3,900	2,900	290.0	
[3433] 국립고궁박물관조성운영	17,922	19,585	21,955	23,455	3,870	19.8	
국립고궁박물관운영 (3433-301)	17,922	18,043	18,194	18,194	151	0.8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운영 (3433-302)	_	1,542	3,761	5,261	3,719	241.2	
[3502] 해양문화재연구소인건비	5,503	5,875	6,020	6,020	145	2.5	
해양문화재연구소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 (3502-102)	5,503	5,875	6,020	6,020	145	2.5	
[3518] 해양문화재연구소기본경비	1,048	1,107	1,258	1,258	151	13.6	
해양문화재연구소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3518-212)	271	298	301	301	3	1.0	
해양문화재연구소기본경비 (3518-252)	776	809	957	957	148	18.3	
[3601] 궁능유적본부인건비	13,711	15,061	14,733	14,733	△3 2 8	△ 2.2	
궁능유적본부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 (3601-101)	13,711	15,061	14,733	14,733	△328	△2.2	
[3618] 궁능유적본부기본경비	1,188	1,224	1,546	1 , 546	322	26.3	
궁능유적본부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3618-211)	195	214	214	214	-	-	
궁능유적본부기본경비(3618-251)	993	1,010	1,332	1,332	322	31.9	
[7101] 문화재청인건비	40,359	44,165	44,357	44,357	192	0.4	
인건비(총액인건비 대상) (7101-101)	33,352	36,464	36,917	36,917	453	1.2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인건비 (총액인건비대상)(7101-102)	7,007	7,701	7,440	7,440	△261	△3.4	
[7111] 본청기본경비	3,682	4,249	4,190	4,190	△ 59	△1.4	
본청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7111-201)	1,288	1,494	1,494	1,494	-	-	
본청기본경비(7111-251)	2,394	2,755	2,696	2,696	△59	△2.1	

7 H	202231	2023	2024	예산		감
구분	2022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
[7118] 소속기관기본경비	2,758	2,919	3,264	3,264	345	11.8
한국전통문화대학교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7118-201)	177	195	195	195	-	-
국립고궁박물관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7118-202)	119	129	131	131	2	1.6
현충사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7118-204)	458	482	494	494	12	2.5
칠백의총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7118-206)	19	19	19	19	-	-
무형유산원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7118-207)	66	73	73	73	-	-
만인의총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7118-209)	18	19	19	19	-	-
한국전통문화대학교기본경비 (7118-251)	1,351	1,381	1,491	1,491	110	8.0
국립고궁박물관기본경비 (7118-252)	95	130	320	320	190	146.2
현충사기본경비(7118-254)	314	326	336	336	10	3.1
칠백의총기본경비(7118-256)	50	71	81	81	10	14.1
무형유산원기본경비(7118-257)	67	66	67	67	1	1.5
만인의총기본경비(7118-260)	25	28	38	38	10	35.7
[7132] 문화재행정제도개선	1,739	3,900	2,486	2,486	△1,414	△36.3
문화재 정책대변(7132-301)	1,371	1,473	1,478	1,478	5	0.3
문화재행정효율성증진및성과관리 (7132-302)	368	2,427	1,008	1,008	△1,419	△58.5
[7133] 본청운영경비	804	939	2,047	2,047	1,108	118.0
전산운영경비(7133-303)	804	939	2,047	2,047	1,108	118.0
[7134] 문화재전자행정구축	17,304	21,158	21,364	21,364	206	1.0
문화재 행정정보 융합체계 구축(정보화) (7134-503)	17,304	5,989	7,109	7,109	1,120	18.7
문화재디지털대전환(정보화) (7134-508)	-	15,169	14,255	14,255	△914	△6.0



2. 세 입

토지대여료	
51-511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2023년 예산액	2024	4년	중감	
70	결산액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토지대여료	2,672	1,055	1,044	1,044	△11	△1.0

가. 법적 근거

○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제1항 :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나. 세입 개요

○ 국유재산(토지) 유상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

다. 2024년 세입예산안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구체적인 산식 및 수치 적시)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3예산	1,055,000	 궁능유적 등 토지사용료 705,000천원 성균관대 운동장 사용료 174,000천원 태릉선수촌 훈련부지 사용료 411,000천원 경작·주거용 토지사용료 120,000천원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업무시설 사용료 350,000천원
2024예산	1,044,000	 궁.능.유적 토지 사용료 645,000천원 성균관대 운동장 사용료 174,000천원 태릉선수촌 훈련부지 사용료 351,000천원 경작.주거용 120,000천원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업무시설 사용료 등 399,000천원

건물대여료
51-512

2022년		2023년 예산액	2024년		증감	
목명	결산액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건물대여료	1,491	805	774	774	△31	△3.9

가. 법적 근거

○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제1항 :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나. 세입 개요

○ 국유재산(건물) 유상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

다. 2024년 세입예산안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구체적인 산식 및 수치 적시)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 궁능유적 등 건물사용료 565,000천원
2022 લી કો	2023예산 805,000	- 태릉선수촌 건물사용료 550,000천원
2023예산		- 이동통신중계기 사용료 15,000천원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업무시설 사용료 240,000천원
		▪ 궁·능 유적 건물사용료 529,000천원
2024예산		- 태릉선수촌 건물사용료 529,000천원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업무시설 사용료 245,000천원

기타관유물대여료 51-513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2023년 예산액	202	4년	증감	
78	결산액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기타관유물 대여료	13	13	13	13	_	-

가. 법적 근거

-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제1항
 -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나. 세입 개요

○ 국유재산(토지·건물 이외의 관유물)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다. 2024년 세입예산안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3예산	13,000	■ 국유재산 사용료 13,000천원
2024예산	13,000	■ 국유재산 사용료 13,000천원

기타재산이자수입 54-546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2023년 예산액	202	4년	증감	
77	결산액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기타재산이자 수입	2,903	2,600	3,000	3,000	400	15.4

가. 법적 근거

- 국유재산법 제32조 (사용료) 제2항
 - 제1항의 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 국유재산법 제72조 (변상금의 징수) 제2항
 - 제1항의 변상금은 무단점유를 하게 된 경위, 무단점유지의 용도 및 해당 무단점유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86조(한국은행 등의 국고금 출납) 제5항
 - 금융기관은 금융기관에 예치된 국고예금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보통예금의 금리수준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세입 개요

- ㅇ 국유재산의 사용료, 변상금 등의 분납에 따른 이자
- ㅇ 국고예금의 금융기관 예치에 따른 이자 등

다. 2024년 세입예산안 내역

ㅇ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2 લી કો	2 600 000	■ 국고보조금 이자수입 등 2,575,000천원
2023예산	2,000,000	■ 국고보조금 이자수입 등 2,575,000천원 ■ 변상금 분납이자 25,000천원
2024 കി ച	2 000 000	■ 국고보조금 이자수입 등 2,975,000천원
2024예산	3,000,000	■ 국고보조금 이자수입 등 2,975,000천원 ■ 변상금 분납이자 25,000천원

과태료
56-563

П т-1	2022년	2023년 예산액	2024년		중감	
목명	결산액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과태료	-	-	5	5	5	순증

가. 법적 근거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과태료) 제1항 제6호
 -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문화재수리현장을 이탈한 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8조(과태료)
 - ①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문화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민법 제97조(벌칙) 제4호
 -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에 과태료에 처한다.

나. 세입 개요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 제2항을 위반하여 문화재 수리 현장을 이탈한 자의 과태료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발견신고)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견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과태료 부과
- 문화재 발굴 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본재산을 무단으로 사용(처분)하여 과태료 부과

다. 2024년 세입예산안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3예산	_	
2024예산	5,400	■ 발굴법인 기본재산 무단사용 과태료 3,000천원 ■ 매장문화재 발견신고 불이행 과태료 2,400천원

변상금
57-571

목명	2022년	2023년 예산액	202	4년	증감	
40	결산액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변상금	670	3,506	3,506	3,506	_	-

가. 법적 근거

- 국유재산법 제72조 (변상금의 징수) 제1항
 - 관리청 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나. 세입 개요

-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징수
 - (재)한국사격진흥회 및 김〇〇 등 태릉사격장 관련 변상금 등

다. 2024년 세입예산안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3예산	3,506,000	■ 국유재산 무단점유 사용료 3,506,000천원
2024예산	3,506,000	■ 국유재산 무단점유 사용료 3,506,000천원

위약금
57-572

목명	2022년	2023년 예산액	2024	4년	증감	
7.0	결산액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변상금	249	100	100	100	_	_

가.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지체상금)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나. 세입 개요

○ 공사, 물품, 용역 등 계약 관련 지체상금 등

다. 2024년 세입예산안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3예산	100,000	▪ 계약이행기간 지연 및 불이행에 따른 지체상금 100,000천원
2024예산	100,000	▪ 계약이행기간 지연 및 불이행에 따른 지체상금 100,000천원

기타경상이전수입 59-596

(단위: 백만원, %)

ㅁᆏ	2022년	2023년 예산액	202	4년	증감	
목명	결산액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기타경상이전 수입	29,551	30,000	30,000	30,000	_	_

가. 법적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조금의 반환) 제1항, 제2항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 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 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발생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하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국유재산법 제73조 (연체료 등의 징수) 제1항
 -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자금 및 변상금(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는 경우 이자는 제외한다)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세입 개요

- ㅇ 국고보조금 정산 반화금 등
- ㅇ 국유재산의 사용료 및 변상금에 대한 연체료 등

다. 2024년 세입예산안 내역

ㅇ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3예산	3,000,000	ㅇ 국고보조금 정산반환금 3,000,000천원
2024예산	3,000,000	ㅇ 국고보조금 정산반환금 3,000,000천원

기타잡수입	
69-691	

목명	2022년	2023년 예산액	202	4년	증감	
40	결산액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기타잡수입	194	100	100	100	_	_

가. 법적 근거

- 물품관리법 제 제36조 (매각) ①물품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불용품이 아니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 물품관리법 제41조 (대부의 제한) ② 물품을 대부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에 따라 대부료를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는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나. 세입 개요

- 국유재산 사용 및 물품 대여, 불용품 매각 등에 따른 수입
- 덕수궁 담장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다. 2024년 세입예산안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3예산	100,000	■ 국유재산사용 공공요금, 물품 대여, 불용품 매각 등 100,000천원
2024예산	100,000	■ 국유재산사용 공공요금, 물품 대여, 불용품 매각 등 100,000천원

토지대여료 (수입대체경비) 51-511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액	2023년 예산액 본예산(A)	2024년		중감	
			정부안	확정(B)	(B-A)	(B-A)/A
토지대여료	-	594	1,730	1,730	1,136	191.2

가. 법적 근거

- 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의 경우 수입이 예산을 초과 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 지출할 수 있다.
- ㅇ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제1항
-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나. 세입 개요

- 궁·능 국유재산 중 토지 유상사용허가(대부)에 따른 사용료를 수입대체경비로 운영
 - 궁·능 관람객 편의시설인 주차장·매점 등의 토지 대여료 수입을 수입대체경비에 편성하여, 관람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재원으로 재투자

다. 2024년 세입예산안 내역

ㅇ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3예산	594,000	• 궁·능·유적 주차장·매점 등 토지사용료 594백만원 - 경복궁 주차장 468백만원, 창경궁 주차장 67백만원, 동구릉 주차장 45백만원, 편의시설 등 기타사용료 14백만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4예산	1,730,000	 ▼궁·능·유적 주차장·매점 등 토지사용료 1,716백만원 경복궁 주차장 1,368,000천원 창경궁 주차장 98,000천원 동구릉 주차장 63,000천원 선정릉 주차장 187,000천원 궁·능·유적 편의시설 등 기타사용료 14,000천원 		

건물대여료 (수입대체경비)

51-512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결산액	2023년 예산액 본예산(A)	2024년		증감	
			정부안	확정(B)	(B-A)	(B-A)/A
건물대여료	-	971	693	693	△278	△28.6

가. 법적 근거

- 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의 경우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 지출할 수 있다.
- ㅇ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제1항
-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나. 세입 개요

- 궁·능 국유재산 중 토지 유상사용허가(대부)에 따른 사용료를 수입대체경비로 운영
 - 궁·능 관람객 편의시설인 주차장·매점 등의 건물 대여료 수입을 수입대체경비에 편성하여, 관람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재원으로 재투자

다. 2024년 세입예산안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3예산	971,000	■ 궁·능·유적 주차장·매점 등 건물 사용료 971,000천원 - 경복궁 주차장 468,000천원, 선정릉 주차장 495,000천원, 편의시설 등 기타사용료 8,000천원
2024예산	693,000	■ 궁·능·유적 주차장 등 건물 사용료 685,000천원 - 경복궁 주차장 321,000천원, 선정릉 주차장 364,000천원 ■ 궁·능·유적 편의시설 등 기타사용료 8,000천원

입장료수입 (수입대체경비) 64-641

(단위: 백만원, %)

□ 111	2022년	2023년 예산액	2024	4년	증감	
목명	결산액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입장료수입	7,920	11,328	11,350	11,350	22	0.2

가. 법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49조(관람료의 징수)
 - 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리단체가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단체가 징수권자가 된다.
 -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

나. 세입 개요

○ 궁·능·유적관리소 문화재 관람료 징수

다. 2024년 세입예산안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3예산	11,328,000	■ 궁·능·원 입장료 수입 11,328,000천원 - 코로나19 이전 2019년 결산액(11,350백만원) 수준으로 편성
2024예산	11,350,000	■ 궁·능·원 입장료 수입 11,350,000천원 - 코로나19 이전 2019년 결산액(11,350백만원) 수준으로 편성

기타잡수입 (수입대체경비) 69-691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2023년 예산액	202	4년	증감	
78	결산액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기타잡수입	497	200	200	200	_	-

가. 법적 근거

○ 궁·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36호) 제28조

나. 세입 개요

○ 궁·능원 영화촬영 장소 사용료 및 음성안내(번역기)장치 대여료 등

다. 2024년 세입예산안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단위: 천원)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3예산	200,000	■ 촬영장소 사용료 및 음성안내기 등 대여료 200,000천원 - 최근 3년 평균액(190백만원)보다상향 편성
2024예산	200,000	■ 촬영장소 사용료 및 음성안내기 등 대여료 200,000천원 - 최근 3년 평균액(190백만원)보다상향 편성

_	22	_
	.) 🗸	



	2 /	
_	74	_

문화재정책기반구축



사 업 명

(1) 문화재보존관리정책강화 (11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OJ HL 중] 게	!반회계 문화재청 문화		<u>'</u> 화재정책국		064
명칭	달반외계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1	
명칭	문화재정책기반조성	문화재보호행정기반조성	문화재보존관리정책강화	

□ 사업 성격

		□ 1 н 0 ¬							
	신규 계속 완료	റി =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20分	계속 	전묘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0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0			0		100, 50	

□ 사업 담당자

	<u> </u>								
사업명	구분								
문화재보존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관리정책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김종승	길태현	양호열				
		정책총괄과	042-481-4810	042-481-4815	042-481-4816				
강화	사업시행주체	직접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위원회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김종승	나훈집	장재혁				
운영 및 회의		정책총괄과	042-481-4810	042-481-4817	042-481-4819				
기록관리	사업시행주체	직접							

2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유산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김종승	길태현	양호열
보호 유공자 포상		정책총괄과	042-481-4810	042-481-4815	042-481-4816
110/120	사업시행주체	직접			
3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지자체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김종승	나훈집	장재혁
역량강화		정책총괄과	042-481-4810	042-481-4817	042-481-4819
1001	사업시행주체	직접, 보조사업			
4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김종승	홍영주	최민규
정책개발		정책총괄과	042-481-4810	042-481-3115	042-481-3116
0 1/11 6	사업시행주체	직접			
5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산업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김종승	길태현	양호열
및 일자리		정책총괄과	042-481-4810	042-481-4815	042-481-4816
박람회	사업시행주체	보조사업	경상북도 경주시		
6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역사문화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김종승	나훈집	장재혁
자원 발굴		정책총괄과	042-481-4810	042-481-4817	042-481-4819
및 보호	사업시행주체	직접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7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김종승	길태현	김정임
정책연구		정책총괄과	042-481-4810	042-481-4815	042-481-4813
	사업시행주체	직접			
8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유산	소관부처	문화재정책국	김종승	길태현	양호열
산업		정책총괄과	042-481-4810	042-481-4815	042-481-4816
인턴십 지원	사업시행주체	한국문화재재단	문화교육팀	박용순 팀장	02-3011-1701
9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	소관부처	문화재정책국	김종승	나훈집	장재혁
보존관리		정책총괄과	042-481-4810	042-481-4817	042-481-4819
긴급지원	사업시행주체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이보배 주임	02-2011-1889
10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관람료	소관부처	문화재정책국	김종승	신미정	조성전
감면비용		정책총괄과	042-481-4810	042-481-4811	042-481-4852
지원	사업시행주체	직접, 보조사업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	202	4년	중감	
	71 में छ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문	· - - - - - - - - - - - - - - - - - - -	17.252	E0 E04	62.2EE	60.0EE	11 751	23.3
	정책강화	17,253	50,504	62,255	62,255	11,751	23.3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	23.12월	[말)			
			المالحات					المالحات		이월액			2024
	예산액	예산	집행액 [실집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집행액 [실집	제외 집행액		이월	불용	2024 예산
	(추경)	현액	[결심 행액]	시뮬레	₹ 8 ~4	존세간	현액	행액	예산 현액	접행적 [실집 행액]	예상액	예상액	717
○ 기능별 분류(합계)	10,892 (17,882)	19,025	17,253 (17,216)	1,197	575	50,504	51,701	51,421 (51,402)	50,504	50,224 (50,205)	-	280	62,255
· 문화재위원회 운영 및 회의 기록관리	189 (184)	184	172	-	12	193	193	192	193	192	-	1	197
·문화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152	152	147	-	5	152	152	150	152	150	-	2	202
· 지자체 역량 강화	169	169	165 (158)	-	4	169	169	168 (156)	169	168 (156)	-	1	-
· 문화재 정책개발	92 (87)	87	87	-	-	94	94	94	94	94	-	-	295
· 문화유산 산업 및 일자리 박람회	300	300	300 (297)	-	-	300	300	300 (293)	300	300 (293)	-	-	299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보호	6,000	7,106	5,435	1,125	546	3,100	4,225	3,979	3,100	2,854	-	246	3,100
• 정책연구	1,590 (1,510)	1,547	1,467	72	8	1,590	1,662	1,661	1,590	1,589	-	1	1,287
·문화유산 산업 인턴십 지원	2,400	2,400	2,400	-	-	2,806	2,806	2,780 (2,780)	2,806	2,780 (2,780)	-	26	1,433
· 문화재 관람료 감면비용 지원	-	-	-	-		42,100	42,100	42,097 (42,097)	42,100	42,097 (42,097)	-	3	55,442
· 문화재 보 존관 리 긴급 지원	0 (7,080)	7,080	(7,055)	-	-	-	-	-	-	-	-	-	-
○ 비목별 분류(합계)	10,892 (17,882)	19,025	17,253 (17,216)	1,197	575	50,504	51,701	51,421 (51,402)	50,504	50,224 (50,205)	-	280	62,255
・상용임금(110-03)	147	146	136	-	10	151	151	150	151	150	-	1	156
· 일반수용비(210-01)	117	110	109	-	1	116	116	90	116	90	-	26	174
· 공공요금 및 제에(210:02)	3	3	3	-	-	3	3	3	3	3	-	-	3
· 특근매식비(210-05)	3	3	2	-	1	3	3	3	3	3	-	-	3
· 임차료(210-07)	30	21	20	-	1	30	30	30	30	30	-	-	16
· 복리후생비(210-12)	2	2	2	-	-	3	3	3	3	3	-	-	3

			2022					2023(′	23.12월	 말)			
									전년도	이월액			
	예산액	예산	집행액 [실집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집행액 [실집	제	의 집행액	이월	불용	2024 예산
	(추경)	현액	행액	, _ ,		_ , _	현액	행액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예상액	예상액	
· 일반용역비(210-14)	49	65	63	-	2	249	249	246	249	246	-	3	229
· 국내여비(220-01)	31 (21)	21	21	-	-	31	31	31	31	31	-	-	23
· 국외업무여비(220-02)	19	19	18	-	1	19	19	19	19	19	-	-	9
·관사업무추진비(240·02)	3	3	3	-	-	3	3	3	3	3	-	-	3
· 일반연구비(260-01)	6,000	7,106	5,435	1,125	546	3,100	4,225	3,978	3,100	2,854	-	246	3,300
· 정책연구비(260-02)	1,590 (1,510)	1,547	1,467	72	8	1,590	1,662	1,661	1,590	1,589	-	1	1,287
· 포상금(310-03)	90	90	86	-	4	90	90	87	90	87	-	3	65
· 민간경상보조(320-01)	(7,080)	7,080	7,080 (7,053)	-	-	-	41,900	41,900 (41,900)	41,900	41,900 (41,900)	-	-	55,242
·만원부처(320·02)	2,370	2,370	2,370	-	-	2,776	2,776	2,776 (2,776)	2,776	2,776 (2,776)	-	-	1,403
· 고용부담금(320-09)	28	29	28	-	1	30	30	30	30	30	-	-	30
· 자타시랑/보조(3001)	400	400	400 (390)	-	-	42,300	400	400 (381)	400	400 (381)	-	-	299
· 자산취득비(430-01)	10	10	10	1	-	10	10	10	10	10	-	-	1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0,892 (17,882)	19,025	17,253 (17,216)	1,197	575	50,504	51,701	51,421 (51,402)	50,504	50,224 (50,205)	-	280	62,255
· 문화재위원회 운영 및 회의 기록관리	189 (184)	184	172	ı	12	193	193	192	193	192	-	1	197
-상용임금(110-03)	122	121	111	-	10	124	124	123	124	123	-	1	128
-일반수용비(210-01)	22	22	21	-	1	21	21	21	21	21	-	-	22
-복리후생비(210-12)	2	2	2	-	-	3	3	3	3	3	-	-	2
-국내여비(220-01)	10 (5)	5	5	-	-	10	10	10	10	10	-	-	10
-관사업부추진비(240-02)	1	1	1	-	-	1	1	1	1	1	-	-	1
-고용부담금(320-09)	22	23	22	-	1	24	24	24	24	24	-	-	24
-자산취득비(430-01)	10	10	9	-	-	10	10	10	10	10			10
·문화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152	152	147	-	5	152	152	150	152	150	-	2	202
-일반 수용 비(210-01)	30	30	30	-	-	30	30	30	30	30	-	-	50
-공공급및제세(21002)	2	2	2	-	-	2	2	2	2	2	-	-	2
-특근매식비(210-05)	1	1	0	-	1	2	2	2	2	2	-	-	2
-일반용역비(210-14)	49	49	47	-	2	49	49	49	49	49	-	-	<i>7</i> 9
국내여비(220-01)	3	3	3	-	-	3	3	3	3	3	-	-	3
-관사업부추진비(24002)	2	2	2	-	-	1	1	1	1	1	-	-	1

			2022				2023(′23.12월말)						
								<u> </u>		이월액			
	예신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제 예산 현액	외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2024 예산
- 포상금(310-03)	65	65	63	-	2	65	65	63	65	63	-	2	65
·지자체 역량강화	169	169	165 (158)	-	4	169	169	168 (156)	169	168 (156)	-	1	-
-일반수용비(210-01)	12	12	12	-	-	12	12	12	12	12	-	-	-
-임차료(210-07)	14	14	13	-	1	14	14	14	14	14	-	-	-
국내여비(220-01)	8	8	8	-	-	8	8	8	8	8	-	-	-
-국외업무여비(220-02)	10	10	9	-	1	10	10	10	10	10	-	-	-
-포상금(310-03)	25	25	23	-	2	25	25	24	25	24	-	1	-
- 자체당상보조(3001)	100	100	100 (93)	-	-	100	100	100 (88)	100	100 (88)	-	-	-
• 문화재정책개발	92 (87)	87	87	-	-	94	94	94	94	94	-	-	295
-상용임금(110-03)	25	25	25	-	-	26	26	26	26	26	-	-	27
-일반수용비(210-01)	23	23	32	-	-	23	23	23	23	23	-	-	23
- 공공유금 및 재세(21002)	1	1	1	-	-	1	1	1	1	1	-	-	1
-특근매식비(210-05)	1	1	1	-	-	1	1	1	1	1	-	-	1
-임차료(210-07)	16	16	7	-	-	16	16	16	16	16	-	-	16
-국내여비(220-01	10 (5)	5	5	-	-	10	10	10	10	10	-	-	10
-국외업무여비(220102)	9	9	9	-	-	9	9	9	9	9	-	-	9
-관업무추진 (24002)	1	1	1	-	-	1	1	1	1	1	-	-	1
-일반연구비(260-01)	-	-	-	-	-	_	-	-	-	-	-	-	200
-고용부담금(320-09)	6	6	6	-	-	7	7	7	7	7	-	-	7
·문화재산업 및 일자리박람회	300	300	300 (297)	-	-	300	300	300 (293)		300 (293)	-	-	299
- 자체당상보조(3001)	300	300	300 (297)	-	_	300	300	300 (293)	300	300 (293)	-	-	299
·역시문화자원 발굴 및 보호	6,000	7,106	5,435	1,125	546	3,100	4,225	3,979	3,100	2,854	-	246	3,100
-일반연구비(260-01)	6,000	7,106	5,435	1,125	546	3,100	4,225	3,979	3,100	2,854	-	246	3,100
• 정책연구	1,590 (1,510)	1,510	-	-	-	1,590	1,662	1,661	1,590	1,589	-	1	1,287
-정책연구비(260-02)	1,590 (1,510)	1,547	1,467	72	8	1,590	1,662	1,661	1,590	1,589	-	1	1,287
· 문화유산 산업 인턴십 지원	2,400	2,400	2,400	-	-	2,806	2,806	2,780 (2,780)	2,806	2,780 (2,780)	-	26	1,433
-일반수용비(210-01)	30	30	-	-	-	30	30	4	30	4	-	26	30
-일반용역비(210-14)	-	-	30	-	_	_	_	-	_	_	-	-	-

			2022					2023(′	23.12월	말)			
	예산액	예산	집행액				예산	집행액	전년도 제		이월	불용	2024
	애산택 (추경)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 액	본예산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산
- 만위科(32002)	2,370	2,370	2,370	-	-	2,776	2,776	2,776 (2,776)	2,776	2,776 (2,776)	-	1	1,403
· 문화재관람료 감면비용지원	-	-	-	-	-	42,100	42,100	42,097 (42,097)	42,100	42,097 (42,097)	-	3	55,442
-일반수용비(210-01)		-	_	-	-	-	-	-	-	-	-	-	50
-일반용역비(210-14)	-	-	-	-	-	200	200	197	200	197	-	3	150
-자체강/보조(3001)	-	-	_	-	-	41,900	-	-	-	-	-	-	-
-민간경상보조(320-01)	-	-	_	-	-	-	41,900	41,900 (41,900)	41,900	41,900 (41,900)	-	-	55,242
·문화재보존관리 긴급지원	(7,080)	7,080	7,080 (7,053)	-	-	-	-	-	-	-	-	-	-
-민간경상보조(320-01)	(7,080	7,080	7,080 (7,053)	-	-	-	-	_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문화재보존관리정책강화)

- (문화재위원회 운영 및 회의 기록관리) 문화재위원회 (9개 분과) 구성·운영을 통한 국가유산 보존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 지원
- (문화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문화유산 보호 유공자 포상을 통한 국가유산 애호의식 증진을 위해 지원
- (지자체 역량 강화) 지자체 문화유산 관리역량 강화로 문화유산 보존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지원
- (문화재 정책개발) 국가유산 정책 개발 연구로 거시적·장기적 국가유산 정책마련을 위해 지원
- (문화유산 산업 및 일자리 박람회) 문화유산 보존·관리·활용 서비스 확대 및 사회적 기업 활성화, 문화유산 중심 공동체 발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원
-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보호) 역사문화자원(비지정문화재) 통합적·총체적 조사 및 보호 방안 강구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 없는 "문화 국토" 실현을 위해 지원
- (정책연구)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
- (문화유산 산업 인턴십 지원) 문화유산 관련 분야 수요기관에 필요한 청년 인턴지원

을 통해 문화유산 산업 분야 취·창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원

- (문화재 관람료 감면비용 지원) 문화재 관람료 감면 시행으로 인한 감면비용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ㅇ 문화재정책추진 등 : 문화재보호법 제6조, 제7조
- 문화재보호법 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문화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7조(문화재 보존 시행계획 수립)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문화재 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16조(문화재 전문인력의 양성)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보호·관리 및 수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 ㅇ 문화재위원회 운영 :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문화재위원회 규정
- 문화재보호법 제8조(문화재위원회의 설치)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회를 둔다.
- ㅇ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보호 : 문화재보호법 제10조
- 문화재보호법 제10조(문화재 기초조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의 멸실 방지 등을 위하여 현존하는 문화재의 현황,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
- ㅇ 문화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 상훈법 제2조, 정부표창규정 제2조
- 상훈법 제2조(서훈의 원칙) 대한민국훈장 및 포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 국민 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자에게 수여한다.
- 정부표창규정 제2조(표창의 원칙) 이 영에 의한 표창은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내외국인 또는 교육·경기 및 작품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한 자에게 수여한다.

② 추진경위

<문화재위원회 운영>

o 현황 : 9개 분과 300명(문화재위원 100명, 전문위원 200명)

- 건축, 동산, 사적, 천기, 매장, 근대, 민속, 세계유산, 궁능분과
 - * 8개 분과 281명(문화재위원 80명, 전문위원 201명) → 9개 분과 300명(궁능분과 신설, 문화재위원 100명(20명 증원))
- ㅇ 임기 : 2년 (2023.5.1.~2025.4.30.)
- O 임무 :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의한 문화재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사·심의

<문화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 매년 문화유산 보존·활용·연구 분야에 공적이 현저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정부 포상을 실시하여 자긍심과 사기 진작 도모, 이를 통해 국민의 문화재 애호의식 함양 및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
 - 문화훈장('05년~) 6점('14년까지 3점, '15~'19년 6점, '20년 5점, '21년 6점, '22년 6점)
 - 대통령표창('04년~) 6점('17년까지 5점, '18~'22 6점)
 - 국무총리표창('18년~) 1점('18, '19~'22년 1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04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6,383	1,4152	17,882	50,504	62,255

_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및 보조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지방자치단체, 경주화백컨벤션뷰로

- 사업 수혜자 : 지방자치단체,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게여기어버	¬ н	피보조・피출	지원 금액	지원	니크 () 비기크리 (레리, 크취)
내역사업명	一十七	연 등 기관명	(2024예산)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문화재 산업 및	нэ	지자체보조	200	F00/	나고그 코기에 되춰 버르 기체러 제4구
일자리 박람회	보소	시사세보소 	299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사 업 명

(2) 국유문화재관리 (1131-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Óો મો. <u>જો</u> ગો	ㅁ됬케귕	므청 케거케그		060	064
명칭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2
명칭	문화재정책기반구축	문화재보호행정기반조성	국유문화재관리

□ 사업 성격

_ '	–					
신규	괴소	이근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でまれ	신규 계속	완료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0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0		10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그ㅇㅁ紂케司기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김종승	신미정	고윤정
국유문화재관리		정책총괄과	042-481-4810	042-481-4811	042-481-4867
	사업시행주체	직접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①국유문화재	소관부처	문화재정책국	김종승	신미정	고윤정
일반관리		정책총괄과	042-481-4810	042-481-4811	042-481-4867
	사업시행주체	직접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②국유문화재 경상보조	소관부처	문화재정책국	김종승	신미정	고윤정
		정책총괄과	042-481-4810	042-481-4811	042-481-4867
	사업시행주체	지자체보조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③국유재산	소관부처	문화재정책국	김종승	신미정	조성전
관리위탁비 보조		정책총괄과	042-481-4810	042-481-4811	042-481-4852
	사업시행주체	성균관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④국유문화재	소관부처	문화재정책국	김종승	신미정	고윤정
보존관리		정책총괄과	042-481-4810	042-481-4811	042-481-4867
	사업시행주체	직접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⑤국유문화재	소관부처	문화재정책국	김종승	신미정	고윤정
통합정보구축		정책총괄과	042-481-4810	042-481-4811	042-481-4867
	사업시행주체	직접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	202	4년	중감	
71 ዘ 3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국유문화재관리	1,293	1,412	1,613	1,613	201	14.2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	23.12월	말)			
			집행액					집행액	전년도 제	이월액			2024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설정 [실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국 [실집 행액]	예산	<u> </u>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예산
			O 11					0 11	현액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310	1,310	1,293	-	17	1,412	1,412	1,388	-	-	-	24	1,613
· 국유문화재 일반관리	119	119	105	-	14	221	221	197	-	-	-	24	222
· 국유문화재 경상보조	211	211	211 (198)	-	-	211	211	211 (202)		-	-	-	211
·क्रिक्टिसम्मी प्रेट	150	150	150	-	_	150	150	150	-	-	_	_	150
·국유문화재 보존관리	210	210	210	-	_	210	210	210	-	-	_	-	410
· न्सिट्यंग ह्वायप्रेन्दे	620	620	617	-	3	620	620	620	-	-	-	-	620
○ 비목별 분류(합계)	1,310	1,310	1,293	-	17	1,412	1,412	1,388	-	-	-	24	1,613
· 상용임금(110-03)	27	27	26	-	1	28	28	27	-	-	-	1	29
· 일반수용비(210-01)	65	65	53	-	12	65	65	65	-	-	-	-	65
· 공공요금및제세(210-02)	1	1	1	-	-	11	11	1	-	-	-	10	11
· 특근매식비(210-05)	1	1	-	-	1	1	1	-	-	-	-	1	1

		2022						2023(′	23.12월	[말)			
										이월액			
	예산액	예산	집행액				예산	집행액	제		이월	불용	2024
	_{기신기} (추경)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상액	예산
· 복리후생비(210-12)	1	1	1	-	-	1	1	1	_	-	-	-	1
· 관리용역비(210-15)	-	-	-	-	-	91	91	79	-	-	-	12	91
· 국내여비(220-01)	16	10	10	-	-	16	16	16	-	-	-	-	16
· 사업추진비(240-01)	2	2	2	-	-	2	2	2	-	-	-	-	2
· 일반연구비(260-01))	830	830	617	-	3	830	830	830	-	-	-	-	1,030
・포상금(310-03)	-	6	6	-	-	-	-	-	-	-	-	-	-
· 민간위탁시업비(320-02)	150	150	150	-	-	150	150	150	-	-	-	-	150
· 고용부담금(320-09)	5	5	5	-	-	5	5	5	-	-	-	-	5
・ スタビオアシリング(33001)	211	211	211	_	_	211	211	211	_	_	_	_	211
, ,			(198)			211	211	(202)					211
· 자산취득비(430-01)	1	1	1	-	-	1	1	1	-	-	-	-	1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310	1,310	1,293	-	17	1,412	1,412	1,388	_	-	-	24	1,613
· 국유문화재일반관리	119	119	105			221	221	197				24	222
-상용임금(110-03)	27	27	26	-	1	28	28	27	-	-	-	1	29
-일반수용비(210-01)	65	65	53	-	12	65	65	65	-	-	-	-	65
-공공요금및제세(210-02)	1	1	1	-	-	11	11	1	-	_	-	10	11
-특근매식비(210-05)	1	1	-	-	1	1	1	-	-	-	-	1	1
-복리후생비(210-12)	1	1	1	-	-	1	1	1	-	-	-	-	1
-관리용역비(210-15)	-	-	-	-	-	91	91	79	-	-	-	12	91
-국내여비(220-01)	16	10	10	-	-	16	16	16	-	-	-	-	16
-사업추진비(240-01)	2	2	2	-	-	2	2	2	-	-	-	-	2
-포상금(310-03)	-	-	-	-	-	-	-	-	-	-	-	-	-
-고용부담금(320-09)	5	5	5	-	-	5	5	5	-	-	-	-	5
-자산취득비(430-01)	1	1	1	-	-	1	1	1	-	-	-	-	1
· 국유문화재경상보조	211	211	211	-	_	211	211	211	_	_	_	-	211
			(198)					(202)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211	211	211 (198)	-	-	211	211	(202)	-	-	_	-	211
· 국유자산 관위투비 보조	150	150	150	_	_	150	150		_	_	_	_	150
- 민간위탁시업비(320402)	150	150		_	_	150	150		_	_	_	_	150
•국유문화재 보존관리	210	210		_	_	210	210		_	_	_	_	410
-일반연구비(260-01)	210	210		_	_	210	210		_	_	_	_	410
• न्सीरिकेस इंबिलियने	620	620	617	_	3	620	620		_	_	_	_	620
-일반연구비(260-01)	620	620	617		3	620	620	620					62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유문화재 일반관리) 국유문화재 관리를 위한 일상경비
- (국유문화재 경상보조) 국유문화재 관리위임 지자체 지원을 통한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 (국유재산 관리위탁비 보조)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위탁 및 시설유지
- (국유문화재 보존관리) 실태조사·지적측량을 통한 국유문화재(국유재산) 상시관리
- (국유문화재 통합정보구축) 국유문화재 실태조사·측량성과 누적·연계를 통한 데이터 기반 국유재산DB구축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ㅇ 국유문화재 일반관리 : 「국유재산법」제8조
- 「국유재산법」제8조(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 ③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 정법」제4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속하는 국유재산과 제40조제2항 각호에 따른 재산을 관리·처분한다. ⑥ 이 법에 따른 총괄청의 행정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ㅇ 국유문화재 경상보조 : 「국유재산법」제28조,「문화재보호법」제51조
- 「국유재산법」제28조(관리사무의 위임) ④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문화재보호법」제51조(보조금)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그 문화재를 관리할 때 필요 한 경비
- ㅇ 국유재산 관리위탁비 보조 : 「국유재산법」제29조
- 「국유재산법」제29조(관리위탁) ①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ㅇ 국유문화재 보존관리 : 「국유재산법」제66조,「문화재보호법」제62조
- 「국유재산법」제66조(대장과 실태조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구분과 종류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대장·등기사항증명서와 도면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매년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제1항의 대장을 정비하여야 한다.
- 「문화재보호법」제62조(관리청과 총괄청) ① 국유에 속하는 문화재(이하"국유문

화재"라 한다)는 「국유재산법」제8조와「물품관리법」제7조에도 불구하고 문화 재청장이 관리·총괄한다.

- ㅇ 국유문화재 통합정보구축 : 「국유재산법」제66조,「문화재보호법」제22조의10
- 「국유재산법」제66조(대장과 실태조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구분과 종류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대장·등기사항증명서와 도면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중 앙관서의 장등은 매년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제1항의 대장을 정비하여야 한다.
- 「문화재보호법」제22조의10(문화재데이터 관련 사업의 추진)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재데이터의 생산·수집·저장·가공·분석·제공 및 활용

② 추진경위

- ㅇ 국유재산 관리위탁비 보조 : 1985년 시작
- 국유문화재 재산 중 문화재청에서 직접 관리가 곤란한 광활한 토지(임야)를 해당 시·군에 관리 위임함으로써 도벌, 무단점유 방지, 산불예방 등 문화재 및 동 보 호구역 내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
- ㅇ 국유문화재 보존관리 등 : 2010년 시작
- 국유재산의 권리보전, 체계적 DB구축, 사유지 매입 및 교환 등 효율적인 국유재 산 관리로 국민의 재산권 침해해소 및 국유재산 활용도 제고와 촘촘한 관리를 위해 사업 추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645	1,346	1,310	1,412	1,613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지자체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 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국유문화재	見る	지자체보조	211	100	「국유재산법」제28조제4항
경상보조	72		211	100	「문화재보호법」제51조제1항

사 업 명

(3) 역사문화권기반조성 (1131-30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Ol Hl. જો ગો	ㅁ칡케칭	국립문화재		060	064
명칭	일반회계	문화재청	연구원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8		
명칭	문화재정책기반조성	문화재보호행정기반조성	역사문화권기반조성		

□사	□ 사업 성격											
x1 7.	괴소	റി =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刊出	계속	전묘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0			0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역사문화권	소관부처	국립문화재연구원	박형빈	김행덕	박민경					
기반조성		연구기획과	042-860-9130	042-860-9131	042-860-9132					
· -	사업시행주체	직접시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언며	사업명 2022년 사업명 3.3		202	4년	증감	
71 日 0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역사문화권	6.069	26.062	1 105	1 (05	^ 25 277	△93.8
기반조성	6,968	26,962	1,485	1,685	△25,277	△93.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	23.12월	말)			
										이월액			
	예산액	예산	집행액	ما (مارم)	ലറത	Hallel	예산	집행액	제		이월	불용	2024 예산
	(추경)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물용색	본예산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상액	예상액	예간
○ 기능별 분류(합계)	2,215	8,540	6,968	1,572	-	26,962	28,534	27,744	26,962	26,172	459	331	1,685
·가야역시문화센터 건립	2,215	8,540	6,968	1,572	-	26,762	28,334	27,569	26,762	25,997	459	306	-
· 마한역시문화센터건립						200	200	175	200	5		25	450
·가이역시문화센터 운영													1,035
• ग्रेषमार्थभी सर्वेशी दिव													200
○ 비목별 분류(합계)	2,215	8,540	6,968	1,572	-	26,962	28,534	27,744	26,962	26,172	459	331	1,685
-상용임금(110-03)													135
-일반수용비(210-01)													58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50
-피복비(210-03)													1
-특근매식비(210-05)													0.6
-임차료(210-07)													3
-유류비(210-08)													0.4
-시설장비유지비 (21 009)													60
-복리후생비(210-12)													2
-일반용역비(210-14)													500
-관리용역비(210-15)													10
-일반연구비(260-01)						200	200	175	200	175		25	200
-고용부담금(320-09)													15
-건설보상비(410-00)						5,166	5,345	5,341	5,345	5,341		4	
-기본조사설계비(42 001)													450
-공사비(420-03)	2,130	7,990	6,419	1,571		20,162	21,555	20,894	19,983	19,322	459	202	
-감리비(420-04)	54	519	519	1		1,295	1,295	1,195	1,295	1,195		100	
-시설부대비(420-05)	31	31	31			139	139	139	139	139			
-자산취득비(430-01)													20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215	8,540	6,968	1,572	_	26,962	28,534	27,744	26,962	26,172	459	331	1,685

			2022					2023(′	23.12월	말)			
									전년도	. – .			2024
	예산액	예산	집행액	الماماد	HAM	12.91	예산	집행액	제		이월	불용	2024 예산
	(추경)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상액	예상액	예산
·가이역시문화센터 건립	2,215	8,540	6,968	1,572	-	26,762	28,334	27,569	26,762	25,997	459	306	-
-건설보상비(410-00)						5,166	5,345	5,341	5,345	5,341		4	
-공사비(420-03)	2,130	7,990	6,419	1,571		20,162	21,555	20,894	19,983	19,322	459	202	
-감리비(420-04)	54	519	519	1		1,295	1,295	1,195	1,295	1,195		100	
-시설부대비(420-05)	31	31	31			139	139	139	139	139			
· 마한역시문화센터건립						200	200	175	200	175	-	25	450
-일반연구비(260-01)						200	200	175	200	175		25	-
<i>-</i> 기본조사설계비(420·01)													450
·기이역시문화센터 운영	-	-	-	-	-	-	-	-	-	-	-	-	1,035
-상용임금(110-03)													135
-일반수용비(210-01)													58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50
-피복비(210-03)													1
-특근매식비(210-05)													0.6
-임차료(210-07)													3
-유류비(210-08)													0.4
-시설장비유지비(21009)													60
-복리후생비(210-12)													2
-일반용역비(210-14)													500
-관리용역비(210-15)													10
-고용부담금(320-09)													15
-자산취득비(430-01)													200
• श्रेष्मावेशीः स्रोधी द्वी	-	-	-	-	-	-	-	-	-	-	-	-	200
-일반연구비(260-01)													200

1) 사업목적·내용

- (가야역사문화센터 운영) '23년 12월 건립 완료된 가야역사문화센터를 개관·운영 하여 영·호남 가야문화권 전체의 대표 아카이브 및 발굴기록물들의 수집·보존· 활용 수행, 전시·체험·교육 등 대국민 서비스 수행
- (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 마한역사문화권의 문화유산에 대한 체험·교육 및 보존· 정비·활용을 위한 복합역사문화공간 마련
- (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후백제역사문화권의 문화유산에 대한 체험·교육 및 보존·정비·활용을 위한 복합역사문화공간 마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문화재보호법 제11조(문화재 정보화의 촉진)
 - ·문화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조사 자료와 그 밖의 문화재 보존·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이 문화재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8조(매장문화재의 기록 작성 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확인된 매장문화재의 기록을 작성·유지하고, 그 포장된 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국가 귀속대상 문화재가 아닌 문화재의 처리 방법) 제1항
 - ·문화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친 결과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문화재로서 제19조에 따른 국가 귀속대상 문화재가 아닌 문화재를 교육이나 학술 자료 등으로 활용하게 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할 수 있다.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및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역사문화권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형·무형 유산의 생산 및 축적을 통해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발전시켜 온 권역으로 현재 문헌기록과 유적·유물을 통해 밝혀진 9개권역을 말하며,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이란 역사문화환경을 조사·연구·발굴·복원·보존·정비 및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문화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② 추진경위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가야역사문화센터>
 - 2017. 7. 국정과제 실천과제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등' 연차별 이행계획에 포함
 - 2018.12. 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완료
 - 2019.12. 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 구체화를 위한 심화연구 용역 완료
 - 2020. 3. 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 기본계획 용역 완료
 - 2020. 7. 가야역사문화센터 건축설계 계약 및 설계 추진
 - 2020.11. 가야역사문화센터 기본설계(계획, 중간설계) 완료

- 2021. 4. 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 조달청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완료
- 2021. 7. 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 기본설계 기재부 총사업비 심의 완료
- 2021. 8. 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 조달청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완료
- 2021. 9. 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 실시설계 기재부 총사업비 심의 완료
- 2021.12. 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 건축공사 계약, 감리계약 체결
- 2022. 3. 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 건축공사 착공
- 2023.11. 가야역사문화센터 전시공사 계약 체결
- 2023.12. 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 건축공사 준공
- 2024. 9. 가야역사문화센터 전시공사 준공 및 개관 예정
- <마한역사문화센터>
- 2023. 8. 기획재정부 국립시설 사전 타당성 평가 완료
- 2023. 9. 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완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327.03억원)
- 사업기간 : 2020년~2027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4,267	7,570	2,215	26,762	1,685

- 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20~23년): 사업규모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9,995㎡
- 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24~27년) : 사업규모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6,398m²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원)
- 사업수혜자 : 일반국민, 문화유산 관계자 및 전문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4) 문화유산 연구 기반시설 구축 (1131-31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Ol મો. જો ગો	ㅁ쉵케ᅱ	국립문화재		060	064
명칭	일반회계	문화재청	연구원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13
명칭	문화재정책기반구축	문화재보호행정기반조성	문화유산 연구 기반시설 구축

	사	·업성	격				
גו	7.	계속	o) =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1엔	П	게숙	전요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0			0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유산연구	소관부처	국립문화재연구원	박형빈	김행덕	박민경							
기반시설 구축		연구기획과	042-860-9130	042-860-9131	042-860-9132							
	사업시행주체	직접시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	202	4년	증감	
/ ነዝ 3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문화유산 연구	4 662	12 270	14755	14755	2.477	20.2
기반시설 구축	4,663	12,278	14,755	14,755	2,477	20.2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	23.12월	말)			
										이월액			
	예산액	예산	집행액	343.53			예산	집행액	제		이월	불용	2024
	"근 (추경)	^{개 년}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୩ଧଫ	예산
○ 기능별 분류(합계)	8,380	8,380	4,663	3,702	16	12,278	15,980	7,288	12,278	3,853	8,212	480	14,755
·수도권문화재연구 센터 건립	7,339	7,339	3,935	3,402	3	5,820	9,222	5,787	5,820	2,652	3,163	272	5,488
· 전북문화재연구센터 건립	1,041	1,041	728	300	13	6,458	6,758	1,501	6,458	1,201	5,049	208	9,267
○ 비목별 분류(합계)	8,380	8,380	4,663	3,702	16	12,278	15,980	7,288	12,278	3,853	8,212	480	14,755
·기본조사설계비 (420-01)	393	393	275	118	-	-	118	118	-	-	-	-	-
· 실시설계비(420-02)	607	607	425	182	-	50	232	192	50	10	5	35	30
· 공사비(420-03)	6,759	6,759	3,623	3,137	-	11,078	14,215	5,863	11,078	2,993	7,915	437	13,328
· 감리비(420-04)	565	565	300	265	-	1,083	1,348	1,056	1,083	791	292	-	1,324
· 시설부대비(420-05)	56	56	40	-	16	67	67	59	67	59	-	8	73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8,380	8,380	4,663	3,702	16	12,278	15,980	7,288	12,278	3,853	8,212	480	14,755
·安静肥性温	7,339	7,339	3,935	3,402	3	5,820	9,222	5,787	5,820	2,652	3,163	272	5,488
-실시설계비(420-02)													
-공사비(420-03)	6,759	6,759	3,623	3,137	0	5,238	8,375	5,078	5,238	2,208	3,030	267	4,900
-감리비(420-04)	565	565	300	265	0	552	817	684	552	419	133	0	558
-시설부대비(420-05)	15	15	12	0	3	30	30	25	30	25	0	5	30
·यस्टिकारिकारिकारिकारिकारिकारिकारिकारिकारिकार	1,041	1,041	728	300	13	6,458	6,758	1,501	6,458	1,201	5,049	208	9,267
-건설보상비(410-00)													
-기본조시설계비(42001)	393	393	275	118	-	-	118	118	_	-	-	-	-
-실시설계비(420-02)	607	607	425	182	_	50	232	192	50	10	5	35	30

			2022			2023('23.12월말)							
	ત્યાં આ તો		11101 4111 집행액				וג ווג	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A) 0)	но	2024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공사비(420-03)	-	-	-	-	-	5,840	5,840	785	5,840	785	4,885	170	8,428
-감리비(420-04)	_	-	_	_	_	531	531	372	531	372	159	-	766
-시설부대비(420-05)	41	41	28	_	13	37	37	34	37	34	-	3	4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수도권문화재연구센터 건립)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출토유물 신속한 보존처리와 안전한 보관·관리를 통한 문화유산의 체계적 조사·연구 거점시설 구축
- (전북문화재연구센터 건립)전북권역 출토유물에 대한 수장·보존처리 등 지역 역사문화권 조사·연구를 위한 기반 시설 건립, 연구성과 홍보를 위한 전시관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열린도서관, 야외공간 등을 함께 조성하여 문화유산의 새로운 가치 창출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62조(관리청과 총괄청)
 - ·국유에 속하는 문화재는 '국유재산법' 제8조와 '물품관리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장이 관리·총괄한다.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
 - ·문화재청장은 학술조사 또는 공공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발굴할 수 있다.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 조치)
 - ·문화재청장은 발굴된 매장문화재가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굴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존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3조(문화재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문화재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
- ·문화재청장은 제22조에 따라 공고를 한 후 9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어 이를 반환할 필요가 있거나 정당한 소유자가 없어 국가에 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처리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② 추진경위

- 2016.9. 국립서울문화재연구소 건립 기본계획 용역 실시
- 2017.2. 국립서울문화재연구소 개소
- 2018.8. 지역문화유산 조사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추진전략 용역 실시
- 2019.7.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개소
- 2021.3. 전북문화재연구센터 건립부지 매입
- 2022.8. 수도권문화재연구센터 건립공사 착공
- 2023.5. 전북문화재연구센터 설계 완료
- 2023.10. 전북문화재연구센터 건립공사 착공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전북문화재연구센터 건립(304.52억원)
- 사업기간 : 2021년 ~ 2025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	8,763	8,380	12,278	14,755

- · 수도권문화재연구센터 건립('21~24년) : 지상 3층(연면적 5,927m²)
- · 전북문화재연구센터 건립('21~25년) : 지하 1층, 지상 2층(연면적 6,693m²)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원)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문화유산 관계자 및 전문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5) 문화유산 스마트 보존 활용 기술 개발(R&D) (1131-31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OJ HJ જો ગો	ㅁ쉵케ᅱ	므청 케거케그		060	064
명칭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14
명칭	문화재정책기반조성	문화재보호행정기반조성	문화유산 스마트 보존 활용
79'79'	단위세경색기반조경 	판와세도보행성기반조성 	기술 개발(R&D)

□ 사업 성격

		•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신구	규 계속 완료	완료		관리대상		2023예산 시 소관
	0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0		0			10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소관부처	문화재정책국	김종승	홍영주	최민규
		정책총괄과	042-481-4810	042-481-3115	042-481-3116
		기관명	조직명	이 름	연락처
수리 및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이창진	063-270-2623
안전관리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최태호	043-261-2541
혁신	사업시행주체		연구책임자	김충식	041-830-7375
76	1 1 1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연구책임자	한민수	041-830-7381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정용재	041-830-7365
			연구책임자	유정민	041-830-4755
		(재)경북IT융합 산업기술원	연구책임자	천승만	053-245-5054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책임자	박해준	063-570-3190
		한국지질지원연구원	연구책임자	강 웅	042-868-3144
		㈜지오뷰	연구책임자	김현도	051-294-1603
		동국(화교 MS 간화스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강현숙	054-770-2162
지능형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설계기반	소관부처	문화재정책국	김종승	홍영주	최민규
[결계기반		정책총괄과	042-481-4810	042-481-3115	042-481-3116
구축	사업시행주체	미정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연구개발	소관부처	문화재정책국	김종승	홍영주	최민규
사업관리		정책총괄과	042-481-4810	042-481-3115	042-481-3116
1 4 6 - 1	사업시행주체	-	-	-	_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		중감 (B-A)	(T) (A) (A)
	실건	는데건(A)	정부안	확정(B)	(D-A)	(B-A)/A
문화유산스마트 보존활용기술개발 (R&D)	10,569	12,975	8,195	8,195	△4,780	△36.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	23.12월	 말)			
								,		이월액			
	예산액	예산	집행액				예산	집행액	제		이월	불용	2024
	(추경)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상액 예		예산
○ 기능별 분류(합계)	10,600	10,600	10,569		31	12,975	12,975	12,971	12,975	12,971		4	8,195
·수리 및 안전관리 혁신	5,175	5,175	5,175 [5,266]			6,600	6,600	6,600 [6,511]	6,600	6,600 [6,511]			6,561
· 디지털트윈 인프라 구축	5,050	5,050	5,050 [4,939]			6,000	6,000	6,000 [5,966]	6,000	6,000 [5,966]			
·지능형 설계기반 구축 ·연구개발사업													1,259
관리	375	375	344		31	375	375	371	375	371		4	375
○ 비목별 분류(합계)	10,600	10,600	10,569		31	12,975	12,975	12,971	12,975	12,971		4	8,195
· 일반수용비 (210-01)	135	98	95		3	90	68	66	68	66		2	109
· 공공요금및제세 (210-02)	1	1	1			1	1		1			1	1
· 임차료(210-07)	19	19	8		11	14	14	13	14	13		1	10
· 일반용역비 (210-14)		37	35		2		22	22	22	22			
· 일반연구비 (260-01)	200	200	186		14	250	250	250	250	250			250
· 연구개발연구활 동비등(360-05)	10,225	10,225	10,225 [10,205]			12,600	12,600	12,600 [12,477]	12,600	12,600 [12,477]			7,820
· 자산취득비 (430-01)	20	20	20			20	20	20	20	20			5
○ 기능비목별 분류 (합계)	10,600	10,600	10,569		31	12,975	12,975	12,971	12,975	12,971		4	8,195
·수리 및 안전관리 혁신	5,175	5,175	5,175 [5,266]			6,600	6,600	6,600 [6,511]	6,600	6,600 [6,511]			6,561

			2022					2023(′	23.12 [ୁ]	말)			
								-1-0.0	l	이월액			2024
	예산액	예산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집행액	저	의 집행액	이월	불용	2024 예산
	(추경)	현액	[실집 행액]	기별책	284	문에간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접행적 [실집 행액]	예상액	예상액	7112
-연구개발연구활 동비등(360-05)	5,175	5,175	5,175 [5,266]			6,600	6,600	6,600 [6,511]	6,600	6,600 [6,511]			6,561
· 디지털트윈 인프라 구축	5,050	5,050	5,050 [4,939]			6,000	6,000	6,000 [5,966]	6,000	6,000 [5,966]			
-연구개발연구활 동비등(360-05)	5,050	5,050	5,050 [4,939]			6,000	6,000	6,000 [5,966]	6,000	6,000 [5,966]			
·지능형 설계기반 구축													1,259
-연구개발연구활 동비등(360-05)													1,259
· 연구개발사업 관리	375	375	344		31	375	375	371	375	371		4	375
-일반수용비 (210-01)	135	98	95		3	90	68	66	68	66		2	109
-공공요금및제세 (210-02)	1	1	1			1	1		1			1	1
-임차료(210-07)	19	19	8		11	14	14	13	14	13		1	10
-일반용역비 (210-14)		37	35		2		22	22	22	22			
-일반연구비 (260-01)	200	200	186		14	250	250	250	250	250			250
-자산취득비 (430-01)	20	20	20			20	20	20	20	20			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수리 및 안전관리 혁신) 문화유산 원형 보존을 위한 현장 맞춤형 스마트 기술 개발 및 지능형 관리체계 구축
- (지능형 설계기반 구축) 전통 목조 건축물 이미지 도면 데이터를 활용하여 구성부 단위 생성 및 변환 지원 및 가상 설계 지원 기술 개발
- (연구개발사업관리)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관리 평가 등을 위한 사업관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문화재보호법 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6조의 2(문화재연구개발)
 - 문화재청장은 공동연구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17~'21)
 - 추진전략 IV-3(연구기반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 ·보존·복원기술 연구개발, 연구정보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
-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19~'23)
 - 중점과제 4(문화재 수리기술 고도화)
 - ·기초연구 활성화 및 연구개발(R&D) 강화
- 문화유산 미래 정책비전('19~'23)
 - 전략 2(첨단 과학이 함께하는 서비스와 보존)
 - ·문화유산 기술 강국을 위한 R&D 로드맵을 수립, 과학기술 선도

② 추진경위

- 문화유산기술 개발 포럼 및 문화유산 기술자문위원회 운영('19. 3.)
 - 문화유산R&D의 사업 방향 진단 및 중장기 전략계획 수립 기반 마련
- 문화유산 연구개발 아젠다 수립('19. 5.)
 - 기본계획의 비전·목표 설정, 문화유산기술 수요조사 실시
-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연구개발 기본계획('21~'25)」 수립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0회 심의회의 원안 의결('20. 5.)
- 기본계획의 후속사업 예산 확정('20.9.~12.)
- 문화유산R&D 사업 및 과제 기획('20.3.~11.)
 - 문화유산 기술수요조사를 통한 향후 투자방향 설정 및 과제 기획('20. 11.)
- 「제1차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연구개발 기본계획」의 2021년 시행계획 수립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원안 의결('20. 12.)
- 「제1차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연구개발 기본계획」의 2022년 시행계획 수립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원안 의결('22. 2.)
- '22년도 신규사업 착수('22.4월)
 - 수리 및 안전관리 혁신 3개 과제(공모) 선정('22. 4.)
- 연구개발사업 1단계 종료에 따른 단계평가 실시('22. 11.)
 - 수리 및 안전관리 혁신(8개), 디지털트윈인프라구축(3개)
- 「제1차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연구개발 기본계획」의 2023년 시행계획 수립
 - 문화유산 연구개발심의위원회 '23년 시행계획(안) 심의 의결('22. 12.)

- '23년도 계속사업 추진(총 14개 과제)
- 수리 및 안전관리 혁신(11개), 디지털트윈 인프라 구축(3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21 ~ 2025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_	7,875	10,600	12,975	8,195

- 기타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출연

- 사업시행주체 : 전북대, 충북대, 한국전통대,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한국원자

력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오뷰, 동국대 경주캠퍼스

- 사업 수혜자 : 문화재청, 지자체,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4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수리 및 안전관리 혁신	출연	대학, 출연연, 산업체	6,561	90.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지능형 설계기반 구축	출연	대학, 출연연, 산업체	1,259	미정 (*24년 신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6) 기후변화 대응 문화유산 보존관리 기술개발(R&D) (1131-31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Ol મો. જો ગો	ㅁ쉵케ᅱ	므청 케거케그		060	064
명칭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17
명칭	문화재정책기반조성	문화재보호행정기반조성	기후변화 대응 문화유산
9/3	군와세성색기반조성	판와세보호병경기반조정 	보존관리 기술개발(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이근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υπ	계숙	世五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0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0		0			100	

사업명			구분						
국가유산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미케치보	소관부처	문화재정책국	김종승	홍영주	최민규				
피해회복		정책총괄과	042-481-4810	042-481-3115	042-481-3116				
기술개발	사업시행주체	미정	미정	미정	미정				
국가유산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7년 (0 국) 국)	소관부처	문화재정책국	김종승	홍영주	최민규				
적응관리		정책총괄과	042-481-4810	042-481-3115	042-481-3116				
기술개발	사업시행주체	미정	미정	미정	미정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연구개발	소관부처	문화재정책국	김종승	홍영주	최민규				
사업관리		정책총괄과	042-481-4810	042-481-3115	042-481-3116				
1669	사업시행주체	-	-	-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	202	4년	증감	
7 1 日 0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기후변화 대응 문화유산 보존관리 기술개발(R&D)	-	-	1,514	1,514	1,514	순증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2022					2023(′	23.12월	 일말)				
			_3-2.2					-3-9:9		이월액			2024
	예산액	예산	집행액	~1010I	14 O AN	וגונגו	예산	집행액		기계	이월	불용	2024 예산
	(추경)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물병액	본예산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상액	예상액	1112
○ 기능별 분류(합계)													1,514
·국가유산 피해회복 기술개발													1,143
·국가유산 적응관리 기술개발													300
·연구개발사업 관리													71
○ 비목별 분류(합계)													1,514
• 일반수용비													19
(210-01) · 공공요금및제세 (210-02)													1
· 임차료(210-07)													2
· 일반연구비 (260-01)													45
· 연구개발연구활 동비등(360-05)													1,443
· 자산취득비 (430-01)													4
○ 기능비목별 분류 (합계)													1,514
· 국가유산 피해회복 기술개발													1,143
-연구개발연구활 동비등(360-05)													1,143
·국가유산 적응관리 기술개발													300

		2022						2023(′	23.12월	말)			
			집행액				기해애			. 이월액 외			2024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실집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산 -애 [실집	^ 예산	IH 집행액	이월 세시애	불용 예상액	2024 예산
	(T'8)	27	행액]				연곡	행엑	현액	[실집 행액]	7187	1 978 4	
-연구개발연구활										1			300
동비등(360-05) • 연구개발사업													
관리													71
-일반수용비 (210-01)													19
-공공요금및제세													1
(210-02) -임차료(210-07)													2
-일반연구비 (260.01)													45
(260-01) -자산취득비													4
(430-01)													4

1) 사업목적·내용

- (국가유산 피해회복 기술개발) 이상기후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 발생 시, 신속 정확한 원형복구를 지원하고 소재의 내구성 향상 및 피해 저감이 가능한 기술 개발
- (국가유산 적응관리 기술개발) 가속화되는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 가능한 국가유산의 피해를 예측·예방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국가유산 보존·관리 고도화 기술개발
- (연구개발사업관리)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관리 평가 등을 위한 사업관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가유산기본법 제22조(기후변화 대응)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환경 변화나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국가유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기후변화가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국가유산의 취약성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조사한 내용을 진단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6조의 2(문화재연구개발)
 - 문화재청장은 공동연구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국가는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제1차 기본계획('23~'42)
 - 자연유산 관련 과제 포함(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의 유전자원 보전·인공증식·복원)
-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23~'32)
 - 생물다양성 증진 및 자연·문화유산 보존관리 분야 포함
-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17~'21)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0차 심의회의 의결('20.5.)
- 「국가유산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23-'37)」 수립('23.7.)

② 추진경위

- 문화유산 연구개발 아젠다 수립('19.5.)
 - 기본계획의 비전·목표 설정, 문화유산기술 수요조사 실시
-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연구개발 기본계획('21~'25)」 수립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0회 심의회의 원안 의결('20.5.)
- 문화재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 기초연구('22년)
- 국가유산분야 기후변화 대응 정책토론회('23.3./류호정의원실)
- 「문화유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R&D) 기획연구」기술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한 RFP, 기술로드맵 도출('23.4.)
- 「제1차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연구개발 기본계획」의 2023년 시행계획 수립
 - 문화유산 연구개발심의위원회 '23년 시행계획(안) 심의 의결('22.12.)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24 ~ 2028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	-	-	-	1,514

- 기타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관련 연구기관, 학교, 산업체 등

- 사업 수혜자 : 문화재청, 지자체,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4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국가유산 피해회복 기술개발	출연	대학, 출연연, 산업체	1,143	미정 (*24년 신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국가유산 적응관리 기술개발	출연	대학, 출연연, 산업체	300	미정 (*24년 신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7) 무형문화재보호 (1132-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F2	므칭키거키그		060	064
명칭	11	52	문화재정책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2	301
명칭	문화재정책기반구축	무형문화재전승	무형문화재보호

[□ 사업 성격										
	λl 7.	계속	o) =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21円	계숙	[전묘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0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О			О		50/100	

사업명			구분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무형문화재	소관부처	문화재정책국	이재필	김현숙	최봉석
보호		무형문화재과	042-481-4960	042-481-4961	042-481-4962
	사업시행주체	직접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① 무형문화재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이재필	김현숙	최봉석
보존관리		무형문화재과	042-481-4960	042-481-4961	042-481-4962
1 2 6 6 7	사업시행주체	직접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②무형문화재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이재필	박선영	윤지현
예술마을조성		무형문화재과	042-481-4960	042-481-4964	042-481-4965
1,6 16-0	사업시행주체	자치단체			
③전수교육관	문화재청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	正好川份	문화재정책국	이재필	박선영	윤지현

기리 미 기이		무형문화재과	042-481-4960	042-481-4964	042-481-4965
건립및지원	사업시행주체	자치단체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④ 무형문화재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이재필	방소연,김현숙	이명진,최봉석
<u>किम् श्रम्भ</u> ग		무형문화재과	042-481-4960	042-481-4966,4961	042-481-4967,4962
종목 관리	사업시행주체	한국문화재재단 한국무형문화재 진흥센터	전승기획팀	김성애 팀장	02-3011-2151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⑤무형문화재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이재필	김응서,김현숙	윤수경,최봉석
저변 확대		무형문화재과	042-481-4960	042-481-4968,4961	042-481-4969,4962
,	사업시행주체	자치단체, 대학교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	202	4년	증감	
71 11 6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무형문화재보호	18,172	16,797	11,319	11,319	△5,478	△32.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2022					2023(′	23.12월						
			الحالجات					기취이		이월액			2024
	예산액	예산	집행액 [실집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집행액 [실집	제	의 집행액	이월	불용	202 4 예산
	(추경)	현액	행액	12.1	201	- 11	현액	행액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예상액	예상액	,, _
○ 기능별 분류(합계)	18,666	18,752	18,172 [17,900]	465	115	16,797	16,792	16,227 [10,034]	16,792	16,227 [9,170]		565	11,319
·무형문화재 보존 관리	804	804	739		65	785	811	773	811	773		38	789
·무형문화재 보호 육성	10,631	10,631	10,619		12								
·무형문화재 예술 마을 조성	920	920	920 [920]			4,164	4,164	4,164 [0]	4,164	4,164 [0]			972
·국립무형유산원 분원 건립	1,700	1,786	1,302	465	20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						5,037	5,037	5,037 [3,895]	5,037	5,037 [3,172]			4,037
·무형문화재 종목 관리	2,460	2,460	2,460			4,060	4,060	3,552 [3,268]	4,060	3,552 [3,268]		508	3,560
·무형문화재 저변 확대	2,151	2,151	2,132 [1,861]		18	2,751	2,720	2,701 [2,098]	2,720	2,701 [1,957]		19	1,961
○ 비목별 분류(합계)	18,666	18,752	18,172 [17,900]	465	115	16,797	16,797	16,227 [10,024]	16,792	16,227 [9,170]			11,319
· 상용임금 (110-03)	90	90	86		4	92	92	90	92	90		2	95
· 일반수용비 (210-01)	227	236	236			252	230	229	230	229		1	235
· 공공요금및제세 (210-02)	10	8	6		2	10	10	5	10	5		5	10
· 특근매식비 (210-05)	7	2	2			7	7	2	7	2		5	7
·임차료 (210-07)	10	9	7		2	10	10	8	10	8		2	10
· 복리후생비 (210-12)	1	1	1			2	2	2	2	2			2
· 일반용역비 (210-14)	180	180	160		20	230	252	231	252	231		21	267
· 기타운영비 (210-16)	1					1	1	0	1	0		1	1

			2022					2023(′	23.12월	 말)			
									전년도				
	מגניני.	.9.11	집행액				.9.11	집행액	제	. – .	.1.61	<u>س</u> ا	2024
	예신액 (추경)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 국내여비 (220-01)	72	72	72			73	85	84	85	84		1	73
· 국외업무여비 (220-02)	39	39	24		15	41	24	22	24	22		2	31
· 사업추진비 (240-01)	17	17	17			16	16	16	16	16			16
· 일반연구비 (260-01)	230	316	277		39	230	230	214	230	214		16	230
· 기타보전금 (310-04)	10,631	10,631	10,619		12								
· 민간경상보조 (320-01)	351	351	351 [350]			351	351	351 [230]	351	351 [230]			451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2,460	2,460	2,460			2,460	2,460	2,460	2,460	2,460			2,460
· 고용부담금 (320-09)	17	17	16		1	18	18	17	18	17		1	19
·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1,700	1,700	1,700 [1,429]			3,800	3,800	3,292 [2,526]	3,800	3,292 [2,385]		508	2,400
·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920	920	920 [920]			9,201	9,201	9,201 [3,895]	9,201	9,201 [3,172]			5,009
·기본조사설계비 (420-01)	680	680	660		20								
·실시설계비 (420-02)	1,020	1,020	555	465									
· 자산취득비 (430-01)	3	3	3			3	3	3	3				3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8,666	18,752	18,172 [17,900]	465	115	16,797	16,792	16,227 [10,034]	16,792	16,227 [9,170]		565	11,319
·무형문화재 보존 관리	804	804	739		65	785	785	540	785	540			789
-상용임금 (110-03)	90	90	86		4	92	92	90	92	90		2	95
-일반수용비 (210-01)	227	227	236			222	209	209	209	209			232
-공공요금및제세 (210-02)	10	10	6		2	10	10	5	10	5		5	10
-특근매식비 (210-05)	7	7	2			7	7	2	7	2		5	7
-임차료 (210-07)	10	10	7		2	10	10	8	10	8		2	10
-복리후생비 (210-12)	1	1	1			2	2	2	2	2			2
-일반용역비 (210-14)	80	80	78		2	60	104	101	104	101		3	60
-기타운영비 (210-16)	1	1				1	1	0	1	0		1	1
-국내여비 (220-01)	72	72	72			73	85	84	85	84		1	73

			2022					2023("	23.12월	<u></u> 말)			
										<i>-/</i> 이월액			
	מגניני.	.9.1	집행액				.9.11	집행액		의	.1.01	12 A	2024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실집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실집	예산	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178)	친계	행액]				현계	행액]	게인 현액	[실집 행액]	7187	7107	
-국외업무여비	39	39	24		15	41	24	22	24			2	31
(220-02)												_	01
-사업추진비 (240-01)	17	17	17			16	16	16	16	16			16
(240-01) -일반연구비													
(260-01)	230	230	191		39	230	230	214	230	214		16	230
-고용부담금	17	17	16		1	18	18	17	18	17		1	19
(320-09)	17	17	10		1	10	10	17	10	17		1	19
-자산취득비	3	3	3			3	3	3	3	3			3
(430-01)													
·무형문화재 보호 육성	10,631	10,631	10,619		12								
· 기타보전금													
(310-04)	10,631	10,631	10,619		12								
·무형문화재 예술	020	000	920			4 1 6 4	1 1 / 1	4,164	11/1	4,164			070
마을 조성	920	920	[920]			4,164	4,164	[0]	4,164	[0]			972
-자치단체자본보조	920	920	920			4,164	4,164	4,164	4,164	4,164			972
(330-03))20	720	[920]			1,101	1,101	[0]	1,101	[0]			<i>712</i>
•국립무형유산원	1,700	1,786	1,302	465	20								
분원 건립 -일반연구비													
- 달만연구미 (260-01)		86	86										
-기본조사설계비					•								
(420-01)	680	680	660		20								
-실시설계비	1,020	1,020	555	465									
(420-02)	1,020	1,020	000	100									
•전수교육관 건립						5,037	5,037	5,037 [3,895]	5,037	5,037 [3,172]			4,037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F 027			
(330-03)						5,037	5,037	5,037 [3,895]	5,037	5,037 [3,172]			4,037
·무형문화재 종목	2.460	2.460	2.460			4.060	4.060	3,552	4.060	3,552		- 00	2.540
관리	2,460	2,460	2,460			4,060	4,060	3,552 [2,511]	4,060	[2,511]		508	3,560
-일반용역비													100
(210-14)													
-민간위탁사업비 (320-02)	2,460	2,460	2,460			2,460	2,460	2,460	2,460	2,460			2,460
-자치단체경상보조								1,092		1,092			
(330-01)						1,600	1,600	[808]	1,600	[808]		508	1,000
•무형문화재 저변	2,151	2,151	2,132		18	2,751	2,729	2,634	2,729	2,634		1	1,961
확대	2,101	2,101	[1,861]		10	2,731	2,12)	[451]	<i>L,1 L)</i>	[309]		1	1,701
-일반수용비						30	21	20	21	20		1	3
(210-01) -일반용역비													
- 달만중의미 (210-14)	100	100	82		18	170	148	130	148	130		18	107
(210-14) -민간경상보조			351			<u>.</u> = .		351		351			
(320-01)	351	351	[350]			351	351	[230]	351	[230]			451
-자치단체경상보조	1,700	1,700	1,700			2,200	2,200	2,200	2,200	2,200			1,400
(330-01)	1,700	1,7 00	[1,429]			2,200	2,200	[1,718]	_,_00	[1,577]			1,100

1) 사업목적·내용

- (무형문화재 보존관리) 무형문화재 지정 및 인정 확대를 위한 연구 및 조사 추진 등
- (무형문화재 예술마을 조성) 전수교육관을 중심으로 예술인 행복주택 등이 결합된 복합문화공간 조성
-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 무형문화재 전승 기반 강화를 위한 보유자, 보유단체의 전수교육 시설 지원
- (무형문화재 종목 관리) 인류무형문화유산, 공동체종목 및 긴급보호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 활성화 지원
- (무형문화재 저변확대) 무형유산 육성체계 다변화를 위한 전수교육학교 운영 지원, 미래무형유산 발굴·육성 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o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국가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 ㅇ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의무 등)
 - ㅇ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전승지원 등)
 - ㅇ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
 -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
 - ㅇ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2003.10.17. 유네스코 총회 채택)
 - o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인정 및 공개·전승활동 관련 규정

② 추진경위

- ㅇ 1962년 문화재보호법에 국가무형문화재 보호 근거 마련
- 1963년 문화재보호법 1차 개정(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 시 보조금 지원조항 신설)
- 1965년 전승활동 지원(구호비, 치료비 등)
- 1968년 60세 이상 보유자에게 생계보조금(월 3,000원) 지급 시작
- ㅇ 1974년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시작

- 1982년「문화재보호법」개정으로 보유자(보유단체) 전수교육 실시 규정 신설, 전수교육 소요 경비(전승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보유자 월 250,000원)
- ㅇ 2004년 월정 전승지원금 인상(보유자 90→100만원 등)
- 2007년 보유단체 운영비 인상(100→120만원), 전수 장학생 장학금 인상(12→15만원),
 보유자 없는 보유단체 추가 지원
- ㅇ 2008년 보유자의 전수교육 및 공개행사 의무조항 신설
- 2009년 월정전승지원금 인상 및 차등 지원: 전승취약종목(50개 종목)(100→130만원)
- ㅇ 2010년 전수교육관 건립 일반회계로 전환 ('05년 균특회계)
- ㅇ 2013년 월정 전승지원금 약 25% 인상
- ㅇ 2014년 월정 전승지원금 인상(개인 5.3%, 단체종목 14.3%)
- 2015년 국가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2016.3.28. 시행)
- ㅇ 2019년 월정 전승지원금 인상(개인 2.5%. 135만원)
- ㅇ 2019년 전통공예 공방개선 사업 추진('19년 신규, 지자체자본보조)
- ㅇ 2020년 월정 전승지원금 인상(개인 11.1%. 150만원, 전승교육사 70만원)
- ㅇ 2020년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사업 추진('20년 신규, 지자체경상보조)
- ㅇ 2021년 무형문화재 예술마을 조성 추진('21년 신규, 지자체자본보조)
- ㅇ 2021년 국립무형유산원 분원 설립 추진('21년 신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964~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20,152	22,849	18,666	16,797	11,319

- 기타

- · 국가무형문화재 7개 분야 155개 종목
-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 등 전승자 7,000여명
- ·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관 165개소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22건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위탁, 보조사업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재단, 지방자치단체 등

- 사업 수혜자 :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및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4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무형문화재 예술마을 조성	보조	지자체 보조	972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	보조	지자체 보조	4,037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무형문화재	위탁	한국문화 재재단	2,460	100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4조
종목 관리	보조	지자체 보조	1,000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무형문화재	보조	대학교	451	100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저변 확대	보조	지자체 보조	1,400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8) 무형유산원운영 (1132-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OJ HL 첫 기	ㅁ 치 게 쳐	그리므처이시이		060	064
명칭	일반회계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2	303
명칭	문화재정책기반구축	무형문화재전승	무형유산원운영

	□ 사업 성격									
신·	7.	山人	o) =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겐'	77	계속	전묘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0			0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0			0		100%, 50%, 40%	

사업명	구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무형유산원 운영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신원	문영철	김영미	박찬홍					
		기획운영과	063-280-1410	063-280-1421	063-280-1437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 예산	202	4년	중감	
71 ዘ 3	결산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무형유산원운영	31,778	42,528	42,528	54,823	52,653	10,125	23.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2022					2023('23.12월말)								
						예신	Lon			전년도				
	예산액	예산	집행액			পার	<u> </u>	예산	집행액	제		이월	불용	2024
	^{게진국} (추경)	데건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수정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상액	예상액	예산
○ 기능별 분류(합계)	32,454			547	594	42,528	540	43,068	39 <i>,</i> 780	42,521	39,373		3,288	52,653
· 전승지원	10,959	10,959	10,860		99	11,372	△27	11,345	11,284	11,345	11,284		61	11,681
·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	5,116	5,116	5,116											-
· 무형문화재보호육성						11,367		11,367	11,053	11,367	11,053		314	14,939
· 조사연구기록	2,350	2,350	2,238		112	2,224	30	2,254	2,183	2,254	2,183		71	2,224
· पारिएय १७६९ ८ देख	1,852	1,852	1,867		-15	2,132		2,132	2,129	2,132	2,129		3	1,852
· 진흥활성화	5,690	5,690	5,574		116	6,217	△56	6,161	6,005	6,161	6,005		156	6,217
· 시설관리 및 전산운영	6,487	6,487	6,123	82	282	6,616	128	6,744	6,537	6,662	6,455		207	6,780
• 국립무형유산원 분원 건립	_	-	-	465	_	2,400	465	2,865	397	2,400	72		2,468	8,430
· अध्यक्तिरिक्ते द्वी						200		200	192	200	192		8	530
비목별 분류(합계)	32,454	32,454	31,778	547	594	42,528	540		39 <i>,</i> 780	42,521	39,373		3,288	52,653
· 상용임금(110-03)	2,404	2,404		-	138		△33		2,396	2,443	2,396		47	2,547
· 일용임금(110-04)	112	112	104	-	8	112	21	133	132	133	132		1	179
· 일반수용비(210-01)	2,199	2,199		-	157	'	△32	2,465	2,395	2,465	2,395		70	1 ′ 1
· 공공요금및제서(210-02)	753	753	742	-	11	710	84		794	794	794			710
· 피복비(210-03)	39	39	35	-	4	39		39	39	39	39			39
· 특근매식비(210-05)	22	22	12	-	10			22	9	22	9		13	22
· 임차료(210-07)	84	84	72	-	12	94	37	131	128	131	128		3	94
· 유류비(210-08)	13	13	4	-	9	13		13	4	13	4		9	13
· 시설장비유지비(210-09)	683	683	676	-	7	634	4.0	634	612	634	612		22	607
· 재료비(210-11)	125	125	124 32	-	1	131	18	149	146	149	146		3	131
· 복리후생비(210-12) · 일반용역비(210-14)	32	32 4,236		-	43	40 4,767	△107	40 4,660	40 4,533	40	40		127	40 4,583
· 필단용역비(210-14)	4,236 549	4,236 549	4,193 540	-	43	683	△107	683	4,555 673	4,660 683	4,533 673		127	709
· 기타운영비(210-16)	7	3 4 9	5 4 0	-	2	7		7	3	7	3		$\frac{10}{4}$	709
· 국내여비(220-01)	113	113	109	-	4	115	11	126	121	126	121		5	118
· 국외업무여비(220-02)	106	106	109	_	4	113	11 △6	120	1121	120	1121		9	117
· 사업추진비(240-01)	150	15	15	_		18	0	18	18	18	18		9	17
· 관서업무추진비(240-02)	3	3	3	_		3		3	3	3	3			3
· 일반연구비(260-01)	780	780	768	_	12	1,022		1,022	969	1,022	969		53	780
· 기타보전금(310-14)						11,367				11,367				14,439

	2022							2	023(*23	3.12월밑	<u>ł)</u>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יון און און	.9.11	집행액			ଜାୀ	산액	.9.3	집행액	I	의 .	.1.01	22.0	2024
	예산액	예산	[실집	이월액	불용액			예산	[실집		집행액	이월	불용	예산
	(추경)	현액	행액]			본예산	수정	현액	- 행액]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예상액	예상액	·
· 민간경상보조(320-01)	1,095	1,095	1,095 [1,095]	-		1,195		1,195	1,195 [1,195]	1,195	1,195 [1,195]			1,195
· 민간위탁시업비(320-02)	9,952	9,952	9,892	-	60	10,051		10,051	10,051	10,051	10,051			10,939
· 고용부담금(320-09)	464	464	456	-	8	479		479	478	479	478		1	501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1,568	1,568	1,568 [1,306]	-		1,568		1,568	1,568 [1,327]	1,568	1,568 [1,327]			1,361
· 자리는세지본보조(330AB)	5,116	5,116	5,116 [2,211]											
· 기본조시설계비(42001)														530
· 실시설계비(420-02)	13	13		465	1	38	465	503	362	38	37		141	38
· 공사비(420-03)	861	861	692	82	87	2,830	82	2,912	885	2,830	803		2,027	8,460
· 감리비(420-04)						300		300		300			300	755
· 시설부대비(420-05)	4	4	3	-	1	104		104	75	104	75		29	49
· 자산취득비(430-01)	1,006	1,006		-	10			986	986	986	986			986
· 무형자산(440-00)	100	100		-		100		100		100				10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547		42,528				42,521				52,653
·전승지원	1 .	10,959				11,372		1 '		11,345	1			11,681
-일반수용비(210-01)	379	379			39		△32	463	408				55	549
-일반용역비(210-14)	100	108	108			164		164	164					180
-국내여비(220-01)	25	25	25			25	5	30	30					25
-국외업무여비(220-02)	7	7	7			7		7	2	7	2		5	7
-사업추진비(240-01)	2	2	2			2		2	2	2	2			2
-일반연구비(260-01)	0	-				42		42	41	42			1	
-민간경상보조(320-01)	795	795	795 [795]			895		895	895 [895]	895	[893]			895
-만위탁시합(320-02)	8,075	8,075			60	8,174		8,174		8,174				8,662
- 자리 장보조(30001)	1,568	1,568	1,568 [1,306]			1,568		1,568	1568 [1,327]	1,568	1568 [1,327]			1,361
·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	5,116	5,116												-
-75 EAN PER 2(33) (B)	5,116	5,116	5,116 [2,211]											-
·무형문화재보호육성						11,367				11,367				14,939
· 기타보전금(310-14) · 민간위탁시업비(320-02)						11,367		,		11,367	,			14,439 500
· 조사연구기록	2,298	2,350			112		30	'		I			7 1	1
-일용임금(110-04)	50	50			2		28	78	78					150
-일반수용비(210-01)	289	289	213		76			244	244					244
- 공공요금및제서(210-02)	39	13	10		3			38	38					38
-피복비(210-03)	5	2	2			2		2	2					2
-특근매식비(210-05)	I	5	1		$\frac{4}{2}$			5		5	2		3	5
-임차료(210-07)	10	10			2			10					3	10
-시설장비유자비(210-09)	41	35	33		2	41		41	21	41	21		20	
-일반용역비(210-14)	682	766	766			672		672	672	672	672			672
-국내여비(220-01)	28	28	25		3		2	30	30					28
-국외업무여비(220-02)	7	7	7			8		8	7	8	7		1	8
-사업추진비(240-01)	5	5	5			6		6	6	l				6
-일반연구비(260-01)	480	480	468		12	480		480	436	480	436		44	480

	2022							2	023('23	.12월밀	. .)			
						.n.,	ו או			전년도				
	. מיינים		집행액			예신	<u></u> 노액		집행액	제	외	. 1 61	73 A	2024
	예신액 (추경)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수정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민간경상보 <i>조</i> (3 2 0-01)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민간위탁시업비(320-02)	280	280	280			280		280	280	280	280			180
-자산취득비(430-01)	80	80	72		8	60		60	60	60	60			60
• प्रातिपान मुक्तिरीकेरी	1,852	1,852	1,867		<i>-</i> 15	2,132		2,132	2,129	2,132	2,129		3	1,852
-일반용역비(210-14)	850	850	865		-15	· '		1,130	1,130	1,130	1,130			850
-국외여비(220-02)	50	50	50			50		50	47	50	47		3	50
-민간위탁시업비(320-02)	952	952	952			952		952	952	952	952			952
· 진 흥 활성화	5,690	5,690	5,574		116	6,217	△56		6,005	6,161	6,005		156	6,217
-일용임금(110-04)	17	17	14		3	17		17	17	17	17			17
-일반수용비(210-01)	1,430	1,430	1,388		42	1,596		1,596	1,581	1,596	1,581		15	1,606
-공공요금맟제서(21002)	25	25	24		1	50		50	50	50	50			50
-피복비(210-03)	11	11	9		2	11		11	11	11	11			11
-특근매식비(210-05)	11	11	7		4	11		11	4	11	4		7	11
-임차료(210-07)	42	42	39		3	52	37	89	89	89	89			52
-시설정비유지비(210-09)	205	205	205			239		239	237	239	237		2	239
-재료비(210-11)	81	81	81			81	18	99	96	99	96		3	81
-일반용역비(210-14)	2,402	2,402	2,344		58	2,676	△107	2,569	2,442	2,569	2,442		127	2,676
-국내여비(220-01)	44	44	43		1	41	2	43	41	43	41		2	41
-국외업무여비(220-02)	42	42	42			62	△6	56	56	56	56			52
-사업추진비(240-01)	5	5	5			6		6	6	6	6			6
-민간위탁시업비(32002)	645	645	645			645		645	645	645	645			645
-자산취득비(430-01)	730	730	728		2	730		730	730	730	730			730
· 시설관리 및 전신운영	6,487	6,487	6,123	82	282	6,616	128		6,556	6,662	6,474		207	6,780
-상용임금(110-03)	2,404	2,404	2,266		138	2,476	△33	2,443	2,396	2,443	2,396		47	2,547
-일용임금(110-04)	45	45	42		3	45	△7	38	37	38	37		1	112
-일반수용비(210-01)	101	101	101			162		162	162	162	162			165
-공공요금및제세(210-02)	715	715	708		7	622	84	706	706	706	706			622
-피복비(210-03)	26	26	24		2	26		26	26	26	26			26
-특근매식비(210-05)	6	6	4		2 7	6		6	3	6	3		3	6
-임차료(210-07)	32	32	25		l	32		32	32	32	32			32
-유류비(210-08)	13	13	4		9	13		13	4	13	4		9	13
-시설장비유자비(21009)	443	443	438		5	354		354	354	354	354			354
-재료비(210-11)	44	44	43		1	50		50	50	50	50			50
-복리후생비(210-12)	32	32	32			40		40	40	40	40			40
-일반용역비(210-14)	110	110	110			125		125	125	125	125			125
-관리용역비(210-15)	549	549	540		9	683		683	673	683	673		10	683
-기타운영비(210·16)	7	7	5		2	7		7	3	7	3		4	7
-국내여비(220-01)	16	16	16			21	2	23	20	23	20		3	24
-사업추진비(240-01)	3	3	3			4		4	4	4	4			2 3
-관사업무추진비(240-02)	3	3	3			3		3	3	3	3			
-일반연구비(260-01)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고용부담금(320-09)	464	464	456		8	479		479	478	479	478		1	501
-실시설계비(420-02)	13	13	12	0.0	1	38	0.0	38	37	38	37		1	38
-공사비(420-03)	861	861	692	82	87	830	82	912	885	830	803		27	830
-시설부대비(420-05)	4	4	3		1	4		4	3	4	3		1	4
-자산취득비(430-01)	196	196	196			196		196	196	196	196			196

			2022					2	023(*23	.12월밑	<u>ł)</u>			
						예소	·				이월액			
	예산액	예산	집행액				_ '	예산	집행액	제	외	이월	불용	2024
	(추경)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수정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상액	예ଧି୴	예산
-무형자산(440-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국립무해산원분원건 립				465		2,400	4 65	2,865	397	2,400	72		2,468	8,340
· 실시설계비(420-02)				465			465	465	325				140	-
· 공사비(420-03)						2,000		2,000		2,000			2,000	7.630
· 감리비(420-04)						300		300		300			300	755
· 시설부대비(420-05)						100		100	72	100	72		28	45
· 어린이무형유신전당건립						200		200	192	200	192		8	530
· 일반연구비(260-01)						200		200	192	200	192		8	-
· 기본조사설계비(420v0I)														530

1) 사업목적·내용

- O (무형유산원운영)무형문화재 전승, 진흥 및 조사기록 등 보호육성을 통한 무형유산 보급선양을 도모
 - (전승지원)국가무형문화재 기·예능 분야 전승 및 활성화 지원, 공개행사 지원 및 모니터링,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 등 수행
 - (무형문화재보호육성)국가무형문화재 월정 전수교육지원금, 취약종목과 명예보유자 및 장례위로금 지원 등 수행
 - (조사연구기록)무형유산 조사·연구 분야의 중심 기관으로 무형유산 자료 수집·보존·연구·아카이브 구축 등 수행
 - (진흥활성화)무형유산 교육·체험·공연·전시 서비스 제공으로 무형유산 인지도 제고 및 대국민 문화향유권 확대
 - (대한민국 무형유산축전)무형유산 대국민 향유 증진 및 신한류 확산을 위한 무형문화재 대전, 보유자 작품전, K-무형유산 한류사업 등 수행
 - (시설관리 및 운영)무형유산원의 시설운영 및 경상관리 등을 지원
 - (국립무형유산원 분원 건립)인류무형문화유산 보전·활용 고도화 및 균형적 지역발 전과 상생하는 무형유산을 위한 무형유산원 분원 건립 추진
 - (어린이 무형유산전당 건립) 어린이 대상 교육, 전시·체험 등 원스톱으로 실현되는 무형유산 복합시설 건립·운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제11조(당사국의 역할)
 - 자국 내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추진경위

• 2011년 : '아·태무형문화유산센터 운영 사업'에 포함하여 기획단 구성 운영

• 2012년 : '무형문화유신전당 운영 활성화 내역시업으로 문화재청 소속 국립무형유신원설립추진단 운영(9.12)

• 2013년 : 국립무형유산원 준공(4.30.) 및 정식출범(10.1.)

2014년 : 직제 확대(3.11.)

- 4급 기관(2과 14명) → 고위공무원(나급) 기관(4과 40명)

■ 2016년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3.28.)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13년 ~ (단년도 계속 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27,401	28,628	32,454	42,528	52,653

- 기타 : 무형문화재 전승자(7,232명) 및 보유단체(71곳), 무형유산원 시설(부지면적 62,321㎡, 연면적 29,961㎡, 7개동(공연, 전시, 교육, 아카이브, 국제회의장 등), 지하 1층/ 지상5층, 일반국민, 불교 무형문화유산 조사·연구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위탁 및 보조(민간, 지자체)

- 사업시행주체 : 국립무형유산원, 한국문화재재단, 보유자(단체), 지방자치단체,

(재)대한불교조계종 등

- 사업 수혜자 : 전승자 및 전승단체,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 · 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자체 보조	50%, 4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민간보조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재)대한불교조계종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문화유산교육연구

_	86	_
---	----	---

(1) 해양문화유산 연구활용 (1232-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Ol મો. જો ગો	ㅁ됬게친	므칭키거케그		060	064
명칭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2	301
명칭	해양문화유산교육연구	해양문화유산연구	해양문화유산 연구활용

□ 사업 성격											
<u> ۱</u> ۱ ٦	계속	o) =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つ 田	계숙	[전묘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0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0						

사업명			구분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해양유물연구과	양진조	정성목연구관	박세나
		에장파질인기사	061-270-2081	061-270-2082	061-270-2053
		전시교육과	신종국	김혜정연구관	조보름
-3 -1 -3 -6		선기교육다	061-270-2041	061-270-2042	061-270-2050
해양문화유	소관부처			김국환사무관	손영찬
산연구활용		기하이네키	유재걸	061-270-2030	061-270-2032
		기획운영과	061-270-2021	정창운연구관	이명옥
				061-270-3021	061-270-3022
		이 무 귀 하다	양순석연구관		정용화
		유물과학팀	061-270-2082		061-270-2092
	사업시행주체	직접시행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	202	4년	증감	
71 日 0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해양문화유산	E 006	4 502	7 265	7.265	2.762	(1.2
연구활용	5,006	4,503	7,265	7,265	2,762	61.3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2022					2023(′	23.12월	말)			
									전년도	이월액			
	예산액	예산	집행액				예산	집행액	제	외	이월	불용	2024
	예산책 (추경)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물용 예상액	예산
○ 기능별 분류(합계)	4,431	5,397	5,006	189	202	4,503	4,703	4,556	4,514	4,556		147	7,265
·전통선박 복원연구 및 활용	776	776	644		132	742	752	627	752	627		125	711
· 해양문화유산 조사연 구	206	206	205		1	178	189	189	189	189			179
· 해양문화유산 국제공동 연구	119	119	110		9	99	89	89	89	89			99
· 해양문화유산 전시 및 활용	1,845	2,795	2,771		24	1,697	1,697	1,694	1,697	1,694		3	1,252
· 해양문화유산 관리 및 활용	298	298	287		11	145	145	145	145	145			147
·科萨·姆·超恩	221	221	209		12	188	188	188	188	188			514
· 시설 및 전산관리	982	966	780	189	13	1,374	1,563	1,547	1,374	1,547		16	4,196
·책임양한관 운영 및 관리						80	80	77	80	77	Ī	3	167
○ 비목별 분류(합계)	4,431	5,397	5,006	189	202	4,503	4,703	4,556	4,514	4,556		147	7,265
· 상용임금(110-03)	389	389	383		6	401	401	401	401	401			412
· 일용임금(110-04)	28	28	23		5	28	28	28	28	28			28
· 일반수용비(210-01)	378	557	553		4	351	457	456	457	456		1	722
· 공공요금및제세 (210-02)	83	61	53		8	78	55	53	55	53		2	80
· 피복비(210-03)	21	21	19		2	22	22	21	22	21		1	27
· 특근매식비(210-05)	7	7	1		6	5	1	1	1	1			5
· 임차료(210-07)	32	59	57		2	26	34	33	34	33		1	27
· 유류비(210-08)	157	157	43		114	157	157	37	157	37		120	123
· 시설장비유지비 (210-09)	122	122	116		6	10	46	46	46	46			10
· 재료비(210-11)	5	5	5			5	0	0	0	0			5
· 복리후생비(210-12)	5	5	5			6	6	6	6	6			7
· 일반용역비(210-14)	1,575	1,932	1,928		4	1,378	1,294	1,293	1,294	1,293		1	1,123
· 관리용역비(210-15)	126	126	114		12	126	101	101	101	101			126
· 국내여비(220-01)	54	54	54			52	67	67	67	67			52
· 국외업무여비	36	36	28		8	36	22	22	22	22			36

			2022					2023(′	23.12 <mark>월</mark>	말)			ı
									전년도	이월액			
	예산액	예산	집행액				예산	집행액	제	외	이월	불용	2024
	에간적 (추경)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상액	예산
(220-02)													
· 관서업무추진비 (240-02)	9	9	9			9	9	9	9	9			Ç
· 일반연구비(260-01)	_		_			50	50	47	50	47		3	50
· 고용부담금(320-09)	75	75	71		4	78	78	77	78	77		1	8.
· 실시설계비(420-02)	18	64	64			765	765	763	765	763		2	-
· 공사비(420-03)	765	765	575	189	1	40	229	215	40	215		14	3,476
· 감리비(420-04)	8	8	8			-	-		-				440
· 시설부대비(420-05)	4	4	4			2	2	2	2	2			83
· 자산취득비(430-01)	533	893	893			878	878	877	878	877		1	343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4,430	5,377	5,006	189	182	4,503	4,703	4,556	4,514	4,556		147	7,265
전통선박 복원 및 활용	776	776	659		132	742	752	627	752	627		125	711
· 상용임금(110-03)	93	93			0	97	97	97	97	97			98
· 일용임금(110-04)	15		10		5	15	15	15	15	15	l		15
· 일반수용비(210-01)	52	52	52		0	49	60	60	60	60		1	49
· 공공요금및제세 (210-02)	43	43	35		8	39	33	31	33	31		1	39
· 피복비(210-03)	5		5		0	6	6	6	6	6			Ę
· 특근매식비(210-05)	3	3	0		3	3]
· 임차료(210-07)	4	4	2		2	4	7	6	7	6		1	4
· 유류비(210-08)	157	157	43		114	157	157	37	157	37		120	123
시 설 장 비 유 지 비 (210-09)							36	36	36	36			
· 재료비(210-11)	5	5	5		0	5							
· 복리후생비(210-12)		1	1		0	1	1	1	1	1]
· 일반용역비(210-14)	1 1				0	322	292	292	292	292			322
· 관리용역비(210-15)		10	10		0	10	4	4	4	4			10
· 국내여비(220-01)	9	9	9		0	9	15	15	15	15			Ć
· 관서업무추진비 (240-02)					0	2	2		2	2			4
· 고용부담금(320-09)	15	15	15		0	16	18	17	18	17		1	19
· 자산취득비(430-01)	9	9	9		0	9	9	8	9	8		1	Ć
해양문화유산 조사연구	206	206			1	178	189		189	189			179
· 상용임금(110-03)	32	32	32		0	32	32	32	32	32			33
· 일반수용비(210-01)		49	49		0	38	48	48	48	48			37
· 공공요금및제세 (210-02)	3	3	3		0	1	1	1	1	1			2
· 피복비(210-03)	3	3	3		0	3	3	3	3	3			3
· 특근매식비(210-05)	1 1	1	0		1	-	_	-	_	-			2
· 임차료(210-07)	3	3	3		0	1	1	1	1	1	l]
· 복리후생비(210-12)		-	-		0	1	1	1	1	1]
· 일반용역비(210-14)					0	62	62	62	62	62	l		62
· 국내여비(220-01)	16	16	16		0	16	17	17	17	17			16
· 관서업무추진비 (240-02)	1	1	1		0	1	1	1	1	1]
· 고용부담금(320-09)	8	8	8		0	8	8	8	8	8			(

	2022							2023(′	23.12월	말)			
									전년도	이월액			
			집행액					집행액	 제	. – .	. 1 61	33.4	2024
	예산액	예산	[실집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실집		집행액	이월	불용	예산
	(추경)	현액	행액				현액	행액	예산 최애	[실집	예상액	예상액	
									현액	행액			
· 자산취득비(430-01)	15	15	15		0	15	15	15	15	15			15
कंश्रीस्र्वेशिक्ष स्थारहरी	119	119	117		9	99	89	89	89	89			99
· 일반수용비(210-01)	60	60	60		0	44	44	44	44	44			44
· 공공요금및제세 (210-02)	6	6	6		0	6	6	6	6	6			6
· 특근매식비(210-05)	1	1	0		1	1							1
· 임차료(210-07)	5	5	5		0	5	5	5	5	5			6
· 일반용역비(210-14)	25	25	25		0	21	21	21	21	21			21
· 국내여비(220-01)	5	5	5		0	4	4	4	4	4			4
· 국외업무여비 (220-02)	15	15	7		8	16	7	7	7	7			15
· 관서업무추진비 (240-02)	2	2	2		0	2	2	2	2	2			2
해양문화유산 전시 및 활용					24	1,697	1,697		1,697	1,694		3	1,252
· 상용임금(110-03)	126	126	126		0	130	130	130	130	130			134
· 일반수용비(210-01)	126	204	180		24	114	176	176	176	170			313
· 공공요금및제세(210- 02)	25	3	3		0	26	11	10	11	10		1	25
· 피복비(210-03)	1	1	1		0	7	7	6	7	6		1	7
· 특근매식비(210-05)	1	1	1		0	1	1	1	1	1			1
· 임차료(210-07)	11	38	38		0	7	11	11	11	11			7
· 복리후생비(210-12)	2	2	2		0	2	2	2	2	2			2
· 일반용역비(210-14)	1 1	1,498	1,498		0	880	827	826	827	826		1	430
· 국내여비(220-01)	19	19	19		0	17	19	19	19	25			17
· 관서업무추진비(240- 02)	4	4	4		0	4	4	4	4	4			4
· 고용부담금(320-09)	23	23	23		0	23	23	23	23	23			26
· 실시설계비(420-02)	30	30	30		0	-	-	-	-	-	-	-	-
· 자산취득비(430-01)	486	846	846		0	486	486		486	486			286
해원화산관리및활용	298	298	287			145	145	145	145	145			147
· 상용임금(110-03)	55	55	54			56	56	56	56	56			58
· 일반수용비(210-01)	13	13	6			15	16	16	16	16			15
· 공공요금및제세 (210-02)	3	3	3			2	2	2	2	2			2
· 피복비(210-03)	4	4	4			4	4	4	4	4			4
· 특근매식비(210-05)	1	1	0			1	0	0	0	0			1
· 시설장비유지비 (210-09)	122	122	116			10	10	10	10	10			10
· 복리후생비(210-12)	1	1	1			2	2	2	2	2			2
· 일반용역비(210-14)		86	82			37	37	37	37	37			37
· 관리용역비(210-15)		7	7			7	7	7	7	7			7
· 국내여비(220-01)	4	4	4			4	4	4	4	4			4
· 자산취득비(430-01)		2	2			7	7	7	7	7			7
利昂·马克·邓登·	221	221	209		12	188	188	188	188	188			514
· 상용임금(110-03)	54	54	48		6	55 50	55	55	55	55			57
· 일반수용비(210-01)	1 1	78	78		0	50	50	50	50	50			211
· 공공요금및제세(210-	2	2	2		0	2	2	2	2	2			5

			2022					2023(′	23.12월	말)			
										이월액			
	예산액	예산	집행액				예산	집행액	제		이월	불용	2024
	(추정)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상액	예산
02)													
· 피복비(210-03)	8	8	6		2	2	2	2	2	2			8
· 특근매식비(210-05)	_	-	-	-	-	-	_	-	_	-	_	-	_
· 임차료(210-07)	9	9	9		0	10	10	10	10	10			10
· 복리후생비(210-12)	1	1	1		0	1	1	1	1	1			1
· 일반용역비(210-14)	15	15	15		0	14	14	14	14	14			167
· 관리용역비(210-15)	2	2	2			2	2	2	2	2			2
· 국내여비(220-01)	2	2	2			2	8	8	8	8			3
· 국외업무여비(220- 02)	21	21	21		0	21	15	15	15	15			21
· 관서업무추진비(240- 02)	_	-	-	-	_	-	_	-	_	-	_	-	-
· 고용부담금(320-09)	23	23	19		4	23	23	23	23	23			23
· 자산취득비(430-01)	6	6	6		0	6	6	6	6	6			6
·시설 및 전산 관리	966	982	780	189	13	1,374	1,563	1,547	1,374	1,547		16	4,196
· 상용임금(110-03)	30	30	30		0	31	31	31	31	31			30
· 일용임금(110-04)	13	13	13		0	13	13	13	13	13			13
· 일반수용비(210-01)					0	14	33	33	33	33			15
· 일반용역비(210-14)					0	41	41	41	41	41			42
· 관리용역비(210-15)	107	107	95		12	107	88	88	88	88			70
· 고용부담금(320-09)	6	6	6		0	6	6	6	6	6			7
· 실시설계비(420-02)	18	34	34		0	765	765	763	765	763		2	0
· 공사비(420-03)	765	765	575	189	1	40	229	215	40	215		14	3,476
· 감리비(420-04)	8	8	8		0	-	-	-	_	-	-	-	440
· 시설부대비(420-05)	4	4	4		0	2	2	2	2	2			83
· 자산취득비(430-01)	15	15	15		0	355	355	355	355	355			20
책임운영〉관 운영 및 관리						80	80	77	80	77		3	167
· 일반수용비(210-01)						30	30	30	30	30			38
· 일반용역비(210-14)													42
· 관리용역비(210-15)													37
· 일반연구비(260-01)						50	50	47	50	47		3	50

1) 사업목적·내용

- 해양문화재의 핵심인 수중 발굴 고선박과 전통선박 연구를 통해 선박발달사 및 항해 기술 규명
 - 수중발굴유물 및 해양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보존·활용방안 마련
 - 교육·홍보·전시 등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해양문화유산 콘텐츠 확보
 - 국내 유일의 해양문화재 발굴·연구·전시·홍보 기관으로서 성과물과 관련 정보를 종합정리, 전시, 교육 등을 통하여 국민의 해양문화유산 향유기회 확대

- 해양문화유산을 활용한 해양문화콘텐츠 개발 및 전시·교육으로의 활용과 해양문화 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 및 해양국가 이미지 제고를 통한 국제교류 기반 강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제1조(목적), 제10조(문화재 기초조사), 13조의2(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제17조(문화재 국제교류협력의 촉진 등), 『문화재보호법』제19조(기록의 작성·보존)
- 『무형문화재보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5조(국가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 『문화재보호법』제43조(기록의 작성·보존)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4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호조치), 제29조(발견 신고된 매장문화재의 처리에 관한 권한의 위임과 위탁)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4조(사업), 제5조(적용범위)
-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시책과 권장)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17.3.21 개정, 법률 제14613호) 제13조(기록관), 『같은 법 시행령』('18.1.1, 대통령령 제27460호 일부개정) 제10조(기록관의 설치), 『같은 법 시행규칙』('17.9.22, 행정안전부령 제11호) 제2조
- 『문화재청 기록물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17.9.29, 훈령 제446호) 제3조 (문화재청기록관의 소속)

② 추진경위

- '81.08.25 : 수중발굴 고선박 '신안선'의 보존처리를 위해 국립문화재연구소 부설 『목포보존처리장』개설
- '90.01.03: 『목포해양유물보존처리소』개소
- '94.05.04: 『국립해양유물전시관』으로 직제개편
- '94.12.14: 『국립해양유물전시관』개관, 전시·사회 교육사업
- '02.~현재 : 본격적인 자체 수중발굴 시작
- '07.03.15 : 직제개편(4급, 2과/37명 ⇒ 고위, 4과/46명) 발굴·전시·연구사업 본격화
- '09.04.27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직제개편
- '10.05.25 : 직제개편(고위, 4과/46명 ⇒ 고위, 4과/50명)
- '11.06.28 : 『태안보존센터』 준공 및 보존처리 업무 시작
- '13.05.30 : 수중발굴 전용 인양선(누리안호) 발굴현장 운영 시작

- '17.06.20 : 직제개편(고위, 4과/64명 ⇒ 고위, 5과/73명) 서해문화재과 신설(충청ㆍ경기권역 조사ㆍ보존ㆍ전시ㆍ교육 사업 시작)
- '18.12.14: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개관(서해문화재과 운영)
 - · 전통선박 복원연구 및 활용, 해양문화유산 조사연구, 해양문화유산 국제공동연구 추진
 - · '16. 7. 책임운영기관 지정에 따른 사업계획 확정 시 '연구정보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 10대 전략과제에 선정
 - · 해양유물의 전시 및 홍보, 해양문화유산에 대한 사회교육, 소장유물 및 유물수 장고 관리, 유물의 구입·대여·기탁 및 국가귀속문화재 관리, 해양문화유산 관련 국제 학술교류, 학술도서 및 자료의 발간·배포, 그 밖의 해양유물의 전시에 관한 사항을 담당업무로 함
 - · 국립해양유물전시관이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박물관 기능의 재정립이 요구되므로 효과적인 정책 추진 필요

□ 주요내용

-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7년~계속
-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기획운영과, 전시교육과, 해양유물연구과, 유물과학팀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발굴기관·관련기관 및 관계전문가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2) 수중문화재 발굴 및 보존처리 (1232-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Ol મો. જો ગો	ㅁ쉵케칭	국립해양문화재		060	064
명칭	일반회계	문화재청	연구소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2	303
명칭	문화유산교육연구	해양문화유산연구	수중문화재 발굴 및 보존처리

□ 사업 성격											
x1 7.	계속	റി =	예비타당성	총시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也开	계숙	전묘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ス	I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Э						

사업명			구분		
수중문화재 발굴 및 탐사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수중문화재 탐사선	소관부처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이규훈	진호신 연구관	이훈민
대체선박 건조		수중발굴과	061-270-2061	061-270-2063	061-270-2071
수중고고학 교육훈련센터	사업시행주체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수중문회재	소관부처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양순석 팀장		정용화
보존처리		유물과학팀	061-270-2082		061-270-2092
	사업시행주체				

충청경기권 수중문화재 발굴 및 탐사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충청경) 권유물 보존차리 및 분석	소관부처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김광열	도의철 연구관	선우훈
충청경기권 해양문화 유산 전시 운영		서해문화재과	041-419-7010	041-419-7030	041-419-7015
태안해양유물전시관 시설관리	사업시행주체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	202	4년	증감	
71 11 6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수중문화재 발굴	((27	9.465	10.105	10.105	1 (40	10.4
및 보존처리	6,637	8,465	10,105	10,105	1,640	19.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2022					2023(′	23.12월	말)			
	പ്പിവ	أدائم	집행액				(د (د	집행액		이월액 외	A) 0)	но	2024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 기능별 분류(합계)	8,246	8,471	6,637	146	1,688	8,465	8,528	7,982	8,382	7,836	265	281	10,105
• 수중문화재 발굴 및 탐사	2,713	2,,938	2,256	49	633	3,140	3,108	3,029	3,059	2,980		79	2,740
· 수중문화재탐사선 대체선박 건조													1,996
• २५७ ग्रांचे ग्रिस्टिमीन	200	200	191		9								-
· 수중문화재 보존처리	1,266	1,266	1,013		253	1,843	1,843	1,512	1,843	1,512	257	74	1,848
· 충청·경기권 수중문 화재 발굴 및 탐사	623	623	597		26	630	630	595	630	595		35	636
·충청·경기권 유물 보존처리 및 분석	345	345	229	97	19	352	448	413	351	316	8	27	356
· 충청·경기권 해양문화 유산 전시 운영	635	635	626		9	587	587	573	587	573		14	589
·태안해양유물전시관 시설관리	2,464	2,464	1,725		739	1,913	1,912	1,860	1,912	1,860		52	1,940
○ 비목별 분류(합계)	8,246	8,471	6,637	146	1,688	8,465	8,528	7,982	8,382	7,836	265	281	10,105

			2022					2023(23.12월	말)			
									전년도	. — .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제 예산 현액	<u>외</u>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2024 예산
·상용임금(110-03)	1,504	1,504	1,337		167	1,549	1,498	1,438	1,498	-		60	1,593
• 일 용임금(110-04)	615	615	436		179	615	603	584	603	584		19	642
·일반수용비(210-01)	558	558	494		64	544	754	740	754	740		14	555
· 공공요금및제세(210-02)	462	462	418		44	426	495	469	495	469		26	426
• 피복비 (210-03)	37	37	37		_	37	37	37	37	37			37
· 특근매식비(210-05)	9	9	2		7	9	4	3	4	3		1	ç
·임차료 (210-07)	181	181	192		9	174	224	221	224	221		3	174
·유류비 (210-08)	357	357	346		12	357	357	324	357	324		33	357
· 시설장비유지비(210-09)	732	732	682		50	882	690	672	690	672		18	932
·재료비 (210-11)	106	106	84		22	96	85	83	85	83		2	96
· 복리후생비(210-12)	20	20	20		-	25	25	24	25	24		1	25
· 일반용역비 (210-14)	875	875	689		166	1,217	1,106	1,103	1,106	1,103		3	777
· 관리용역비(210-15)	110	110	109		1	119	110	110	110	110			119
•국내여비(220-01)	182	182	154		28	215	215	214	215	214		1	200
· 국외업무여비(220-02)	23	23	22		1	23	23	22	23	22		1	28
· 관서업무추진비(240-02)	12	12	12		_	12	12	12	12	12			12
· 일반연구비(260-01)	260	260	202		58	-	-	-	-	-			
·고용부담금(320-09)	352	352	278		74	364	343	328	343	328		15	376
·실시설계비(420-02)	26	26	26		_	40	40	21	40	21		19	310
• 공사비 (420-03)	656	656	-	97	559	667	764	467	667	370	238	59	2,263
·감리비(420-04)	8	8	-		8	-	-	-	-	-			75
· 시설부대비 (420-05)	7	7	-		7	-	-	-	-	-			5
·자산취득비(430-01)	1,154	1,379	1,097	49	232	1,094	1,143	1,110	1,094	1,061	27	6	1,094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8,246	8,471	6,637	146	1,688	8,465	8,528	7,982	8,382	7,835	265	281	10,105
·수중문화재 발굴 및 탐사	2,713	2,938	2,256	49	633	3,140	3,108	3,029	3,059	2,980		79	2,740
·상용임금(110-03)	305	305	271		34	314	263	263	263	263			323
• 일용임금(110-04)	525	525	346		179	525	513	494	511	494		19	552
·일반수용비(210-01)	243	243	223		20	257	362	362	362	362		0	268
· 공공요금및제세(210-02)	70	70	70		-	71	132	111	132	111		21	71
·피복비 (210-03)	10	10	10		_	10	10	10	10	10			10

			2022					2023(23.12월	말)			
									전년도				
	예산액	예산	집행액	* 1014II	H 040	12.9.1	예산	집행액	제		이월	불용	2024 예산
	(추경)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상액	예산
·특근매식비(210-05)	3	3	-		3	3	0	-	0	-			3
·임차료 (210-07)	91	91	111		-	91	141	138	141	138		3	91
•유류비 (210-08)	285	285	281		4	285	285	261	285	261		24	285
 시설장비유지비(210-09) 	370	370	370		-	480	328	322	328	322		6	480
· 복리후생비(210-12)	4	4	4		_	5	5	4	5	4		1	5
· 일반용역비 (210-14)	296	296	161		115	556	498	497	498	497		1	116
·국내여비(220-01)	106	106	88		18	136	136	136	136	136			126
·국외업무여비(220-02)	23	23	22		1	23	23	22	23	22		1	23
· 관서업무추진비(240-02)	10	10	10		-	10	10	10	10	10			10
•고용부담금(320-09)	112	112	78		34	114	93	90	93	90		3	117
·자산취득비(430-01)	260	485	211	49	225	260	309	309	260	260			260
· 수중문화재 탐사선 대체선박 건조													1,996
·실시설계비(420-02)													310
· 공 사 비(420-03)													1,606
·감 리 비(420-04)													75
· 시설부대비 (420-05)													5
· 수중고고학 교육훈련 센터	200	200	191		9	-			-				
· 일반연구비(260-01)	200	200	191		9	-			-				
• 수중문화재 보존처리	1,266	1,266	1,013		253	1,843	1,843	1,512	1,843	1,512	257	74	1,848
·상용임금(110-03)	124	124	105		19	127	127	127	127	127			131
·일반수용비(210-01)	90	90	58		32	90	90	90	90	90			90
· 공공요금및제세(210-02)	33	33	15		18	26	26	26	26	26			26
·피복비 (210-03)	5	5	5		-	5	5	5	5	5			Ę
·특근매식비(210-05)	2	2	-		2	2	2	2	2	2			2
·임차료 (210-07)	8	8	8		-	8	8	8	8	8			8
· 시설장비유지비(210-09)	165	165	115		50	166	166	166	166	166			166
·재료비 (210-11)	66	66	58		8	65	65	64	65	64		1	65
·복리후생비(210-12)	2	2	2		-	2	2	2	2	2			2
· 일반용역비 (210-14)	126	126	75		51	156	156	156	156	156			156

			2022					2023(23.12월	말)			
									전년도	이월액			
	예산액	예산	집행액	. 161.2	24.37		예산	집행액	제		이월	불용	2024
	(추경)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현 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상액	예산
·국내여비(220-01)	20	20	10		10	20	20	20	20	20			20
· 관서업무추진비(240-02)	2	2	2		_	2	2	2	2	2			2
· 일반연구비(260-01)	60	60	11		49	-	-	-	-	-			-
•고용부담금(320-09)	24	24	18		6	25	25	25	25	25			26
· 실사설계비(420-02)						40	40	21	40	21		19	
·공사비 (420-03)						570	570	286	570	286	230	54	61
·자산취득비(430-01)	539	539	531		8	539	539	512	539	512	27		53
·충청·경기권 수중문 화재 발굴 및 탐사	623	623	597		26	630	630	595	630	595		35	63
·상용임금(110-03)	160	160	147		13	165	165	136	165	136		29	16
•일용임금(110-04)	90	90	90		_	90	90	90	90	90			9
·일반수용비(210-01)	37	37	34		3	37	58	54	58	54		4	3
· 공공요금및제세(210-02)	7	7	7		_	7	7	7	7	7			
·피복비 (210-03)	4	4	4		-	4	4	4	4	4			
·특근매식비(210-05)	1	1	1		-	1							
·임차료 (210-07)	50	50	42		8	50	50	50	50	50			5
•유류비 (210-08)	12	12	12		-	12	12	12	12	12			1
· 시설장비유지비(210-09)	78	78	78		-	78	65	65	65	65			7
·복리후생비(210-12)	2	2	2		-	2	2	2	2	2			;
• 일반용역비 (210-14)	57	57	57		-	57	50	50	50	50			5
•국내여비(220-01)	35	35	35		_	35	35	35	35	35			3
•국외여비(220-02)													,
•고용부담금(320-09)	40	40	38		2	42	42	42	42	42			4
·자산취득비(430-01)	50	50	50		-	50	50	48	50	48		2	50
·충청·경기권 유물 보존처리 및 분석	345	345	229	97	19	352	448	413	351	316	8	27	35
·상용임금(110-03)	102	102	94		8	105	105	87	105	87		18	10
·일반수용비(210-01)	16	16	13		3	17	23	21	23	21		2	1
·피복비 (210-03)	3	3	3		_	3	3	3	3	3			;
·임차료 (210-07)	6	6	6		-	6	6	6	6	6			(
· 시설장비유지비(210-09)	12	12	12		_	12	10	10	10	10			6

			2022					2023(′	23.12월	[말)			
								-3-20.20	전년도				2024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 액	본예 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제 예산 현액	외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2024 예산
·재료비 (210-11)	20	20	13		7	20	20	19	20	19		1	20
· 복리후생비(210-12)	1	1	1		_	1	1	1	1	1			1
· 일반용역비 (210-14)	51	51	51		_	51	46	46	46	46			51
·국내여비(220-01)	2	2	2		_	5	5	5	5	5			5
·고용부담금(320-09)	20	20	19		1	20	20	20	20	20			21
· 공사비 (420-03)	97	97	0	97	_	97	194	181	97	181	8	5	47
·자산취득비(430-01)	15	15	15		-	15	15	14	15	14		1	15
· 충청·경기권 해양문화 유산 전시 운영	635	635	626		9	587	587	573	587	573		14	589
• 상용임금(110-03)	67	67	62		5	70	70	58	70	58		12	72
•일반수용비(210-01)	97	97	94		3	61	103	103	103	103			61
· 공공요금및제세(210-02)	25	25	25		-	5	5	5	5	5			5
• 피복비 (210-03)	2	2	2		-	2	2	2	2	2			2
· 특근매식비(210-05)	1	1	1		-	1	1	1	1	1			1
·임차료 (210-07)	6	6	6		-	3	3	3	3	3			3
 시설장비유지비(210-09) 	20	20	20		-	20	16	16	16	16			20
·복리후생비(210-12)	1	1	1		-	1	1	1	1	1			1
• 일반용역비 (210-14)	345	345	345		-	352	314	314	314	314			352
•국내여비(220-01)	8	8	8		-	8	8	8	8	8			8
•고용부담금(320-09)	13	13	12		1	14	14	14	14	14			14
·자산취득비(430-01)	50	50	50		_	50	50	48	50	48		2	50
· 태안해양유물전시관 시설관리	2,464	2,464	1,725		739	1,913	1,912	1,860	1,912	1,860		52	1,940
·상용임금(110-03)	746	746	658		88	768	768	767	768	767		1	790
·일반수용비(210-01)	75	75	72		3	82	118	110	118	110		8	82
· 공공요금및제세(210-02)	327	327	301		26	317	325	320	325	320		5	317
• 피복비 (210-03)	13	13	13		-	13	13	13	13	13			13
· 특근매식비(210-05)	2	2	0		2	2	1	0	1	0		1	2
•임차료 (210-07)	20	20	19		1	16	16	16	16	16			16
•유류비 (210-08)	60	60	53		7	60	60	51	60	51		9	60
· 시설장비유지비(210-09)	87	87	87		_	126	105	93	105	93		12	126
·재료비 (210-11)	20	20	13		7	11	0	0	0	0			11

			2022					2023(′	23.12월	말)			
			기취에					집행액	전년도 제	이월액			2024
	예신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생각 [실집 행액]	세 예산 현액	커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9 예산
·복리후생비(210-12)	10	10	10		-	14	14	14	14	14			13
· 일반용역비 (210-14)	-	-	-		_	45	42	40	42	40		2	45
· 관리용역비 (210-15)	110	110	109		1	119	110	110	110	110			119
·국내여비(220-01)	11	11	11		-	11	11	10	11	10		1	11
・고용부담금(320-09)	143	143	113		30	149	149	137	149	137		12	155
·실시설계비(420-02)	26	26	26		-	-	-	-	-	-			-
・공 사 비 (420-03)	559	559	-		559	-	-	-	-	-			-
·감리비(420-04)	8	8	-		8	-	-	-	-	-			-
· 시설부대비 (420-05)	7	7	-		7	_	-	-	-	-			-
·자산취득비(430-01)	240	240	240		_	180	180	179	180	179		1	180

1) 사업목적·내용

- (수중문화재 발굴 및 탐사/충청·경기권 수중문화재 발굴 및 탐사)국내 유일의 수중문 화재 조사,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과 기능 강화, 수중문화재조사 전용선박(2척) 운용·관리, 수중문화재 발굴 및 보존분야 국제교류 운영
- (수중문화재 조사선 대체선박 건조)국내 유일의 수중문화재 조사선과 발굴 바지선의 노후화로 대체 선박 확보
- (수중문화재 보존처리/충청·경기권 유물 보존처리 및 분석)수중발굴 유물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과학적 보존방안 수립 및 해양문화유산 가치 창출
- (충청·경기권 해양문화유산 전시 운영)수중문화재 조사·연구정보의 적극적 공개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강화
- (태안해양유물전시관 시설관리) 태안해양유물전시관 운영을 위한 건물, 시설 등 관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16조(문화재 전문인력의 양성), 제25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제32조(가지정)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있는 유형의 문화재범위),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제6조(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제13조(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 제15조(발굴조사보고서), 제17조(발견신고 등), 제24조(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등록)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범위 등), 제4조(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제15조(발굴조사 보고서 제출), 제31조(매장문화재의 보호 방안)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조사기관의 종류 및 등록기준 등)
-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4조(사업)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박물관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
 - 2. 박물관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
 - 3. 박물관자료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

② 추진경위

- '81.08.25 : 수중발굴 고선박 '신안선'의 보존처리를 위해 국립문화재연구소 부설 『목포보존처리장』개설
- '90.01.03: 『목포해양유물보존처리소』개소
- '94.05.04: 『국립해양유물전시관』으로 직제개편
- '94.12.14 : 『국립해양유물전시관』개관, 전시·사회 교육사업
- '02.~현재 : 본격적인 자체 수중발굴 시작
- '07.03.15 : 직제개편(4급, 2과/37명 ⇒ 고위, 4과/46명) 발굴·전시·연구사업 본격화
- '09.04.27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직제개편
- '10.05.25 : 직제개편(고위, 4과/46명 ⇒ 고위, 4과/50명)
- '11.06.28 : 『태안보존센터』 준공 및 보존처리 업무 시작
- '13.05.30 : 수중발굴 전용 인양선(누리안호) 발굴현장 운영 시작
- '17.06.20 : 직제개편(고위, 4과/64명 ⇒ 고위, 5과/73명) 서해문화재과 신설(충청·경기권역 조사·보존·전시·교육 사업 시작)
- '18.12.14: 『태안해양유물전시관』일부 개관(제1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 '19.11.18: 『태안해양유물전시관』 전면 개관(상설전시실 4실, 기획전시실 1실)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4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10,511	9,277	8,246	8,465	10,105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수중발굴과, 서해문화재과, 유물과학팀(보존처리)

- 사업수혜자 : 일반국민, 발굴기관·관련기관 및 관계전문가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 · 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한국전통문화대학교운영 (1233-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52	한국전통문화		060	064
명칭	일반회계	문화재청	대학교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3	301
명칭	문화유산교육연구	한국전통문화대학교운영지원	한국전통문화대학교운영

□ 사업 성격											
<u> ۱</u> ۱ ٦	계속	o) =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21年	계숙	[전묘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0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0						

사업명			구분		
オフカドロシ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한국전통문화		한국전통문화	フス시	소기거	김진수
대학교운영	소관부처	대학교	조주성	송시경	김신구
(1233-301)		총무과	041-830-7200	041-830-7220	041-830-7221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	202	4년	중감	
71 11 8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한국전통문화	21 (44	10.210	10.457	10.457	1.47	0.0
대학교운영	21,644	19,310	19,457	19,457	147	0.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2022					2023(′	23.12월	말)			
									전년도	이월액			
	예산액	예산	집행액				예산	집행액	제		이월	불용	2024
	^{개인과} (추경)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데신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상액	예상액	예산
○ 기능별 분류(합계)	21,300	21,770	21,644	10	116	19,310	19,417	18,689	19,407	18,679	723	5	19,457
· 학부과정운영	3,963	4,055	4,010	5	40	4,299	4,383	4,338	4,378	4,333	45		4,567
· 대학원과정운영	2,501	2,492	2,492			2,547	2,543	2,543	2,543	2,543			2,549
· 학사운영지원	1698	1,729	1,713	5	11	1,772	1,775	1 <i>,</i> 775	1,770	1,770			1,967
• इसियुव्यक्ति	511	511	511			575	575	575	575	575			686
· 시설관리	8,916	9,092	9,027		65	9,199	9,223	8,545	9,223	8,545	678		8,215
· 학술정보관운영	555	555	555			561	561	561	561	561			568
·교육인프라확충	3,156	3,336	3,336			357	357	357	357	357			905
○ 비목별 분류(합계)	21,300	21,770	21,644	10	116	19,310	19,417	18,689	19,407	18,679	723	5	19,457
· 상용임금(110-03)	4,768	4,768	4,760		8	4,850	4,915	4,915	4,915	4,915			4,990
· 일용임금(110-04)	61	61	60		1	60	72	72	72	72			101
· 일반수용비(210-01)	2,297	2,388	2,373		15	2,619	2,544	2,544	2,544	2,544			2,592
· 공공요금 및 제서(21002)	341	227	227			456	501	501	501	501			492
· 특근매식비(210-05)	13	7	6		1	13	1	1	1	1			13
・임차료(210-07)	237	285	284		1	269	289	289	289	289			364
· 시설장비유자비(21009)	71	65	65			68	88	88	88	88			68
· 재료비(210-11)	338	341	337		4	311	311	311	311	311			311
· 복리후생비(210-12)	38	38	38			47	47	47	47	47			48
· 일반용역비(210-14)	40	31	31			90	90	90	90	90			241
· 관리용역비(210-15)	38	31	26	5		38	44	44	39	39			38
·기타운영비(210-16)	96	96	96			96	96	96	96	96			96
· 국내여비(220-01)	67	67	49		18	68	67	67	67	67			67
· 국외여비(220-02)	49	49	49			49	49	49	49	49			49
· 사업추진비(240-01)	10	10	10			11	11	11	11	11			10
・포상금(310-03)	12	12	12			12	12	12	12	12			12
· 기타보전금(310-04)	641	641	641			904	904	904	904	904			1,153
· 고용부담금(320-09)	672	672	672			692	713	713	713	713			724
· 기본조사설계비(42001)	50	50	42										85
· 실시설계비(420-02)	288	288	278		8	69	69	69	69	69			467
・공사비(420-03)	8,432	8,810	8,764		10	6,258	6,324	5,671	6,324	5,671	653		5,269
· 감리비(420-04)	344	436	436		46	150	97	72	97	72	25		90

			2022					2023(′	23.12월				
									전년도	이월액			
	ചിചിച്ച	וג ווג	집행액				ادائد	집행액	제	외	(م)	нο	2024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 시설부대비(420-05)		15	15			28	15	15	15	15			26
· 자산취득비(430-01)		2,382	2,373			2,152	2,157	2,112	2,152	2,107	45		2,153
) 기능비목별 분류 (합계)	21,300	21,770	21,644	10	4	19,310	19,417	18,689	19,407	18,679	723	5	19,457
・학부과정 운영	3,963	4,055	4,010		40	4,299	4,383	4,338	4,378	4,333	45		4,567
-상용임금(110-03)		1,886	1,878		8	1,899	1,964	1,964	1,964				1,912
-일반수용비(210-01)		453	449		4	455	415	415	415	415			45
-공공요금및제세(21002)		6	6			6	6	6	6	6			(
-특근매식비(210-05)		2	1		1	6							(
-임차료(210-07)	90	138	137		1	90	110	110	110	110			90
시설장비유지비(21009)		62	62			68	88	88	88	88			6
-재료비(210-11)	170	173	169		4	170	170	170	170	170			17
-복리후생비(210-12)	5	5	5			6	6	6	6	6			0
-기타운영비(210-16)		93	93		10	93	93	93	93	93			9
-국내여비(220-01)		47	29		18	47	46	46	46	46			4
-사업추진비(240-01)	1 12	1	1 12			1 12	1 12	1 12	1 12	1 12			1
-포상금(310-03)		12 348	348			611	611	611	611	611			86
-기타보전금(310-04) -고용부담금(320-09)		348 182	182			188	209	209	209	209			90 19
-고용구립금(32009) -자산취득비(430-01)		647	638	5	4	647	652	607	209 647	602	45		64
·대학원과정운영	2,501	2,492	2,492		4	2,547	2,543	2,543	2,543	2,543			2,54
-상용임금(110-03)		186	186			191	191	191	191	191			19
-일반수용비(210-01)	928	928	928			1,018	1,018	1,018	1,018	1,018			1,01
-공공요금및제서 (21001)		2	2			2	2	2	2	2			1,01
-특근매식비(210-05)		4	$\frac{2}{4}$			4	0	0	0	0			
시설장비유지비 (21009)		3	3			1	O		U	U			
-재료비(210-11)	142	142	142			115	115	115	115	115			11.
-복리후생비(210-12)		2	2			2	2	2	2	2			
-일반용역비(210-14)		31	31			40	40	40	40				4
-기타운영비(210-16)	3	3	3			3	3	3	3	3			
-기타보전금(310-04)	293	293	293			293	293	293	293	293			29
-고용부담금(320-09)	15	15	15			26	26	26	26	26			2
-공사비(420-03)	16	16	16			17	17	17	17	17			1
-자산취득비(430-01)	867	867	867			836	836	836	836	836			83
• 학사운영지원	1698	1,729	1,713	5	11	1,772	1,775	1,775	1,770	1,770			1,96
-상용임금(110-03)	499	499	499			505	505	505	505	505			57
-일용임금(110-04)													4
-일반 수용 비(210-01)	805	845	834		11	861	861	861	861	861			89
-공공요금및제서(21002)		14	14			14	13	13	13	13			1
-특근매식비(210-05)		1	1			3	1	1	1	1			
-임차료(210-07)	39	39	39			49	49	49	49	49			4
-재료비(210-11)	26	26	26			26	26	26	26	26			2
-복리후생비(210-12)		6	6			5	5	5	5	5			
-일반용역비(210-14)													3
-관리용역비(210-15)		14	9	5		21	27	27	22	22			2
-국내여비(220-01)		17	17			17	17	17	17	17			1
-국외업무여비(22002)	49	49	49			49	49	49	49	49			4
-사업추진비(240-01)	9	9	9			9	9	9	9	9			(

			2022					2023("	23.12월	말)			
									전년도				
			집행액					집행액	제	. – .			2024
	예산액	예산	[실집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실집		- 집행액	이월	불용	 예산
	(추경)	현액	· 행액]				연액	행액]	예간 현액	[실집 행액]	예상액	예상액	
-고용부담금(320-09)	73	73	73			76	76	76	76	생략] 76			87
-공사비(420-03)	20	20	20			20	20	20	20	20			20
-자산취득비(430-01)	117	117	117			117	117	117	117	117			117
- इन्हें पुळक्ष स	511	511	511			575	575	575	575	575			686
-상용임금(110-03)	356	356	356			365	365	365	365	365			374
-일반 수용 비(210-01)	550	550	550			30	30	30	30	30			071
-공공요금및제세(21002)							50	50	50	30			36
-임차료(210-07)	100	100	100			123	123	123	123	123			217
-고용부담금(320-09)	55	55	55			57	57	57	57	57			59
·시설관리	8,916	9,092	9,027		65	9,199	9,223	8,545	9,223	8,545	678		8,215
-상용임금(110-03)	1,616	1,616	1,616		0.5	1,658	1,658	1,658	1,658	1,658	078		1,692
-일용임금(110-04)	56	56	55		1	1,636	1,038	1,038		1,038			56
	36	36	33		1				68 68				72
-일반수용비(210-01)	210	204	204			103	68 490	68		68 480			
-공공요금및제서 (21002)	318	204	204			433	480	480	480	480			433
-임차료(210-07)	8	8	8			8	8	8	8	8			8
-복리후생비(210-12)	22	22	22			30	30	30	30	30			30
-일반용역비(210-14)			• • •			50	50	50	50	50			103
-고용부담금(320-09)	303	303	303		_	301	301	301	301	301			313
-기본조사설계비(12001)	50	50	42		8								
-실시설계비(420-02)	288	288	278		10	69	69	69	69	69			69
-공사비(420-03)	5,666	5,885	5,839		46	6,117	6,183	5,530	6,183	5,530	653		5,127
-감리비(420-04)	187	258	258			150	97	72	97	72	25		90
-시설부대비(420-05)	6	6	6			28	15	15	15	15			26
-자산취득비(430-01)	396	396	396			196	196	196	196	196			196
• 학술정보관운영	555	555	555			561	561	561	561	561			568
-상용임금(110-03)	152	152	152			157	157	157	157	157			163
-일용임금(110-04)	5	5	5			5	5	5	5	5			5
-일반 수용 비(210-01)	102	102	102			102	102	102	102	102			102
-공공요금및제세(21002)	1	1	1			1	1	1	1	1			1
-복리후생비(210-12)	2	2	2			3	3	3	3	3			3
-관리용역비(210-15)	17	17	17			17	17	17	17	17			17
-국내여비(220-01)	3	3	3			3	3	3	3	3			3
-고용부담금(320-09)	30	30	30			30	30	30	30	30			31
-공사비(420-03)	10	10	10			10	10	10	10	10			10
-자산취득비(430-01)	233	233	233			233	233	233	233	233			233
• 교육인프라 확충	3,156	3,336	3,336			357	357	357	357	357			905
-상용임금(110-03)	73	73	73			75	<i>7</i> 5	<i>7</i> 5	75	<i>7</i> 5			77
-일반 수용 비(210-01)	60	60	60			50	50	50	50	50			50
-복리후생비(210-12)	1	1	1			1	1	1	1	1			1
-일반용역비(210-14)													63
-고용부담금(320-09)	14	14	14			14	14	14	14	14			14
-기본조시설계비 (42 00 1)													85
-실시설계비(420-02)													398
-공사비(420-03)	2,720	2,879	2,879			95	95	95	95	95			95
-감리비(420-04)	157	178	178			-		-	_				
-시설부대비(420-05)	9	9	9										
-자산취득비(430-01)	122	122	122			122	122	122	122	122			12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학부운영)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부생을 대상으로 학부 과정 운영(강의 지원, 교육환경 조성, 연구기자재 구입 등) 지원
- (대학원과정운영)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대학원 과정 운영(강의 지원, 교육환경 조성, 연구기자재 구입 등) 지원
- (학사운영 지원)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부생을 대상으로 학사운영(교수채용, 각종 학술세미나 지원 등) 지원
- (특수대학원 및 교외교육지원) 전통문화 및 문화재 보존관리·활용에 종사하는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 교육 제공, 이에 따른 교외 교육공간(서울, 세종 등) 운영 및 조성 지원
- (시설관리)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교육연구시설 관리 및 확충 등 쾌적하고 효율적인 교육환경 조성 지원
- (학술정보관 운영)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학생과 교직원, 외부인을 대상으로 학술정보관 운영(열람환경 조성, 도서구입 및 대출 등) 지원
- (교육인프라 확충) 노후화된 건물을 유지보수 내역사업인 '시설관리'와 별개로 새로운 교육환경 조성 및 인프라 구축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조(목적)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과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고, 한국문화의 보급과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7조(교육재정 등)
- ① 전통문화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 ② 전통문화대학교의 학생에게는 <u>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u>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등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 도서관법 제39조(대학도서관의 설치 등)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 상의 교육기관에는 대학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2000. 3. 2.)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개교, 학술종합정보관 개관
- (2002. 3. 4.) 문화재관리학과 등 6개 학과 정원 560명 개설 완료
- (2008. 5. 13.) 학술종합정보관 종합정보자료실 개실
- (2012. 7. 15.)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
- (2012. 11. 30.) 학술정보관 증축공사 완료(1,880 m²)
- (2013. 3. 4.) 대학원 개원
- (2017. 2. 27.) <교육체체 개편> 2개 단과대 7개 학과, 2개 대학원 5개 학과
- (2020. 7. 15.) 대학원종합연구관 건립 공사 완료
- (2021. 9. 1.) 국제문화유산협동과정 개설
- (2022. 2.28.) 미래문화유산대학원(특수대학원) 석사과정 개원
- (2022. 10.15.) 전통미술공예학과 실습동 및 학생생활관 건립 공사 완료
- 추진배경
- ·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특수목적의 4년제 국립대학으로 설립 (개교 2000년 3월)
- ·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된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 (2022~2026)에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유산의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인 '문화재 관리의 전문성·현장성 강화'의 「문화유산의 미래를 책임질 우수 재원 양성」 세부 추진과제임

□ 주요내용

-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00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16,478	21,604	21,300	19,310	19,45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사업 수혜자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등

(4) 전통문화교육원운영지원 (1234-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Ol મો. જો ગો	문화재청	기타미치ㅋㅇ이		060	064
명칭	일반회계	[판와세성	전통문화교육원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4	301		
명칭	문화유산 교육연구	전통문화교육원 운영	전통문화교육원운영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Δ) =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つ 田	계속	せ丘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0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0						

사업명			구분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교육기획과	김윤수	문정윤	전병관
,	전통문화 교육원운영 소관부처 지원	교육/1억/	041-830-7820	041-830-7822	041-830-7823
			과 장	사무관	주무관
, ,		실·국·과(팀) 교육운영과	김응례	조도훈	정한나
		32 12 0 1	041-830-7810	041-830-7812	041-830-7818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	202	4년	증감	
71 日 0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전통문화교육원	2.066	2 201	E 624	F 704	2 2 4 2	69.3
운영지원	2,966	3,381	5,624	5,724	2,343	69.3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2022						2023(′	23.12월	말)			
									전년도				
	예산액	예산	집행액				예산	집행액	제		이월	불용	2024
	(추경)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 C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상액	- 1	예산
○ 기능별 분류(합계)	3,221	3,267	2,966		300	3,381	3,357	3,217	3,357	3,217		140	5,724
·교육운영	1,761	1,761	1,713		48	2,063	2,039	1,976	2,039	1,976		63	2,072
·교육개발 및 연구	475	521	515		5	310	310	284	310	284		26	1,013
·시설 및 기자재	175	175	145		30	213	213	207	213	207		6	1,736
· 전통문화사회 교육과정운영	810	810	593		217	795	795	750	795	<i>7</i> 50		45	903
○ 비목별 분류(합계)	3,221	3,267	2,966		300	3,381	3,357	3,217	3,357	3,217		140	5,724
· 상용임금(110-03)	364	345	257		88	374	346	346	346	346			414
· 일용임금(110-04)	5	24	24		_	5	19	16	19	16		3	5
· 일반수용비(210-01)	1,329	1,292	1,242		49	1,604	1,594	1,552	1,594	1,552		42	1,677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124	124	83		42	124	124	91	124	91		33	124
· 특근매식비(210-05)	6	6	1		5	6	6	1	6	1		5	6
・ 임차료(210-07)	126	164	155		9	145	145	145	145	145			165
· 시설생 유지 (210.09)	9	9	6		3	9	9	9	9	9			9
·재료비(210-11)	210	210	171		39	242	242	223	242	223		19	242
· 복리후생비(210-12)	4	4	4			6	6	6	6	6			6
· 일반용역비(210-14)						30	30	30	30	30			107
· 국내여비(220-01)	40	47	45		2	41	47	47	47	47			41
· 국외업무여비(220-02)	48	40	40			47	41	37	41	37		4	43
· 사업추진비(240-01)	12	12	12			12	12	12	12	12			12
· 일반연구비(260-01)	475	521	515		5	310	310	284	310	284		26	1,013
· 포상금(310-03)	20	20	20			20	20	20	20	20			20
· 고용부담금(320-09)	67	67	67			69	69	69	69	69			81
· 실시설계비(420-02)						38	53	52	53	52		1	
・공사비(420-03)	222	222	209		13	201	186	180	186	180		6	1,586

			2022					2023("	23.12월	말)			
									전년도	이월액			
	מאר מיי.	.9.53	집행액				.9.11	집행액	제		.1.61	73 A	2024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 감리비(420-04)													67
· 시설부대비(420-05)	1	1			1								9
· 자산취득비(430-01)	159	159	114		45	97	97	97	97	97		1	97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221	3,267	2,966		300	3,381	3,357	3,217	3,357	3,217		140	5,724
• 교육운영	1,761	1,761	1,713		48	2,063	2,039	1,976	2,039	1,976		63	2,072
-상용임금(110-03)	189	170	169		1	204	176	176	176	176		0	210
-일용임금(110-04)	5	24	24			5	19	16	19	16		3	5
-일반수용비(210-01)	1,004	967	966		1	1,318	1,308	1274	1,308	1274		34	1,302
- 공공요금 및 제세 21 00 2)	15	15	8		7	15	15	11	15	11		4	15
-특근매식비(210-05)	6	6	1		5	6	6	1	6	1		5	6
-임차료(210-07)	89	126	120		6	105	105	105	105	105			125
-시설생바유바(21009)	9	9	6		3	9	9	9	9	9			9
-재료비(210-11)	162	162	148		14	162	162	150	162	150		12	162
-복리후생비(210-12)	2	2	2			4	4	4	4	4			4
-일반용역비(210-14)						30	30	30	30	30			30
-국내여비(220-01)	40	47	45		2	41	47	47	47	47			41
-국외업무여비(220-02)	48	40	40			48	41	37	41	37		4	43
-사업추진비(240-01)	12	12	12			12	12	12	12	12			12
-포상금(310-03)	20	20	20			20	20	20	20	20			20
-고용부담금(320-09)	37	37	37			39	39	39	39	39			42
-공사비(420-03)	118	118	115		3	46	46	45	46	45		1	46
-시설부대비(420-05)	1	1			1								
-자산취득비(430-01)	4	4			4								
•교육개발 및 연구	475	521	515		5	310	310	284	310	284		26	1,013
-일반연구비(260-01)		4			4	310	310	284	310	284		26	1,013
·시설 및 기자재	175	175	145		30	213	213	207	213	207		6	1,736
-일반수용비(210-01)													23
-일반용역비(210-14)													77
-실시설계비(420-02)						38	53	52	53	52		1	-
-공사비(420-03)	100	100	94		6	100	85	81	85	81		4	1,485
-감리비(420-04)													67
-시설부대비(420-05)													9
-자산취득비(430-01)	75	<i>7</i> 5	52		23	75	<i>7</i> 5	74	75	74		1	75
· 전통문화시회교육과정	810	810	593		217	<i>7</i> 95	795	750	795	750		45	903
-상용임금(110-03)	175	175	88		87	170	170	170	170	170			204
-일반수용비(210-01)	325	325	277		48	286	286	278	286	278		8	351
-공공요금 및 재세(21002)	109	109	<i>7</i> 5		34	109	109	<i>7</i> 9	109	79		30	109
-임차료(210-07)	37	37	35		2	40	40	40	40	40			40
-재료비(210-11)	48	48	23		25	80	80	75	80	75		5	80
-복리후생비(210-12)	2	2	2			3	3	3	3	3			3
-고용부담금(320-09)	30	30	30			30	30	30	30	30			39
-공사비(420-03)	4	4			4	55	55	53	55	53		2	55
-자산취득비(430-01)	80	80	63		17	22	22	22	22	22			2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① (전통문화교육원운영지원) 문화재수리기술자,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문화재 분야 종사자의 문화재 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통문화교육 전문·직무 과정과 일반국민의 전통문화 및 문화재의 이해 확산을 위한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 운영

② (내역사업별)

- (교육운영) 문화재수리기술자,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문화재 관련 종사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과정 운영/전통기법·전통재료 등을 활용한 문화재수기능인 양성과정 운영으로 문화재수리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문화재 수리 전문인력 양성
- (교육개발 및 연구) 문화재수리기능인 양성과정 연구 용역을 통한 교육과정 개편, 교육교재 개발 등을 통한 교육과정의 체계화 및 전문화/ 온라인콘텐츠 제작을 통한 이러닝 교육 확대 및 교육콘텐츠 품질 강화
- (시설 및 기자재) 전통문화교육원 및 전통기능교육센터 실습시설, 기자재 등 노후 화에 따른 최신 기기 교체 등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 각종 시설물 공사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교육생에 대한 현대화된 교육시설(환경) 제공
-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 일반국민의 전통문화 및 문화재의 이해 확산을 위한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 운영/ 대국민 전통문화 가치 확산을 위한 수도권(서울학습관), 중부권(세종학습관) 외 전국 확대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문화재보호법」 제16조(문화재 전문인력양성),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4조(전통 문화교육원)
 - ① 전통문화 및 문화재 관련 분야 종사자와 국민의 교육을 위하여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전통문화교육 원을 둔다.
 - ② 전통문화교육원에 전통문화 및 문화재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학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통문화전문과정을 둔다.
 - ③ 전통문화교육원에 국민의 전통문화 및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하여 학위를 목적으로 하지 아 니하는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을 둔다.

-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제53조(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의 보수교육)
 - ①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은 문화재수리등의 기술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문화재청 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문화재수리 설계심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예규)

제3조(용어의 정의) 제3호 "설계심사관 직무과정"이란 전통문화교육원에 개설된 교육과정 중 설계심사 관 교육으로 인정된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10조(설계심사관의 교육훈련) 문화재청장은 설계심사관의 업무수행능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20 시간 이상의 설계심사관 직무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전통문화교육원 운영규정(전통문화대학교 예규)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칙 제7조 및 제29조에 따라 전통문화교육원(이하 내용 요약)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음(제2조)

교육과정	대상 및 목적
전통가능교육과정	- 문화재수리기능자, 그 밖의 문화재 수리복원 전문인력 등을 체계적으로 양성
직무교육과정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의 전통문화 및 문화재 관련 업무능력 향상과 역량 강화
전문교육과정	-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감리원 등의 전문성 및 실무능력 제고
사회교육과정	- 국민의 전통문화 및 문화재에 대한 이해 확산
국제교류협력 과정	 외국인 및 국제문화재 전문가를 대상으로 우리 전통문화의 이해증진 및 인식제고, 교육 및 상호교류
특별교육과정	- 교육운영 정책 및 방향, 교육수요, 정부의 주요시책 등 현안 사항에 대한 이해 및 대응능력 제고

② 추진경위

- 전통문화교육원 건립(2005~2007.12. 완공)
- 전통기능교육센터 건립(2012. 3. 개원)
- 교육과정 운영(2008~)

전통문화교육원 교육과정별 수료생 현황

구 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20년	'21년	22년
문화재수리기능인 양성과정	78	107	110	114	114	124	126	114	123
직무 과정	1,209	866	978	618	674	653	628	755	923
전문 과정	459	837	608	707	388	369	344	585	671
국제협력 과정	16	14	12	13	12	13	_	_	_
사회 과정	91	66	16	-	_	33	_	141	346
이러닝 과정	6,750	10,294	10,391	6,864	8,709	11,817	14,333	19,740	19,164
수료생 합계	8,603	12,184	12,115	8,316	9,897	13,009	15,431	21,335	21,227

□ 주요내용

-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5~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싫느	2020	2021	2022	2022	2024
언노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2,115	3,645	3,221	3,381	5,72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및 문화재 담당공무원, 문화재수리업체 및 관계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5) 정보전산센터운영(정보화) (1235-501)

□ 사업 코드 정보

	•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43	한국전통문화대학교		060	064
명칭	일반회계	문화재청	인식산중단와네억파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5	501		
명칭	문화유산교육연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정보화	정보전산센터운영(정보화)		

	□ 사업 성격											
X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í	7 TT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0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0						

사업명			구분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정보전산센터	소관부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조주성	권양희 부교수	지재학
운영(정보화)		총무과	041-830-7200	041-830-7331	041-830-7141
E 0(0==1)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	202	4년	증감	
71 11 6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정보전산센터운영	1,098	951	1,443	1,443	492	51.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2022					2023(′	23.12월	말)					
			-3-9-9					-3-9-9	전년도	• - •			2024
	예산액	예산	집행액 [실집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집행액 [실집	제	외 집행액	이월	불용	2024 예산
	(추경)	현액	['관심 행액]	기필격	골장기	문에간	현액	행액]	예산 현액	접생각 [실집 행액]	예상액	예상액	-11-12
○ 기능별 분류(합계)	1,102	1,102	1,098		4	951	951	951	951	951			1,443
• 스마트 캠퍼스 구축	78	78	78			78	78	78	78	78			78
• 학사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311	311	311			157	157	157	157	157			647
• 정보전산센터경상운영	713	712	709		4	716	716	716	716	716			718
○ 비목별 분류(합계)	1,102	1,102	1,098			951	951	951	951	951			1,443
· 상용임금(110-03)	69	69	68			70	70	70	70	70			72
· 일반수용비(210-01)	14	14	19			16	16	16	16	16			16
· 공공요금및제서(21002)	87	87	84			87	87	87	87	87			87
・임차료(210-07)	83	83	73			83	83	83	83	83			83
·시설정비유지비(21009)			10										
· 복리후생비(210-12)	1	1	1			1	1	1	1	1			1
· 관리용역비(210-15)	296	296	293		3	296	296	296	296	296			296
· 국내여비(220-01)	1	1	1			1	1	1	1	1			1
·고용부담금(320-09)	14	14	13			14	14	14	14	14			14
· 자산취득비(430-01)	537	537	536		1	383	383	383	383	383			873
○ 기능비목별 분류 (합계)	1,102	1,102	1,098			951	951	951	951	951			
• 스마트 캠퍼스 구축	78	78	78			78	78	78	78	78			78
- 자산취득비(430-01)	78	78	78			78	78	78	78	78			78
• 학사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311	311	311			157	157	157	157	157			647
- 자산취득비(430-01)	311	311	311			157	157	157	157	157			647

	2022							2023(′	23.12월	말)			
	예산액	예산	집행액				예산	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불용	2024
	애산국 (추경)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상액		예산
• 정보전산센터경상운영	713	713	709			716	716	716	716	716			718
- 상용임금(110-03)	69	69	68			70	70	70	70	70			72
- 일반수용비(210-01)	14	14	19			16	16	16	16	16			16
- 공공요금맟제서(21002)	87	87	84			87	87	87	87	87			87
- 임차료(210-07)	83	83	73			83	83	83	83	83			83
- 시설장비유지비(21009)			10										
- 복리후생비(210-12)	1	1	1			1	1	1	1	1			1
- 관리용역비(210-15)	296	296	293	3		296	296	296	296	296			296
- 국내여비(220-01)	1	1	1			1	1	1	1	1			1
- 고용부담금(320-09)	14	14	13			14	14	14	14	14			14
- 자산취득비(430-01)	148	148	147	1		148	148	148	148	148			14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사운영, 교육행정, 대학경영, 학술정보 관리 등 업무전산화
- 학내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및 유지관리, 컴퓨터 실습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교육기본법 제23조의2(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업무의 전자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교사) "대학은 교사중 교육·연구활동에 적합한 교육기본시설 및 지원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 제17조(교육재정 등)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 ② 추진경위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2000. 5월 : 전자계산소 개소
- 2001년 : 학사행정시스템 및 도서관리시스템 구축, 전자결재시스템
- 2003년 : 모바일캠퍼스시스템 구축, 이중 방화벽시스템 구축
- 2004년 : 학술정보관 통합(전자계산소,중앙도서관), 학사행정시스템
- 2006년 : 정보보호 및 QoS 시스템 도입, 전자결재시스템 확대 시행
- 2008년 : 개인정보보호 및 학사통합/교원업적관리시스템 구축
- 2009년 : 중장기 정보화 발전방안(ISP) 수립 e-포트폴리오 등 학사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
- 2010년 : 학사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2차) 추진
- 2011년 : 캠퍼스 무선랜 등 유비쿼터스 캠퍼스 구축
- 2012년 : 대학원 입시 및 학사관리스템 구축
- 2013년 : 전산기계실 확장이전 및 운영기반 마련, 통합전산실습실 구축
- 2014년 :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현장실습관리시스템/정보공유시스템 구축
- 2015년 : 자료유출방지(DLP)시스템 및 서버가상화 서비스 구축
- 2016년 : 홈페이지 개편 및 기능 고도화(반응형 웹 구축) 및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 수립
- 2017년 : DDoS/무선위협 차단시스템 및 차세대학사정보시스템 구축(1차)
- 2018년 : 지능형 지속 공격 대응 장비 도입 및 차세대학사정보시스템 구축(2차)
- 2019년 : 서버가상화 시스템 용량 증설 및 전자결재시스템 도입
- 2020년 : 학사정보시스템 고도화(포털, 온라인 강의, 교원업적, 공간관리)
- 2021년 : 비대면 접촉 콘텐츠 제작 인프라 구축 및 백업시스템 교체
- 2022년 : 전산실습실 노후 기자재 교체 및 교육망 백본 등 네트워크 장비 고도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01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934	1,043	1,102	951	1,443

- 기타 :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사업 수혜자 : 학생, 교직원, 전통문화에 관심있는 예비대학생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문화재보존관리

	120	
_	120	_

(1) 사적관리 (2132-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OJ HJ' શ્રી ગો	ㅁ됬게친	므청케ㅂㅈ그		060	064
명칭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2	301
명칭	문화재보존관리	기념물문화재보존강화	사적관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н о	, (0	0-11-1	101111	0 1: 1	1012 1011 0 - 1)
신규	_n &	완료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계속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0			0		50	

	0 - 1				
사업명			구분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시정하기의	소관부처	문화재보존국	김명준	김용식	임종성
사적관리		보존정책과	042-481-4830	042-481-4831	042-481-4832
	사업시행주체	문화재청			
사적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1 ' '	소관부처	문화재보존국	김명준	김용식	임종성
보존·관리		보존정책과	042-481-4830	042-481-4831	042-481-4832
지원	사업시행주체	문화재청			
사적 예비문화재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조사 지원	소관부처	문화재보존국	김명준	김영호	이세훈
국가유산 순의제향		보존정책과	042-481-4830	042-481-4841	042-481-4842
지원	사업시행주체	지자체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유산	소관부처	문화재보존국	김명준	김용식	임종성
경관개선		보존정책과	042-481-4830	042-481-4831	042-481-4832
·	사업시행주체	지자체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 예산	202	4년	증감	
/ ਬਰ 	결산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사적관리	1,129	1,167	1,167	1,412	2,412	1,245	106.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2022					2	2023(*23	3.12월밀	<u></u>			
						예신	· - - -			전년도				2024
	예산액	예산	집행액	이월액	मुख्या			예산	집행액	제	<u>외</u> 집행액	이월	불용	202 4 예산
	(추경)	현액	[실잡행액]	기본기	크이기	본예산	추경	현액	[실집행액]	예산 현액	급 등 기 [실집 행액]	예상액	ભોડોલ	" -
○ 기능별 분류(합계)	1,198 (1,188)	1,175	1,129		46	1,167	1,167	1,167	1,153 [300]	1,167	1,153 [245]		14	2,412
· 사적 보존·관리 지원	562 (552)	539	519		20	667	667	667	478	667	655		12	672
· 사적 보존·관리 개선 연구 등	386	386	360		26	250	250	250	248	250	248		2	490
· 사적 예비문화재 조사 지원 · 국가유산 순의제향	250	250	250			250	250	250	250 [300]	250	250 [245]			250
지원														500
· 국가유산 경관개선														500
○ 비목별 분류(합계)	1,198 (1,188)	1,175	1,129		46	1,167	1,167	1,167	1,153 [300]	1,167	1,153 [245]		14	2,412
· 상용임금(110-03)	120	120	105		15	124	124	124	113	124	113		11	127
· 일반수용비 (210-01)	192	196	196		1	191	191	221	221	221	221			192
·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3	3	2		1	3	3	3	3	3	3			3
· 특근매식비 (210-05)	9	6	6		1	9	9	9	7	7	7			9
· 임차료(210-07)	10	14	14			10	10	10	12	12	12			10
· 복리후생비 (210-12)	2	2	2			2	2	2	2	2	2			2
· 일반용역비 (210-14)	75	70	69		1	175	175	1 7 5	144	145	144		1	175
· 국내여비(220-01)	95 (85)	85	85			96	96	96	96	96	96			96
· 국외업무여비 (220-02)	27	14	12		2	27	27	27	27	27	27			27
· 관서업무추진비 (240-02)	6	6	6			6	6	6	6	6	6			6

			2022					2	2023(*23	3.12월밀	<u></u>			
						예신	Loii			전년도	•			
	예산액	예산	집행액			পার	7. 21	예산	집행액	제		이월	불용	2024
	(추경)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 액	본예산	추경	현액	[실집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상액		예산
・일반연구비 (260-01)	386	386	360		26	250	250	250	248	250	248		2	490
· 고용부담금 (320-09)	23	23	23			24	24	24		24	24			25
·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250	250	250			250	250	250	[300]	250	[245]			1,25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198 (1,188)	1,175	1,129		46	1,167	1,167	1,167	1,153 [300]	1,167	1,153 [245]		14	2,412
· 사적 보존·관리 지원	562 (552)	539	519		20	667	667	667	655	667	655		13	672
-상용임금(110-03)	120	120	105		15	124	124	124	113	124	113		11	127
-일반 수용 비 (210-01)	192	196	196		1	191	191	221	221	221	221			192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3	3	2		1	3	3	3	3	3	3			3
-특근매식비 (210-05)	9	6	6		1	9	9	9	7	9	7		2	9
-임차료(210-07)	10	14	14			10	10	12	12	12	12			10
-복리후생비 (210-12)	2	2	2			2	2	2	2	2	2			2
-일반용역비 (210-14)	75	70	69		1	175	175	145	144	145	144		1	175
-국내여비(220-01)	95 (85)	85	85			96	96	96	96	96	96			96
-국외업무여비 (220-02)	27	14	12		2	27	27	27	27	27	27			27
-관서업무추진비 (240-02)	6	6	6			6	6	6	6	6	6			6
-고용부담금 (320-09)	23	23	23			24	24	24	24	24	24			25
· 사적 보존·관리 개선 연구 등	386	386	360		26	250	250	250	248	250	248		2	490
-일반연구비 (260-01)	386	386	360		26	250	250	250	248	250	248		2	490
·사적 예비문화재 조사 지원	250	250	250			250	250	250	250 [300]	250	250 [245]			250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250	250	250			250	250	250	250 [300]	250	250 [245]			250
·국가유산 순의제 향 지원														500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500
• 국가유산 경관개선														500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5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사적보존·관리 지원) 문화재(사적) 지정·해제, 현상변경제도 운영 · 관리 및 제도개선, 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 검토,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운영 등을 통하여 국가지정문화재(사적)에 대한 체계적·효율적인 보존관리 추진하는 것임
- (사적 보존·관리 개선 연구 등) 문화재 규제 타당성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방안 마련과 문화재청이 직접 사적으로 지정한 봉수유적의 정비계획과 허용기준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하는 것임
- (사적 예비문화재 조사 지원) 재원조달 능력이 부족한 지자체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여 국가유산으로 지정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 발굴
- (국가유산 순의제향 지원) 국가유산과 관련된 순의제향 행사가 지속 가능하도록 지원 함으로써 호국선열을 기리고 유산이 가진 의미와 가치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함
- (국가유산 경관개선) 국가유산 거주민에 대한 이주 및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공존을 위해 국가유산 경관개선 지원을 통한 정주환경 조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② 건설공사의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⑤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문화재를 지정하면 그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안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25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 할 수 있다.
- 제44조(정기조사)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사적 지정·정비 및 실태조사, 현상변경 행위 등에 대한 현지조사 검토,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운영 등을 통해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온전하게 후손에게 전승하기 위해 추진('64년)
- 문화재 규제와 도시계획 규제의 정합성 제고, 문화재 주변 지역의 바람직한 경관 관리 구현으로 효과적인 역사문화환경 관리방안 마련 필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총사업비 : 해당없음사업기간 : 1964년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1,040	1,198	1,198	1,167	2,412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지자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4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사적 예비문화 재 조사 지원 ·국가유산 경관 개선 ·국가유산 순의 제향 지원	보조	지자체 보조	1,250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①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고도 보존 및 육성 (2132-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45	무취케Hᄌ그		060	064
명칭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2	302
명칭	문화재보존관리	기념물문화재 보존강화	고도 보존 및 육성

□ 사업 성격

			•				
	신규	-11 A	ما ت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계속	완됴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0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0			0		50%, 70%	

사업명			구분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고도보존	소관부처	문화재보존국	조성래	배준우	공병주
및 육성		·고도보존육성과	042-481-3100	042-481-3101	042-481-3102
关 平%	사업시행주체	직접시행,			
	/기념/기정 T 세	지자체 보조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고도보존		문화재보존국	김창권	박성진	우윤정
ы ол		[신위계포단기	이신복	김미성	이재민
및 육성	소관부처	·신라왕경핵심유적			
(고도핵		복원정비추진단	054-777-6718	054-777-6726	054-671-6723
심유적정		·백제왕도핵심유적	041-852-9723	041-852-9724	041-852-9725
책운영)		보존관리시업추진단			
, = 0)	사업시행주체	직접시행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	202	4년	중감	
71 H 3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고도 보존 및 육성	19,872	19,455	18,361	20,161	706	3.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2022					2023(′23.12윝]말)		단키.	역인전)
								(전년도				
	المالية	ادائم	집행액	(دام	ъo		וג ווג	집행액	 제		이월	불용	2024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이월 액	불용 액	본예산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상 액	예상 액	예산
○ 기능별 분류(합계)	20,028		19,872		146			19,319	19,435			116	20,161
· 고도기반 구축운영	376	371	347		24	378	328	305	328	305		23	226
· 고도핵심유적정책운영	474	469			33	774		763	804	763		41	343
· 고도 이미지 찾기사업	4,200	4,200	4,200			4,200	4,200	4,200	4,200	4,200			3,000
			[3,924]					[3,509]		[3,509]			
· 고도역사도시조성	4,890	4,890	4,890			6,276	6,276	6,276	6,276	6,276			9,256
			[4,292]					[1,878]		[1,878]			
· 고도탐방거점조성	7,088	7,088	7,088			3,227	3,227	3,227	3,227	3,227			686
			[4,074]					[2,349]		[2,349]			
· 역사문화권 정비	3,000	3,000	2,911		89	4,600	4,600	4,548	4,600	4,548		52	6,650
- 취사군화된 경비								[3,907]		[3,907]		32	
○ 비목별 분류(합계)	20,028	20,018	19,872		146	19,455	19,435	19,319	19,435	19,319		116	20,161
· 상용임금(110-03)	31	31	29		2	32	32	31	32	31		1	33
· 일반수용비(210-01)	394	345	328		17	463	406	377	406	377		29	231
· 공공요금 및 제서(210-02)	12	12	1		11	10	10	4	10	4		6	10
· 특근매식비(210-05)	7	7			5	7		2	7	2		5	7
· 임차료(210-07)	45	45			3	47	68	68	68	68			47
· 복리후생비(210-12)	0.4	0.4	0.4			1	1	1	1	1			1
· 일반용역비(210-14)	142	191	191			372	371	361	371	361		10	172
· 관리용역비(210-15)							16	16	16	16			
· 국내여비(220-01)	73	73	73			74	74	73	74	73		1	37
· 국외업무여비(220-02)	20	10	0		10	20	20	16	20	16		4	10
· 사업추진비(240-01)	10	10				10	10	10	10	10			5
· 일반연구비(260-01)	3,100	3,100	3,003		97	1,700	1,700	1,646	1,700	1,646		54	1,100
· 고용부담금(320-09)	6	6	5		1	6		5	6	5		1	6
· 자치단체 경상보조(330·01)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159
\\\\\\\\\\\\\\\\\\\\\\\\\\\\\\\\\\\\\\			[200]					[197]		[197]			
· 자치단체 지본보조(330-03)	15,978	15,978	15,978			16,503	16,503	16,503	16,503	16,503			18,333
,			[12,090]					[9,897]		[9,897]			
· 자산취득비(430-01)	10	10				10		5	10			5	1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0,028		19,872					19,319	19,435			116	20,161
· 고도기반 구축운영	376	371	347			378	328	305	328	305		23	226

			2022					2023(′23.12윝	 말)			
										이월액			
	예산액	예산	집행액	이월	불용		예산	집행액	제	외	이월	불용	2024
	역간적 (추경)	현액	[실집 행액]	액	액	본예산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상 액	예상 액	예산
-상용임금(110-03)	31	31	29			32	32		32	31		1	33
-일반수용비(210-01)	163	163	162			249	173	164	173	164		9	124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1	1	1			3	3	1	3	1		2	3
-특근매식비(210-05)	3	3	2			5	5		5	2		3	5
-임차료(210-07)	11	11	10			20	42	42	42	42			20
-복리후생비(210-12)	0.4	0.4	0.4			1	1	1	1	1			1
-일반용역비(210-14)	0	0	0			0	0	0	0	0			0
-국내여비(220-01)	36	36	36			37	41	40	41	40		1	19
-국외업무여비(220-02)	15	10	0			15	15	11	15	11		4	7
-사업추진비(240-01)	5	5	5			5	5	5	5	5			3
-일반연구비(260-01)	100	100	92			0	0	0	0	0			0
-고용부담금(320-09)	6	6	5			6	6	5	6	5		1	6
-자산취득비(430-01)	5	5	5			5	5		5	3		2	5
· 고도핵심유적정책운영	474	469	436			774	804		804	763		41	343
-일반수용비(210-01)	231	182	166			214	233		233	213		20	107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11	11	0			7	7		233 7	3		4	7
-특근매식비(210-05)	4	4	0			2			2	0		2	2
-막는메루미(210-03) -임차료(210-07)	34	34	32			27	27		27	27			27
- 급자료(210-07) -일반용역비(210-14)	142	34 191	191			372	371		371	361		10	172
` ′	142	191	191			3/2	16					10	1/2
-관리용역비(210-15)	27	27	0.77			0.77			16	16			10
-국내여비(220-01)	37	37	37			37	33		33	33			18
-국외업무여비(220-02)	5	0	0			5	5		5	5			3
-사업추진비(240-01)	5	5	5			5	5		5	5			2
-일반연구비(260-01)	0	0	0			100	100		100	98		2	0
-자산취득비(430-01)	5	5	5			5	5		5	2		3	5
· 고도 이미지 찾기사업	4,200	4,200				4,200	4,200		4,200				3,000
2.22.2.2.2.	4.200	4.200	[3,924]			4.200	4.200	[3,509]	4.000	[3,509]			2 000
- 자치단체 지본보조(3300B)	4,200	4,200				4,200	4,200		4,200				3,000
40-0-0	4 800	4,890	[3,924] 4,890			6 276	6 276	[3,509]	6 276	[3,509]			0.256
· 고도역사도시조성	4,890	4,090				6,276	6,276		6,276				9,256
	200	200	[4,292] 200			200	200	[1,878] 200	200	[1,878] 200			159
- 자기단체 강상보조(330/01)	200	200	[200]			200	200	[197]	200	[197]			137
	4,690	4,690				6,076	6,076		6,076				9,097
- 자치단체 자본보조(33008)	1,070	1,000	[4,092]			0,070	0,070	[1,681]	0,070	[1,681]			7,077
	7.000	7 000				2 227	2 227	-	2 227				696
· 고도탐방거점조성	7,088	7,088				3,227	3,227		3,227	3,227			686
			[4,074]					[2,349]		[2,349]			,
- 자치단체 지본보조(33008)	7,088	7,088				3,227	3,227		3,227	3,227			686
` ′	0.000	0.000	[4,074]			4.600		[2,349]	4.000	[2,349]			. .
· 역사문화권 정비	3,000	3,000				4,600			4,600	4,548		52 52	6,650
-일반연구비(260-01)	3,000	3,000	2,911			1,600 3,000	1,600 3,000		1,600 3,000			52	1,100 5,550
- 자치단체 지본보조(33008)						3,000	<i>3,</i> 000 		3,000				5,550
·								[2,358]		[2,35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o 과거 정치·문화·경제 중심지였던 고도(古都: 경주·공주·부여·익산)의 특성에 부합하는 역사도시 이미지 조성 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으로 고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 조성
- (고도기반 구축·운영)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운영, 고도 정책연구 및 경상운영비
- (고도 핵심유적 정책·운영) 신라왕경 및 백제왕도 핵심유적 정책연구 및 경상운영비
-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한옥·담장·옛길·역사자원 정비 등 역사문화환경 개선을 통한 역사도시 이미지 찾기
- (고도 역사도시 조성) 고도지정지구육성 및 고도주민활동지원 사업을 통한 고도 활성화
- (고도 탐방거점 조성) 고도탐방거점센터 건립 등 사업
- (역사문화권 정비) 역사문화권 조사·연구를 통한 가치 규명 및 체계적인 정비·육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8조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제10조(지구의 지정 등), 제16조(사업 비용)의 전체 조항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제7조(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2조 (추진단의 설치 및 기능)의 전체 조항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8조(기초조사), 제9조(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의 작성 등), 제11조(역사문화권 내 매장문화재 발굴), 제14조(역사문화권정비구역의 지정 등), 제24조(사업비용)의 전체 조항
- ② 추진경위
-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제정('04.3.5. 공포) 및 시행('05.3.6.)
- 고도 관리 정부정책 전환('11.7.21.) : 고도 **보존** → 고도 **보존 + 육성**

개정 :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공포 '11.7.21, 시행 '12.7.22.)

- 고도 지구 지정 완료 및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승인('12.3.5.)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 추진('14년~)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추진단설치(국무총리훈령 제628호, '14.4.28.)→(특별법 '19.12.10.)

-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 추진('17년~)

백제왕도핵심유적보존관리사업추진단설치(국무총리훈령 제700호, '17.12.5.)

- 고도 지정지구 및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변경('17년, '20년, '22년)

	고도 지정지구 현황 (단위:만m²)												
구분	경주	공주	부여	익산	계								
1 E	(2017.9월 변경)	(2020.6월 변경)	(2017.12월변경)	(2022.8월 변경)									
특별보존지구	255.3	267.6	155.0	179.6	857.5								
보존육성지구	105.3	156.3	125.3	128.9	515.8								
계	360.6	423.9	280.3	308.5	1373.3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20.6.9. 공포) 및 시행('21.6.10.) :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등 6개 역사문화권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22.1.18. 공포) 및 시행('22.7.19.) : 중원, 예맥 등 2개 역사문화권 신설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시행('23.1.17.) : 후백제 역사문화권 신설
- 역사문화권 정비 기본계획 수립 고시('22.4.12.)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05~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 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5,971	9,588	20,028	19,455	20,161

- 기타 : 고도(古都 : 경주·공주·부여·익산/고도지정지구 1,373만㎡ 포함)대상 고도 보존육성사업, 역사문화권 대상 정비사업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지자체보조(보조율 국비 50%, 70%)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고도 및 역사문화권 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고도·역사문화권 거주 주민 및 관광객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게여기어퍼	7.8	피보조·피출	지원 금액	지원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내역사업명	구분	연 등 기관명	(2024예산)	비율(%)	포스될 접적인기 (애정 조명)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보조	지자체 보조(경주시,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	3,000백만원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 122							
고도 역사도시 조성	보조	지자체 보조(경주시,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	9,256백만원	70,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 122							
고도 탐방거점 조성	보조	지자체 보조(부여군, 경주시)	686백만원	7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 122							
역사문화권 정비	보조	지자체 보조 (전남, 전북 등)	5,550백만원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 122							

(3) 문화재수리기술진흥 (2132-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060	064
명칭	글반외계	- 단와세경 -	[군와세모는 T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2	303
명칭	문화재보존관리	기념물문화재 보존강화	문화재수리기술진흥

□ 사업 성격

신규	괴소	완료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ゼπ	세숙 	世五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0			0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0			0		70	

사업명			구분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수리	소관부처	문화재보존국	김재길	윤진영	강태용
기술진흥		수리기술과	042-481-4860	042-481-4861	042-481-4862
,, , , ,	사업시행주체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	202	4년	중감	
71 日 3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문화재수리기술진흥	11,371	26,808	8,555	8,837	△17,971	△67.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2022					2023(′	23.12월	말)			
									전년도	. – .			
	예산액	예산	집행액	. 161.2	22.6.20		예산	집행액	제		이월	불용	2024
	(추경)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상액		예산
○ 기능별 분류(합계)	13,558	16,739	11,371	4,615	754	26,808	31,423	16,753	26,808	12,223	14,040	629	8,837
·문화재수리 일반 관리	186	209	196		13	186	186	177	186	177		9	186
· 문화유가운정비및	1,135	1,135	1,133 [319]		2	1,138	1,138	1,127 [326]	1,138	1,127 [326]		11	770
·국고보조사업 설계 심사 및 기술지도	339	320	313		7	239	239	234	239	234		5	239
·문화재수리재료 센터 건립	6,000	9,177	6,929	2,177	71	21,791	23,968	9,552	21,791	7,437	13,864	551	
· 문화재수리재료 센터 운영													3,308
· 전통재료 진흥	1,000	1,000	1,000 [335]			1,000	1,000	1,000 [835]	1,000	1,000 [299]			600
· 차세대문화재수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4,898	4,898	1,799	2,439	661	2,454	4,893	4,663	2,454	2,248	176	53	2,454
· 전통건축부재보존 센터 3수장고 증축													230
·취약지역 문화유 산 보존관리													1,050
○ 비목별 분류(합계)	13,558	16,739	11,371	4,615	754	26,808	31,423	16,753	26,808	12,223	14,040	629	8,837
· 상용임금 (110-03)	58	58	57		1	59	59	58	59	58		1	60
· 일반수용비 (210-01)	321	263	261		2	329	296	293	296	293		3	330
· 공공요금및재세 (210-02)	9	12	12			9	12	10	12	10		2	9
· 특근매식비 (210-05)	6		2		4	6	6	3	6	3		3	6
·임차료 (210-07)	395		25		380	375	384	200		200	176	8	375
· 복리후생비 (210-12)	1	1	1			1	1	1	1	1			1

			2022			2023('23.12월말)							
								(전년도	<u> </u>			
	예신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제 예산 현액	외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2024 예산
· 일반용역비		41	40		1		22	22	22	22			
(210-14) • 관리용역비 (210-15) • 국내여비	82	82	82			77	77	77	77	77			813 77
(220-01) · 국외여비 (220-02)	20	43	35		8	20	20	16	20	16		4	20
· 관서업무비 (240-02)	8	8	8			7	7	7	7	7			7
· 일반연구비 (260-01)	3,860	3,860	2,122	1,602	136	2,387	3,989	3,979	2,387	2,377		10	2,451
· 배상금 (310-02)		5	5										
· 포상금 (310-03)	14	14	14			14	14	14	14	14			
· 민간경상보조 (320-01)	326	326	326 [319]			326	326	326 [326]	326	326 [326]			2,608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200	200	200			220	200	200	200	200			1,100
· 법정민간대행사업비 (320-08)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 고용부담금 (320-09)	11	11	11			11	12	12	12	12			12
·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800	800	800 [335]			800	800	800 [836]	800	800 [2 99]			400
・건설보상비 (410-01)	1,282	1,282	1,281		1	703	703	396	703	396	228	79	
· 실시설계비 (420-02)		98	98										230
· 공사비 (420-03)	4,348	7,876	5,011	2,177	60	19,745	21,922	9,123	19,745	7,008	12,531	268	
· 감리비 (420-04)	300	460	460			1,303	1,303		1,303	0	1,105	197	
· 시설부대비 (420-05)	70	70	60		10	40	40	33	40	33		7	
· 자산취득비 (430-01)	1,116	1,116	129	837	150	65	901	854	65	40		47	8
○ 기능비목별 분류 (합계)	13,558	16,739	11,371	4,615	754	26,808	31,423	16,753	26,808	12,223	14,040	629	8,837
·문화재수리 일반 관리	186	209	196		13	186	186	177	186	177		9	186
-일반수용비 (210-01)	146	146	139		2	147	147	144	147	144		3	147
-임차료 (210-07)	6	6	6			6	6	6	6	6			6
-특근매식비 (210-05)	4	4	1		3	4	4	2	4	2		2	4
-국내여비 (220-01)	6	6	6			6	6	6	6	6			6

			2022			2023(′23.12월말)							
									전년도				2024 예산
	예신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 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제 예산 현액	. – .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국외여비 (220-02)	20	20	35		8	20	20	16	20	16		4	20
-관서업무추진비 (240-02) -배상금	5	5 5	2 5			3	3	3	3	3			3
(310-02) 문화사라 문제 및	1,135	1,135			2	1,138	1,138	1,127 [326]	1,138	1,127 [326]		11	770
수라장사 지원 관리 -상용임금 (110-03)	58	58	57		1	59	59	[326] 58	59	58		1	60
-일반수용비 (210-01)	34	12	12			34	12	12	12	12			35
-공공요금및재세 (210-02)	3	3	3			3	3	3	3	3			(
-복리후생비 (210-12)	1	1	1			1	1	1	1	1			
-일반용역비 (210-14)		22	21		1		22	22	22	22			
-국내여비 (220-01)	7	7	7			7	7	7	7	7			
-관서업무추진비 (240-02)	2	2	2			2	2	2	2	2			
-일반연구비 (260-01)	350	350	350			350	350	340	350	340		10	12
-포상금 (310-03)	14	14	14			14	14		14	14			
-민간경상보조 (320-01) -민간위탁사업비	326	326	326 [319]			326	326	326 [326]	326	326 [326]			20
(320-02) -법정민간대행시업비 (320-08)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33
-고용부담금 (320-09)	11	11	11			12	12	12	12	12			1
국고보조사업 설계 심사 및 기술지도	339	320	313		7	239	239	234	239	234		5	23
-일반수용비 (210-01)	142	110	110			147	135		135	135			14
- 공공요금 및재세 (210-02) -특근매식비	6	6 2	6 1		1	6	9	7 1	9	7		2	
-흑근매식미 (210-05) -임차료	9	19	19		1	9	18		18	16		2	
-임자료 (210-07) -일반용역비 (210-14)	9	19	19			9	10	10	10	10		2	
-국내여비 (220-01)	70	70	70			64	64	64	64	64			64
-관서업무추진비 (240-02)	3	3	3			3	3	3	3	3			,

			2022			2023('23.12월말)							
								`	전년도	이월액			
	예산액	예산	집행액	. 16141	12 A AT		예산	집행액	제	외	이월	불용	2024
	(추경)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상액		예산
-연구용역비 (260-01)	100	100	95		5					<u> </u>			
-자산취득비 (430-01)	8	8	7		1	8	8	8	8	8			8
·문화재수리재료 센터 건립	6,000	·		2,177	71	21,791	23,968	9,552	21,791	7,487	13,864	551	
-일반용역비 (210-14)		19	19										
-건설보상비 (410-00)	1,282	1,282	1,281		1	703	703	396	703	396	228	79	
-실시설계비 (420-02)		98	98										
-공사비 (420-03)	4,348	7,248	5,011	2,177	60	19,745	21,922	9,123	19,745	7,008	12,531	268	
-감리비 (420-04)	300	460	460			1,303	1,303		1,303		1,105	197	
-시설부대비 (420-05)	70	70	60		10	40	40	33	40	33		7	
·문화재수리재료 센터 운영													3,308
-민간경상보조 (320-01)													2,608
-민간위탁사업비 (320-02)													700
· 전통재료 진흥	1,000	1,000	[335]			1,000	1,000	1,000 [836]		1,000 [299]			600
-민간위탁사업비 (320-02)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800	800	[335]			800	800	800 [836]		800 [299]	450		400
· 차세대문화재수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4,898	4,898	1,799	2,439		2,454	4,892	4,695		2,279	176		2,454
-임차료 (210-07)	380	380			380	360	360	178	360	202	176	6	360
-관리용역비 (210-15)													813
-연구용역비 (260-01)	3,410				131	2,037	3,639	·		2037			1,281
-자산취득비 (430-01)	1,108	1,108	122	837	150	57	893	854	57	40		47	
· 전통건축부재보존 센터 3수장고 증축													230
-실시설계비 (420-02)													230
·취약지역 문화유 산 보존관리													1,050
-일반연구비 (260-01)													1,050

1) 사업목적·내용

- ㅇ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도 및 정책(기술, 기준, 전통재료 등)을 체계적이고·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문화재수리 품질향상 및 문화재수리업 발전 도모
- (문화재 수리 일반관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운용하고 수리법 작성·개정 등 업무와 법정위원회인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운영 등
- (문화재수리 기준 개정 및 기술(기능)자 지원 등) 문화재수리 품셈·시방서를 정비하고 문화재수리종사자를 대상으로 자격관리·교육·기술지원 등의 업무 진행
- (국고보조사업 설계심사 및 기술지도) 국고보조사업의 설계심사와 기술지도 업무를 진행하고, 문화재수리 현장점검과 설계심사관 제도 운영
- (문화재수리재료센터 운영) 문화재수리 재료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문화재수리재 료센터 운영
- (전통재료 진흥) 단절되어가고 영세한 전통재료 산업을 지원하고, 기법들을 연구·보급하여 문화재수리의 정통성 제고
- (차세대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문화재 수리행정 시스템의 고도화 및 민원서비스의 온라인화를 위해 차세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취약지역 문화유산 보존관리) 이상기후 및 재해 등 취약지역 문화유산 피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보존관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문화재수리 등의 계획 수립)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문화재수리 등의 기준 보급)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전통기술의 보존·육성·보급)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및 제12조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의 발급 등)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문화재수리의 설계승인) 및 33조의5 (설계심사관의 지정)
 - 문화재보호법 제15조 (문화재 보호활동의 지원 등)
 - 문화재보호법 제17조 (문화재 국제교류협력의 촉진 등)
 - 문화재수리 계약예규 (문화재청 예규 제169호/'16.9.19)

② 추진경위

- 직제개편으로 국고보조사업 중 중요문화재 보수사업에 대한 설계심사·기술지도 전 담부서 신설('09.4) 및 설계심사관 제도 운영('20.12)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에 따른 후속 기준 마련
- 문화재수리기능 맥 전승을 위한 문화재수리 기술활동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09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3,327	7,482	13,558	26,808	8,83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지자체자본보조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지자체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4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문화재수리		전통건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료센터	보조	수리기술	2,608	100	제4조 1항(별표1 122)			
운영		진흥재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 4형			
전통재료		지자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산기반시설	보조	보조	400	70, 50				
지원		<u> </u>			제4조 1항(별표1 122)			

(4) 칠백의총시설관리운영 (2132-3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Ol મો. જો ગો	ㅁ쉵케ᅱ	무취케Hᄌ그		060	064
명칭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2	306
명칭	문화재보존관리	기념물문화재 보존강화	칠백의총시설관리운영

[□ 사업 성격											
	λl 7.	계속	o) =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21円	계숙	[전묘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0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1 -2 -1 - 1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칠백의총시	소관부처	문화재청	윤찬균	-	원종완							
설관리운영		칠백의총관리소	041-753-8701	-	041-753-8702							
	사업시행주체	문화재청	칠백의총관리소	윤찬균	041-753-8701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	202	4년	증감	
160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칠백의총시설관리	4,643	2,632	1,949	1,949	△683	△25.9
운영	4,043	2,032	1,949	1,949	△ 003	△ 23.9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	023('23	.12월밀	<u>:</u>)				
						예신	·액			전년도				
	예산액	예산	집행액	~]0]VJ	H 0 AN	" -	- '	예산	집행액	제	•	이월	불용	2024
	(추경)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수정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상 액	예상 액	예산
○기능별 분류(합계)	5,271	6,054	4,643	1,211	200	2,632	2,632	3,843	3,682	2,632	2,471		161	1,949
· 칠백의사 순의정신 선양	64	48	40	-	8	64	64	54	54	54	54		0	134
· 칠백의총 경상관리	971	1,002	975	-	27	1,051	1,051	1,061	1,015	1,061	1,015		46	1,133
· 칠백의총 유적종합정비	3,960	4,728	3,416	1,211	101	1,266	1,266	2,477	2,379	1,266	1,168		98	-
· 칠백의총 시설정비	276	276	212	-	64	251	251	251	234	251	234		17	682
○비목별 분류(합계)	5,271	6,054	4,643	1,211	200	2,632	2,632	3,843	3,682	2,632	2,471		161	1,949
· 상용임금(110-03)	411	401	396	-	5	483	483	483	464	483	464		19	499
· 일용임금(110-04)	111	111	106	-	5	54	54	54	53	54	53		1	54
· 일반수용비(210-01)	139	128	124	-	4	136	136	117	117	117	117		0	197
· 공공요금및제세(210-02)	47	57	57	-	0	47	47	57	57	57	57		0	47
· 특근매식비(210-05)	4	4	2	-	2	4	4	1	1	1	1		0	4
· 임차료(210-07)	16	17	17	-	0	16	16	20	19	20	19		1	16
· 유류비(210-08)	4	4	4	-	0	4	4	4	3	4	3		1	4
· 시설장비유지비(210-09)	79	79	77	-	2	100	100	119	119	119	119		0	100
·재료비(210-11)	23	23	19	-	4	23	23	14	14	14	14		0	23
· 복리후생비(210-12)	5	5	5	-	0	8	8	8	7	8	7		1	8
· 일반용역비(210-14)	-	15	15	-	0	14	14	14	10	14	10		4	15
· 관리용역비(210-15)	82	82	72	-	10	97	97	95	84	95	84		11	97
· 국내여비(220-01)	6	6	6	-	0	6	6	6	6	6	6		0	6
· 관서업무추진비(240-02)	2	2	2	-	0	2	2	2	2	2	2		0	2
· 일반연구비(260-01)	-	-	-	-	-	-	-	-	-	-	-			70
· 고용부담금(320-09)	79	90	87	-	3	94	94	94	86	94	86		8	98
· 실시설계비(420-02)	34	34	32	_	2	64	64	64	62	64	62		2	47
· 공사비(420-03)	3,735	4,492	3,286	1,065	141	1,418	1,418	2,483	2376	1,418	1311		107	607
· 감리비(420-04)	456	466	301	146	19	24	24	170	169	24	23		1	24

			2022					2	.023("23	3.12월밀	h			
						예소	·애		,	전년도	이월액			
	예산액	예산	집행액	المالمال	HOAT	-11 2	<u>-</u> 7	예산	집행액	제		이월	불용	2024
	(추경)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 산	수정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u>실</u> 집 행액]	예상 액	황 핵	예산
· 시설부대비(420-05)	11	11	8	-	3	11	11	11	6	11	6		5	4
· 자산취득비(430-01)	27	27	27	-	0	27	27	27	27	27	27		0	27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5,271	6,054	4,643	1,211	200	2,632	2,632	3,843	3,682	2,632	2,471		161	1,949
· 칠백의사 순의정신 선양	64	38	38	-	8	64	64	54	54	54	54		0	134
-일반수용비(210-01)	50	28	28	-	4	50	50	39	39	39	39		0	50
-재료비(210-11)	4	4	4	-	4	4	4	4	4	4	4		0	4
-임차료(210-07)	10	6	6	-	0	10	10	11	11	11	11		0	10
-연구용역(260-01)	-	-	-	-	-	-	-	-	-	-	-		-	70
· 칠백의총 경상관리	971	1,012	977	-	27	1,051	1,051	1,061	1,015	1,061	1,015		46	1,133
-상용임금(110-03)	411	401	396	-	5	483	483	483	464	483	464		19	499
-일용임금(110-04)	111	111	106	-	5	54	54	54	53	54	53		1	54
-일반수용비(210-01)	89	100	96	-	-	86	86	78	78	78	78		0	147
-공공요금및제서(210-02)	47	57	57	-	-	47	47	57	57	57	57		0	47
-특근매식비(210-05)	4	4	2	-	2	4	4	1	1	1	1		0	4
-임차료(210-07)	6	11	11	-	-	6	6	9	8	9	8		1	6
-유류비(210-08)	4	4	4	-	-	4	4	4	3	4	3		1	4
-시설장비유자비(210-09)	79	79	77	-	2	100	100	119	119	119	119		0	100
-재료비(210-11)	19	19	15	-	-	19	19	10	10	10	10		0	19
-복리후생비(210-12)	5	5	5	-	-	8	8	8	7	8	7		1	8
-일반용역비(210-14)	-	15	15	-	-	14	14	14	10	14	10		4	15
-관리용역비(210-15)	82	82	72	-	10	97	97	95	84	95	84		11	97
-국내여비(220-01)	6	6	6	-	-	6	6	6	6	6	6		0	6
-관서업무추진비(240-02)	2	2	2	-	-	2	2	2	2	2	2		0	2
-고용부담금(320-09)	79	89	86	-	3	94	94	94	86	94	86		8	98
-자산취득비(430-01)	27	27	27	-	-	27	27	27	27	27	27		0	27
· 칠백의총 유적종합정비	3,960	4,728	3,416	1,211	101	1,266	1,266	2,477	2,379	1,266	1,168		98	-
-실시설계비(420-02)	20	20	19	-	1	42	42	42	41	42	41		1	-
-공사비(420-03)	3,476	4,233	3,090	1,065	78	1,203	1,203	2,268	2,174	1,203	1,109		94	-
-감리비(420-04)	453	463	298	146	19	12	12	158	158	12	12		0	-
-시설부대비(420-05)	11	11	8		3	9	9	9	6	9	6		3	-
· 칠백의총 시설정비	276	276	212	_	64	251	251	251	234	251	234		17	682
-실시설계비(420-02)	14	14	13	_	1	22	22	22	21	22	21		1	47
-공사비(420-03)	259	259	196	_	63	215		215		215			13	607
-감리비(420-04)	3	3	3	-	-	12	12	12		12	11		1	24
-시설부대비(420-05)	-	-	-	-	-	2	2	2	0	2	0		2	4

1) 사업목적·내용

- (칠백의사 순의정신 선양) 칠백의사의 호국정신 및 위업 선양
- (칠백의총 경상관리) 유물 및 조경관리 등을 통한 칠백의총의 보존·관리, 대국민 관람 서비스 향상 및 관람객 만족도 제고
- (칠백의총 유적종합정비) 관람환경 개선 및 항일 유적지로서의 위상 제고
- (칠백의총 시설정비) 칠백의총 시설·안전 공사를 통한 칠백의총의 효율적인 관리 및 관람객 편의·안전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1항
 - ·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제1항
 - ·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문화재를 관리· 보호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칠백의총의 효율적 관리 및 관람객 편의시설 확충·개선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양질의 관람서비스 제공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5,113	2,656	5,271	2,632	1,949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칠백의총관리소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5) 현충사 유적관리 (2132-3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Ol મો. જો ગો	ㅁ쉵케귕	문화재보존국		060	064
명칭	일반회계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2	307
명칭	문화재보존관리	기념물문화재 보존강화	현충사 유적관리

그 사	업 성	격				
גן ד	계속	റി =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21年	/ll 寸 	[전묘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0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О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현충사	소관부처	문화재보존국	황상원(소장)	심유신	김진영
유적관리		현충사관리소	041-539-4601	041-539-4602	041-539-4605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	202	4년	증감	
71 11 6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현충사 유적관리	3,925	5,471	3,523	3,523	△1,948	△35.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	23.12월	말)			
									전년도	. — .			
	예산액	예산	집행액				예산	집행액	제	•	이월	불용	2024
	"근 (추경)	^{개 L}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 L}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상액	예산
○ 기능별 분류(합계)	4,161	4,223	3,925	15	284	5,471	5,486	4,039	5,471	4,024	912	535	3,523
· 현충사·충무공기 념관운영	907	969	879	15	<i>7</i> 5	908	923	800	908	785	37	86	916
·시설·조경관리	691	691	501		190	3,494	3,494	2,296	3,494	2,296	875	323	2,177
· 현충사유적종합 정비	2,563	2,563	2,545		18	1,069	1,069	944	1,069	944	-	125	430
○ 비목별 분류(합계)	4,161	4,223	3,925	15	284	5,471	5,486	4,039	5,471	4,024	912	535	3,523
· 상용임금(110-03)	205	205	200		5	211	211	173	211	173	-	39	217
· 일용임금(110-04)	80	80	80			80	80	78	80	78	-	2	80
· 일반수용비(210-01)	267	215	214			260	237	237	237	237	-	-	261
· 공공요금(210-02)	15	32	28		5	15	35	32	35	32	-	3	15
· 임차료(210-07)	31	66	65		1	31	31	31	31	31	_	-	36
· 시설장비유지비(21009)	21	24	24			21	24	24	24	24	_	-	21
· 복리후생비(210-12)	2	2	2			3	3	3	3	3	_	-	3
· 일반용역비(210-14)	265	262	187	15	59	305	320	244	305	229	37	39	190
· 관리용역비(210-15)	50	50	42		8	25	25	20	25	20	_	5	380
· 국내여비(220-01)	5	5	3		2	5	5	4	5	4	-	1	5
· 사업추진비(240-01)	4	3	2		1	3	3	3	3	3	_	-	3
· 일반연구비(260-01)	-	62	62			-	-		-				190
· 포상금(310-03)	10	10	8		2	10	10	6	10	6	_	4	10
· 고용부담금(320-09)	40	40	40			41	41	40	41	40	_	1	43
· 건설보상비(410-00)	-	-				1,069	1,069	944	1,069	944	-	125	430

	2022						2023(′	 23.12월	말)				
									전년도	이월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제 예산	의 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2024 예산
	(T'8)	24	행액]				연극	행액	에겐 현액	[실집 행액]	भारत स	ભારુવ	
· 실시설계비(420-02)	176	176	85		91	8	8	8	8	8	-	-	102
· 공사비(420-03)	2,885	2,885	2,794		91	3,308	3,308	2,150	3,308	2,150	875	283	1,486
・감리비(420-04)	54	54	36		18	60	60	27	60	27	-	33	41
· 시설부대비(420-05)	9	9	9			13	13	13	13	13	-	-	8
· 자산취득비(430-01)	42	42	42			2	2	2	2	2	-	-	2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4,161	4,223	3,925	15	284	5,471	5,486	4,039	5,471	4,024	912	535	3,523
· 현취공기관연	907	969	879	15	75	908	923	800	908	785	37	86	916
-상용임금(110-03)	205	205	200		5	211	211	173	211	173	-	39	217
-일반수용비(210-01)	267	215	214			261	237	237	237	237	-	-	261
-공공요금(210-02)	15	32	28		5	15	35	32	35	32	-	3	15
-임차료(210-07)	31	66	65		1	31	31	31	31	31	-	-	36
-시설재 (21009)	21	24	24			21	24	24	24	24	-	-	21
-복리후생비(210-12)	2	2	2			3	3	3	3	3	-	-	3
-일반용역비(210-14)	265	262	187	15	59	305	320	244	305	229	37	39	190
-국내여비(220-01)	5	5	3		2	5	5	4	5	4	-	1	5
-사업추진비(240-01)	4	3	2		1	3	3	3	3	3	-	-	3
-일반연구비(260-01)	-	62	62	-				-		-	-	-	110
-포상금(310-03)	10	10	8		2	10	10	6	10	6	-	4	10
-고용부담금(320-09)	40	40	40			41	41	40	41	40	-	1	43
-자산취득비(430-01)	42	42	42			2	2	2	2	2	-	-	2
· 시설·조경관리	691	691	501		190	3,494	3,494	2,296	3,494	2,296	875	323	2,177
-일용임금(110-04)	80	80	80			80	80	78	80	78	-	2	80
-관리용역비(210-15)	50	50	42		8	25	25	20	25	20	-	5	380
-일반연구비(260-01)	-					-	-	-	-	-	-	-	80
-실시설계비(420-02)	176	176	85		91	8	8	8	8	8	-	-	102
-공사비(420-03)	385	385	294		91	3,308	3,308	2,150	3,308	2,150	875	283	1,486
-감리비(420-04)						60	60	27	60	27		33	41
-시설부대비(420-05)						13	13	13	13	13		-	8
• 현충사 유적종합정비	2,563	2,563	2,545		18	1,069	1,069	944	1,069	944	-	125	430

			2022					2023(′	23.12월	말)			
	പിചിവി	וג ווג	집행액				וג ווג	집행액	전년도 제	이월액 외	A) 6)	но	2024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건설보상비(410-00)						1,069	1,069	944	1,069	944	-	125	430
-공사비(420-03)	2,500	2,500	2,500			-	-	-	-		-	-	-
-감리비(420-04)	54	54	36		18	-	-	-	_		-	-	-
-시설부대비(420-05)	9	9	9			-	-	-	-		-	-	-

1) 사업목적·내용

- (현충사유적관리) 현충사 및 이충무공묘소(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 정비, 관람 편의시설 확충 및 충무공이순신기념관 운영 등을 통하여 충무공의 위업 선양, 지역문화유산 활용 등 지역 관광 콘텐츠 기반 조성
- (현충사·충무공기념관 운영) 국가 기념행사(충무공 탄신일), 국가지정문화재(현충사, 이충무공묘소) 관리, 충무공기념관 운영 및 문화재 활용사업(야간개방,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이순신 표준영정 재제작 등
- (시설·조경관리) 현충사 및 이충무공묘소 시설·조경·산림 등 경상관리
- (현충사 유적종합정비) 이충무공묘소 종합정비 및 토지매입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 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기념일 등)
- ② 추진경위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현충사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2005.08.)
 - ※ 1970년대 성역화 사업 때 조성된 관람시설물이 노후화되고 국민문화 수준에도 맞지 않아 개선 필요성 제기
 - (1단계) 충무공이순신기념관 건립(2006~2011)
 - · 2006년 : 이충무공기념관 기본설계 완료

- 2007년 : 이충무공기념관 실시설계 완료
- · 2008년~2011년 : 기념관 건립공사(4개년 공사)
- (2단계) 현충사 주차장권역 정비(2012~2013)
- (3단계) 현충사 경내권역 정비(2015~2018)
- 현충사(사당), 구현충사, 고택 및 활터, 연못, 참배로, 안내판 정비 등
- (4단계) 이충무공묘소 정비(2018~2022)
 - · 2018년 : 이충무공묘 실시설계 완료
 - · 2019년 : 묘역 참배로(배수로, 포장) 정비, 홍살문 목재교체 및 조경
 - · 2020년 : 재실 및 화장실 신축 정비 등
 - 2021년 : 관리사무소 및 주차장 신축 기반조성
 - · 2022년 : 관리사무소 완공, 참배로 포장 및 기타 편의시설 정비
 - · 2023년 : 관리사무소 및 주차장 부지 등 토지매입(1차)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2,627	2,829	4,161	5,471	3,523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

- 사업 수혜자 : 국민

(6) 만인의총시설관리운영 (2132-30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Ol HJ જો ગો	ㅁ쉵케ᅱ	무취케Hᅎ그		060	064
명칭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2	309
명칭	문화재보존관리	기념물문화재 보존강화	만인의총시설관리운영

] 사	·업성	격				
X	신규	괴소	റി =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í	7 TT	계속	[전묘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0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만인의총시	소관부처	문화재청	-	장승호	노봉식					
설관리운영		만인의총관리소	-	063-636-9322	063-636-9337					
	사업시행주체	문화재청	만인의총관리소	장승호	063-636-9322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	202	4년	증감	
71 日 0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만인의총	6 000	4.053	6.010	6 OE1	2 800	71 E
시설관리운영	6,888	4,052	6,918	6,951	2,899	71.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23.12월]말)			
									전년도	. – .			
	예산액	예산	집행액		불용		예산	집행액	제		이월	불용	2024
	#연기 (추경)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액	본예산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상 액	예상액	예산
○ 기능별 분류(합계)	7,659	8,050	6,888	803	358	4,052	4,855	3,454	4,052	2,651	849	552	6,951
· 만인의총 순의정신 선양	60	60	60			60	60	60	60	60			80
• 만인의총 경상관리	463	471	424		47	430	430	412	430	412		18	814
· 만인의총 시설정비	280	280	276		4	354	354	346	354	346		8	294
· 만인의총 유적종합정비	6856	7,239	6,128	803	306	3,208	4,011	2,636	3,208	1,833	849	526	5,763
○ 비목별 분류(합계)	7,659	8,050	6,888	803	358	4,052	4,855	3,454	4,052	2,651	849	552	6,951
· 상용임금(110-03)	143	143	109		34	149	149	138	149	138		11	209
· 일용임금(110-04)	49	49	49			49	49	49	49	49			49
· 일반수용비(210-01)	86	86	81		5	161	148	148	148	148			164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26	24	23		1	26	30	30	30	30			30
· 임차료(210-07)	11	15	15			11	18	18	18	18			15
· 유류비(210-08)	2	2	2			2	2	2	2	2			3
· 시설장비유지비(210 -09)	19	15	15			19	16	16	16	16			19
· 재료비(210-11)	8	8	6		2	8	8	8	8	8			13
· 복리후생비(210-12)	2	2	2			3	2	2	2	2			4
· 일반용역비(210-14)	5	5	5			7	8	8	8	8			241
· 관리용역비(210-15)	66	68	66		2	69	74	69	74	69		5	78
· 국내여비(220-01)	3	3	3			3	3	3	3	3			3
· 고용부담금(320-09)	28	28	25		3	29	29	27	29	27		2	41
· 건설보상비(410-00)	70	70	61		9	270	270	0	270			270	-
· 실시설계비(420-02)	19	19	19			251	251	19	251	19			19
・공사비(420-03)	6,449	6,755	5,757	713	285	2,787	3,369	2,494	2,677	1,802	617	258	5,947
· 감리비(420-04)	522	598	543	39	16	130	300	294	240	234		6	75
· 시설부대비(420-05)	16	16	16			64	64	64	64	64			16
· 자산취득비(430-01)	<i>7</i> 5	83	31	51		15	66	66	15	15			26
· 무형자산(440-00)	60	60	60	-	-	-	-	-	-	-	-	-	-

			2022					2023(′	23.12월	말)			
									전년도				
	예산액	예산	집행액		ĦΔ		예산	집행액	제	외	이월	불용	2024
	예산책 (추경)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 액	본예산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상 액	물용 예상액	예산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7,659	8,050	6,888	803	358	4,052	4,855	3,454	4,052	2,651	849	552	6,951
· 만인의사 순의정신 선양	60	60	60			60	60	60	60	60			80
-일반수용비(210-01)	60	60	60			60	60	60	60	60			80
• 만인의총 경상관리	463	471	424		47	430	430	412	430	412		18	814
-상용임금(110-03)	143	143	109		34	149	149	138	149	138		11	209
-일용임금(110-04)	49	49	49			49	49	49	49	49			49
-일반수용비(210-01)	26	26	21		5	41	28	28	28	28			84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26	24	23		1	26	30	30	30	30			30
-임차료(210-07)	11	15	15			11	18	18	18	18			15
-유류비(210-08)	2	2	2			2	2	2	2	2			3
-시설장비유지비 (210-09)	19	15	15			19	16	16	16	16			19
-재료비(210-11)	8	8	6		2	8	8	8	8	8			13
-복리후생비(210-12)	2	2	2			3	2	2	2	2			4
-일반용역비(210-14)	5	5	5			7	8	8	8	8			241
-관리용역비(210-15)	66	68	66		2	69	74	69	74	69		5	78
-국내여비(220-01)	3	3	3			3	3	3	3	3			3
-고용부담금(320-09)	28	28	25		3	29	29	27	29	27		2	41
-자산취득비(430-01)	15	23	23			15	15	15	15	15			26
-무형자산(440-00)	60	60	60			0	0	0	0	0			0
• 만인의총 시설정비	280	280	276		4	354	354	346	354	346		8	294
-실시설계비(420-02)	19	19	19			19	19	19	19	19			19
-공사비(420-03) -감리비(420-04) -일반수용비(210-01)	261	261	257		4	261 14 60	261 14 60	254 13 60	261 14 60	254 13 60		7 1	261 14 0
· 만인의총 유적종합정비	6,856	7,239	6,128	803	306	3,208	4,011	2,636	3,208	1,833	849	526	5,763
-건설보상비(410-00)	70	70	61		9	270	270	0	270	0		270	0
-실시설계비(420-02)						232	232	0	232	0	232		0
-공사비(420-03)	6,188	6,494	5,522	692	281	2,526	3,218	2,350	2,526	1,658	617	251	5,686
-감리비(420-04)	522	598	522	60	16	116	176	171	116	111		5	61
-시설부대비(420-05)	16	16	16			64	64	64	64	64			16
-자산취득비(430-01)	60	60	9	51		0	51	51	0	0			0

1) 사업목적·내용

- (만인의총시설관리운영)
- (만인의사 순의정신 선양)
- * 만인의사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순의제향, 추모 예능대회 등 추진
- (만인의총 경상경비)
- * 만인의총 유지·관리를 위한 경상적 경비
- (만인의총 시설정비)
 - * 만인의총 유물, 시설 및 조경관리를 위한 경상적 시설정비
- (만인의총 유적종합정비)
- * 만인의총의 가치 부각 및 교육·홍보기능 강화, 관람환경 개선 등을 위한 종합적인 유적정비 추진
- · 정유재란 유적지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16.5월 이관) 사적지로 만인의사와 남원성전투 관련 다양한 콘텐츠 제공, 지역주민 누구나 휴식과 문화를 쉽게 누릴 수 있는 공간재설계 등을 통해 역사성과 활용성 제고
- · 종합정비 1단계('20.~'23년)로 노후 및 협소한 기념관(1980년, 129㎡) 및 관리사무 (1977년, 133㎡) 시설개선, 2단계('23.~'25년)로 노후화된 방재·보안 시설 최신화, 정문·담장·광장·주차장 정비 등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1항
 - ·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33조(소유자관리의 원칙) 제1항
 - ·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문화재를 관리·보호 하여야 한다.
-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계속사업

- 추진배경

· 문화재청(국가)은 조선시대 궁궐과 왕릉을 시초로 정신사적 중요문화재를 직접 관리 보존하고 있으며 만인의총도 사적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국가기관으로 관리 전환됨(전라북도 → 문화재청(2016.5.))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1,191	5,274	5,159	4,052	6,951

- 기타 : 만인의총 유적종합정비 사업

· 총사업기간 : '20년 ~ '25년

· 총사업비 : 175억원

· 단계별 사업 추진내용

(1단계 / '20.~'24.(5년) / 117억원) 기념관 및 관리사무소 건립 (2단계 / '23.~'25.(3년) / 58억원) 정문 정비, 광장 및 주차장 조성, 관리사 신축, 편의시설 설치, 기존 건축물 철거, 방재설비 구축 등 공간 재구성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만인의총관리소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7)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운영 (2132-31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문화재청	무칭케Hᅎ그		060	064
명칭	는 반 -	- 단 와세경	문화재보존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2	310		
명칭	문화재보존관리	기념물문화재 보존강화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운영		

□ 사업 성격

<u>ال</u> م	山山人	이근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2) T	신규 계속 완료	世五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0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10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전통건축수리	소관부처	문화재보존국	김재길	윤진영	강태용					
기술진흥재단 운영		수리기술과	042-481-4860	042-481-4861	042-481-4862					
	사업시행주체	전통건축수리 기술진흥재단	기획행정팀	함상혁	031-929-8322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	202	4년	증감	
71 日 0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전통건축수리기술	0.014	0.022	9 772	9 772	A 260	^ 2 0
진흥재단 운영	9,014	9,033	8,773	8,773	△260	$\triangle 2.9$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	23.12월	[말)			
전통건축수리 기술진홍재단 운영	예산액	예산	집행액	A10101	HOA	Halls	예산	집행액	전년도 제		이월	불용	2024 예산
기울산중세단 판정	(추경)	현액	[실집 행액]	이혈액	불용액	본예산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상액	예상액	,, _
○ 전통건축수리기술	9,014	9,014	9,014			9,033	9,033	9,033	9,033	9,033			8,773
진흥재단 운영(합계)			[2,876]	-	_			[2,862]		[2,862]	-	-	
·재단 운영지원	2,844	2,844	2,844 [2,876]	-	_	2,863	2,863	2,863 [2,862]	2,863	2,863 [2,862]	-	-	2,803
· 전통건축부재수집· 보존 및 조사·연구	570	5 7 0	570	-	-	570	570	570	570	570	-	-	670
· 전통건축 수리기술 진흥 보급 전승	300	300	300	-	-	300	300	300	300	300	-	-	300
· 문화재수리이력정 보관리시스템 구축	5,000	5,000	5,000	-	-	5,000	5,000	5,000	5,000	5,000	_	-	5,000
· 전통건축부재 활용 콘텐츠개발및전시기획	300	300	300	-	-	300	300	300	300	300	-	-	-
○ 비목별 분류(합계)	9,014	9,014	9,014 [2,876]	-	-	9,033	9,033	9,033 [2,862]	9,033	9,033 [2,862]	-	-	8,773
· 민간경상보조 (320-01)	2,844	2,844	2,844 [2,876]	-	-	2,863	2,863	2,863 [2,862]	2,863	2,863 [2,862]	-	-	2,803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6,170	6,170	6,170	-	-	6,170	6,170	6,170	6,170	6,170	-	-	5,97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9,014	9,014	9,014 [2,876]	-	-	9,033	9,033	9,033 [2,862]	9,033	9,033 [2,862]	-	-	8,773
· 민간경상보조 (320-01)	2,844	2,844	2,844 [2,876]	-	-	2,863	2,863	2,863 [2,862]	,	2,863 [2,862]	-	-	2,803
-재단 운영 지원	2,844	2,844	2,844 [2,876]	-	-	2,863	2,863	2,863 [2,862]	2,863	2,863 [2,862]	-	-	2,803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6,170	6,170	6,170	-	-	6,170	6,170	6,170	6,170	6,170	-	-	5,970
-전통건축부재수집·보존 및 조사연구	570	570	570	-	-	570	570	570	570	570	-	-	670

			2022					2023(′	23.12월	말)			
전통건축수리	예산액	예산	집행액				ત્યો તો.	기해애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불용	2024
기술진홍재단 운영	예산책 (추경)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상액		예산
-전통건축수리기술 진흥·보급·전승	300	300	300	-	-	300	300	300	300	300	-	-	300
-문화재수리이력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5,000	5,000	5,000	-	-	5,000	5,000	5,000	5,000	5,000	-	-	5,000
-전통건축부재활용콘텐츠 개발 및 전사기획	300	300	300	-	-	300	300	300	300	300	-	-	-

1) 사업목적·내용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운영(기관운영))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유지·관리 및 사업 수행을 위한 경상 운영비
 - ·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운영 및 경상비
 - · 재단 사업 수행을 위한 인건비
- (전통건축부재 수집·보존 및 조사·연구) 문화재 해체 수리 시 재사용 불가 등으로 소실되는 전통건축 부재 이관 후 과학적 분석(보수·보강 포함)을 통해 수리현장 내 부재 재사용 도모 및 고증자료가 불분명하여 문화재 보수정비 시 해체 후 방치 된 건축문화유산 중 지역개발 등의 이유로 멸실 위기에 처한 건물을 이건 후 활용
- (전통건축 수리기술 진흥·보급·전승) 대내외적 문화재수리 환경 변화, 사회적 요구 사항을 반영한 수리기준 개선과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기준 구축하며, 수리 시 발생 되는 수리보고서 등 체계적 수집과 DB화를 통한 활용
- (문화재수리이력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문화유산 수리 시 분산된 수리이력을 통합관 리하고, 수리이력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과학적 문화유산 수리 의사결정체계로 전환
- ·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을 통한 체계적 문화유산 생애주기 이력관리 구축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41조의 2(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설립) 재단 설립 목적, 예산 지원 근거 마련
- ① 전통건축 수리기술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1. 1. 26.>
-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④ 국가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⑤ 발주자는 국가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시행하는 문화재수리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단으로 하여금 문화재수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② 추진경위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13.12.3)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의결('15.12.31)
- 법률 공포('16. 2. 3) / 시행일('17. 2. 4)
- 문화재수리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설립('17.2.6.)
- 숭례문 화재 피해부재 보양 및 수집, 보존처리('17.10.)
- 문화재수리 보고서 등의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공개 업무 수행, 문화재청고시 업무 위탁기관 지정('18.6.12.)
- 운현궁 아재당 준공('22.5.27.)
-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전시관 개관('23.8.1.)

□ 주요내용

-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17년부터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4,976	9,805	9,014	9,033	8,773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금

- 사업시행주체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 사업 수혜자 : 전통 건축문화재 수리·보존 관계 기관, 일반 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4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전통건축수		전통건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리기술진흥	보조	수리기술	2,803	100	제4조 1항(별표1 122)
재단 운영		진흥재단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 4항

(8) 동아시아역사도시진흥원 건립 (2132-31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52	ㅁ칡케ㅂ즈그		060	064
명칭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2	314
명칭	문화재보존관리	기념물문화재 보존강화	동아시아역사도시진흥원건립

□ 사업 성격

<u> ۱</u> ۱ ٦	괴소	റി =	예비타당성			사업소관 변경정보
21円	계속	전묘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0				0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0		7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동아시아	소관부처	문화재보존국	조성래	이소연	임수연
역사도시		고도보존육성과	042-481-3100	042-481-3104	042-481-3107
진흥원 건립	사업시행주체	충남 부여군	문화재과	문대성 팀장	041-830-2640
	/Y 日/1977年41 	궁급 구역간	고도육성팀	판네78 검78	041-030-204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	202	4년	중감	
가입장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동아시아역사도시 진흥원건립	-	1,250	895	100	△1,150	△92.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	23.12월	!말)			
	예산액	예산	집행액				الدالم	집행액	1	이월액 외	이월	но	2024 예산
	예산택 (추경)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상액	불용 예상액	-11 C
○ 기능별 분류(합계)	879	879	0	-	879	1,250	1,250	1,250 (44)	1,250	1,250 (44)	-	-	100
· 동아시아 역사도시 진흥원 건립	879	879	0	-	879	1,250	1,250	1,250 (44)	1,250	1,250 (44)	-	-	100
○ 비목별 분류(합계)	879	879	0	-	879	1,250	1,250	1,250 (44)	1,250	1,250 (44)	-	-	100
·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879	879	0	-	879	1,250	1,250	1,250 (44)	1,250	1,250 (44)	-	-	10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879	879	0	-	879	1,250	1,250	1,250 (44)	1,250	1,250 (44)	-	-	100
· 동아시아 역사도시 진흥원 건립	879	879	0	-	879	1,250	1,250	1,250 (44)	1,250	1,250 (44)	-	-	100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879	879	0	-	879	1,250	1,250	1,250 (44)	1,250	1,250 (44)	-	1	100

1) 사업목적·내용

- ㅇ (동아시아역사도시진흥원 건립)
 - 인류 문화의 보편적 탁월한 가치를 인정받은 세계유산 고도를 세계적 역사문화 도시로 육성하고 진흥하기 위해 국제적 역량을 발휘하고 선도할 전문기관 건립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8조(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의 역사문화권의 역사문화도시 정체성 및 지역 발전 도모
- ② 추진경위
 - (2017년) 부여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에 반영(문화재청 승인)
 - (2019년) 『국립 동아시아 역사도시 진흥원 건립』기본구상 용역(부여군)
 - (2020년) 동아시아 역사도시 진흥원(부여) 타당성 조사(문화재청)
 - 사업 필요성 및 방향, 건립 위치의 적절성, 유사 기관과의 차별성, 적절한 기관 (국가기관 또는 재단)의 성격, 재원분담 방식, 매칭 비율 등 재정지원의 타당성 및 적합성 검토
 - (2021년.9월~2022.12월) KDI에서 「동아시아역사도시진흥원(부여) 건립사업에 대한 2021년도 국립시설 사전타당성조사 시범사업 용역 수행
 - (용역결과) B/C값 1.2로 경제성을 확보, 건립은 지방보조사업의 매칭 (국비70% : 지방비30%)방식으로 추진

□ 주요내용

-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32,886백만원
 - 사업기간 : 2023 ~ 2026(4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_	_	-	1,250	100

- 기타: 동아시아역사도시진흥원 건립 지원

- · 대지면적 28,107㎡, 연면적 6,807㎡(지상 3층)
- · 아카이브, 수장·보관시설, 컨벤션, 교육·교류시설, 사무시설, 체험·홍보시설, 편의시설 등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보조율 70%)

- 사업시행주체 : 충남 부여군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4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동아시아역사 도시진흥원 건립	보조	부여군	100	7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 122

(9) 천연기념물 및 명승 보호 (2133-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Ol મો. જો ગો	ㅁ쉵케귕	무취케H즈그		060	064
명칭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3	301
명칭	문화재보존관리	자연문화재보호	천연기념물 및 명승보호

	사	업 성	격				
גו	7.	계속	o) =	예비타당성			사업소관 변경정보
①	π	게숙	전묘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О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О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천연기념물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및 명승	소관부처	문화재보존국	이상협	강형도	한승훈
및 명승		천연기념물과	042-481-4980	042-481-4981	042-481-4982
보호	사업시행주체	직접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	202	4년	증감	
71 11 6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천연기념물 및	E 904	2 000	2.061	2.061	△19	^ O E
명승 보호	5,894	3,980	3,961	3,961	△19	△0.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	23.12월	말)			
									전년도	. – .			
	예산액	예산	집행액	343.0			예산	집행액	제		이월	불용	2024
	"근 (추경)	⁷ 년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 C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상액	예산
○ 기능별 분류(합계)	5,416	5,923	5,894		29	3,980	4,000	3,908	4,000	3,908		92	3,961
· 천연기념물·명승 지정 및 보존관리	468	497	492		5	460	521	520	521	520		1	501
· 천연기념물·명승 활용	3,315	3,761	3,758		5	2,010	1,969	1,889	1,969	1,889		80	1,810
· 천연기념물·명승 자원 및 실태 조사	1,510	1,541	1,527		14	1,510	1,510	1,499	1,510	1,499		11	930
· 천연기념물·명승 모니터링	123	123	119		4								
· 전통조경 보존관리													720
○ 비목별 분류(합계)	5,416	5,923	5,894		29	3,980	4,000	3,908	4,000	3,908		92	3,961
· 상용임금(110-03)	28	28	28			29	29	29	29	29			30
· 일반수용비 (210-01)	250	286	286			239	286	286	286	286			289
· 공공요금및제세 (210-02)	4	1	1			4	1	1	1	1			4
· 특근매식비 (210-05)	7	4	2		2	7	4	4	4	4			7
· 임차료(210-07)	24	24	24			24	23	22	23	22		1	24
· 복리후생비 (210-12)	0	0	0			0	0	0	0	0			1
· 일반용역비 (210-14)	2,837	3,283	3,276		7	1,532	1,512	1,432	1,512	1,432		80	1,912
· 국내여비(220-01)	89	89	89			90	99	99	99	99			90
· 국외업무여비 (220-02)	24	24	23		1	25	16	16	16	16			24
· 사업추진비 (240-01)	11	11	11			11	11	11	11	11			11

			2022					2023(′	23.12월	말)			
									전년도				
	예신액	예산	집행액				예산	집행액	제		이월	불용	2024
	애산택 (추경)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상액		예산
· 일반연구비 (260-01) · 포상금	1,633	1,664	1,646		18	1,510	1,510	1,499	1,510	1,499		11	1,030
(310-03)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30 500
고용부담금 (320-09)	5	5	5			6	6	6	6	6			6
· 자산취득비 (430-01)	3	3	3			3	3	3	3	3			3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5,416	5,923	5,894		29	3,980	4,000	3,908	4,000	3,908		92	3,961
· 천연기념물·명승 지정 및 보존관리	468	497	492		5	460	521	520	521	520		1	501
-상용임금 (110-03)	28	28	28			29	29	29	29	29			30
-일반 수용 비 (210-01)	250	286	286			239	286	286	286	286			279
- 공공 요금및제세 (210-02)	4	1	1			4	1	1	1	1			4
-특근매식비 (210-05)	7	4	2		2	7	4	4	4	4			7
-임차료(210-07)	24	24	24			24	23	22	23	22		1	24
-복리후생비 (210-14)	0	0	0		2	0	0	0	0	0			1
-일반용역비 (210-14)	22	22	20			22	43	43	43	43			22
-국내여비 (220-01)	89	89	89			90	99	99	99	99			90
-국외업무여비 (220-02)	24	24	23		1	25	16	16	16	16			24
-사업추진비 (240-01)	11	11	11			11	11	11	11	11			11
-고용부담금 (320-09)	5	5	5			6	6	6	6	6			6
-자산취득비 (430-01)	3	3	3			3	3	3	3	3			3
· 천연기념물·명승 활용	3,315	3,761	3,756		5	2,010	1,969	1,889	1,969	1,889		80	1,810
-일반용역비 (210-14)	2,815	3,261	3,256		5	1,510	1,469	1,389	1,469	1,389		80	1,310
-민간위탁사업비 (320-02)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 천연기념물·명승 자원 및 실태 조사	1,510	1,541	1,527		14	1,510	1,510	1,499	1,510	1,499		11	930
-일반연구비	1,510	1,541	1,527		14	1,510	1,510	1,499	1,510	1,499		11	930

			2022					2023(′	23.12월	말)			
	예산액	예산	집행액				ત્યી હો.	집행액	1	<u>이월액</u> 외	A) (i)	HΔ	2024
	애산택 (추경)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260-01) · 천연기념물·명승 모니터링	123	123	119		4					_			
-일반연구비 (260-01)	123	123	119		4								
· 전통조경 보존관리													720
-일반수용비 (210-01)													10
-일반용역비 (210-14) -일반연구비													580
-일반연구미 (260-01) -포상금													100
(310-03)													30

1) 사업목적·내용

- (천연기념물·명승 지정 및 보존관리) 자연유산 지정·해제 조사, 현상변경 행위에 대한 현지조사, 현상변경 허용 기준안 마련,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등 천연기념물 및 명승을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 (천연기념물·명승 활용) 국민들이 자연유산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천연기념물·명숭에 대한 활용 콘텐츠를 마련하고 홍보 등을 통해 보호의식을 확산
- (천연기념물·명승 자원 및 실태 조사) 천연기념물·명승의 자원 및 실태 조사 등을 통하여 자연유산(동물, 식물, 지질, 명승)의 지속적인 관리 및 그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함
- (전통조경 보존관리) 전통조경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 및 활용, 홍보 콘텐츠 개발 및 전통조경 보존관리 가이드라인 보급을 위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문화재보호법 제25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 문화재보호법 제6조(문화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7조(문화재 보존 시행계획 수립)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및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자연유산 보호계획의 수립) 문화재 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자연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연유산 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이하 "문화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전통조경 표준설계의 보급) 문화재 청장은 전통조경의 정체성 확립 및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하여 전통조경 표 준설계를 작성·보급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1998년 ~ 계속
- 추진배경: 자연유산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 지정·해제, 현상변경 행위에 대한 현지조사, 문화재위원회 운영 등을 통하여 자연유산에 대한 효율적인 보존관리 추진

□ 주요내용

-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해당없음
 - 사업기간: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2,375	2,764	5,416	3,980	3,961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직접수행, 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문화재청, 민간단체

- 사업 수혜자: 일반국민, 문화재 소유자·관리자 등

(10) 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 보조) (2134-7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Ol મો. જો ગો	ㅁ칡케칭	기하고자기		060	064
명칭	일반회계	문화재청	기획조정관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4	701
명칭	문화재보존관리	문화재보수정비	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보조)

□ 사업 성격									
신규	괴소	속 완료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2年	세숙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0				0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0		70, 50, 3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보수정비	소관부처	기획조정관	변지현	조현수	허창학			
(총액시업, 보조)		기획재정담당관	042-481-4780	042-481-4784	042-481-4793			
(6 111)	사업시행주체	지자체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	202	4년	중감	
71 H 6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문화재보수정비	201 500	462.400	E10 241	E17 2 <i>4</i> 1	F2 041	11.6
(총액사업, 보조)	391,500	463,400	510,341	517,341	53,941	11.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	23.12월	말)			
										이월액			
	예산액	예산	집행액				예산	집행액	제	외	이월	불용	2024
	(추경)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상액		예산
○ 기능별 분류(합계)			391,500 [294,779]			463,400	463,400	463,400 [226,129]	463,400	463,400 [351,533]			517,341
·문화재보수정비 (일반)	391,500	391,500	391,500 [294,779]			343,400	343,400	343,400 [134,004]	343,400	343,400 [243,909]			322,141
·역사유적지구 보존 관리	-	-	-			120,000	120,000	120,000 [92,125]	120,000	120,000 [107,624]			195,200
○ 비목별 분류(합계)			391,500 [294,779]			463,400	463,400	463,400 [226,129]	463,400	463,400 [351,533]			517,341
·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391,500	391,500	391,500 [294,779]			463,400	463,400	463,400 [226,129]	463,400	463,400 [351,533]			517,341
○ 기능비목별 분류 (합계)			391,500 [294,779]			463,400	463,400	463,400 [226,129]	463,400	463,400 [351,533]			517,341
·문화재보수정비 (일반)	391,500	391,500	391,500 [294,779]			343,400	343,400	343,400 [134,004]	343,400	343,400 [243,909]			322,141
-자치단체자본보 조(330-03)	391,500	391,500	391,500 [294,779]			343,400	343,400	343,400 [134,004]	343,400	343,400 [243,909]			322,141
·역사유적지구 보존 관리	-	-	-			120,000	120,000	120,000 [92,125]	120,000	120,000 [10 7,624]			195,200
-자치단체자본보 조(330-03)	-	-	-			120,000	120,000	120,000 [92,125]	120,000	120,000 [107,624]			195,2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문화재보수정비(일반))
 - ·동 내역사업은 국가지정(등록)문화재의 원형보존 및 멸실·훼손 방지를 위한 문화재 보수·정비와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및 관람환경 개선 등을 위해 지원하는 것임.
- (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
 - ·동 내역사업은 삼국시대 핵심 문화재(국가지정)의 보존·정비를 통한 역사성 회복, 주민과 문화재가 공존하는 역사문화도시 구축 등을 위해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제51조(보조금) 제1항 : 국가는 다음 각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1. 제34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그 문화재를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
 - 2.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
 -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보호·수리·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 「국가재정법」제37조(총액계상) 제1항: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세부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업의 경우에는 이를 총액으로 예산에계상할 수 있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제1항: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
 - 2.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 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제1항)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 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주민 재산권의 보장)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는 보존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정비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추진경위: 전국의 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수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999년부터 총액계상 예산사업으로 선정하여 시행
- 1962년 문화재관리특별회계로 사업 추진
- 1989년 일반회계로 전환 사업 추진
- 1999년 총액계상사업으로 전환 사업 추진
- 2005년 시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비 분권교부세로 전환되어 지방이양
- 2011년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추진
- 2017년 백제역사유적지구보존관리사업 별도 세부사업으로 분리·추진
- 2019년 세계유산 '한국의 산지 승원' 분리 후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에 통합
- 2020년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분리 후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에 통합
- 2023년 문화재보수정비 사업 내 내역사업(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 신설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1962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393,300백만원	397,000백만원	391,500백만원	463,400백만원	517,341백만원

- 기타: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광역 및 기초)

-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4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문화재 보수정비(일반)	보조	지자체 보조	322,141 백만원	70%, 50%, 3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문화재보호법 제51조제1항
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	보조	지자체 보조	195,200 백만원	70%, 50%, 3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문화재보호법 제51조제1항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3조

(11) 유형문화재관리 (2135-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Ol મો. જો ગો	ㅁ칡케칭	무취케H즈그		060	064
명칭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5	301
명칭	문화재보존관리	유형문화재 보존관리	유형문화재관리

□사	□ 사업 성격									
x1 7.	괴소	속 완료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刊出	세숙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0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0			0		10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유형문화재 관리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보존국	배민성	이아람	왕미경			
		유형문화재과	042-481-4910	042-481-4911	042-481-4912			
6-7	사업시행주체	직접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중감	
\L H \Q			정부안	확정(B)	(B-A)	(B-A)/A
유형문화재관리	3,408	4,583	4,564	4,564	△19	△0.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2022					2023("	 23.12월	말)			
									전년도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제 예산 현액	외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2024 예산
○ 기능별 분류(합계)	3,628	3,628	3,408		220	4,58 3	4,583	4,510	4,583	4,510		73	4,564
· 유형문화재 조사 및 연구 사업	1,806	1,806	1,667		139	1,706	1,706	1,701	1,706	1,701		5	2,006
· 동산문화재 대관 발간	100	100	100		0	100	100	84	100	84		16	-
· 동산문화재 훈증 소독	380	380	309		71	380	380	329	380	329		51	-
· 중요 동산문화재 영인 · 복제	178	170	170		0	178	170	170	170	170			178
· 장서각 소장 기록 문화유산 DB구축	395	395	395		0	395	395	395	395	395			332
· 팔만대장경 디지 털 DB 구축					0	1,050	1,050	1,050 [0]	1,050	1,050 [0]			1,270
· 유형문화재관리 경상경비	769	777	769		9	774	782	781	782	781		1	778
○ 비목별 분류(합계)	3,628	3,628	3,408		220	4,583	4,583	4, 510	4,583	4,510		73	4,564
· 상용임금(110-03)	118	118	118			122	122	122	122	122			125
· 일 반 수 용 비 (210-01)	681	700	700			678	678	662	678	662		16	629
· 공공 요금 및 제세 (210-02)	35	7	7			35	5	5	5	5			7
· 특 근 매 식 비 (210-05)	15	4	4			15	4	4	4	4			5
· 임차료(210-07)	6	26	26			6	21	21	21	21			44
· 복리후생비 (210-12)	2	2	2			2	2	2	2	2			2
· 일 반 용 역 비 (210-14)	380	380	309		71	380	380	329	380	329		51	-
· 국내여비(220-01)	129	129	129			131	153	153	153	153			131
·국외업무여비 (220-02)	20	20	11		9	20	19	19	19	19			20
· 관서업무추진비 (240-02)	12	12	12			12	12	12	12	12			12
· 일 반 연 구 비 (260-01)	1,806	1,806	1,667		139	1,706	1,706	1,701	1,706	1,701		5	1,956
· 민간경상보조 (320-01)						1,050	1,050	1,050 [0]	1,050	1,050 [0]			1,270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395	395	395			395	395	395	395	395			332
· 고용부담금(320-09)	23	23	23			24	24	23	24	23		1	24

			2022					2023(′	23.12월	말)			
									전년도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이월액	불용액	본예 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제 예산	외 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2024 예산
	(478)	27	행액				27	행액]	에신 현액	[실집 행액]	7187	7107	
· 자산취득비(430-01)	7	7	7			7	7	7	7	7			7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628	3,628	3,408		220	4,583	4,583	4,510	4, 583	4,510		73	4,564
· 유형문화재 조사 및 연구 사업	1,806	1,806	1,667		139	1,706	1,706	1,701	1,706	1,701		5	2,006
-일반 수용 비(210-01)													50
-일반연구비(260-01)	1,806	1,806	1,667		139	1,706	1,706	1,701	1,706	1,701		5	1,956
· 동산문화재 대관 발간	100	100	100			100	100	84	100	84		16	-
-일반수용비(210-01)	100	100	100			100	100	84	100	84		16	-
· 동산문화재 훈증소독	380	380	309		71	380	380	329	380	329		51	-
-일반용역비(210-14)	380	380	309		71	380	380	329	380	329		51	-
· 중요 동산문화재 영인 · 복제	178	170	170			178	170	170	170	170			178
-일반수용비(210-01)	178	170	170			178	170	170	170	170			178
·장서각 소장 기 록유산 DB구축	395	395	395			395	395	395	395	395			332
-민간위탁사업비 (320-02)	395	395	395			395	395	395	395	395			332
· 팔만대장경 디지털 DB 구축						1,050	1,050	1,050	1,050	1,050			1,270
-민간경상보조(320-01)						1,050	1,050	1,050 [0]	1,050	1,050 [0]			1,270
· 유형문회재관리 경상경비	769	777	768		9	774	782	781	782	781		1	778
-상용임금(110-03)	118	118	118			122	122	122	122	122			125
-일반수용비(210-01)	403	429	429			400	413	413	413	413			401
-공공요금 및 제 세(210-02)	35	7	7			35	5	5	5	5			7
-특근매식비(210-05)	15	4	4			15	4	4	4	4			5
-임차료(210-07)	6	26	26			6	21	21	21	21			44
-복리후생비(210-12)	2	2	2			2	2	2	2	2			2
-국내여비(220-01)	129	129	129			131	153	153	153	153			131
-국외업무여비(220-02)	20	20	11		9	20	19	19	19	19			20
관사업무추진비(24002)	12	12	12			12	12	12	12	12			12
-고용부담금(32009)	23	23	23			24	24	23	24	23		1	24
-자산취득비(430-01)	7	7	7			7	7	7	7	7			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유형문화재 조사 및 연구 사업) 외부에 노출되어 원형이 훼손될 우려가 큰 중요동산 문화재를 대상으로 한 기록화 사업, 중요기록유산 국역(연간 약 30만자), 동산문화재 유형별 보존처리 표준시방서 및 품셈 마련, 비지정 건조물 문화재에 대한 지정가치 조사연구 등 동산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사업
- (중요동산문화재 영인·복제) 영인 및 복제품을 활용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의 원형을 보존하고, 전시 및 연구 활성화로 활용도 제고
- (장서각 소장 기록유산 DB 구축) 장서각 소장 기록유산 원문 이미지·텍스트 DB구축을 통한 기록유산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제고
- (팔만대장경 디지털 DB 구축) 팔만대장경판 기초 조사 및 전체 인경본 디지털 기록화를 통해 유사시 보수·복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아카이브를 통해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학술적·문화적 분야에 활용
- (유형문화재관리 경상경비) 문화재위원회(동산분과, 건축분과) 운영, 국보·보물의 지정 · 관리를 위한 경상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문화재보호법」제1조(목적), 제11조(문화재 정보화의 촉진), 제23조(보물 및 국보의 지정), 제34조의2(국가에 의한 특별관리), 제43조(기록의 작성·보존), 제44조(정기조사), 제45조(직권에 의한 조사), 제51조(보조금), 제60조(일반동산문화재 수출 등의 금지)

② 추진경위

- 낙산사 동종 소실('05)로 중요동산문화재(소조불)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기록사업 추진
- 국가기록유산 포털자료의 기록유산 필요성 지적('05년 감사원)
- 문화재보호법 개정으로 국가지정문화재의 '정기조사' 의무화적('06년)
- '06년과 ' 11년 일본 궁내성으로부터 조선왕조실록과 조선왕조의궤 오대산본이 국 내 반환에 따른 기록유산의 활용 제기(국정감사, 언론)
- 화재, 태풍, 지진 등 인위적, 자연적 요인에 의한 문화재 훼손에 대비하여 유사시 정확한 고증에 의해 복원할 수 있도록 문화재 정밀실측의 필요성이 대두
- 국보·보물 동산문화재 소유자 및 관리자에 대한 소양교육 강화 필요성 제기('09년 도 국정감사 지적)
- 고전 번역 중장기계획 수립에 대한 필요성 제기('11년 국정감사)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3,233	3,018	3,628	4,583	4,564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위탁, 보조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한국학중앙연구원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4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장서각 소장 기록유산 DB구축	민간 위탁	한국학중 앙연구원	332	100	「문화재보호법」제11조(문화재 정보화의 촉진),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제43조(기록의 작성·보존)
팔만대장경 디지털 DB구축	보조	공모	1,270	100	「문화재보호법」제11조(문화재 정보화의 촉진),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제43조(기록의 작성·보존)

(12) 근대 및 국가민속문화재 관리 (2135-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45	므칭케하요그		060	064
명칭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5	302
명칭	문화재 보존관리	유형문화재 보존관리	근대 및 국가민속문화재 관리

□ 사업 성격

カユ	7 계속 5	이근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①	世五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0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0			0		5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근대및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371242331	소관부처	문화재활용국	김 용 복	김 도 형	윤 효 심
보존활용		근대문화재과	042-481-4880	042-481-4881	042-481-4885
문화유산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보존·활용·	소관부처	문화재활용국	김 용 복	김 도 형	윤 효 심
조사 연구		근대문화재과	042-481-4880	042-481-4881	042-481-4885
그리드근모시키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등록문화재 소=1-12 -121	소관부처	문화재활용국	김 용 복	서 정 삼	김 영 찬
수가문 매련		근대문화재과	042-481-4880	042-481-4888	042-481-4893
근대역사문화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소관부처	문화재활용국	김 용 복	유 철	황 인 애
공간 활성화		근대문화재과	042-481-4880	042-481-4884	042-481-4894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	202	4년	중감	
71 日 6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근대 및 국가민속 문화재 관리	7,023	4,856	3,294	3,864	△992	△20.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2022					2023(′	23.12월	말)			
			المالحال					المالحات		이월액			2024
	예산액	예산	집행액 [실집	പളിങ	불용액	본예산	예산	집행액 [실집		의 집행액	이월	불용	2024 예산
	(추경)	현액	행액	기원기	201	121011		행액	예산 현액	결정적 [실집 행액]	예상액	예상액	""
○ 기능별 분류(합계)	7,115	7,115	7,023 [2,974]	-	92	4,856	4,856	4,793 [2,061]	4,856	4,793 [2,061]	-	63	3,864
· 근대 및 국가민속 문화재 보존·활용	735	735	697 [616]	-	38	776	776	774 [766]	776	774 [766]	-	2	677
· 문화유산 보존· 활용·조사 연구	880	880	826	-	54	880	880	819	880	819	-	61	780
·국가등록문화재 수리기준 마련	-	-	_	-	_	200	200	200	200	200	-	-	200
·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5,500	5,500	5,500 [1,532]	-	-	3,000	3,000	3,000 [276]	3,000	3,000 [276]	-	-	2,207
○ 비목별 분류(합계)	7,115	7,115	7,023 [2,974]	-	92	4,856	4,856	4,793 [2,061]	4,856	4,793 [2,061]	-	63	3,864
· 상용임금 (110-03)	30	30	29	-	1	30	30	30	30	30	-	-	31
· 일반수용비(210-01)	236	230	228	-	2	254	239	239	239	239	_	-	259
· 공공요금및제세 (210-02)	4	4	1	-	3	4	2	1	2	1	-	1	4
· 특근매식비(210-05)	3	3	1	-	2	3	2	2	2	2	-	-	3
· 임차료(210-07)	3	9	9	-	-	3	21	21	21	21	-	-	3
· 복리후생비(210-12)	-	-	_	-	_	1	1	1	1	1	-	-	1
· 일반용역비(210-14)	-	-		-	-	20	20	19	20	19	_	1	20
· 국내여비(220-01)	116	116	102	-	14	117	123	123	123	123	_	-	117
· 국외업무여비(220-02)	23	23	7	-	16	23	17	17	17	17	_	-	18
· 사업추진비(240-01)	8	8	8	-	_	8	8	8	8	8	_	_	8
·관업무추진비(240·02)	5	5	5	-	-	5	5	5	5	5	_	-	5
· 일반연구비(260-01)	880	880	826	-	54	1,080	1,080	1,019	1,080	1,019	_	61	980
・만위科(32002)	200	200	200	-	_	200	200	200	200	200	_	_	200

			2022					2023(′	23.12월	말)			
										이월액			
	예신액	예산	집행액 [실집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집행액 [실집		외 집행액	이월	불용	2024 예산
	(추경)	현액	행액	127	=0기	112	현액	행액	예산 현액	60 [실집 행액]	예상액	예상액	" -
· 고용부담금(320-09)	5	5	5	-	1	6	6	6	6	6	-	-	6
· 자치는데당상보조(3300I)	100	100	100 [19]	-	-	100	100	100 [92]	100	100 [92]	-	-	-
· 不利是林港보조(33008)	5,500	5,500	5,500 [1,532]	-	-	3,000	3,000	3,000 [276]	3,000	3,000 [276]	-	-	2,207
· 자산취득비(430-01)	2	2	2	-	-	2	2	2	2	2	-	-	2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7,115	7,115	7,023 [2,974]	-	92	4,856	4,856	4,793 [2,061]	4,856	4,793 [2,061]	-	63	3,864
· 근대 및 국가민 속문화재 보존· 활용	735	735	697 [616]	-	38	776	776	774 [766]	776	774 [766]	-	2	677
-상용임금(110-03)	30	30	29	-	1	30	30	30	30	30	-	-	31
-일반수용비(210-01)	236	230	228	-	2	254	239	239	239	239	-	-	259
- 공유 및 제(21002)	4	4	1	-	3	4	2	1	2	1	_	1	4
-특근매식비(210-05)	3	3	1	-	2	3	2	2	2	2	_	-	3
-임차료(210-07)	3	9	9	-	-	3	21	21	21	21	-	-	3
-복리후생비(210-12)	-	-	-	-	-	1	1	1	1	1	-	-	1
-일반 용 역비(210-14)	-	-	-	-	-	20	20	19	20	19	-	1	20
-국내여비(220-01)	116	116	102	-	14	117	123	123	123	123	-	-	117
-국외업무여비(22002)	23	23	7	-	16	23	17	17	17	17	_	-	18
-사업추진비(24 0-01)	8	8	8	-	-	8	8	8	8	8	_	-	8
-관사업무추진비(21002)	5	5	5	-	-	5	5	5	5	5	_	-	5
-민간위탁시엄비(3200)	200	200	200	-	-	200	200	200	200	200	-	-	200
-고용부담금(32009)	5	5	5	-	-	6	6	6	6	6	-	-	6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100	100	100 [19]	-	-	100	100	100 [92]	100	100 [92]	_	-	-
-자산취득비(430-01)	2	2	2	-	_	2	2	2	2	2	_	-	2
·문화유산 보존· 활용·조사 연구	880	880	826	-	54	880	880	819	880	819	-	61	780
-일반연구비(260-01)	880	880	826	-	54	880	880	819	880	819	-	61	780
·국가등록문화재 수리기준 마련	-	-	-	-	-	200	200	200	200	200	-	-	200
-일반연구비(260-01)	_	-	-	-	_	200	200	200	200	200	_	_	200
·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5,500	5,500	5,500 [1,532]	-	-	3,000	3,000	3,000 [276]	3,000	3,000 [276]	_	-	2,207
-자치단체 지본보조 (33008)	5,500	5,500	5,500 [1,532]	-	-	3,000	3,000	3 000	3,000	3 000	-	-	2,20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근대 및 국가민속문화재 관리) 근현대문화유산 및 민속문화유산 지정·등록 및 관리를 통한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 (근대 및 국가민속문화재 보존·활용) 근현대문화유산 및 국가민속문화재의 등록·지 정 및 실태조사·현상변경, 국가등록문화재 홍보 및 활용으로 체계적·효율적 보존·관리 및 활용 기반 조성
- (문화유산 보존·활용·조사 연구) 국가등록문화재와 국가민속문화재의 법정 정기조사를 통해 예방적·체계적 보존·관리를 수행하고 근현대문화유산과 민속문화유산의 조사· 연구로 문화유산 외연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 및 효율적 보존·활용 방안 마련
- (국가등록문화재 수리기준 마련) 전통유산에 비해 재료와 구조가 다양한 근현대문 화유산의 수리기준을 마련하여 합리적 문화재 수리·보존처리 비용 산정 및 소유자· 관리자의 편익 제고
-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등록문화자원 정비 및 경관회복을 통해 근현대문화유산 등 역사문화자원의 적극적 보존과 활용을 통한 지역재생 활성화 모델 창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o 국가등록문화재의 발굴·등록 및 보존 관리
 - 「문화재보호법」제1조(목적), 제11조(문화재 정보화의 촉진), 제44조(정기조사), 제51조(보조금), 제53조(문화재의 등록), 제54조(국가등록문화재의 관리), 제55조(국 가등록문화재의 신고 사항), 제56조(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제57조(국가등록 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제58조(등록의 말소) 및 제59조(준용규정)

제44조(정기조사)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제51조(보조금)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1. 제34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그 문화재를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
- 2.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
-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보호·수리·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53조(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유형문화재, 기념물(제2조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② 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 절차 및 등록 사항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국가등록문화재의 관리) ① 국가등록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국가등록문화재를 관리하는 자는 국가등록문화재의 원형 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5조(국가등록문화재의 신고 사항) 국가등록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국가등록문화재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관리자가, 제2호의 경우에는 신·구 소유자가 각각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 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 2.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3.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 4. 소재지의 지명, 지번, 지목(地目),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 5.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 6.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 7. 제56조제2항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문화재의 현상변경 행위에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 8. 제5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된 문화재를 반출하였다가 반입한 경우 **제56조(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① 국가등록문화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해당 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2. 해당 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
- 3.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수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제57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관한 특례적용을 받은 국가등록문화재
- 2. 제5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1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국가등록문화재
- 3. 국가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국가등록문화재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문화재청장은 국가등록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에 관하여 지도·조언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제57조(국가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국가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8조(등록의 말소)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등록문화재에 대하여 보존과 활용의 필요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 ② 국가등록문화재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
- ③ 국가등록문화재의 소유자는 등록말소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문화재의 등록증을 문화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59조(준용 규정) ② 국가등록문화재 소유자관리의 원칙, 국가등록문화재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국가등록문화재의 허가취소 및 수출 등의 금지, 국가등록문화재에 관한 기록의 작성과 보존, **정기조사**, 직

권에 의한 국가등록문화재 현상 등의 조사, 정기조사로 인한 손실의 보상, 국가등록문화재의 관람료 징수, 국가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 소유자 변경 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33조, 제34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37조, 제39조,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6조제1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49조, 제51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2항·제3항, 제52조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가등록문화재"로, "관리단체"는 "국가등록문화재관리단체"로 본다.

- 0국가민속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 가치 확대
 - 「문화재보호법」 제26조(국가민속문화재 지정)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동법 시행령 제20조(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제44조(정기조사)

제26조(국가민속문화재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속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민속문화재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정기조사)**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국가등록문화재 정의

-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하여 등록한 문화재
 -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것
 - 기술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구분	등록제도	지정제도
대상 시기	· 개화기 이후 (1876년 이후)	· 개화기 이전
대상 범위	· 지정 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천연기념물, 명승 제외)	·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무형문화재
운영	· 보존 과 활용 을 조화 롭게 운영하며 완화된 보존 조치 시행	· 엄격한 보호 규제를 비탕으로 한 보존 조치 시행
도입	· 2001년	· 1962년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53조	· 문화재보호법 제23~27조

※ 국가민속문화재 정의

- o 국가민속문화재란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중 중요한 것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 한국민족의 기본적 생활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
- 의·식·주에 관한 것, 생산·생업에 관한 것, 교통·운수·통신에 관한 것, 교역에 관한 것, 사회생활에 관한 것, 신앙에 관한 것, 민속지식에 관한 것, 민속예능·오락·유희에 관한 것
- ② 추진경위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ㅇ 2001년 「문화재보호법」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 2005년 「문화재보호법」 건조물·시설물·유적·동산 포함 등록문화재 확대 및 현상변경 허가제도 도입
- ㅇ 2005년 「문화재보호법」 문화재 위원회 '근대문화재분과' 신설
- ㅇ 2010년 「문화재보호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제도 도입
- ㅇ 2017년 「문화재보호법」 문화재 등록 대상 범위 규정 및 등록문화재 정기조사 제도 도입
- ㅇ 2017년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재 직권조사(국가, 지자체 소유) 절차 규정 마련
- 2018년 「문화재보호법」 시도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및 국가등록문화재 명칭 변경('19. 12. 25. 시행)
- ㅇ 다양한 분야의 근현대문화유산의 발굴 및 등록 확대 추진('23년 12월 기준, 총 959건 등록)
- ㅇ 도시 재생과 연계한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을 통한 문화재 보존 방식 개선
 - 근현대문화유산 등 역사문화자원의 적극적 보존과 활용을 통한 지역재생 활성화 모델 창출
 - 근대역사문화공간 경관회복 등 : 등록문화자원 정비, 불량경관 정비, 경관조명 설치 ※ '18년 3개소(군산, 목포, 영주)/'19년 2개소(영덕, 익산)/'20년 1개소(통영), '21년 2개소(서천, 진해) 등록 및 '22년 1개소 공모 선정(여수 거문도)
- o 국가민속문화재(고택, 민속마을) 보존·관리 및 가치 활용 기반 조성
 - * 고택 184개, 민속마을 8개, 부동산 19개, 동산 99개 ('23년 12월 기준, 총 310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1,272	4,573	7,115	4,856	3,86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지방자치단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4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근대역사문화	보조	지자체	2 207	E0	ㅇ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
공간 활성화	上公	보조	2,207	50	ㅇ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13) 국유문화재 위탁관리 지원 (2135-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OJ HJ' શ્રી ગો	ㅁ쉵케ᅱ	므청케버즈그		060	064
명칭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5	304
명칭	문화재보존관리	유형문화재 보존관리	국유문화재 위탁관리 지원

□ 사	□ 사업 성격							
신규	괴소	റി =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2年	계속	전묘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0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그 ㅇ ㅁ 뭐 게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유문화재	소관부처	문화재보존국	배민성	이아람	문지혜
위탁관리		유형문화재과	042-481-4910	042-481-4911	042-481-4688
지워	기어지체즈케	국립대학법인	규장각한국학	남유진	02-880-5504
기원	사업시행주체	서울대학교	연구원	日开包	02-000-3304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2년 2023년 예산		4년	증감	
71116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국유문화재	2 744	2.744	2 105	2.105	△549	△20.0
위탁관리 지원	2,744	2,744	2,195	2,195	△ ∆349	$\triangle 20.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2022							2023(′	23.12월	말)			
			الحالجات					حاجااماا	전년도 이월액 제외				2024
	예산액	예산	집행액 [실집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집행액 [실집		^외 집행액	이월	불용	2024 예산
	(추경)	현액	행액]	, _ ,			현액	행액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예상액	예상액	
○ 기능별 분류(합계)	2,744	2,744	2,744	-	-	2,744	2,744	2,744	2,744	2,744	-	-	2,195
·기록문화재 DB구축	1,500	1,500	1,500	-	-	1,500	1,500	1,500	1,500	1,500	-	-	951
·보존처리	744	744	744	-	-	744	744	744	744	744	-	-	744
• 경상경비	500	500	500	-	-	500	500	500	500	500	_	-	500
○ 비목별 분류(합계)	2,744	2,744	2,744	-	-	2,744	2,744	2,744	2,744	2,744	-	-	2,195
-민간위탁시업비(320-02)	2,744	2,744	2,744	-	-	2,744	2,744	2,744	2,744	2,744	-	ı	2,195
○ 기능비목별 분류 (합계)	2,744	2,744	2,744	-	-	2,744	2,744	2,744	2,744	2,744	-	-	2,195
·기록문화재 DB구축	1,500	1,500	1,500	-	-	1,500	1,500	1,500	1,500	1,500	-	-	951
-민간위탁사업비(32002)	1,500	1,500	1,500	-	-	1,500	1,500	1,500	1,500	1,500	-	-	951
·보존처리	744	744	744	-	-	744	744	744	744	744	-	-	744
-민간위탁사업비(32002)	744	744	744	-	-	744	744	744	744	744	-	-	744
• 경상경비	500	500	500	-	-	500	500	500	500	500	-	-	500
-만원탁시업비(32002)	500	500	500	-	-	500	500	500	500	500	-	-	5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기록문화재 DB 구축) 규장각 소장 기록유산의 DB 구축으로 기록유산에 대한 대 국민 접근성 제고 및 학문적 기반 마련
- (보존처리 지원) 자연훼손 대비 보존을 위해 문화재 정밀상태조사, 보존처리, 종합 해충방재 등 관리에 따른 보존처리비 지원

- (경상경비) 서울대 소장 국유문화재 관리 협약('16.6.24.) 체결에 따라 국유 문화재 24만 여점에 대한 경상관리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문화재보호법」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 「국유재산법」제29조 (관리위탁)
- 「국립대학교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문화재 관리 업무의 위탁 및 재정지원)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보관 국유문화재의 관리위탁 협약서' 제7조(문화재청 의무)
- ② 추진경위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11.12.28)에 따라 서울 대학교가 법인화
- 서울대학교와 위탁 국유문화재의 보존 활용 업무협약 체결('16.6.24.)
- * (문화재청) 24만 여건의 위탁 국유문화재 보존관리 지원
- * (서울대학교) 위탁문화재의 보존·관리와 대학의 교육·연구 활동

□ 주요내용

-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7~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2,744	2,744	2,744	2,744	2,195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 사업 수혜자 : 관련 학계 및 일반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_	188	_
	100	

궁능원관리

(1) 경복궁종합정비 (22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OJ HJ' શ્રી ગો	ㅁ쉵케ᅱ	그ㄴㅇ궈ㅂㅂ		060	064
명칭	일반회계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프로그램 단위사업			
코드	2200	2231	301		
명칭	궁능원관리	궁능원종합정비	경복궁종합정비		

□시	□ 사업 성격									
217	계속 완료	·미 스 이 크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신규	계약	완료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0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0			0		5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경복궁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소관부처	궁능유적본부	조은경	전의건	배수경			
종합정비		복원정비과	02-6450-3840	02-6450-3849	02-6450-3848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		202	4년	중감	
71 ዘ 3	결산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경복궁종합정비	3,587	11,553	11,553	4,178	4,178	△7 <i>,</i> 375	△63.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2022					2023('23.12월말)								
			المالحات			예소	<u>·</u> 액		wi zii ali		이월액			2024
	예산액	예산	집행액	المالمال	HOAI	, ,	- '	예산	집행액	제		이월 불용		2024 예산
	(추경)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병액	본예산	수정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상액	예상액	예산
○ 기능별 분류(합계)	3,652	3,652	907		22	11,553	11,553	12,023	11,661	12,023	11,661	0	362	4,178
·광화문월대등복 원및주변정비	150	150	62			6,000	6,000	6,870	6 <i>,</i> 735	6,870	6,735	0	135	0
· 계조당권역복원	3,110	3,110	650			3,415	3,415	4,893	4,728	4,893	4,728	0	165	0
• 영훈당권역복원	254	254	98			2,000	2,000	122	60	122	60	0	62	3 <i>,</i> 790
· 흥복전권역복원						0	0	0	0	0	0	0	0	250
·관리운영비	138	138	97			138	138	138	138	138	138	0	0	138
○ 비목별 분류(합계)	3,652	3,652	907			11,553	11,553	12,023	11,661	12,023	11,661	0	362	4 , 178
·일반수용비 (210-01)	18	18	18			18	18	18	18	18	18	0	0	18
· 일반용역비 (210-14)						0	0	470	470	470	470	0	0	
· 국내여비(220-01)	15	15	15			15	15	15	15	15	15	0	0	15
・일반연구비 (260-01)	80	80	58			80	80	80	80	80	80	0	0	80
·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0	0	
· 실시설계비 (420-02)	352	352	160			0	0	0	0	0	0	0		250
· 공사비(420-03)	2,782	2,782	363			6,885	6,885	6,885	6725	6,885	6725	0	160	3,5000
· 감리비(420-04)	380	380	287			530	530	530	525	530	525	0	5	290
· 시설부대비(420-05)	25	25	6			25	25	25	25	25	25	0	0	25
○ 기능비목별 분류 (합계)	3,652	3,652	907		22	11,553	11,553	12,023	11,661	12,023	11,661	0	0	
·광화문 월대 등 복원 및 주변정비	150	150 [6,984]	62 [5,092]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0	0	
-자치단체자본보조		[6,834]	[5,025]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0	0	

	2022					2023(′23.12월말)								
			집행액				<u></u> 노액		집행액	전년도 제	. – .			2024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 본예산 수정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 예상액		예산		
(330-03)														
-실시설계비(420-02)	150	150	62		22	0	0	0	0	0	0	0	0	
-공사비(420-03)						1,800	1,800	2,185	2060	2,185	2060	0	125	
-감리비(420-04)						200	200	215	210	215	210	0	5	
-일반용역비(210-14)						0	0	470	470	470	470	0	0	
·계조당 권역 복원	3,110	3,110	650			3,415	3,415	4,893	4,728	4,893	4,728	0	165	
-공사비(420-03)	2,730	2,730	363			3,265	3 ,2 65	4,638	4,473	4,638	4 , 473	0	165	
-감리비(420-04)	380	380	287			150	150	254	254	254	254	0	0	
· 영훈당 권역 복원	254	254	98			2,000	2,000	122	60	122	60	0	62	3,790
-실시설계비(420-03)	202	202	98			0	0	0	0	0	0	0	0	0
-공사비(420-03)	52	52				1,820	1,820	62	0	62	0	0	62	3,500
-감리비(420-04)						180	180	60	60	60	60	0	0	290
• 관리운영비	138	138	97			138	138	138	138	138	138	0	0	138
-일반수용비 (210-01)	18	18	18			18	18	18	18	18	18	0	0	18
-국내여비(220-01)	15	15	15			15	15	15	15	15	15	0	0	15
-일반연구비 (260-01)	80	80	58			80	80	80	80	80	80	0	0	80
-시설부대비(420-05)	25	25	6			25	25	25	25	25	25	0	o	25
• 흥복전권역복원														250
-실시설계비(420-03)														25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경복궁종합정비) 일제에 의해 변형·훼철된 조선의 법궁 경복궁 복원을 통해 경복 궁의 역사문화적 정통성 및 완전성을 회복하고자 함
- (영훈당 권역 복원) 경복궁 2차 복원사업의 마지막 단계로 조선시대 최초 전기의 발상지인 전기등소를 포함하여 영훈당 권역 복원을 위해 지원하는 것임.
- (흥복전 권역 복원) 경복궁 흥복전 권역 복원사업 계획에 따라 전통소재단청 복원 추진을 위해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문화재보호법 제 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조선왕궁 복원정화에 따른 관리개선 보고(1984.5.22., 대통령 재가)
- 대통령 지시(경복궁의 완전한 복원, 88(06-25-03), 1993. 4. 1)
- 국민의 정부 국정과제(경복궁, 창덕궁 등 조선왕궁 원형복원 78-1-2, 1998. 6.)
- 경복궁 2차 복원 기본계획 보고(2011. 2월 장관 결재)
- 경복궁 2차 복원 기본계획 조정(2015.12월 청장 결재)
- 경복궁 2차 복원 기본계획 조정(2차. 2018. 8월 청장 결재)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11년 ~ 2045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6,838	5,782	3,652	12,023	4,17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가(문화재청)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2) 덕수궁복원정비 (2231-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Ol મી. કો ગો	ㅁ 치 게 쳐	그느ㅇ저ㅂㅂ		060	064
명칭	일반회계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200	2231	302
명칭	궁능원관리	궁능원종합정비	덕수궁복원정비

□ 사업 성격

_ '	1 0	•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他开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0			0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덕수궁복원정비	소관부처	궁능유적본부	조은경	전의건	송명석
		복원정비과	02-6450-3840	02-6450-3849	02-6450-385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	202	4년	증감	
71 日 8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덕수궁복원정비	8,551	9,339	9,339	9,339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2022						2023(23.12월				
			الحالحات					المالخان	전년도				2024
	예산액	예산	집행액 [실집	이원애	불용액	본예산	예산	집행액 [실집	제	^외 집행액	이월	불용	202 4 예산
	(추경)	현액	행액	1e-1	207	- 11C	현액	행액	예산 현액	B 8 7 [실집 행액]	예상액	예상액	,, _
○ 기능별 분류(합계)	6,095	9,315	8,551	359	405	9,339	9,698	9,003	9,339	8,708	33	662	9,339
• 운영비	60	60	51	-	9	50	50	42	50	42	-	8	50
• 돈덕전 재건사업	3,860	6,426	6,273	63	90	3,500	3,563	3,019	3,500	2,955	-	544	-
· 자격루 및 동중이전	_	354	49	-	305	-	-	-	-	-	-	-	-
• 흥덕전 복원	2,000	2,000	1,704	296	-	5,789	6,085	5,942	5,789	5,711	33	110	9,289
• 선원전 발굴조사	175	475	474	-	1	-	-	-	-	ı	-	-	-
○ 비목별 분류(합계)	6,095	9,315	8,551	359	405	9,339	9,698	9,003	9,339	8,708	33	662	9,339
· 일반수용비(210-01)	10	7	7	-	-	10	10	10	10	10	-	-	10
· 임차료(210-07)	-	3	3	-	-	-	-	-	-	-	-	-	-
· 일반용역비(210-14)	1,760	1,794	1,750	-	45	2,000	2,000	1,770	2,000	1,770	-	230	-
• 연구용역비(260-01)	175	475	474	-	1	-	-	-	-	-	-	-	-
· 실시설계비(420-02)	_	42	42	-	-	-	-	-	-	-	-	-	-
・공사비(420-03)	3,720	6,472	5,850	279	342	6,689	6,968	6,625	6,689	6,410	-	343	8,869
· 감리비(420-04)	380	473	384	80	8	600	680	566	600	486	33	81	400
· 시설부대비(420-05)	50	50	41	-	9	40	40	32	40	32	-	8	6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6,095	9,315	8,551	359	405	9,339	9,698	9,003	9,339	8,708	33	662	9,339

			2022					2023(′	23.12월	말)			
									전년도	이월액			
	예산액	예산	집행액				예산	집행액	제		이월	불용	2024
	(추경)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역	불용액	본예산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상액	예산
• 운영비	60	60	51	-	9	50	50	42	50	42	-	8	50
-일반수용비 (210-01)	10	10	10	-	-	10	10	10	10	10	-	-	10
-시설부대비 (420-05)	40	40	41	-	_	40	40	32	40	32	-	8	40
•돈덕전 재건사업	3,860	6,426	6,273	63	90	3,500	3,563	3,019	3,500	2,955	-	544	-
-일반용역비 (210-14)	1,760	1,760	1,735	-	25	2,000	2,000	1 <i>,</i> 770	2,000	1,770	-	230	-
-실시설계비 (420-02)	-	42	42	-	-	-	-	-	-	-	-	-	-
-공사비 (420-03)	1,900	4,344	4,216	63	65	1,400	1,463	1,230	1,400	1,166	-	233	-
-감리비 (420-04)	200	280	280	-	-	100	100	19	100	19	-	81	-
· 자격루 및 동종이전	-	354	49	-	305	-	-	-	-	-	-	-	-
-일반용역비 (210-14)	-	34	14	-	20	-	-	-	-	-	-	-	-
-공사비 (420-03)	-	308	31	-	277	-	-	-	-	-	-	-	-
-감리비 (420-04)	-	12	4	-	8	-	-	-	-	-	-	-	-
·흥덕전 복원	2,000	2,000	1,704	296	-	5,789	6,085	5,942	5,789	5,711	33	110	9,289
-공사비 (420-03)	1,820	1,820	1,604	216	-	5,289	5,505	5 <i>,</i> 395	5,289	5,244	-	110	8,869
-감리비 (420-04)	180	180	100	80	-	500	580	547	500	467	33	-	400
-시설부대비 (420-05)	-	-	-	-	_	_	-	-	-	-	-	-	20
·선원전 발굴조사	175	475	474	-	1	-	-	-	-	-	-	-	-
-연구용역비 (260-01)	175	475	474	-	1	-	-	-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돈덕전 재건사업) 일제의 의해 훼철된 돈덕전을 재건하여 대한제국과 덕수궁의 역사적 가치 제고
- (흥덕전 복원) 대한제국의 정통성 확보를 위해 건립된 흥덕전을 복원하여 대한제국 시기 역사 재조명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문화재보호법 제6조(문화재 기본계획의 수립)
- ② 추진경위
 - 대통령 지시, 조선왕궁 복원계획 수립(대통령 재가, 1984년)
 - 2004년부터 일제에 의해 왜곡된 덕수궁의 원형복원을 위한 사업 추진
 - 「덕수궁 선원전 복원정비 기본계획」수립('15.3)
 - 「덕수궁 복원정비 기본계획 조정」('15.12.)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덕수궁복원정비 중 내역사업인 흥덕전 복원 (359억원)

- 사업기간 : 2015~2039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3,155	7,330	6,095	9,339	9,339

- ·(중심영역) 광명문 이전, 돈덕전 및 조원문 복원정비
 - •(선원전영역) 주요 전각 부속건물 53동, 궁장, 상림원 및 지형 등 복원정비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영녕릉 보존정비 (2231-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Ol મો. જો ગો	ㅁ쉵케귕	궁능유적본부		060	064
명칭	일반회계	문화재청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200	2231	304
명칭	궁능원관리	궁능원종합정비	영녕릉 보존정비

□ 사	□ 사업 성격											
x1 7.	괴소	o) =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刊出	계속	전요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0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1-1-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영녕릉	소관부처	궁능유적본부	곽수철	이기영	심미숙					
보존정비		세종대왕유적관리소	031-880-4701	031-880-4702	031-880-4703					
	사업시행주체	직접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	202	4년	중감	
VI H 3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영녕릉보존정비	3,087	3,020	2,930	2,930	△90	△3.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2022					2023(′	23.12월	말)			
								Ì	전년도				
	예산액	예산	집행액				예산	집행액	제		이월	불용	2024
	(추경)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상액	예산
○ 기능별 분류(합계)	3,225	3,225	3,087		138	3,020	3,020	2,912	3,020	2,912		108	2,930
• 영녕릉유적정비	212	212	163		49	940	860	849	860	849		11	815
· 수목 및 시설관리	1,991	1,991	1,941		51	1,017	1,096	1,053	1,096	1,053		43	956
·역사문화관 운영 등 경상관리	927	927	888		38	939	940	886	940	886		54	975
·세종대왕 탄신 숭모제전 등	95	95	95		0	124	124	124	124	124			184
○ 비목별 분류(합계)	3,225	3,225	3,087		138	3,020	3,020	2,912	3,020	2,912		108	2,930
・상용임금(110-03)	475	475	445		31	491	491	444	491	444		47	505
・일용임금(110-04)	71	71	71			71	71	70	71	70		1	80
· 일반수용비 (210-01)	73	85	85			70	81	81	81	81			84
· 공공요금및제세 (210-02)	71	84	84			74	78	78	78	78			92
· 피복비(210-03)		2	2										
· 특근매식비 (210-05)	3	1	1			3	1	1	1	1			2
· 임차료(210-07)	11	13	13			13	13	13	13	13			21
· 시설장비유지비 (210-09)	34	21	21			34	27	27	27	27			34
·재료비(210-11)	48	25	25			48	41	41	41	41			48
· 복리후생비 (210-12)	6	6	6			8	8	8	8	8			8
· 일반용역비 (210-14)	40	48	48			60	60	60	60	60			90
· 관리용역비 (210-15)	31	32	32			30	32	32	32	32			30
·기타운영비 (210-16)	1	0	0			1							1
·국내여비(220-01)	12	12	12			12	12	12	12	12			12
· 관서업무추진비 (240-02)	3	3	3			3	3	3	3	3			3
·일반연구비 (260-01)	212	212	163		49								
· 고용부담금 (320-09)	93	93	86		7	96	96	89	96	89		7	99
• 실시설계비	46	46	45		1	149	149	145	149	145		4	133

			2022					2023(′	23.12월	말)			
									전년도	이월액			
	예산액	예산	집행액				예산	집행액	제		이월	불용	2024
	(추경)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상액		예산
(420-02)										•			
· 공사비(420-03)	1,841	1,841	1,818		23	1,713	1,713	1,710	1,713	1 ,7 10		3	1,557
· 감리비(420-04)	91	91	66		25	77	77	34	77	34		43	62
·시설부대비 (420-05)	13	13	11		2	17	17	13	17	13		4	19
· 자산취득비 (430-01)	50	50	50			50	50	50	50	50			5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225	3,225	3,087		138	3,020	3,020	2,912	3,020	2,912		108	2,930
• 영녕릉유적정비	212	212	163		49	940	860	849	860	849		11	815
-일반연구비 (260-01)	212	212	163		49								
-실시설계비 (420-02)						83	70	66	70	66		4	73
-공사비(420-03)						825	758	755	758	755		3	714
-감리비(420-04)						26	26	22	26	22		4	23
-시설부대비 (420-05)						6	6	6	6	6			5
· 수목및시설관리	1,991	1,991	1,941		51	1,017	1,096	1,053	1,096	1,053		43	956
-실시설계비 (420-02)	46	46	45		1	67	79	79	79	79			
-공사비(420-03)	1,841	1,841	1,818		23	955	955	955	955	955			
-감리비(420-04)	91	91	66		25	51	51	12	51	12		39	
-시설부대비 (420-05)	13	13	11		2	11	11	7	11	7		4	
·역사문화관 운영 등 경상관리	927	927	888		38	939	940	886	940	886		54	975
-상용임금(110-03)	475	475	444		31	491	491	444	491	444		47	505
-일용임금(110-04)	71	71	71			71	71	70	71	70		1	80
-일반수용비 (210-01)	40	39	39			27	34	34	34	34			27
-공공요금및제세 (210-02)	71	79	79			74	74	74	74	74			84
-피복비(210-03)		2	2										
-임차료(210-07)	6	8	8			7	8	8	8	8			8
-시설장비유지비 (210-09)	34	21	21			34	27	27	27	27			34
-재료비(210-11)	48	25	25			48	41	41	41	41			48
-복리후생비	6	6	6			8	8	8	8	8			8

			2022					2023(′	23.12월	,			
			المالجات					المالحات	전년도	. – .			2024
	예산액	예산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집행액	제	외 집행액	이월	불용	2024 예산
	(추경)	현액	[실집 행액]	이혈액	물공액	존예산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십행객 [실집 행액]	예상액	예상액	게건
(210-12) -일반용역비 (210-14)		13	13										
-관리용역비 (210-15)	31	32	32			30	32	32	32	32			30
-기타운영비 (210-16)	1					1							1
-국내여비(220-01)		11	11				6	6	6	6			
-관서업무추진비 (240-02)	1	2	2			1	2	2	2	2			1
-고용부담금 (320-09)	93	93	86		7	96	96	89	96	89		7	99
-자산취득비 (430-01)	50	50	50			50	50	50	50	50			50
· 세종대왕 탄신 숭모제전 등	95	95	95			124	124	124	124	124			184
-일반수용비 (210-01)	33	47	47			43	46	46	46	46			57
-공공요금및제세 (210-02)							4	4	4	4			8
-특근매식비 (210-05)	3	1	1			3	1	1	1	1			2
-임차료(210-07)	5	5	5			4	6	6	6	6			13
-일반용역비 (210-14)	40	35	35			60	60	60	60	60			90
-국내여비(220-01)	12	1	1			12	6	6	6	6			12
-관서업무추진비 (240-02)	2	1	1			2	1	1	1	1			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영영릉 유적정비) 영릉(英陵)·영릉(寧陵) 능제 원형 복원 및 훼손 시설물 정비
- (수목 및 시설관리) 영·영릉의 시설물, 수목 및 조경 등 경상적인 유지보수
- (역사문화관 운영 등 경상관리) 영·영릉 관리 인력 운영 및 역사문화관 유지·관리 등 경상관리
- (숭모제전 행사 등) 세종대왕 탄신 기념 숭모제전, 세종대왕역시문화관 전시 및 활용행사 운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② 추진경위
- 영·영릉 유적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2012. 3. 1.)
- 영·영릉 유적 종합정비 착공식 개최(2014. 9. 16.)
- 영·영릉 유적 종합정비 사업(1단계) 공사 준공(2017. 2. 28.)
- 영·영릉 유적 종합정비 사업(2단계) 공사 착공(2017. 4. 25.)
- 세종대왕역사문화관 개관(2017. 5. 15.)
- 영·영릉 유적 종합정비 사업(2단계) 공사 준공(2020. 9. 30.)
- 세종대왕릉 제모습찾기 준공식 개최(2020. 10. 9.)
- 영·영릉 유적 종합정비 사업(3단계) 추진(2022. 2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8,741	2,954	3,225	3,020	2,93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4) 궁궐문화재관리운영 (2232-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Ol મો. જો ગો	ㅁ쉵케귕	그ㄴㅇ궈ㅂㅂ		060	064
명칭	일반회계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200	2232	301
명칭	궁능원관리	궁능원시설관리	궁궐문화재관리운영

] 사	·업성	격				
,	17.	계속	റി =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1	711	계숙	전묘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0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궁 시설관리 인력 및 경	소관부처	궁능유적본부	송인헌	민병철	조혜연
상관리		궁능서비스기획과	02-6450-3820	02-6450-3821	02-6450-3825
0 6 9	사업시행주체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궁궐 활용	소관부처	궁능유적본부	송인헌	민병철	조혜연
기반 구축		궁능서비스기획과	02-6450-3820	02-6450-3821	02-6450-3825
	사업시행주체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고건물 보수	소관부처	궁능유적본부	송인헌	민병철	조혜연
및 시설개선		궁능서비스기획과	02-6450-3820	02-6450-3821	02-6450-3825
	사업시행주체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종묘 정전	소관부처	궁능유적본부	조은경	전의건	송명석
보수		복원정비과	02-6450-3840	02-6450-3849	02-6450-3850
	사업시행주체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사직단	소관부처	궁능유적본부	조은경	최자형	이지수
복원		복원정비과	02-6450-3840	02-6450-3853	02-6450-3847
	사업시행주체				
창덕궁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돈화문	소관부처	궁능유적본부	조은경	최자형	안솔비
보수		복원정비과	02-6450-3840	02-6450-3853	02-6450-3857
	사업시행주체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궁능문화재		궁능유적본부	조은경	전의건	김수연
긴급보수		복원정비과	02-6450-3840	02-6450-3849	02-6450-3858
	사업시행주체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창경궁	소관부처	궁능유적본부	조은경	최자형	정하은
복원정비		복원정비과	02-6450-3840	02-6450-3853	02-6450-3855
	사업시행주체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	202	4년	중감	
71 日 3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궁궐문화재관리운영	25,450	25,858	33,701	33,701	7,843	30.3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2022			2023(′23.12월말)							
			المالحات					المالحات	전년도 이월액				2024
	예산액	예산	집행액	~] () () ()	HOAN	ונוגו	예산	집행액	제외		이월	불용	2024 예산
	(추경)	현액	[실집 행액]	이철액	불용액	본예산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상액	예상액	તાત
○ 기능별 분류(합계)	24,205	28,439	25,450	1,648	1,341	25,858	27,329	23,387	25,681	21,887	1,429	2,513	33,701
· 궁 시설관리인력 및 경상관리	7,816	8,427	8,187		240	8,405	8,405	7,814	8,405	7,814		591	8,822
· 궁궐 활용기반 구축	1,714	1,714	1,500	79	135	1,688	1,542	1,498	1,463	1,419		44	1,592
·고건물 보수 및 시설개선	10,420	12,113	10,133	1,474	508	9,809	11,283	8,561	9,809	7,234	843	1,879	11,476
·종묘 정전 보수	1,946	3,279	2,905		373	2,746	2,746	2,746	2,746	2,746			4,562
· 사직단 복원	413	1,023	893	96	34	1,209	1,353	323	1,257	228	586	444	3,438
·창덕궁 돈화문보 수													2,017
· 궁능문화재 긴급 보수	1,601	1,601	1,574		26	1,901	1,901	1,581	1,901	1,581		320	1,724
· 창경궁 복원 정비						100	100	98	100	98		2	70
· 궁능 무인 입장시 스템 구축	282	282	257		25								
○ 비목별 분류(합계)	24,192	28,439	25,450	1,648	1,341	25,858	27,329	23,387	25,681	21,887	1,429	2,513	33,701

			2022			2023('23.12월말)							
	예신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제 예산 현액	의 집행액 [실집 행액]		불용 예상액	2024 예산
· 상용임금(110-03)	5,207	5,207	5,110		97	5,403	5,376	4,715	5,376	4,715		661	5,557
・일용임금(110-04)	82	82	75		8	82	109	101	109	101		8	138
· 일반수용비 (210-01)	800	1,113	1,100		14	926	960	959	960	959		1	1,154
·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890	931	920		11	939	983	973	983	973		10	998
· 피복비(210-03)	223	241	240		1	223	235	234	235	234		1	272
· 특근매식비 (210-05)	96	55	52		3	96	58	58	58	58			50
・임차료(210-07)	81	116	114		2	68	76	<i>7</i> 5	76	75		1	68
・유류비(210-08)	71	111	67		44	71	71	60	71	60		11	71
·시설장비유지비 (210-09)	234	315	310		4	234	192	190	192	190		2	234
·재료비(210-11)	63	126	126			63	67	67	67	67			113
・복리후생비 (210-12)	71	71	70		1	90	90	82	90	82		8	90
· 일반용역비 (210-14)	1,481	1,321	1,202		119	1,319	1,109	1,044	1,109	1,044		65	2,151
· 관리용역비 (210-15)	115	185	171		14	221	198	178	198	178		20	221
·기타운영비 (210-16)	8	8	8			8	8	8	8	8			8
· 국내여비(220-01)	175	175	115		60	152	152	152	152	152			158
·국외업무여비 (220-02)	37	37	37			30	30	30	30	30			30
· 사업추진비(240-01)	25	25	25			25	25	25	25	25			25
· 일반연구비(260-01)	606	960	786	79	95	460	572	570	493	491		2	270
· 고용부담금 (320-09)	1,006	996	993		2	1,045	1,045	976	1,045	976		69	1,088
・실시설계비 (420-02)	1,356	1,356	1,019	176	161	678	854	776	678	634		78	630
・공사비(420-03)	10,502	13,536	11,671	1,279	586	12,014	13,292	10,862	12,014	9,693	1,360	1,070	18,492
· 감리비(420-04)	671	1,080	869	115	115	1,120	1,235	676	1,120	566	69	490	1,514
· 시설부대비 (420-05)	96	96	79		17	101	101	88	101	88		13	124
· 자산취득비 (430-01)	296	296	291		5	489	489	488	489	488		1	241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4,192	28,439	25,450	1,648	1,341	25,858	27,329	23,387	25,681	21,887	1,429	2,513	33,701

	2022					2023(′23.12월말)							
									전년도 이월액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제외		이월	불용	2024
	(추경)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상액		예산
궁 시설관리인력 및 경상관리	7,816	8,427	8,187		240	8,405	8,405	7,771	8,405	7,771		634	8,822
-상용임금110-03)	4,315	4,315	4,217		97	4,487	4,460	3,932	4,460	3,932		528	4,619
-일용임금110-04)	82	82	75		8	82	109	101	109	101		8	138
-일반수용비 (210-01)	620	933	919		14	797	831	830	831	830		1	898
- 공공 요금및제세 (210-02)	872	913	902		11	917	961	951	961	951		10	976
-피복비(210-03)	189	208	207		1	189	203	202	203	202		1	239
-특근매식비 (210-05)	65	24	21		3	65	27	27	27	27			20
-임차료(210-07)	68	103	101		2	68	76	75	76	75		1	68
-유류비(210-08)	31	71	27		44	31	31	30	31	30		1	31
-시설장비유지비 (210-09)	192	273	269		3	192	150	148	150	148		2	192
-재료비(210-11)	63	126	126			63	67	67	67	67			63
-복리후생비 (210-12)	71	71	70		1	90	90	82	90	82		8	90
-일반용역비 (210-14)						166	166	138	166	138		28	166
-관리용역비 (210-15)	115	185	171		14	115	92	91	92	91		1	115
-국내여비 (220-01)	104	104	63		41	82	82	82	82	82			87
-국외업무여비 (220-02)	37	37	37		1	30	30	30	30	30			30
-사업추진비 (240-01)	25	25	25			25	25	25	25	25			25
-고용부담금 (320-09)	833	824	823		1	873	873	827	873	827		46	917
-자산취득비 (430-01)	133	133	133			133	133	133	133	133			148
궁궐 활용기반 구축	1,714	1,714	1,500	79	135	1,688	1,542	1,486	1,463	1,407		56	1,592

			2022					2023(′	23.12월	말)			
			_						전년도	이월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 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제 예산 현액	의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2024 예산
- 일반수용비 (210-01)	115	115	115			64	64	64	64	64			144
- 공공 요금및제세 (210-02)	5	5	5			5	5	5	5	5			5
- 임차료 (210-07)	13	13	13										
- 일반용역비 (210-14)	1,481	1,321	1,201		120	1,153	943	906	943	906		37	1,237
- 관리용역비 (210-15)						106	106	87	106	87		19	106
- 일반연구비 (260-01)	100	260	166	79	15	360	424	424	345	345			100
·고건물 보수 및 시설개선	10,420	12,113	10,133	1,474	508	9,809	11,283	9,272	9,809	7,946	843	1,168	11,476
- 일반수용비 (210-01)													3
- 일반용역비 (210-14)													688
- 일반연구비 (260-01)	506	506	426		80								100
- 실시설계비 (420-02)	916	916	690	81	145	678	759	681	678	634		78	630
- 공사비 (420-03)	8,566	10,038	8,569	1,278	192	8,403	9,681	8,170	8,403	7,001	794	717	9,583
- 감리비 (420-04)	351	572	380	115	78	645	760	351	645	241	49	360	372
- 시설부대비 (420-05)	81	81	68		13	83	83	70	83	70		13	90
- 자산취득비 (430-01)													10
·종묘 정전 보수	1,946	3,279	2,905		373	2,746	2,746	2,746	2,746	2,746			4,562

			2022					2023(′	23.12월	말)			
								•	전년도	이월액			
	예산액	예산	집행액				예산	집행액	제		이월	불용	2024
	(추경)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 C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상액	예산
- 일반수용비 (210-01) - 공사비 (420-03)	1,611	2,944	2,580		363	2,411	2,411	2,411	2,411	-			20 4,092
- 감리비 (420-04)	320	320	314		6	320	320	320	320	320			370
- 시설부대비 (420-05)	15	15	11		4	15	15	15	15	15			20
- 일반용역비 (210-14)													60
·사직단 복원	413	1,023	893	96	34	1,209	1,353	282	1,257	187	586	485	3,438
- 일반연구비 (260-01)		194	194			0	48	48	48	48			0
- 실시설계비 (420-02)	413	413	306	96	11	0	96	95	0	0		1	0
- 공사비 (420-03)		228	218		10	1,050	1,050	131	1,050	131	566	353	2,892
- 감리비 (420-04)		188	175		13	156	156	5	156	5	20	131	537
- 시설부대비 (420-05)						3	3	3	3	3			9
·창덕궁 돈화문보 수													2,017
- 공사비 (420-03)													1,777
- 감리비 (420-04)													235
- 시설부대비 (420-05)													5
· 궁능문화재 긴급보수	1,601	1,601	1,574		26	1,901	1,901	1,733	1,901	1,733		168	1,724

			2022					2023(′	23.12월	말)			
									전년도				
	예산액	예산	집행액				예산	집행액	제		이월	불용	2024
	애산택 (추경)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상액		예산
- 상용임금 (110-03)	893	893	893			916	916	783	916	783		133	939
- 일반수용비 (210-01)	65	65	65			65	65	65	65	65			88
- 공공요금및제세 (210-02)	13	13	13			17	17	17	17	17			17
- 피복비 (210-03)	33	33	33			33	33	32	33	32		1	33
- 특근매식비 (210-05)	31	31	31			31	31	31	31	31			31
- 유류비 (210-08)	40	40	40			40	40	30	40	30		10	40
- 시설장비유지비 (210-09)	42	42	41		1	42	42	42	42	42			42
- 재료비 (210-11)													50
- 기타운영비 (210-16)	8	8	8				8	8	8	8			8
- 국내여비 (220-01)	71	71	52		19		71	71	71	71			71
- 고용부담금 (320-09)	172	172	170		1		172	149	172	149		23	172
- 공사비 (420-03)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 자산취득비 (430-01)	83	83	78		5		356	355	356	355		1	83
ㆍ창경궁 복원 정비						100	100	98	100	98		2	70
- 일반연구비 (260-01)						100	100	98	100	98		2	70
·궁능 무인 입장시 스템 구축	282	282	257		25								
- 실시설계비 (420-02)	27	27	23		4								
- 공사비 (420-03)	175	175	154		21								
- 자 산 취 득 비 (430-01)	80	80	80										

1) 사업목적·내용

- (궁 시설관리인력 및 경상관리) 4대궁 및 종묘에 대한 시설관리 인력 운영 및 경상관리
- (궁궐 활용기반 구축) 야간특별관람 및 덕수궁 전시 등 궁궐 활용기반 구축
- (고건물 보수 및 시설개선) 4대궁, 종묘 내 문화재 보수를 통한 문화재 원형 유지
- (종묘 정전 보수) 국보 종묘 정전에 대한 해체 보수
- (사직단 복원) 일제강점기 훼손된 사직단의 원형 복원
- (창덕궁 돈화문 보수) 창덕궁 돈화문 해체 보수 공사
- (궁능문화재 긴급보수) 4대궁, 종묘 및 조선왕릉 문화재 긴급 보수를 위한 보수단 운영
- (창경궁 복원정비) 일부 복원 완료된 창경궁에 대한 복원계획 수립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한다
- ② 추진경위: 4대궁 및 종묘 유지관리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한 경상관리 업무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사업기간 : 2005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26,444	26,240	24,205	25,858	33,701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사업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5) 조선왕릉보존관리 (2232-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OJ HL 첫 기	ㅁ 치 게 쳐	그느ㅇ저ㅂㅂ		060	064
명칭	일반회계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200	2232	302
명칭	궁능원관리	궁능원시설관리	조선왕릉보존관리

□ 사업 성격											
	<u> ۱</u> ۱ ٦	계속	o) =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つ 田	계숙	[전묘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0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0			0		100%	

사업명			구분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조선왕릉	소관부처	궁능유적본부	송인헌	민병철	조혜연
경상관리		궁능서비스기획과	02-6450-3820	02-6450-3821	02-6450-3825
	사업시행주체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조선왕릉	소관부처	궁능유적본부	송인헌	민병철	조혜연
능제복원		궁능서비스기획과	02-6450-3820	02-6450-3821	02-6450-3825
	사업시행주체				
조선왕릉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부적합시설물	소관부처	궁능유적본부	조은경	최자형	정하은
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一		복원정비과	02-6450-3840	02-6450-3853	02-6450-3855
철거	사업시행주체				

조선왕릉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ㅁ칡기바	소관부처	궁능유적본부	송인헌	정명환	이홍주
문화기반		궁능서비스기획과	02-6450-3820	02-6450-3836	02-6450-3833
구축	사업시행주체				
고서이르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조선왕릉	소관부처	궁능유적본부	송인헌	정명환	유경하
원형고증		복원정비과	02-6450-3820	02-6450-3836	02-6450-3838
및 어그키이	기어지체즈케	(사)전주이씨대		시고처	00.765.0774
연구지원	사업시행주체	동종약원		이준혁	02-765-2774
- 11 41 7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조선왕릉	소관부처	궁능유적본부	송인헌	이경은	유종호
토지매입		복원정비과	02-6450-3820	02-6450-3829	02-6450-3831
	사업시행주체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	202	4년	중감		
71 11 8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조선왕릉보존관리	32,748	32,022	43,607	44,107	12,085	37.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2022						2023(′	23.12월	[말)			
			וואוובור					المالحات		이월액			2024
	예산액	예산	집행액 [실집	റിലില	불용액	본예산	예산	집행액 [실집		의 집행액	이월	불용	2024 예산
	(추경)	현액	행액	127	507	นาเน	현액	행액	예산 현액	급 [실집 행액]	예상액	예상액	" -
○ 기능별 분류(합계)	32,902	36,381	32,748 [32,748]	1,448	2,186	32,022	33,197	25,559 [25,559]	31,749	24 291	4,891	2,747	44,107
· 조선왕릉 경상관리	6,418	6,556	6,361		196	6,879	6,904	6,576	6,904	6,576		328	7,332
· 조선왕릉 능제복원	18,383	18,874	16,207	1,108	1,557	13,929	14,784	11,661	13,676	10,708	1,616	1,507	14,429
·조선왕릉 부적합 시설물 철거	875	2,918	2,904		14	4,969	4,969	1,632	4,969	1,632	3,275	62	6,863
·조선왕릉 문화기반 구축	2,000	1,929	1,346	340	241	1,709	2,005	1,892	1,665	1,576		113	1,747
·조선왕릉 원형고증 및 연구지원	435	435	435			435	435	435 [435]	435	435 [435]			390
· 조선왕릉 토지매입	4,791	4,725	4,555		170	4,101	4,101	3,367	4,101	3,367		734	13,346
·조선왕릉 역사 문화관 확충		946	940		6								
○ 비목별 분류(합계)	32,902	36,381	32,748 [32,748]	1,448	2,186	32,022	33,197	25,559 [25,559]	31,749	24,291 [24,291]		2,747	43,607
・상용임금(110-03)	3,818	3,818	3,669		149	3,943	3,943	3,679	3,943	3,679		264	4,055
・일용임금(110-04)	60	60	38		22	60	60	48	60	48		12	60
· 일 반 수 용 비 (210-01)	612	749	744		5	677	750	749	750	749		1	702
· 공공요금및제세 (210-02)	494	476	473		3	494	473	471	473	471		2	494
· 피복비(210-03)	113	113	113			113	113	110	113	110		3	113
· 특 근 매 식 비 (210-05)	33	13	11		2	33	13	13	13	13			13
・ 임차료(210-07)	38	41	37		3	38	36	33	36	33		3	38

			2022					2023(′	23.12월	말)			
									전년도	이월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이월액	불용액	본예 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제 예산	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애	2024 예산
	(176)	47	행액]				ניק	행액	현액	[실집 행액]	1107	1107	
· 유류비(210-08)	50	50	50		1	50	50	49	50	49		1	50
· 시설장비유지비 (210-09)	73	120	116		4	73	87	87	87	87			73
· 재료비(210-11)	106	95	92		2	106	106	106	106	106			156
· 복 리 후 생 비 (210-12)	58	58	58			72	72	67	72	67		5	72
· 일 반 용 역 비 (210-14)	1,923	1,923	1,323	340	259	1,776	2,076	1,938	1,736	1,622		138	1,963
· 관리용역비 (210-15)	132	61	61			132	88	88	88	88			193
· 기 타 운 영 비 (210-16)	6	6	6			6	6	6	6	6			6
・ 국내여비(220-01)	101	101	100		1	81	81	81	81	81			101
· 국외업무여비 (220-02)	34	34	30		3	34	34	34	34	34			34
· 사업추진비(240-01)	20	20	19			20	20	20	20	20			28
· 일반연구비 (260-01)	651	651	585		65	590	357	355	357	355		2	1,316
・ 민 간 경 상 보 조 (320-01)	435	435	435			435	435	435 [435]	435	435 [435]			390
· 고 용 부 담 금 (320-09)	737	737	737			762	762	748	762	748		14	795
·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504	504	504										
· 건 설 보 상 비 (410-00)	4,791	4,725	4,555		170	4,101	4,101	3,367	4,101	3,367		734	13,346
· 실 시 설 계 비 (420-02)	1,744	1,744	1,211	38	496	1,108	1,146	683	1,108	645	226	237	1,325
・ 공사비(420-03)	15,329	18,588	16,671	1,045	873	16,514	17,559	11,654	16,514	10,764	4,607	1,298	17,394
· 감리비(420-04)	768	987	836	25	127	503	528	444	503	419	58	26	834
· 시설부대비 (420-05)	94	94	94			74	74	70	74	70		4	78
· 자 산 취 득 비 (430-01)	180	180	180			228	228	228	228	228			477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2,902	36,381	32,748 [32,748]	1,448	2,186	32,022	33,197	25,559 [25,559]	31,749	24,291 [24,291]	4,891	2,747	43,607

			2022					2023(′	 23.12월	 말)			
									전년도	이월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제 예산 현액	외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2024 예산
· 조선왕릉경상관리	6,418	6,556	6,361		196	6,879	6,904	6,576	6,904	6,576		328	7,332
-상용임금 (110-03)	3,818	3,818	3,669		149	3,943	3.943	3,679	3.943	3,679		264	4,055
-일용임금 (110-04)	60	60	38		21	60	60	48	60	48		12	60
-일반수용비 (210-01)	612	749	747		2	551	624	623	624	623		1	571
-공공요금및제세 (210-02)	494	475	473		3	494	473	471	473	471		2	494
-피복비(210-03)	113	113	113			113	113	110	113	110		3	113
-특근매식비 (210-05)	33	13	10		2	33	13	13	13	13			13
-임차료(210-07)	38	41	37		3	38	36	33	36	33		3	38
-유류비(210-08)	50	50	50			50	50	49	50	49		1	50
-시설장비유지비 (210-09)	73	120	116		3	73	87	87	87	87			73
-재료비(210-11)	106	95	92		2	106	106	106	106	106			156
-복리후생비 (210-12)	58	58	58			72	72	67	72	67		5	72
-일반용역비 (210-14)	8	8	8			177	157	134	157	134		23	177
-관리용역비 (210-15)	39	39	39			39	39	39	39	39			39
-기타운영비 (210-16)	6	6	6			6	6	6	6	6			6
-국내여비 (220-01)	101	101	101			81	81	81	81	81			101
-국외업무여비 (220-02)	34	34	30		3	34	34	34	34	34			34
-사업추진비 (240-01)	20	20	20			20	20	20	20	20			28
-고용부담금 (320-09)	737	737	737			762	762	748	762	748		14	794
-자산취득비 (430-01)	180	180	180			228	228	228	228	228			457
· 조선왕릉 능제복원	18,383	18,874	16,207	1,108	1,557	13,929	14,784	11,661	13,676	10,708	1,616	1,507	13,929
- 일반수용비 (210-01)													6

			2022					2023(′	 23.12월	 말)			
								· · ·	전년도				
	예신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제 예산 현액	외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2024 예산
- 일반용역비 (210-14) - 관리용역비 (210-15)	168	168	150		18	109	89	87	89	87		2	258 61
- 일반연구비 (260-01)	608	608	542		64	590	357	355	357	355		2	1,316
-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 실시설계비	504	504	504 [189]	•	40.6		-10						
(420-02) - 공사비	1,670			38	486	711	749	471	711	433	103		1,021
(420-03) - 감리비	14,601	15,064	13,152	1,045	866	12,144	13,189	10,436	12,144	9,546	1,455	1,298	11,139
(420-04)	743	771	623	25	123	307	332	248	307	223	58	26	552
- 시설부대비 (420-05) - 자산취득비 (430-01)	89	89	89			68	68	64	68	64		4	56 20
·조선왕릉 부적합 시설물 철거	875	2,918	2,904		14	4,969	4,969	1,632	4,969	1,632	3,275	62	6,863
- 일반연구비 (260-01)	43	43	43										
- 실시설계비 (420-02)	74	74	64		10	397	397	212	397	212	123	62	304
- 공사비 (420-03)	728	2,618	2,618			4,370	4,370	1,218	4,370	1,218	3,152		6,257
- 감리비 (420-04)	25	178	174		4	196	196	196	196	196			282
- 시설부대비 (420-05)	5	5	5			6	6	6	6	6			20
·조선왕릉 문화기반 구축	2,000	1,929	1,346	340	241	1,709	2,005	1,892	1,665	1,576		113	1,747
- 일반수용비 (210-01)	160	160	159		1	126	126	126	126	126			126
- 일반용역비 (210-14)	1,747	1,747	1,165	340	240	1,490	1,830	1,717	1,490	1,401		113	1,528
- 관리용역비 (210-15)	93	22	22			93	49	49	49	49			93
·조선왕릉 원형고증 및 연구지원	435	435	435 [435]			435	435	435 [435]	435	435 [435]			390
- 민간경상보조 (320-01)	435	435	435 [435]			435	435	435 [435]	435	435 [435]			390
· 조선왕릉 토지매입	4,791	4,725	4,555		170	4,101	4,101	3,367	4,101	3,367		734	13,346

			2022					2023(23.12월	말)			
	പ്പിവ	וג ווג	집행액				(د (د	집행액	전년도 제		A) 6)	но	2024
	예산책 (추경)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 건설보상비 (410-00)	4,791	4,725	4 , 555		170	4,101	4,101	3,367	4,101	3,367		734	13,346
· 조선왕릉 역시문화관 확충		946	940		6								
- 공사비 (420-03)		907	901		6								
- 감리비 (420-04)		39	39										

1) 사업목적·내용

- (조선왕릉 경상관리) 조선왕릉 118기에 대한 시설관리 인력 운영 및 경상관리
- (조선왕릉 능제복원) 조선왕릉 118기 중 훼손된 능제의 원형 복원 및 시설물 보수, 전통조경 조성관리
- (조선왕릉 부적합시설물 철거) 조선왕릉 내 능제를 훼손하고 있는 부적합시설물에 대한 철거
- (조선왕릉 문화기반 구축) 조선왕릉 118기에 대한 다양한 활용 콘텐츠 개발 등
- (조선왕릉 원형고증 및 연구지원) 조선왕릉 제향행사의 원형고증 등 지원
- (조선왕릉 토지매입) 조선왕릉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 원형복원을 위한 주변 사유지 매입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② 추진경위 : 조선왕릉 내 문화재 훼손방지 및 문화유산 원형보존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06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32,495	34,434	32,902	32,022	43,60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및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민간단체

- 사업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4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조선왕릉 원형고증 및 연구지원	보조	(사)전주이씨 대동종약원	390	100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1항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 1항 3호

(6) 전통수목양묘사업소운영 (2232-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OJ HL 첫 기	ㅁ 치 게 쳐	그느ㅇ저ㅂㅂ		060	064
명칭	일반회계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200	2232	304
명칭	궁능원보존관리	궁능원시설관리운영	전통수목양묘사업소운영

口ス	□ 사업 성격									
x1 7	계속	o) =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包开	1/114	전요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0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0						

사업명	구분								
전통수목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양묘사업소	소관부처	궁능유적본부	조은경	김연정	한상혁				
운영	- U / 1	복원정비과	02-6450-3840	02-6450-3841	02-6450-3842				

(단위: 백만원, %)

사어며	사업명 2022년		l 예산	202	4년	증감	
শ্ভত	결산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전통수목양묘	207	416	41.6	417	417		
사업소운영	397	416	416	417	417	_	-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2022					2023	(′23. 12 .	월말)			
	예신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제 예산 현액		이월 예 상 액	불용 예 〉 액	2024 예산
○ 키니버 H크/컨크N	44.4	404	_		27	41.6	41.7		_ ,	행액]		24	41.77
○ 기능별 분류(합계)	414	424	397		27	416	416	382	416	382	-	34	417
· 전통수목양묘사업 소운영	414	424	397	-	27	416	416	382	416	382	-	34	417
○ 비목별 분류(합계)	414	424	397	-	27	416	416	382	416	382	-	34	417
·상용임금(110-03)	32	33	33	-	-	33	33	30	33	30	_	4	34
·일용임금(110-04)	112	112	112	-	_	112	112	112	112	112	-	-	112
·일반수용비 (210-01)	23	20	20	-	-	24	24	24	24	24	-	_	24
·공공요금및제세 (210-02)	1	1	-	-	1	1	1	1	1	1	-	_	1
·특근매식비 (210-05)	4	4	4	-	-	4	4	4	4	4	-	-	4
·임차료(210-07)	8	11	11	-	-	8	11	11	11	11	-	-	8
·유류비(210-08)	11	11	10	-	1	11	11	11	11	11	-	-	11
·시설장비유지비 (210-09)	5	5	5	-	-	5	5	5	5	5	-	-	5
·재료비(210-11)	40	40	40	-	_	40	37	37	37	37	-	-	40
·복리후생비(210-12)	-	-	-	-	_	1	1	1	1	1	-	-	1
·국내여비(220-01)	15	15	1	-	14	15	15	15	15	15	-	-	15
·고용부담금(320-09)	6	16	16	-	_	6	6	6	6	6	-	_	7
·공사비(420-03)	134	134	125	-	9	134	134	107	134	107	_	27	134
-시설부대비(420-05)	1	1	1	-	_	1	1	0	1	0	_	1	1
·자산취득비(430-01)	20	20	20	-	_	20	20	18	20	18	-	2	20

1) 사업목적·내용

- (전통수목양묘사업소운영)
- 4대궁·종묘·조선왕릉 전통조경 복원 및 유지 관리용 맞춤형 고유 수종 생산·보급
- 문화재 복원, 보수용 특수·특대목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맞춤형 공급을 위한 삼척 준경묘·영경묘 소나무숲 관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문화재보호법 및 조선왕릉 보전관리계획(2007. 12.)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훈령 제11호(2020. 2. 20.) 제3장 전통수목양묘사업
- ② 추진경위
- 1972년 궁능원 전통조경 정비 및 경관 유지를 위한 고유 수종 양묘 생산 사업 추진
- 1999년 문화재 복원·보수용 목재 일부 수입 목재 사용에 대한 감사원 감사 지적
 - * 문화재 복원·보수용 목재 생산을 위한 삼척 준경묘·영경묘 산림 관리 추진(대통령 보고)

□ 주요내용

-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376	380	414	416	417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 없음

(7) 궁능유적관리수입대체경비(2232-65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OJ HL 첫 기	ㅁ 치 게 쳐	그느ㅇ저ㅂㅂ		060	064
명칭	일반회계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200	2232	651
명칭	궁능원관리	궁능원시설관리	궁능유적관리수입대체경비

□사	□ 사업 성격									
x1 7.	괴소	o) =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刊出	계속	전묘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0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0			0		100%	

사업명			구분		
3 3 - 43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관람지원	소관부처	궁능유적본부	송인헌	민병철	조혜연
인력운영		궁능서비스기획과	02-6450-3820	02-6450-3821	02-6450-3825
	사업시행주체				
ㅁ싦체기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행사 및	소관부처	궁능유적본부	송인헌	민병철	조혜연
ביו בובו ב		궁능서비스기획과	02-6450-3820	02-6450-3821	02-6450-3825
원 급기 크 운영	 사어시해즈케	(사)한국의재발견 우리문화숨결		강천웅 사무국장	02-735-5733
L 0	小月八名十小	우리문화숨결		김희준 사무국장	02-723-4206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		202	4년	중감	
71 H 3	결산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궁능유적관리수입	10 001	11 220	11 220	11 (01	11 (01	202	2.6
대체경비	10,801	11,328	11,328	11,621	11,621	293	2.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2022					2023(′	23.12월	말)			
										이월액			
	예산액	예산	집행액	. 161.2	24.31		예산	집행액	저	외	이월	불용	2024
	(추정)	^개 년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୩ଧଫ	예산
○ 기능별 분류(합계)	10,977	10,977	10,801		176	11,328	11,328	10,957 [10,957]	11,328	10,957 [10,957]		371	11,621
· 관 람 지 원 인 력 운영	9,733	9,733	9,571		162	10,056	10,056	9,752	10,056	9,752		304	10,361
·문화행사 및 관람 시설 운영	1,244	1,244	1,231		14	1,272	1,272	1,205	1,272	1,205		67	1,260
○ 비목별 분류(합계)	10,977	10,977	10,801		176	11,328	11,328	10,957 [10,957]	11,328	10,957 [10,957]		371	11,621
・상용임금(110-03)	8,056	8,056	7,953		103	8,326	8,326	8,074	8,326	8,074		252	8,563
· 일용임금(110-04)	121	121	106		15	121	121	108	121	108		13	121
· 일 반 수 용 비 (210-01)	715	774	768		6	715	845	843	845	843		2	715
· 공공요금및제세 (210-02)	35	20	20			35	39	28	39	28		11	35
· 피복비(210-03)	57	57	57			57	57	57	57	57			57
· 특 근 매 식 비 (210-05)	30	7	6		1	30	3	3	3	3			30
・ 임차료(210-07)	27	3	3			27	3	3	3	3			27
· 복리후생비 (210-12)	110	110	110		1	138	138	134	138	134		4	138
· 관 리 용 역 비 (210-15)	84	87	87			84	0	0	0	0			84
· 일 반 연 구 비 (260-01)	100	100	95		6	100	100	51	100	51		49	100
・ 포상금(310-03)	10	10	10			10	10	10	10	10			10
· 민 간 경 상 보 조 (320-01)	76	76	76			76	76	76 [76]	76	76 [76]			64
· 고 용 부 담 금 (320-09)	1,556	1,556	1,512		44	1,609	1,609	1,570	1,609	1,570		39	1,677

			2022					2023(′	 23.12월	 말)			
										이월액			
	예산액	예산	집행액				예산	집행액	제	외	이월	불용	2024
	^{게진국} (추경)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상액		예산
○ 기능비목별 분류 (합계)	10,977	10,977	10,801 [10,801]		176	11,328	11,328	10,957 [10,957]	11,328	10,957 [10,957]		371	11,621
· 관 람 지 원 인 력 운 영	9,733	9,733	9,571		162	10,056	10,056	9,752	10,056	9,752		304	10,361
- 상 용 임 금 (110-03)	8,056	8,056	7,953		103	8,326	8,326	8,074	8,326	8,074		252	8,563
- 일 용 임 금 (110-04)	121	121	106		15	121	121	108	121	108		13	121
- 고 용 부 담 금 (320-09)	1,609	1,556	1,512		44	1,609	1,609	1,570	1,609	1,570		39	1,677
·문화행사 및 관람 시설 운영	1,272	1,244	1,231		14	1,272	1,272	1,205 [1,205]	1,272	1,205 [1,205]		67	1,260
- 일 반 수 용 비 (210-01)	715	774	768		6	715	845	843	845	843		2	715
- 공공요금및제세 (210-02)	35	20	20			35	39	28	39	28		11	35
- 피복비(210-03)	57	57	57			57	57	57	57	57			57
- 특 근 매 식 비 (210-05)	30	7	6		1	30	3	3	3	3			30
- 임차료(210-07)	27	3	3			27	3	3	3	3			27
- 복 리 후 생 비 (210-12)	138	110	110		1	138	138	134	138	134		4	138
- 관 리 용 역 비 (210-15)	84	87	87			84	0	0	0	0			84
- 일 반 연 구 비 (260-01)	100	100	95		6	100	100	51	100	0		49	100
- 포상금(310-03)	10	10	10			10	10	10	10	10			10
- 민간경상보조 (320-01)	76	76	76			76	76	76 [76]	76	76 [76]			64

1) 사업목적·내용

- (관람지원인력 운영) 궁능 내 관람지원인력 배치 및 운영을 통한 서비스 공급역량 강화로 문화유산 접근성 제고
- (문화행사 및 관람시설 운영) 궁능의 관람시설 개선 및 문화행사 등 운영으로 궁능을 찾는 관람객이 과거의 삶, 문화, 역사를 직접 보고 느끼며,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문화콘텐츠 제공 및 고객지향적 관람정책 개발로 국민의 문화향유권 증대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 ② 추진경위
 - 대통령 지시('98.3.7 업무보고시 관광산업 육성 지시)
 - 문화재를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관람환경 개선과 경상관리를 통해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 및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과 우수성 홍보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06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12,022	10,787	10,977	11,328	11,621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및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민간단체

- 사업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4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문화행사 및	ΗЭ	(사)한국 의재발견	40	100	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
관람시설 운영	보조	우리문화 숨결	24	100	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1항 ㅇ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 1항 3호

(8) 궁능원 활용콘텐츠 개발·운영(2233-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Ol મો. જો ગો	ㅁ쉵케ᅱ	그ㄴㅇ궈ㅂㅂ		060	064
명칭	일반회계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200	2233	301
명칭	궁능원관리	궁능원활용활성화	궁능원 활용콘텐츠 개발·운영

□ 사	□ 사업 성격									
신규	괴소	റി =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2年	계속	전묘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0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О						

사업명			구분		
궁능원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활용콘텐츠	소관부처	궁능유적본부	송인헌	정명환	차지은
개발운영		궁능서비스기획과	02-6450-3820	02-6450-3836	02-6450-3834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	202	4년	증감	
71 日 0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궁능원 활용콘텐츠	20.040	20.824	22.624	22.624	1 000	9.6
개발·운영	29,040	20,824	22,624	22,624	1,800	8.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2022						2023(′	23.12월	말)				
	예산액	예산	집행액				예산	집행액	전년도 제	이월액 외	이월	불용	2024 예산
	(추경)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상액		예산
○ 기능별 분류(합계)	20,121	29,171	29,040		131	20,824	20,804	20,680	20,804	20,680		124	22,624
· 궁중문화축전	5,000	5,000	5,000			5,016	5,016	5,016	5,016	5,016			7,016
·수문장 교대의식	3,850	3,850	3,850			3,790	3,790	3 <i>,</i> 790	3,790	3,790			4,636
· 사회적 배려대상자 초청 활용프로그램	500	500	500			567	567	567	567	567			1,000
· 궁중의례재현 및 체험프로그램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275
· 궁중 전통공연 및 탐방체험 <u>프로</u> 그램	4,689	4,689	4,689			5,499	5,499	5,499	5,499	5,499			5,960
 비대면 궁능 활용 온라인 콘텐츠 운영 	1,050	1,050	1,050			550	550	550	550	550			-
· 왕릉 <u>활용프로그</u> 램 개발운영	2,440	2,440	2,440			2,380	2,380	2,380	2,380	2,380			2,380
· 야간관람콘텐츠 확충	1,290	1,290	1,164		126	1,540	1,540	1,423	1,540	1,423		119	-
· 궁능활용프로그램 운영비	177	177	172		5	357	337	332	337	332		5	357
·청와대 권역 위임 관리		9,050	9,050										
○ 비목별 분류(합계)	29,171	29,171	29,040		131	20,824	20,804	20,680	20,804	20,680		124	22,624
· 일 반 수 용 비 (210-01)	95	95	93		2	95	95	95	95	95			95
· 일 반 용 역 비 (210-14)	360		351		9	590	570	550		550		20	250
· 국내여비(220-01)	10	10	10			10	10	10	10	10			10

			2022					2023(′	23.12월	!말)			
	예산액	예산	집행액				예산	집행액		이월액 외	이월	불용	2024 예산
	"근 ((추경)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 C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상액		11.02
· 사업추진비 (240-01)	2	2	2			2	2	2	2	2			2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27,704	27,704	27,704			18,927	18,927	18,927	18,927	18,927			22,267
· 실 시 설 계 비 (420-02)	66	66	64		2	83	83	76	83	76		7	
・공사비(420-03)	920	920	802		118	1,099	1,099	1,006	1,099	1,006		93	
· 감리비(420-04)	11	11	11			15	15	11	15	11		4	
· 시설부대비 (420-05)	3	3	3			3	3	3	3	3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0,121	29,171	29,040		131	20,824	20,804	20,680	20,804	20,680		124	22,624
· 궁중문화축전	5,000	5,000	5,000			5,016	5,016	5,016	5,016	5,016			7,016
-민간위탁사업비 (320-02)	5,000	5,000	5,000			5,016	5,016	5,016	5,016	5,016			7,016
• 수문장교대의식	3,850	3,850	3,850			3,790	3,790	3,790	3,790	3,790			4,636
-민간위탁사업비 (320-02)	3,850	3,850	3,850			3,790	3,790	3,790	3 <i>,</i> 790	3,790			4,636
· 사회적배려대상 초청 활용프로그램	500	500	500			567	567	567	567	567			1,000
-민간위탁사업비 (320-02)	500	500	500			567	567	567	567	567			1,000
· 궁중의례재현 및 체험프로그램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275
-민간위탁사업비 (320-02)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125			1,275
· 궁중 전통공연 및 탐방체험 프로그램	4,689	4,689	4,689			5,499	5,499	5,499	5,499	5,499			5,960
-민간위탁사업비 (320-02)	4,689	4,689	4,689			5,499	5,499	5,499	5,499	5,499			5,960
· 비대면 궁능 활용 온라인 콘텐츠 운영	1,050	1,050	1,050			550	550	550	550	550			
-민간위탁사업비 (320-02)	1,050	1,050	1,050			550	550	550	550	550			
· 왕릉 활용프로그 램 개발운영	2,440	2,440	2,440			2,380	2,380	2,380	2,380	2,380			2,380
-민간위탁사업비 (320-02)	2,440	2,440	2,440			2,380	2,380	2,380	2,380	2,380			2,380
(520-02) · 야간관람콘텐츠 확충	1,290	1,290	1,164		126	1,540	1,540	1,423	1,540	1,423		119	
- 일 반 용 역 비 (210-14)	290	290	284		6	340	340	325	340	325		15	
- 실 시 설 계 비 (420-02)	66	66	64		2	83	83	76	83	76		7	
-공사비(420-03)	920	920	802		118	1,099	1,099	1,006	1,099	1,006		93	

			2022				2023(′	23.12월	말)			
	പിചിവി	أدائم	집행액			(د (ئ	집행액	전년도 제	이월액 외	۵۱ ۵۱	но	2024 예산
	예산책 (추경)	1산의 예산 실집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취행 [실 취행 [설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			
-감리비(420-04)	11	11	11		15	15	11	15	11		4	
- 시설부대비 (420-05)	3	3	3		3	3	3	3	3			
·궁궐활용프로그 램 운영비	177	177	172	5	357	337	332	337	332		5	357
- 일 반 수 용 비 (210-01)	95	95	92	2	95	95	95	95	95			95
- 일 반 용 역 비 (210-14)	70	70	67	3	250	230	225	230	225		5	250
- 국 내 여 비 (220-01)	10	10	10		10	10	10	10	10			10
- 사업추진비 (240-01)	2	2	2		2	2	2	2	2			2
· 청와대 권역 위임 관리		9,050	9,050									
-민간위탁사업비 (320-02)												

1) 사업목적·내용

- 생활수준 향상, 주5일제 정착, 외국인 관광객 천만시대 도래 등 늘어나는 문화유산 향유 수요 증대에 능동적 대비 및 문화유산 창조적 활용, 고부가가치화 도모를 위한 문화유산 활용 대표 브랜드 구축
- o 문화유산의 품격을 높이고, 관람객에게 수준 높은 관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왕실문화 재현사업 지속 추진
- 전통문화의 정수라 할 수 있는 궁궐, 조선왕릉 문화를 국민에게 서비스하고, 문화
 유산 활용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우수사례로 제시
- (궁중문화축전) 문화유산의 가치증진과 국민과 외국관광객들의 문화유산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우리나라 문화유산인 '궁'의 의미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임
- (수문장 교대의식) 경복궁 및 창덕궁을 찾는 내외국인들이 궁궐 관람과 연계하여 즐길 수 있도록 조선시대 궁궐에서 일상적으로 거행되던 왕실호위문화의 정수인 '수문장 교대의식'을 재현하는 사업임
- (사회적 배려 대상자 초청 프로그램) 인기 있는 궁궐 활용 프로그램의 문화소외계 층의 전통문화 향유기회를 확대를 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초청하는 사업임
- (궁중 의례재현 및 일상체험 프로그램) 궁궐 방문객들이 궁중 의례 등 체험기회 확대를 위해 역사적 고증을 바탕으로 조선시대 궁중의례 등을 재현 및 재창조하는 사업임
- (왕릉 활용프로그램 개발운영) 문화유산의 가치 제고 및 국민 문화유산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조선 왕릉 탐방, 공연, 교육, 힐링 프로그램 운영 하는 사업임
- (궁궐활용프로그램 운영비) 궁궐활용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경상경비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국가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9조(한국문화재재단의 설치) ①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및 활용과 전통생활문화의 계발을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한국문화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82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문화재의 보호· 보존·보급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ㅇ ('09년) 대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역사와 문화가 살아숨쉬는 궁궐 만들기」 사업 착수
- (19년) 조선왕궁·왕릉의 체계적 복원·정비 및 효율적 활용을 통한 궁·능의 역사적 가치회복 및 향유기반 확대를 위하여 궁능유적본부 신설.
 - 이에 궁궐활용사업과 조선왕릉 활용사업을 포괄하는 「역사와 문화가 살아숨쉬는 궁능유적만들기」사업 추진
- ㅇ ('20년) 『궁능원 활용콘텐츠 개발운영』 신규 세부사업 편성
- ※ 궁궐문화재 운영, 문화유산활용진흥 등의 궁궐 활용사업을 궁능원 활용콘텐츠 개발운영 사업으로 통합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16,523	20,473	20,121	20,804	22,62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위탁 (국비 100%)
- 사업시행주체 : 국가(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민간위탁(한국문화재재단)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외국인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문화재보호

(1) 매장문화재보존 (2332-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Ol HJ જો ગો	ㅁ쉵케ᅱ	므칭키거케그		060	064
명칭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32	301
명칭	문화재보호	매장문화재보존관리	매장문화재보존

口ス	□ 사업 성격										
x1 7.	계속	റി =	예비타당성			사업소관 변경정보					
他开	1/1/4	전요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0						

사업명			구분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매장문화재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김동대	이동순	이재운
보존		발굴제도과	042-481-4940	042-481-4941	042-481-4942
	사업시행주체	직접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① 매장문화재	ア와세겡	문화재정책국	김동대	이동순	이재운
조사관리(지표, 발굴)		발굴제도과	042-481-4940	042-481-4941	042-481-4942
= =)	사업시행주체	직접			
		실·국·과(팀)	과 장	서기관	주무관
② 보존유적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김동대	임동훈	공승은
지적측량		발굴제도과	042-481-4940	042-481-4950	042-481-4951
	사업시행주체	직접			
③ 매장문화재	문화재청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T T			1
기초자료 <i>조</i> 사 및 활용		문화재정책국	김동대	이동순	최봉석
연구용역		발굴제도과	042-481-4940	042-481-4941	042-481-4942
	사업시행주체	직접			
(A) _1 ¬1 ¬1 ¬1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공무직
4) 매장문화재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김동대	전용호	윤다정
발견신고		발굴제도과	042-481-4940	042-481-4947	042-481-4945
보(포)상금	사업시행주체	직접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⑤ 발굴유물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김동대	김영식	정효원
역시문화공간 조성		발굴제도과	042-481-4940	042-481-4957	042-481-4977
32.8	사업시행주체	(사)한국문화유산협회		장재윤 연구원	042-384-1553
@ -3=6=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⑥ 발굴유물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김동대	김영식	정효원
역시문화공간		발굴제도과	042-481-4940	042-481-4957	042-481-4977
운영	사업시행주체	(사)한국문화유산협회		장재윤 연구원	042-384-1553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⑦ 중요출토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김동대	이동순	이재운
자료 관리·지원		발굴제도과	042-481-4940	042-481-4941	042-481-4942
	사업시행주체	(사)한국문화유산협회		김용주연구원	042-526-9273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	202	4년	증감	
71 8 3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매장문화재보존	7,517	10,891	6,212	6,212	△4,679	△43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2022					2023(′	23.12월	말)			
	예산액	예산	집행액				예산	집행액	전년도 제		이월	불용	2024
	(추경)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상액	예상액	예산
○ 기능별 분류(합계)	2,703	7,979	7,517		462	10,891	10,891	10,823	10,891	10,823			6,212

2022							2023(′	23.12월	말)				
									전년도				
	예산액	예산	집행액				예산	집행액	제		이월	불용	2024
	(추경)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케닌 현액	[실집 행액]	예산	집행액 [실집	예상액	_{교 8} 예상액	예산
			성펙					જાના	현액	[결심 행액]			
·매장문화재조사관 리(지표, 발굴)	518	518	493		25	532	532	466	532	466			536
·보존유적 지적측 량	100	100	71		29	100	100	100	100	100			
·매장문화재 기초 자료 조사 및 활 용 연구용역	130	130	96		34	56	56	54	56	54			
· 매장문화재 발견 신고 보(포)상금	30	30	28		2	30	30	30	30	30			30
· 발굴유물 역사문 화공간 조성	625	5,901	5,529		372	8,803	8,803	8,803	8,803	8,803			3,155
· 발굴유물 역사문 화공간 운영	1,300	1,300	1,300			1,170	1,170	1,170	1,17 0	1,170			2,291
· 중요출토자료 관 리·지원						200	200	200	200	200			200
○ 비목별 분류(합계)	2,703	7,979	7,517		462	10,891	10,891	10,823	10,891	10,823			6,212
· 상용임금(110-03)	89	89	83		6	92	92	87	92	87			94
· 일반수용비(210-01)	240	233	228		5	238	235	209	235	209			241
· 공공요금및제서(210-02)	3	3	1		2	3	3	2	3	2			3
· 특근매식비(210-05)	6	6	3		3	6	6	3	6	3			6
· 임차료(210-07)	7	7	4		3	7	10	9	10	9			7
· 복리후생비(210-12)	1	1	1			1	1	1	1	1			1
· 일반용역비(210-14)	100	107	<i>7</i> 8		29	100	100	100	100	100			
· 국내여비(220-01)	117	117	113		4	129	129	104	129	104			127
· 국외업무여비(220-02)	18	18	18			18	18	15	18	15			18
· 관서업무추진비(240-02)	10	10	10			10	10	10	10	10			10
· 일반연구비(260-01)	130	130	96		34	56	56	54	56	54			
·기타보전금(310-04)	30	30	28		2	30	30	30	30	30			30
·민간위탁시업비(320·02)	1,925	1,925	1,925			10,173	10,173	10,173	10,173	10,173			5,646
· 고용부담금(320-09)	17	17	15		2	18	18	16	18	16			19
· 실시설계비(420-02)						-	-		-				
・공사비(420-03)		4,842	4,483		359	-	-		-				
· 감리비(420-04)		53	53										
· 시설부대비(420-05)		50	37		13	-	-		-				
· 자산취득비(430-01)	10	341	341			10	10	10	10	10			10
○ 기능비목별 분류 (합계)	2,703	7,979	7,517		462	10,891	10,891	10,823	10,891	10,823			6,212
·매장문화재조사관 리(지표, 발굴)	518	518	493		25	532	532	466	532	466			536
-상용임금(110-03)	89	89	83		6	92	92	87	92	87			94
-일반수용비(210-01)	240	233	228		5	238	235	209	235	209			241
- 공공요금맟세세(21002)	3	3	1		2	3	3	2	3	2			3
-특근매식비(210-05)	6	6	3		3	6	6	3	6	3			6

			2022					2023(′	23.12월	[말)			
			الحالحال					기술이시	전년도 제	이월액			2024
	예신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세 예산 현액	의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9 예산
-임차료(210-07)	7	7	4		3	7	10	9	10	9			7
-복리후생비(210-12)	1	1	1			1	1	1	1	1			1
-국내여비(220-01)	117	117	113		4	129	129	104	129	104			127
-국외업무여비(220-02)	18	18	18			18	18	15	18	15			18
-관사업무추진비(24002)	10	10	10			10	10	10	10	10			10
-고용부담금(320-09)	17	17	15		2	18	18	16	18	16			19
-자산취득비(430-01)	10	10	10			10	10	10	10	10			10
· 보존유적 지적측량	100	100	71		29	100	100	100	100	100			
-일반용역비(210-14)	100	100	71		29	100	100	100	100	100			
·매장문화재 기초 자료 조사 및 활 용 연구용역	130	130	96		34	56	56	54	56	54			
-일반연구비(260-01)	130	130	96		34	56	56	54	56	54			
·매장문화재 발견신 고 보(포)상금	30	30	28		2	30	30	30	30	30			30
-기타보전금(310-04)	30	30	28		2	30	30	30	30	30			30
· 발굴유물 역사문화 공간 조성	625	5,901	1,457		372	8,803	8,803	8,803	8,803	8,803			3,155
-만위科(32002)	625	625	410			8,803	8,803	8,803	8,803	8,803			3,155
-실시설계비(420-02)													
-공사비(420-03)		4,842	4,483		359								
-감리비(420-04)		53	53										
-시설부대비(420-05)		50	37		13								
-자산취득비(430-01)		331	331										
· 발굴유물 역사문화 공간 운영	1,300	1,300	840			1,170	1,170	1,170	1,170	1,170			2,291
-만泮科(32002)	1,300	1,300	840			1,170	1,170	1,17 0	1,17 0	1,170			2,291
· 중요출토자료 관 리·지원					200	200	200	200	200	200			200
-만위타임(32002)					200	200	200	200	200	200			200

1) 사업목적·내용

- (매장문화재 조사·보호 경상관리) 동 내역사업은 매장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표·발굴조사의 문화재위원회 수당 등의 경상경비를 지원하는 것임

- (보존유적 지적측량) 동 내역사업은 보존유적의 정확한 위치와 범위에 대한 체계적 인 관리를 위해 보존조치 된 유적을 대상으로 지적측량하여 문화재 GIS(공간정보)에 등재하기 위한 것임.
- (매장문화재 보호·조사 연구용역) 동 내역사업은 매장문화재의 제도개선 등의 연 구용역을 추진하여 매장문화재의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매장문화재 발견신고 보(포)상금) 동 내역사업은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해 발견매 장문화재를 국가 귀속한 경우 그 문화재의 발견자, 습득자 및 발견된 토지나 건조물 등의 소유자, 발견신고자로서 발굴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대상으로 보·포상금을 지원하는 것임
-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 조성·운영) 동 내역사업은 방치된 지역유휴시설(폐터널)을 비귀속된 유물의 수장시설과 전시·체험공간으로 재활용하여 발굴유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임
- (중요출토자료 관리·지원) 동 내역사업은 인골, 미라 등 중요출토자료를 관리·지원하여 체계적인 보관·연구기반을 구축하고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ㅇ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은 원형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되어야 하며, 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조사・발굴하여서는 안된다"
 - ㅇ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 공사 지역에 문화재 매장, 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하여야 한다."
 - ㅇ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등)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발굴할 수 없다. 다만,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 에는 발굴할 수 있다."
- ② 추진경위
 - ㅇ 사업 시작년도 : 1993년
 - ㅇ 추진배경 : 개발사업 증가로 인한 매장문화재의 효율적인 보호 필요성 제기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1993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781	7,715	2,713	10,891	6,212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사)한국문화유산협회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2) 매장문화재보호및관리지원 (2332-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잌반회계	ㅁ 최 케 ᅯ	무화재정책국		060	064
명칭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32	302
명칭	문화재보호	매장문화재보존관리	매장문화재보호및관리지원

□ 사업 성격

	н о	7				
カユ	계수	이근	예비타당성 신시여브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包刊	/	선표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0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circ					70	

사업명		구분							
매장문화재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소관부처	문화재정책국	김동대	이동순	강수민				
보호 및		발굴제도과	042-481-4940	042-481-4941	042-481-4943				
관리지원	사업시행주체	직접							
① 문화재보호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소관부처	문화재정책국	김동대	이동순	강수민				
및 조사		발굴제도과	042-481-4940	042-481-4941	042-481-4943				
민간지원	사업시행주체	한국문화유산협회		최민정 부장	042)384-1560				
② 매장문화재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소관부처	문화재정책국	김동대	김영식	정효원				
미정리 유물		발굴제도과	042-481-4940	042-481-4957	042-481-4977				
보존 및 활용	사업시행주체	한국대학박물관협회		박소은 팀장	02)2220-1390				
③ 매장문화재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소관부처	문화재정책국	김동대	전용호	강윤희				
유존지역		발굴제도과	042-481-4940	042-481-4947	042-481-4978				
정보 고도화	사업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	202	4년	증감	
71 11 6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매장문화재 보호	10.110	0.214	F F24	F F24	A 2 (00	A 40 0
및 관리지원	10,110	9,214	5,524	5,524	△3,690	$\triangle 40.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2022				2023('23.12월말)								
	예산액 여	백 예산	집행액		기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이월	불용	2024
									제외				
	(추경)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1	예산
○ 기능별 분류(합계)	10,110	10,110	10,110 [7,424]	-	-	9,214	9,214	9,214 [7,108]	9,214	9,214 [7,108]	-	-	5,524
· 문화재보호 및 조사 민간지원	800	800	800 [800]	-	-	800	800	800 [800]	800	800 [800]	-	-	550
· 매장문화재 미정리 유물보존 및 활용	2,310	2,310	[2,288]	-	-	2,414	2,414	2,414 [2,399]	2,414	2,414 [2,399]	-	-	1,974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 정보 고도화	7,000	7,000	7,000 [4,336]	-	-	6,000	6,000	[3,909]	6,000	6,000 [3,909]	-	-	3,000
○ 비목별 분류(합계)	10,110	10,110	10,110 [7,424]	-	-	9,214	9,214	9,214 [7,108]	9,214	9,214 [7,108]	-	-	5,524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3,110	3,110	[3,088]	-	-	3,214	3,214	[925]	3,214	3,214 [925]	-	-	2,524
·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7,000	7,000	7,000 [7,424]	-	-	6,000	6,000	6,000 [3,909]	6,000	6,000 [3,909]	-	-	3,00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0,110	10,110	10,110 [7,446]	-	-	9,214	9,214	9,214 [7,108]	9,214	9,214 [7,108]	-	-	5,524
· 문화재보호 및 조사 민간지원	800	800	800 [800]	-	-	800	800	800 [800]	800	800 [800]	-	-	550
-민간위탁사업비 (320-02)	800	800	800 [800]	_	-	800	800	800 [800]	800	800 [800]	-	-	550
· 매장문화재 미정리 유물보존 및 활용	2,310	2,310	2,310 [2,288]	-	-	2,414	2,414	2,414 [2,399]	2,414	2,414 [2,399]	-	-	1,974
-민간위탁사업비 (320-02)	2,310	2,310	[2,288]	-	-	2,414	2,414	2,414 [499]	2,414	2,414 [499]	-	-	1,974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 정보 고도화	7,000	7,000	7,000 [4,336]	-	-	6,000	6,000	6,000 [3,909]	6,000	6,000 [3,909]	-	-	3,000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7,000	7,000	7,000 [4,336]	_	-	6,000	6,000	6,000 [3,909]	6,000	6,000 [3,909]	-	-	3,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문화재 보호 및 조사 민간지원)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교육 시행과 학술 연구활동 지원으로 매장문화재조사 및 전문 인력의 질적 수준 향상
- (매장문화재 미정리 유물보존 및 활용) 분실·훼손 우려가 큰 대학박물관 내 미정리 유물 일제 정리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국가주도의 전국토 대상 매장문화재 정밀 지표 조사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재로 국민의 토지이용 불편 해소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재나 문화재의 보호물・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제10조(문화재 기초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의 멸실 방지 등을 위하여 현존하는 문화재의 현황,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하거나 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조사·발굴과 관련된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라 한다)은 원형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되어야 하며, 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조사・발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의2(국가 등에 의한 지표조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는 제2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수행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등록)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장문화재의 조사· 발굴 및 보존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기관을 육성·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의3(조사 요원 교육) ① 조사기관의 조사 요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안전교육 등을 받아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과 조사기관은 조사 요원이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②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 문화재의 조사, 발굴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범위 등) ②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인 방법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그 정보를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적정성, 현재 지형 현황 등에 대한 의견을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④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위치에 관한 정보의 구체적 표시방법 및 추가 정보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국가 등에 의한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이하 "국가등지표조사"라한다)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미리 문화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이 아닌 지역을 포함하여 국가등지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한다.
- ③ 국가등지표조사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표조사 결과 보고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지표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조사지역의 역사, 고고, 민속, 지질 및 자연 환경에 대한 문헌조사 내용
- 2. 조사지역의 유물·유구 산포지(散布地), 민속, 고건축물(근대건축물을 포함한다), 지질 및 자연 환경 등에 대한 현장조사 내용
- 3. 조사를 수행한 조사기관의 의견
- ⑤ 문화재청장은 국가등지표조사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가 있으면 지표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다.

제27조의3(조사 요원 교육) ① 조사기관의 조사 요원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 1.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방법에 관한 교육
- 2. 매장문화재 조사 요원이 갖추어야 하는 소양에 관한 교육
- 3. 발굴조사 분야의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 ② 제1항 각 호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④ 문화재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1. 매장문화재의 조사 발굴 결과에 관한 홍보
- 2. 매장문화재 보호의 중요성에 관한 홍보
- 3. 매장문화재에 관한 연구 성과물 출판
- 4. 매장문화재와 관련된 전문 인력 교육
- 5. 그 밖에 매장문화재의 조사, 발굴 및 보호에 관한 업무에 관계되는 사항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06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5,795	6,610	10,110	9,214	5,52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위탁, 보조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한국문화유산협회, 한국대학박물관협회, 지자체 등

- 사업 수혜자 : 매장문화재조사연구 종사자 및 일반국민, 국·공립박물관 및 사립박물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 · 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4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매장문화재		ઝો ઝો 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유존지역	보조	지자체 보조	3,000	70	[별표1] 122호에 의거 '매장문화재 유존
정보 고도화		上公			지역 정보 고도화'보조율 70%반영

사 업 명

(3) 문화재예방관리강화 (2334-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므칭키저케그		060	064
명칭	글반외계	- 단와세경 	문화재정책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34	301
명칭	문화재보호	문화재안전관리체계강화	문화재 예방관리 강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オコ	계소	o). =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ゼエ	신규 계속 완료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0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7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0			0		70, 10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문화재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기기기시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이재원	김흥년	
감정관실		안전기준과	042-481-4933	042-481-4923	
운용	사업시행주체	직접			
T 된 레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 사범단속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이재원	김흥년	송태인
활동		안전기준과	042-481-4933	042-481-4923	042-481-4930
글 0	사업시행주체	직접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이재원	우은호	이윤정
안전관리		안전기준과	042-481-4933	042-481-4972	042-481-4931
	사업시행주체	직접			

문화재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유통질서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이재원	김흥년	정문경
#중결시		안전기준과	042-481-4933	042-481-4923	042-481-4924
지원	사업시행주체	민간단체			
문화재방재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드론 시스템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이재원	이준용	이진우
그는 시스템		안전기준과	042-481-4933	042-481-4821	042-481-4827
운영관리	사업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	202	4년	중감	
^ ভেল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문화재예방관리강화	2,083	2,514	2,459	2,459	△56	△2.2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	23.12월	말)			
	예산액	예산	집행액				예산	집행액	전년도 제	이월액 외	A) (i)	нo	2024
	예산책 (추경)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 기능별 분류(합계)	2,682 (2,554)	2,554	2,083 [435]		471	2,514	2,514	2,457 [627]	2,514	2,457 [627]			2,459
·문화재감정관실 운용	(-,,	1,425	1,229		196	1,553	1,553	1,521	1,553	1,521			1,553
·문화재사범단속 활동	101	101	96		5	101	101	92	101	92			101
·문화재 안전관리	356	356	358 [200]		△2	460	460	444 [270]	460	444 [270]			421
·문화재 유통질서 지원	100	100	100 [87]		-	100	100	100 [99]	100	100 [99]			84
·문화재 방재드론 시스템 운영관리	-	-	-		-	300	300	300 [258]	300	300 [258]			300
·문화재 방재드론 스테이션 구축 및 상황정보 유 지관리	572	572	300 [148]		272	ı	-	-	-	ı			-
○ 비목별 분류(합계)	2,682 (2,554)	2,554	2,083 [435]		471	2,514	2,514	2,457 [627]	2,514	2,457 [627]			2,459
· 상용임금 (110-03)	80	80	68		12	82	82	69	82	69			85
· 일반수용비 (210-01)	995 (867)	867	770		97	1,024	1,037	1,037	1,037	1,037			1,026

			2022					2023(′	23.12월	말)			
									전년도	이월액			
	예산액	예산	집행액				예산	집행액	제		이월	불용	2024
	(추경)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상액	예상액	예산
· 공공요금및제세 (210-02)	105	105	93		12	105	111	111	111	111			105
· 피복비 (210-03) 트그메시티	30	30	20		11	30	30	15	30	15			30
· 특근매식비 (210-05) · 임차료	5	5	5		-	5	6	6	6	6			5
· 김사료 (210-07) · 복리후생비	372	372	326		46	372	352	352	352	352			372
(210-12) · 관리용역비	1	1	1		-	1	1	1	1	1			1
(210-15) ·기타운영비	272	272	-		272	-	-	-	-	-			-
·기타군정미 (210-16) ·국내여비	24	24	19		5	25	25	18	25	18			24
(220-01)	73	73	72		1	74	74	74	74	74			73
· 국외업무여비 (220-02) · 관서업무추진비	16	16	16		-	16	16	6	16	6			16
(240-02)	13	13	13		-	12	12	12	12	12			11
· 특정업무경비 (250-03)	5	5	5		-	5	5	4	5	4			5
· 포상금 (310-03)	30	30	25 300		5	30	30	21 370	30	21 370			30
・민간경상보조 (320-01)	300	300	[287]		-	370	370	[369]	370	[369]			314
· 고용부담금 (320-09)	16	16	10		6	17	17	16	17	16			17
·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	-	-		-	300	300	300 [258]	300	300 [258]			300
·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300	300	300 [148]		-	-	-	-	-	-			-
· 자산취득비 (430-01)	45	45	41		4	45	45	45	45	45			45
○ 기능·비목별 분류 (합계)	2,682 (2,554)	2,554	2,083 [435]		471	2,514	2,514	2,457 [627]	2,514	2,457 [627]			2,459
문화재감정관실 운용	1,553 (1,425)	1,425	1,229		176	1,553	1,553	1,521	1,553	1,521			1,553
- 일반수용비 (210-01)	951 (823)	823	705		97	951	964	964	964	964			950
- 공공 요금및제세 (210-02)	105	105	93		12	105	111	111	111	111			105
- 피복비 (210-03)	30	30	20		10	30	30	15	30	15			30
- 임차료 (210-07)	372	372	326		46	372	352	352	352	352			372
- 기타운영비 (210-16)	24	24	19		6	25	25	18	25	18			24
- 국내여비 (220-01)	15	15	14		1	16	16	16	16	16			17
- 국외업무여비 (220-02)	16	16	16		-	16	16	6	16	6			16

			2022					2023(′	23.12월	말)			
									전년도	이월액			
	예산액	예산	집행액	이월액	불용 액	본예산	예산	집행액	제	의 집행액	이월	불용	2024 예산
	(추경)	현액	[실집 행액]	이필긕	골장객	문세간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접행적 [실집 행액]	예상액	예상액	71112
- 관서업무추진비 (240-02)	5	5	5		-	4	4	4	4	4			4
- 자산취득비 (430-01)	35	35	31		4	35	35	35	35	35			35
문화재사범단속 활동	101	101	96		5	101	101	92	101	92			101
- 일반수용비 (210-01)	21	21	21		-	21	21	21	21	21			21
- 특근매식비 (210-15)	5	5	5		-	5	6	6	6	6			5
- 국내여비 (220-01)	25	25	25		-	25	25	25	25	25			25
- 관서업무추진비 (240-02)	5	5	5		-	5	5	5	5	5			5
- 특정업무비 (250-03)	5	5	5		-	5	5	4	5	4			5
- 포상금 (310-03)	30	30	25		5	30	30	21	30	21			30
- 자산취득비 (430-01)	10	10	10		-	10	10	10	10	10			10
·문화재 안전관리	356	356	358		18	460	460	444 [270]	460	444 [270]			421
- 상용임금 (110-03)	80	80	68		12	82	82	69	82	69			85
- 일반수용비 (210-01)	23	23	23		-	52	52	52	52	52			58
- 복리후생비 (210-12)	1	1	1		-	1	1	1	1	1			1
- 일반용역비 (210-14)	-	-	20		-	-	-	-	-	-			-
- 국내여비 (220-01)	33	33	33		-	33	33	33	33	33			30
- 관서업무추진비 (240-02)	3	3	3		-	3	3	3	3	3			2
- 민간경상보조 (320-01)	200	200	200 [200]		-	270	270	270 [270]	270	270 [270]			230
- 고용부담금 (320-09)	16	16	10		6	17	17	16	17	16			17
·문화재 유통질서 지원	100	100	100		-	100	100	100 [99]	100	100 [99]			84
- 민간경상보조 (320-01)	100	100	100 [87]		-	100	100	100 [99]	100	100 [99]			84
·문화재 방재 드론 시스템 운영관리	-	-	-		-	300	300	300	300	300 [258]			300
-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	-	-		-	300	300	300 [258]	300	300 [258]			300
·문화재 방재 드론 스테이션 구축 및 상황정보 유지관리	572	572	300		272	-	-	-	-	-			-
- 관리용역비 (210-15)	272	272	-		272	-	-	-	-	-			-
-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300	300	300 [148]		-	-	-	-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문화재감정관실 운용) 국제공항, 항만 및 국제우체국 등에 문화재감정관실을 운영 하여 비문화재 확인 업무수행을 통한 문화재의 국외반출 방지
- (문화재 사범단속 활동) 문화재 단속 및 홍보활동을 통해 문화재사범 억제, 불법유 통 차단, 도난문화재 회수율 제고
- (문화재 안전관리) 문화재 안전점검, 안전관리교육 등을 통해 문화재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문화재 피해최소화 기반 마련
- (문화재매매업자 교육) 문화재매매업자의 법령·소양교육을 통한 문화재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 (문화재 방재 드론 시스템 운영관리) 문화재 방재드론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시스템 운영 및 경상적인 유지관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문화재보호법 제14조(화재등 방지 시책 수립과 교육훈련·홍보 실시)
 - ① 문화재청장과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화재, 재난 및 도난 (이하 "화재등"이라 한다)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②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 등을 대상으로 문화재 화재등에 대한 초기대응과 평상시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 화재등의 방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ㅇ 문화재보호법 제14조의2(화재등 대응매뉴얼 마련 등)
 - ①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특성에 따른 화재 등 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재의 범위 및 매뉴얼의 정기적 점검·보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ㅇ 문화재보호법 제14조의3(화재등 방지 시설 설치 등)
 - ①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지정문화재의 화재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소

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문화재의 도난방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ㅇ 문화재보호법 제14조의6(정보의 구축 및 관리)
 - ① 문화재청장은 화재등 문화재 피해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문화재 방재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집하여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구축된 정보가 항상 최신으로 유지될 수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15조의2(문화재매매업자 교육)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매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문화재매매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문화재 관련 소양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60조(일반동산문화재 수출 등의 금지)
 - ① 이 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 (이하 "일반동산문화재"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일반동산문화재의 국외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 등이 외국의 박물관 등에 일반동산문화재를 반출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반입하는 경우
 - 2. 외국 정부가 인증하는 박물관이나 문화재 관련 단체가 자국의 박물관 등에 서 전시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일반동산문화재를 구입 또는 기증받아 반출하 는 경우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수출이나 반출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받은 자는 허가된 일반동산문화재를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일반동산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하려면 미리 문화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와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라 반출을 허가받은

자가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반출목적 달성이나 문화재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당초 반출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 ⑧ 제1항 단서 및 제7항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국외 반출·수출 및 반출·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기 위한 구체적 심사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⑨ 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외 반출·수출을 허가받은 자에게 해당 문화재의 현황 및 보존·관리 실태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62의2(문화재감정위원의 배치 등)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불법 반출 방지 및 국외 반출 동산에 대한 감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항만법」 제2조제2호의 무역항, 「관세법」 제256조제2항의 통관우체국 등에 문화재감정위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재감정위원의 배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 ㅇ 문화재보호법 제86조(포상금)
 - ① 문화재청장은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죄를 저지른 자나 그 미수범(未遂犯)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자를 수사기관에 제보(提報)한 자와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② 수사기관의 범위, 제보의 처리,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ㅇ 문화재보호법 제85조(문화재 방재의 날)
 - ① 문화재를 화재 등의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존하고 국민의 문화재에 대한 안전관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2월 10일을 문화재 방재의 날로 정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 방재의 날 취지에 맞도록 문화재에 대한 안전점검, 방재훈련 등의 사업 및 행사를 실시한다.
 - ③ 문화재 방재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ㅇ 문화재보호법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 ①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임시지정문화재(건조물은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 2.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2천만원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상변경의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천연 기념물을 박제 또는 표본으로 제작한 자
- 2. 제1항·제2항 또는 제1호를 위반한 행위를 알고 해당 문화재를 취득, 양도, 양수 또는 운반한 자
- 3. 제2호에 따른 행위를 알선한 자
-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은닉 행위 이전에 타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같은 항에 따른 손상, 절취, 은닉,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지정문화재, 임시지정문화재 또는 일반동산문화재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처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은닉 행위자는 같은 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문화재는 몰수하되, 몰수하기가 불가능하면 해당 문화재의 감정가격을 추정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은닉 행위자가 선의로 해당 문화재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문화재감정관실 운용>

- 1968년부터 문화재의 국외반출 방지를 위해 국제공항 및 항만 등에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1983년부터 시·도 위임운영, 2007년부터 문화재청 직접 운영

<문화재사범단속활동>

- 문화재의 도난도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국민의식 계도 홍보 추진 및 사범단속활동 강화

<문화재안전관리>

- 2008년 숭례문 화재 계기로 종합방재대책을 마련 연차적 추진, 문화재 화재,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실시로 위험요소 사전제거, 교육·훈련·홍보활동을 통한 문화재 현장 방재력 강화 추진, 각종 정보 제공을 통한 문화재 방재 과학화 실현

<문화재 유통질서 지원>

- 문화재보호·육성 발전을 위한 문화재매매업자 교육의 필요성 국회 지속 제기되어 2020년부터 추진

<문화재 방재 드론 시스템 운영관리>

- 2021~2022년 문화재 재난안전 현장에 도입된 드론기술의 안정성 검증 및 문화재 방재에 적합한 드론 운영을 위한 경상적 유지관리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68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1,749	3,508	2,554	2,514	2,45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민간·지자체)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민간, 지자체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4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문화재안전 관리	보조	공모 선정	230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문화재 유통질서 지원	보조	공모 선정	84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문화재 방재드론 시스템 운영관리	보조	지자체 보조	300	7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문화재연구원운영

사 업 명

(1) 문화재연구원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R&D)(3102-1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OJ HL 중] 게	ㅁ 치 케 ᅯ	그리므청케어그이		060	064
명칭	일반회계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02	101
명칭	문화재연구원운영	문화재연구원인건비	문화재연구원인건비
53	군와세인무현단경	- 군와세천구천인신미 	(총액인건비대상)(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이. 큰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ゼサ	세숙 	世五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0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립문화재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연구원	소관부처	국립문화재연구원	장철호	현종환	권수빈				
인건비		행정운영과	042-860-9120	042-860-9125	042-860-9128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	2024년		증감	
71 11 6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문화재연구원인건비						
(총액인건비대상)	14,505	15,931	16,303	16,303	372	2.3
(R&D)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23.12월말)								
	പ്പിവി	ત્યા તો.	집행액				ત્યી તી.	집행액	전년도 제	이월액 외	이월	불용	2024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상액		예산
○ 기능별 분류(합계)	15,460	15,460	14,505		955	15,931	15,931	15,131	15,931	15,131		800	16,303
·문화재연구원인 건비	15,460	15,460	14,505		955	15,931	15,931	15,131	15,931	15,131		800	16,303
○ 비목별 분류(합계)	15,460	15,460	14,505		955	15,931	15,931	15,131	15,931	15,131		800	16,303
· 보수(110-01)	13,806	13,725	12,828		897	14,227	14,207	13,495	14,207	13,495		712	14,623
· 기타직보수 (110-02)	1,554	1,635	1,634		1	1,589	1,609	1,594	1,609	1,594		15	1,565
· 연가보상비 (110-05)	100	100	42		58	115	115	43	115	43		73	115
○ 기능비목별 분류 (합계)	15,460	15,460	14,505		955	15,931	15,931	15,131	15,931	15,131		800	16,303
· 보수(110-01)	13,806	13,725	12,828		897	14,227	14,207	13,495	14,207	13,495		712	14,623
· 기타직보수 (110-02)	1,554	1,635	1,634		1	1,589	1,609	1,594	1,609	1,594		15	1,565
· 연가보상비 (110-05)	100	100	42		58	115	115	43	115	43		73	11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립문화재연구원인건비) 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 등에 따른 국립문화재연구원 직원 보수 지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가공무원법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제48조(실비 변상), 제49조(국가기관 외의 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의 보수)

② 추진경위

- '69. 11. 05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실 설치
- '75. 04. 17 문화재관리국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연구소 직제개정
- '90. 01. 03 경주·부여·창원문화재연구소 신설
- '95. 11. 22 국립문화재연구소로 기관 명칭변경
- '03, 07, 25 건조물연구실 신설
- '04. 01. 17 국립문화재연구소 대전 대덕연구단지 이전
- '05. 08. 16 복원기술연구실·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정책기획과 신설(서무과 폐지)
- '06. 04. 06 자연문화재연구실 신설
- '06. 12. 29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개정, 국립문화재연구소 기본운영 규정 승인
- '07. 01. 01 책임운영기관 전환
- '07. 03. 15 연구기획과 신설 및 정책기획과를 연구지원과로 명칭 변경
- '07. 11. 30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신설
- '09. 4. 27 문화재보존과학센터 신설, 지방문화재연구소 내에 운영기획과 및 학예 연구실 신설, 연구지원과를 행정운영과로 명칭변경
- '14. 3. 11 무형문화재연구실을 국립무형유산원(조사연구기록과)으로 이관 (국립문화재연구소 기본운영규정 훈령 제45호)
- '17. 01. 01 안전방재연구실 신설
- '17. 02. 27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신설

- '19. 07. 23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신설
- '22. 02. 22 국립문화재연구원으로 기관명칭 변경 (국립문화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훈령 제121호)
- '22. 12. 29 디지털문화재연구정보팀 신설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14,962	15,795	15,460	15,931	16,303

- 기타: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문화재연구원

- 사업 수혜자 : 국민 및 관련 종사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2) 문화재연구원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R&D) (3118-21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OJ મી. જો ચો	ㅁ 취 케 키	그리므취케서그이		060	064
명칭	일반회계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18	211		
명칭	국립문화재연구원운영	문화재연구원기본경비	문화재연구원기본경비		
70'70'	그 답단와세원구천단정	· · 단와세 한 1 전기관경비 	(총액인건비대상)(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문화재연구 원기본경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립문화재연구원	장철호	현종환	연은희				
		행정운영과	042-860-9120	042-860-9125	042-860-9129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	202	4년	증감	
71 日 0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문화재연구원기본경비	1 (45	1 710	1 010	1 010	201	11 7
(총액인건비대상)(R&D)	1,645	1,718	1,919	1,919	201	11.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23.12월말)											
								-3-9-9	전년도	. – .			2024
	예산액	예산	집행액	이월액	14 O AN	Halls	예산	집행액	제		이월	불용	2024 예산
	(추경)	현액	[실집 행액]	이철색	불용액	본예산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상액	예상액	에긴
○ 기능별 분류(합계)	1,704	1,704	1,645		59	1,718	1,718	1,672	1,718	1,675	0	43	1,919
• 본원기본경비	698	748	706		42	701	703	691	703	691		12	899
·지방연구소·센터 기본경비	1,006	956	939		17	1,017	1,015	984	1,015	984		31	1,020
○ 비목별 분류(합계)	1,704	1,704	1,645		59	1,718	1,718	1,627	1,718	1,627	0	91	1,919
· 상용임금(110-03)	176	176	169		7	181	179	169	179	169		10	186
· 일반수용비(210-01)	147	148	148			162	169	169	169	169		0	163
· 공공요금및제세 (210-02)	524	592	589		3	520	558	540	558	540		18	645
· 피복비(210-03)	12	12	11		1	13	13	13	13	13		0	14
· 특근매식비(210-05)	15	15	9		6	12	12	12	12	12		0	12
· 일 · 숙직비(210-06)	28	9	9			18	10	9	10	9		1	18
· 임차료(210-07)	177	152	140		12	171	150	134	150	134		16	167
· 유류비(210-08)	59	59	43		17	49	49	43	49	43		6	47
· 시설장비유지비 (210-09)	297	273	268		5	315	291	290	291	290		1	384
· 복리후생비(210-12)	8	8	4		4	8	6	6	6	6		0	8
· 기타운영비(210-16)	72	72	67		4	72	72	60	72	60		12	72
· 국내여비(220-01)	31	31	30			38	38	32	38	32		6	38
· 관서업무비(240-02)	22	22	22			20	20	19	20	19		1	22
· 직책수행경비(250-02)	104	104	104			104	110	90	110	90		20	107
· 포상금(310-03)						0	6	6	6	6		0	0
·고용부담금(320-09)	33	33	33			35	35	35	35	35		0	36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704	1,704	1,645		59	1,718	1,718	1,672	1,718	1,675	0	43	1,919
· 본원 기본경비	698	748	706		42	701	704	691	704	691		13	899
- 상용임금(110-03)	176	176	169		7	181	179	168	179	168		11	186
- 일반수용비(210-01)	36	36	36			37	59	59	59	59		0	39

			2022					2023(′	23.12월	[말)			
										이월액			
	예산액	예산	집행액				예산	집행액	제		이월	불용	2024
	"근 (추경)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상액		예산
- 공공요금및제세 (210-02)	202	270	267		3	207	195	195	195	195		0	325
- 피복비(210-03)	7	7	6		1	7	7	7	7	7		0	7
- 특근매식비(210-05)	7	7	1		6	5	5	5	5	5		0	5
- 일·숙직비(210-06)	28	9	9			18	10	9	10	9		1	18
- 임차료(210-07)	26	26	14		12	26	44	43	44	43		1	26
- 유류비(210-08)	9	9	9			10	10	10	10	10		0	10
- 시설장비유지비 (210-09)	51	51	46		5	51	26	26	26	26		0	120
- 복리후생비(210-12)	8	8	4		4	8	6	6	6	6		0	8
- 기타운영비(210-16)	34	34	30		4	33	33	33	33	33		0	33
- 국내여비(220-01)	15	15	15			19	19	19	19	19		0	19
- 관서업무비(240-02)	14	14	14		0	12	12	12	12	12		0	12
- 직책수행경비 (250-02)	52	53	53			52	58	58	58	58		0	55
· 포상금(310-03)							6	6	6	6		0	0
- 고용부담금(320-09)	33	33	33			35	35	35	35	35		0	36
· 재명구소센터 기본경비	1,006	956	939		17	1,017	1,014	984	1,014	984	0	30	1,020
- 일반수용비(210-01)	111	111	111		-	125	110	110	110	110		0	123
- 공공요금및제세 (210-02)	322	322	322		0	313	363	356	363	356		7	320
- 피복비(210-03)	5	5	5		_	6	6	6	6	6		0	7
- 특근매식비(210-05)	8	8	8			7	7	6	7	6		1	8
- 임차료(210-07)	151	125	125		0	145	106	90	106	90		16	140
- 유류비(210-08)	50	50	33		17	39	39	34	39	34		5	37
- 시설장비유지비 (210-09)	246	222	222		-	264	265	265	265	265		0	264
- 기타운영비(210-16)	38	38	38		-	39	39	39	39	39		0	39
- 국내여비(220-01)	16	16	16		-	19	19	18	19	18		1	20
- 관서업무비(240-02)	7	7	7		-	8	8	8	8	8		0	10
- 직책수행경비 (250-02)	52	52	52		_	52	52	52	52	52		0	5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문화재연구원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R&D)))
 - ·문화재 연구의 안정적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 ·직원들의 복리후생 증진과 쾌적한 근무여건 조성을 통한 성과창출능력 향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조제2항, 제33조의10제1항
 - · 제2조 (소속기관) ② 문화재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별표1에 따라 문화재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문화재연구원을 둔다.
 - ·제33조의 10 (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립문화재연구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법 제10조의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69. 11. 05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실 설치
- '75. 04. 17 문화재관리국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연구소 직제개정
- '90. 01. 03 경주·부여·창원문화재연구소 신설
- '95. 11. 22 국립문화재연구소로 기관 명칭변경
- '03. 07. 25 건조물연구실 신설
- '04. 01. 17 국립문화재연구소 대전 대덕연구단지 이전
- '05. 08. 16 복원기술연구실·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정책기획과 신설(서무과 폐지)
- '06. 04. 06 자연문화재연구실 신설
- '06. 12. 29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개정, 국립문화재연구소 기본운영 규정 승인
- '07. 01. 01 책임운영기관 전환
- '07. 03. 15 연구기획과 신설 및 정책기획과를 연구지원과로 명칭 변경
- '07. 11. 30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신설
- '09. 4. 27 문화재보존과학센터 신설, 지방문화재연구소 내에 운영기획과 및 학예연구실 신설, 연구지원과를 행정운영과로 명칭변경
- '14. 3. 11 무형문화재연구실을 국립무형유산원(조사연구기록과)으로 이관 (국립문화재연구소 기본운영규정 훈령 제45호)
- '17. 01. 01 안전방재연구실 신설
- '17. 02. 27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신설
- '19. 07. 23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신설

- '22. 02. 22 국립문화재연구원으로 기관 명칭변경 (국립문화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훈령 제121호)
- '22. 12. 29 디지털문화재연구정보팀 신설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1969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1,759	1,742	1,704	1,718	1,919

- 기타: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문화재연구원

- 사업 수혜자 : 국민 및 관련종사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3) 문화재연구원기본경비(R&D) (3118-25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이 네.청 네	ㅁ 최 케 킹	그리므취케서그이		060	064
명칭	일반회계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프로그램 단위사업			
코드	3100	3118	251		
명칭	국립문화재연구원운영	문화재연구원기본경비	문화재연구원기본경비(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계소	속 완료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게득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0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문화재연구 원기본경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립문화재연구원	장철호	현종환	연은희				
		행정운영과	042-860-9120	042-860-9125	042-860-9129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	202	4년	증감	
71 ዓ ዓ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문화재연구원	845	000	921	921	22	2.7
기본경비(R&D)	843	888	921	921	33	3.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	23.12월	말)			
	2.1		집행						전\ 이월의	I	1.61		2024
	예산 액 (추경)	예산 현액	액 [실집 행액]	이월 액	불용 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 액 [실집 행액]	이월 예상 액	불용 예상 액	2024예 산
○ 기능별 분류(합계)	858	858	845		13	888	888	801	888	801		87	921
· 문화100 712 11 (1811)	858	858	845		13	888	888	801	888	801		87	921
○ 비목별 분류(합계)	858	858	845		13	888	888	801	888	801		87	921
· 상용임금(110-03)	713	706	697		10	734	734	677	734	677		57	755
· 공공요금및제세(21002)												0	5
· 복리후생비(210-12)	10	10	10		-	13	13	13	13	13		0	13
· 고용부담금(320-09)	135	142	138		3	141	141	111	141	111		30	148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858	858	845		13	888	888	801	888	801		87	921
·문화紀구원 본경 [RE]	858	858	845		13	888	888	801	888	801		87	921
· 상용임금(110-03)	713	706	697		10	734	734	677	734	677		57	755
· 공공요금및제세(21002)												0	5
· 복리후생비(210-12)	10	10	10		-	13	13	13	13	13		0	13
· 고용부담금(320-09)	135	142	138		3	141	141	111	141	111		30	14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문화재연구원기본경비(R&D))
 - ·문화재 연구의 안정적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 · 직원들의 복리후생 증진과 쾌적한 근무여건 조성을 통한 성과창출능력 향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조제2항, 제33조의10제1항
 - ·제2조 (소속기관) ② 문화재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별표1에 따라 문화재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문화재연구원을 둔다.
 - ·제33조의 10 (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립문화재연구원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법 제10조의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69. 11. 05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실 설치
- '75. 04. 17 문화재관리국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연구소 직제개정
- '90. 01. 03 경주·부여·창원문화재연구소 신설
- '95. 11. 22 국립문화재연구소로 기관 명칭변경
- '03. 07. 25 건조물연구실 신설
- '04. 01. 17 국립문화재연구소 대전 대덕연구단지 이전
- '05. 08. 16 복원기술연구실·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정책기획과 신설(서무과 폐지)
- '06. 04. 06 자연문화재연구실 신설
- '06. 12. 29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개정, 국립문화재연구소 기본운영 규정 승인
- '07. 01. 01 책임운영기관 전환
- '07. 03. 15 연구기획과 신설 및 정책기획과를 연구지원과로 명칭 변경
- '07. 11. 30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신설
- '09. 4. 27 문화재보존과학센터 신설, 지방문화재연구소 내에 운영기획과 및 학예연구실 신설, 연구지원과를 행정운영과로 명칭변경
- '14. 3. 11 무형문화재연구실을 국립무형유산원(조사연구기록과)으로 이관 (국립문화재연구소 기본운영규정 훈령 제45호)
- '17. 01. 01 안전방재연구실 신설
- '17. 02. 27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신설
- '19. 07. 23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신설

- '22. 02. 22 국립문화재연구원으로 기관 명칭변경 (국립문화재연구원 기본운영규정 훈령 제121호)
- '22. 12. 29 디지털문화재연구정보팀 신설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1969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799	843	858	888	921

- 기타: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문화재연구원

- 사업 수혜자 : 국민 및 관련종사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 · 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	272	-

문화재국제교류

-	274	-

사 업 명

(1) 문화재국제교류 (33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0] મી.જી ગો	문화재청	ㅁ칡케하요그		060	064
명칭	일반회계	T 와 4 성	문화재활용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300	3331	301
명칭	문화재국제교류	국제교류및세계유산등재	문화재국제교류

□ 사업 성격

_ ,	н о	•				
시그	기계속	이. 큰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2年	게숙	전요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0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0			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_ , ,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간	소관부처	문화재활용국	조동주	한나래	강정윤
교류협력		국제협력과	042-481-4730	042-481-4731	042-481-4735
	사업시행주체	직접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세계유산 관련	소관부처	문화재활용국	이예나	이상명	이찬형
국제기구 지원		세계유산정책과	042-481-3180	042-481-4617	042-481-4618
1 11 12	사업시행주체	직접			
4 3 4 3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우리 유산	소관부처	문화재활용국	조동주	박가연	채혜련
바로 세우기		국제협력과	042-481-4730	042-481-4732	042-481-4736
	사업시행주체	직접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거시기기기	소관부처	문화재활용국	조동주	박가연	채혜련
경상관리		국제협력과	042-481-4730	042-481-4732	042-481-4736
	사업시행주체	직접			

한-아세안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유산	소관부처	문화재활용국	조동주	한나래	강정윤
 협력기구		국제협력과	042-481-4730	042-481-4731	042-481-4735
설립 지원	사업시행주체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정책개발실	김덕순 실장	063-230-971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	202	2024년		
71 H 3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문화재국제교류	1,464	1,512	2,549	2,549	1,037	68.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23.12월말)							
	예산액	(액 예산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불용	2024
	애산국 (추경)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상액		예산
○ 기능별 분류(합계)	1,482	1,502	1,464 [1,464]	-	38	1,512	1,498	1,490 [1,488]	1,498	1,490 [1,488]	-	8	2,549
·국가간 교류협력	65	65	64	-	1	65	69	65	69	65	-	4	65
·세계유산 관련 국제기구 지원	1,076	1,076	1,040	-	36	1,076	1,058	1,058	1,058	1,058	ı	-	1,033
・우리 유산 바로 세우기	120	140	140	-	-	150	150	147	150	147	-	3	1,230
• 경상관리	21	21	20	-	1	21	21	20	21	20	-	1	21
· 한-아세안 문화 유산 협력기구 설립 지원	200	200	200 [200]	-	-	200	200	200 [198]	200	200 [198]	-	-	200
○ 비목별 분류(합계)		1,502	1,464 [1,464]	-	38	1,512	1,498	1,490 [1,488]	1,498	1,490 [1,488]	-	8	2,549
· 일 반 수 용 비 (210-01)	107	127	127	-	-	121	132	132	132	132	ı	-	121
· 공공요금및제세 (210-02)	21	21	21	-	-	37	26	23	26	23	-	3	37
· 특 근 매 식 비 (210-05)	2	2	1	-	1	2	2	1	2	1	-	1	2
· 임차료(210-07)	7	7	6	-	1	7	7	4	7	4	-	3	7
· 일 반 용 역 비 (210-14)	-	-	-	-	-	-	-	-	-	-	-	-	50

예산액 추경)	예산	집행액					,	ットンー	. 101-11			1		
	예산	기하이	2022					2023("23.12월말) 전년도 이월액						
	예걘	H-0-H				예산	집행액	제	외	이월	불용	2024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상액	_	예산		
13	13	13	-	-	13	13	13	13	13	-	-	13		
50	50	50	-	-	50	54	53	54	53	-	1	50		
4	4	4	_	-	4	4	4	4	4	-	-	4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30		
200	200	[200]			200	200	[198]	200	[198]					
-	-	-	-	-	-	-	-	-	-	-	-	1,000		
1,076	1,076	1,040	-	36	1,076	1,058	1,058	1,058	1,058	-	-	1,033		
2	2	2	-	-	2	2	2	2	2	-	-	2		
1,482	1,502	1,464	1	38	1,512	1,498	1,490 [1,488]	1,498	1,490 [1,488]	-	8	2,549		
65	65	64	-	1	65	69	65	69	65	-	4	65		
4	4	4	-	-	4	4	4	4	4	-	-	4		
7	7	6	-	1	7	7	4	7	4	-	3	7		
50	50	50	-	-	50	54	53	54	53	-	1	50		
4	4	4	-	-	4	4	4	4	4	-	-	4		
1.076	1.076	1.040	_	36	1.076	1.058	1.058	1.058	1.058	_	_	1,033		
				36					·			1,033		
	·			50	·						2			
			-	-						-	3	1,230		
100	120	120	-	-	114	125	125	125	125	-	-	114		
20	20	20	-	-	36	25	22	25	22	-	3	36		
-	-	-	-	-	-	-	-	-	-	-	-	50		
-	-	-	-	-	-	-	-	-	-	-	-	30		
-	-	-	-	-	-	-	-	-	-	-	-	1,000		
21	21	20	-	1	21	21	20	21	20	-	1	21		
3	3	3	-	-	3	3	3	3	3	-	-	3		
1	1	1	_	-	1	1	1	1	1	-	-	1		
2	2	1	-	1	2	2	1	2	1	-	1	2		
	4 200 - 1,076 2 1,482 65 4 7 50 4 1,076 120 100 20 - - 21 3 1	4 4 200 200 1,076 1,076 2 2 1,482 1,502 65 65 4 4 7 7 50 50 4 4 1,076 1,076 1,076 1,076 120 140 100 120 20 20 21 21 3 3 1 1	4 4 2000 [200] 200 [200] - 1,076 1,076 1,040 2 2 2 1,482 1,502 1,464 65 65 64 4 4 4 7 7 6 50 50 50 4 4 4 1,076 1,040 1,040 120 140 140 100 120 120 20 20 20 - - - - - - 21 21 20 3 3 3 1 1 1	4 4 4 - 200 200 - - 1,076 1,076 1,040 - 2 2 2 - 1,482 1,502 1,464 - 65 65 64 - 4 4 4 - 50 50 50 - 4 4 4 - 1,076 1,076 1,040 - 1,076 1,076 1,040 - 100 120 120 - 20 20 20 - - - - - 20 20 20 - - - - - 21 21 20 - 3 3 3 - 1 1 1 -	4 4 - - 200 200 - - 1,076 1,076 1,040 - 36 2 2 2 - - 1,482 1,502 1,464 - 38 65 65 64 - 1 4 4 4 - - 7 7 6 - 1 50 50 50 - - 4 4 4 - - 1,076 1,076 1,040 - 36 1,076 1,076 1,040 - 36 120 140 140 - - 20 20 20 - - 20 20 20 - - 21 21 20 - 1 3 3 3 - - 21 21 20 - 1 20 20 - - -	4 4 4 - - 4 200 200 200 - - 200 - - - - - - 200 1,076 1,076 1,040 - 36 1,076 1,076 1,502 1,464 - 38 1,512 65 65 64 - 1 65 4 4 4 - - 4 7 7 6 - 1 7 50 50 50 - - 50 4 4 4 - - 4 1,076 1,076 1,040 - 36 1,076 1,076 1,076 1,040 - 36 1,076 100 120 120 - - 114 20 20 20 - - 36 - - - - - - 21 21 20 - 1 <	4 4 4 - - 4 4 200 200 200 - - 200 200 1,076 1,076 1,040 - 36 1,076 1,058 2 2 2 - - 2 2 1,482 1,502 1,464 - 38 1,512 1,498 65 65 64 - 1 65 69 4 4 4 - - 4 4 7 7 6 - 1 7 7 50 50 50 - - 50 54 4 4 4 - - 4 4 1,076 1,040 - 36 1,076 1,058 120 140 140 - - 36 1,076 1,058 120 20 20 - - 36 25 - - - - - - -	4 4 4 - - 4 4 4 200 200 [198] - - 200 200 [198] - - 200 200 [198] -<	4 4 4 4 4 4 4 4 4 4 4 4 4 4 200 200 198] 200 200 198] 200 200 198] 200 198] 200 198] 200 198] 200 198] </td <td>4 200 [198] 200 [198] 1 200 [198] 1 200 [198] 1<</td> <td>4 1,076 1,076<td>4 4</td></td>	4 200 [198] 200 [198] 1 200 [198] 1 200 [198] 1<	4 1,076 1,076 <td>4 4</td>	4 4		

			2022			2023(′23.12월말)							
	예산액	예산	집행액				예산	집행액	전년도 제	외	이월	불용	2024
	예산책 (추경)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상액		예산
- 국 내 여 비 (220-01)	13	13	13	-	-	13	13	13	13	13	-	-	13
- 자 산 취 득 비 (430-01)	2	2	2	-	-	2	2	2	2	2	-	-	2
· 한-아세안 문화 유산 협력기구 설립 지원	200	200	200 [200]	-	-	200	200	200 [198]	200	200 [198]	-	-	200
- 민간경상보조 (320-01)	200	200	200 [200]	-	-	200	200	200 [198]	200	200 [198]	-	-	2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문화재 국제교류) 국가 간 문화유산 분야 교류협력을 통한 문화유산 분야 선도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
- (국가간 교류협력) 문화유산 분야 양해각서 체결 등 국제교류를 통한 국제사회 내 우호적 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국제개발협력 수원국과의 지속적 협의체제 구축
- (세계유산 관련 국제기구 지원) UNESCO, ICCROM 등 국제기구 의무분담금 및 신탁기금 납부를 통한 국제사회 내 위상 제고
- (우리 유산 바로 세우기) 우리 유산에 대한 영문 자료 제작·배포를 통해 국가 홍보 및 정확한 한국유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 유산 관련 이슈에 대응
- (한-아세안 문화유산 협력기구 설립 지원) 한-아세안 문화유산 협의체 운영회의 개최 등을 통한 문화유산 분야 한-아세안 연대 구상 이행 및 협력관계 강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ㅇ 문화재보호법 제17조(문화재 국제교류협력의 촉진 등)
 - 국가는 문화재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문화재에 관한 정보와 기술교환, 인력교류, 공동조사·연구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문화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문화재분야 협력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외국(일본,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멕시코, 이탈리아,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파키스탄, 프랑스 등)과 체결한 문화유산 교류 협정
- ㅇ 유네스코,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ICCROM) 등 국제기구과 체결한 약정
- ㅇ 문화재보호법 제6조의2(문화재의 연구개발)
 -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유연구 외에 공동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는 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대학, 산업체,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실시한다.
 -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대상 사업이나 그 밖에 공동연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ㅇ 문화재보호법 제15조(문화재보호활동의 지원 등)
 - 문화재청장은 문화유산을 보호·보급하거나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 문화재보호법 제82조(권한의 위임·위탁)
 - 이 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ㅇ 국가유산기본법 제26조(국가유산의 홍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가치를 확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유산을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ㅇ 국가간 교류협력

- ·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ICCROM) 규약 가입('68년)
- · 한-중 문화재 교류 합의서 체결, 갱신('98년 '05년, '17년)
- · 한-멕시코 간 문화유산의 보존 감정을 위한 합의서('01년)
- · 한-일 문화재 분야 교류 협력에 관한 토의기록 체결('03년)
- · 한-베트남 문화유산분야 교류협력 약정 체결, 갱신('06년, '16년)

- · 한-몽골 문화유산분야 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갱신('06년, '16년)
- · 한-호주 문화유산분야 교류협력 약정 체결('09년)
- · 한-라오스 문화유산분야 교류협력 약정 체결('11년)
- · 한-멕시코 문화유산분야 교류협력 약정 체결('11년, '18년)
- · 한-필리핀 문화유산분야 교류협력 약정 체결('11년)
- · 한-미얀마 문화유산분야 교류협력 약정 체결('12년)
- · 한-캄보디아 문화유산분야 교류협력 약정 체결 ('13년)
- · 한-라오스 세계유산 교류협력 약정 체결 ('13년)
- · 한-베트남 세부실행계획 체결, 갱신 ('14년, '16년, '19년)
- · 한-이탈리아 문화유산분야 교류협력 약정 체결 ('14년)
- · 문화재청-멕시코 문화부간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 분야 기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18년)
- · 한-우즈베키스탄 문화부 간 상호협력 양해각서 체결('19년)
- · 대한민국 문화재청과 파키스탄 문화유산청 간 문화유산분야 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21년)
- · 대한민국 문화재청과 이집트아랍공화국 유물최고위원회 간 고고학 및 소속 박물관 분야 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22년)
- · 대한민국 문화재청과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관광문화유산부 산하 문화유산청 간 문화유산 분야 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22년)
- · 대한민국 문화재청과 프랑스 국립기념물센터 간 문화유산 분야 교류협력 의향서 체결('22년)
- · 대한민국 문화재청과 키르기즈공화국 문화부 간 문화유산 분야 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23년)
- · 대한민국 문화재청과 캄보디아 압사라청 간 문화유산 분야 교류협력 공동보도문 발표('23년)

ㅇ 세계유산 관련 국제기구 지원

- ·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ICCROM) 가입('68년)
- · 문화재청-UNESCO 세계유산센터 간 아태지역 세계유산보호를 위한 신탁기금 양해각서 체결 및 갱신('11년, '22년)
- * '북한고구려 고분군 보존을 위한 신탁기금' 종료로 동 기금을 북한을 포함하여 '아태지역 세계유산 보존을 위한 신탁기금'으로 확대 설치 / '22년 갱신
- * '12년^현재 고구려고분군 및 벽화 보존, 실크로드 및 중앙아시아 세계유산 등재, 세계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지역공동체 참여 워크숍 등 아태지역 세계유산 보존관련 사업 지원 / '17년 갱신
- * '12년~17년 보존전문가 양성프로그램 및 주제별 전문가 포럼 매년 개최
- · 문화재청-ICCROM 아태지역 문화재 보존역량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및 갱신('12년, '17년, '22년)
- * 아시아권 문화유산 보존연수(CollAsia) 등 운영 / '17년 갱신
- · 문화재청-ICOMOS 세계유산협약 주제연구 준비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17년)
- * 아태지역 암각화, 차 문화경관 등 세계유산 관련 주제연구 시행
- · 문화재청-UNESCO 세계유산 등재 및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신탁기금 체결('22년)
- * 한반도 내 세계유산 관련 기술 지원, 전 세계 세계유산 관련 지역 간 협력, 세계유산 보존·홍보·역량강화 등

- · 문화재청-IUCN 세계유산협약 주제연구 준비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22년)
- * 현약에 따른 세계자연유산 역량강화 등 유산현장에서의 보존 품질 개선 관련 주제연구

ㅇ 우리 유산 바로 세우기

- · '08~'23 : 'KOREAN HERITAGE' 영문 홍보지 연간 4회 발행·배포 * 총 97개국, 2,083개소, 연 14,000부 배포
- · 올바른 문화유산 국내·외 홍보를 위한 문화재청·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 업무협약서 체결('21년)
- · 우리 유산 해외 홍보 및 국제 이슈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과 내 1계 신설('23년)

ㅇ 한-아세안 문화유산 협력기구 설립 지원

- · 한-아세안 특별문화장관회의 '한-아세안 문화유산 협력기구 설립' 제안('19년)
- · 한-아세안 정상회의 '한-아세안 문화유산 협력 플랫폼 구축' 발언('20년)
- · 한-아세안 문화유산 협의체 출범 및 제1차 운영회의 개최('22년)
- · 제2·3차 한-아세안 문화유산 협의체 운영회의 개최('23년)
- * 한-아세안 문화유산 협력사업 개발 논의 및 중장기 이행안 소개 등
- · 문화재청-주한아세안대사단 정책 간담회 개최('23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4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1,034	1,222	1,482	1,512	2,54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등

- 사업 수혜자 : 문화유산 분야 교류 대상국, 국제기구, 전 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4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우리 유산 바로 세우기	보조	공모	30	정액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1] 122호
한-아세안 문화유산 협력기구 설립 지원	보조	유네스코 아태무형 유산센터	200	정액	o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o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1] 122호

사 업 명

(2) 문화재국제협력(ODA) (3331-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الدائم المالية	n -1 11 -1			060	064
명칭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300	3331	302
명칭	문화재국제교류	국제교류 및 세계유산 등재	문화재국제협력(ODA)

□ 사업 성격

ı	217	신규 계속 왼		예비타당성			사업소관 변경정보				
ı	20分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0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소관부처	문화재활용국	조동주	한나래	강정윤			
		국제협력과	042-481-4730	042-481-4731	042-481-4735			
양자 ODA		한국문화재재단	국제협력단	전범환 단장	02-3011-2620			
67 ODA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문화커뮤니케이션팀	장자현 전문관	02-6958-4211			
	사업시행주체	유네스코	정책개발실	김덕순 실장	063-230-9710			
		아태무형유산센터	78 年/11 包 包	但可证 包含	003-230-9710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무과	이평화 팀장	044-270-5720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다자 ODA	소관부처	문화재활용국	이예나	이상명	이찬형			
		세계유산정책과	042-481-3180	042-481-4617	042-481-4618			
	사업시행주체	직접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	202	4년	중감	
71 11 8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문화재국제협력(ODA)	3,725	4,791	13,088	13,088	8,297	173.2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	23.12월	말)				
	예신액	예산	집행액				예산	집행액	전년도 제	. – .	이월	불용	2024
	예산책 (추경)	예산 현액	[<u>실</u> 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게 년} [실집 현액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상액	- 1	예산	
○ 기능별 분류(합계)	3,669	3,729	3,725	-	4	4,791	4,815	4,814	4,815	4,814	-	1	13,088
· 양자 ODA	3,484	3,484	3,484	-	-	4,564	4,564	4,534	4,564	4,534	-	-	12,843
· 다자 ODA	185	245	241	-	4	227	251	250	251	250	_	1	245
○ 비목별 분류(합계)	3,669	3,729	3,725	-	4	4,791	4,815	4,814	4,815	4,814	-	1	13,088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3,484	3,484	3,484	-	-	4,564	4,564	4,534	4,564	4,534	-	-	12,843
· 국제부담금 (340-02)	185	245	241	-	4	227	251	250	251	250	-	1	24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669	3,729	3,725	-	4	4,791	4,815	4,814	4,815	4,814	-	1	13,088
· 양자 ODA	3,484	3,484	3,484	-	_	4,564	4,564	4,534	4,564	4,534	-	-	12,843
-민간위탁사업비 (320-02)	3,484	3,484	3,484	-	-	4,564	4,564	4,534	4,564	4,534	-	-	12,843
· 다자 ODA	185	245	241	-	4	227	251	250	251	250	-	1	245
-국제부담금 (340-02)	185	245	241	-	4	227	251	250	251	250	-	1	24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문화재국제협력(ODA)) 위험에 처한 협력국의 세계유산 등 문화유산 보존 지원 및 국제기구(UNESCO, IUCN) 기여를 통해 수원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기여
- (양자 ODA)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자체수행을 위한 역량강화 등을 통해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대한민국 문화유산 분야 국제적 위상 강화
- (다자 ODA) 국제기구(UNESCO, IUCN) 기여를 통해 국제사회 내 대한민국 영향력 확대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ㅇ 문화재보호법 제17조(문화재 국제교류협력의 촉진 등)
 - 국가는 문화재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문화재에 관한 정보와 기술교환, 인력교류, 공동조사·연구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문화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문화재분야 협력에 관한 시책을 추진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ㅇ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장(민간위탁)
 -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미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② 추진경위

ㅇ 라오스 세계유산 왓푸-홍낭시다 복원 및 보존 자립역량 강화

- 문화재청-라오스 문화부 간 문화유산 분야 MOU 체결('11)
- '동아시아 크메르유적 기초조사 및 라오스 세계유산 복원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11~'12)
- 홍낭시다 유적 복원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12)
- 문화재청-라오스 문화부 간 세계유산(홍낭시다) 보존복원 협력 약정 체결('13)
- 보존환경 모니터링·지층분석, 정밀실측, 현장사무소 건립('13)
- 지표·시굴조사, 암석 성분분석, 복원 추정도 작성, 유적 고증연구('14)
- 시·발굴조사, 진입로 구축, 고증연구, 유적 보수설계, 지반 안전성 연구, 부재 수습·실측, 지하 유구 조사 위한 GPR 탐사, 영상 기록화사업, 국제심포지엄, 초청연수 등('15~'20)
- 유적 답도 발굴조사, 석재 보존처리 연구용역, 주신전 보수공사 등('17)
- 유물 실측 및 DB 구축, 주신전 부재현황 전수조사, 유물 분석 및 부재수습 등('18)
- 홍낭시다 플랫폼 및 만다파 해체조사 및 복원공사 진행('19)
- 라오스 최초 홍낭시다 금동요니 출토 및 과학적 보존처리('19)
- 유네스코 전문가자문단(EAG) 현장모니터링 후 사업 성과에 대한 이례적 극찬('19)
- 문화체육관광부-필리핀 관광부 간 관광산업 협력 양해각서 체결(19)
- ※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기간 중 체결, 양국 대통령 임석
- 라오스 ODA 2차사업 사전타당성 조사('20)
-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 속에서 1차사업의 안정적·성공적 완료('20)
- 사업 홍보 및 유적 안내를 위한 「왓푸 참파삭 세계유산 안내책자」 발간('20)
- 셀라영역 부재수습 및 해체조사, 문화유적 복원을 위한 기자재 지원(30톤급 크레인 등),

보존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현지연수, 유적 기록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왓푸참파삭 유적 안내책자 추가 제작, 왓푸-홍낭시다 유적정비 기본구상 등('21~)

ㅇ 파키스탄 간다라 문화육성과 관광자원 개발정책 지원 사업

- 파키스탄 정부의 간다라 불교유적 보존 요청('19)
- 파키스탄 문화유산 ODA 신규사업 사전타당성조사 실시('19.11.)
- 문화재청-파키스탄 문화유산청 간 문화유산 분야 MOU 체결('21)
- 한국문화재재단-파키스탄 고고학박물관국 간 협정서(Agreement) 체결('21)
- 간다라 문화유산 연구센터 보존처리 등 기자재 지원, 수원기관 및 문화유산 보존관리 관계자 역량강화, 간다라 문화유산 주요유적 인벤토리·기록화 DB 구축, 중간평가 등('22)

ㅇ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권 문화관광자원 개발 역량강화

- 문화재청-우즈베키스탄 문화부 간 MOU 체결(19)
- 대통령 우즈베키스탄 방한 및 정상 외교 후속조치 추진과제('19 / 71-2-13)
-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21.1.28.)
- * 대한민국이 추진 중인 문화재 복원 및 문화재 디지털 구축을 위한 협력사업 의제 논의(대통령 문화유산 협력사업 지속 협력해 나갈 것)
- 우즈베키스탄 역사문화박물관 보존처리실 개소식 및 기자재 기증식('21)
- 아프로시압박물관 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 및 환경개선 공사('21)
- 한-우즈벡 문화유산 보존 국제 심포지엄 개최 및 아프로시압박물관 지원 표지석 제막식 개최(21)
-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21.12.17.) 문화재 보존 협력 논의
- 2차 사업 수원국 요청서 접수('21)
- 문화재청-우즈벡 문화유산청 간 문화유산 분야 MOU 체결('22)
- 기초선 조사, 사업추진 5개년 계획 수립, 보존관리센터 구축 기본계획 수립, 고고학 연구소 현지기술교육 실시('22)

ㅇ 키르기즈공화국 전통공예기술 및 디지털마케팅 역량강화를 통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 ODA 전략협력국 대상 신규사업 발굴 수요조사('20)
- 사전 타당성 조사 실시 및 ODA 사업 연계 업무협의('21-'22)
 - ▶ 국제개발협력사업(ODA) 관련 주한키르기즈공화국 대사 면담('21.9.)
 - ▶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간 무무상 연계사업 논의('21.11.)
 - * 문화체육관광부 '키르기즈공화국 디지털문화자원관리시스템 구축 사업('22~'25)' 연계 추진
- '23년 무상원조 시행계획 의결 및 예산 승인('22)
- 한-키르기즈공화국 문화유산 분야 교류협력 MOU 체결('23)

ㅇ 이집트 룩소르 지속기능한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 역량강화 및 디지털 헤리티지 센터 구축 지원

- 이집트 관광유물부-문화재청에 문화재 보호·보존·반환 등에 관한 협정체결 요청('21)
- 국방부·방위사업청 對이집트 방산협력 지원 요청("21)
- 주이집트한국대사관과 '한-이집트 문화유산 교류협력' 추진 및 ODA 사업 발굴 계획 협의('21)
-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이집트 현지 사전타당성 조사 추진('21)
- 주이집트한국대사관 홍진욱 대사, 이집트 관광유물부 장관 면담('21)
- 대통령 이집트 순방('22.1.19.1.22.)에 따른 정상외교 후속조치 과제 신설
- ▶ 한-이집트 정상 공동언론발표문(문화유산 보존·복원 등 협력), 한-이집트 정상외교 후속조치 과제신설
- 한-이집트 문화유산분야 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및 고위급 회담('22)
- 주이집트한국대사관 홍진욱 대사, 이집트 관광유물부 장관 면담('22)
- ▶ 한-이집트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 진행 상황 공유 및 양국 관계 개선에 큰 성과가 될 것 합의
- 수원국 요청서 접수('22)
- '23년 무상원조 시행계획 의결 및 예산 승인('22)

ㅇ 유네스코 세계유산보호협약 의무분담금

- 유네스코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보호협약 채택('72)
- 대한민국 협약 가입('88)
- 총 16건의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등재('23.12월 기준)

ㅇ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의무분담금

-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채택('03)
- 대한민국 협약 가입('05)
- 총 22건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23.12월 기준)

ㅇ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의무분담금

- 문화재청 가입('09)
- ※ IUCN은 UNESCO 협력기관으로 심사대상인 세계자연유산 및 생물권 보호 지역 지정에 영향력이 큰 전문 기관임. 이에 천연기념물 지정 등 국내 생물권 보호를 총괄하며 세계자연유산을 등재하는 문화재청은 동 기관에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의무분담금 납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7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2,073	2,773	3,669	4,791	13,08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민간위탁, 해외이전)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재단,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아태 무형유산센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UNESCO, IUCN 등
- 사업 수혜자 : 국제개발협력 수원국, 유네스코 지원국 등 전 인류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 없음

사 업 명

(3)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운영 (3331-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Óો મો. જો <u>ચો</u>	무취케팅	ㅁ됬게칪ㅇ그		060	064
명칭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300	3331	303
명칭	문화재국제교류	국제교류및세계유산등재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					· ·	*
시그	계소	완료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21円	세숙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0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0		10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유네스코아	소관부처	문화재활용국	이예나	임승범	이주영						
태무형유산		세계유산정책과	042)481-3180	042)481-3185	042)481-3186						
센터 운영	사업시행주체	유네스코아태무 형유산센터	기획관리실	차보영 실장	063)230-972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	202	4년	증감	
71 日 0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유네스코아태무형	2.064	2.794	2 974	2.074	90	2.2
유산센터	3,064	2,784	2,874	2,874	90	3.2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	23.12월	말)			
	പിചിവി	וג ווג	집행액				أدائم	집행액	전년도 제	이월액 외	۵۱ ۵۱	но	2024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 기능별 분류(합계)	3,064	3,064	3,064	-	-	2,784	2,784	2,784 (2,784)	2,784	2,784 (2,784)	-	-	2,874
·정보공유 체계 활성화	812	812	812 (812)	-	-	612	612	612 (612)	612	612 (612)	-	-	612
·네트워크 다변화 및 인식제고	502	502	502 (502)	-	-	396	396	396 (396)	396	396 (396)	-	-	396
·기획 및 행정관리	1,750	1,750	1,750 (1,750)	-	-	1,776	1,776	1,776 (1,776)	1,776	1,776 (1,776)	-	-	1,866
○ 비목별 분류(합계)													
・민간경상보조 (320-01)	3,064	3,064	3,064 (3,064)	-	-	2,784	2,784	2,784 (2,784)	2,784	2,784 (2,784)	-	-	2,874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정보공유 체계 활성화 - 민간경상보조 (320-01) ·네트워크 다변	812	812	812 (812)	_	_	612	612	612 (612)	612	612 (612)	_	_	612
화 및 인식제고 - 민간경상보조 (320-01) ·기획및행정관리	502	502	502 (502)	-	-	396	396	396 (396)	396	396 (396)	-	-	396
- 민간경상보조 (320-01)	1,750	1,750	1,750 (1,750)	-	-	1,776	1,776	1,776 (1,776)	1,776	1,776 (1,776)	-	-	1,86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세부사업명)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운영
- (정보공유 체계구축 및 활성화) 동 사업은 아태지역 무형유산 정보역량 강화를 위해 48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무형유산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관련 콘텐츠 활용, 정보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것임
- (무형유산 네트워크 다변화 및 강화) 동 사업은 아태지역 무형유산 보호 기반 구축을 위해 회원국의 정부, 전승자, 교육기관, 비정부기구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교류와 네트워킹, 출판, 공개행사 등 인식 제고 활동, 국제기구 협력을 지원하는 것임
- (기획 및 행정관리) 아태지역의 무형유산 정보 및 네트워킹 중점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기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는 것임
- 대상 : 아태 지역 48개 회원국, 무형유산 관계기관, 연행자 단체, 교육 기관 등
- 지원 필요성 : 국내 우수한 정보기술과 인력 및 제도적 강점을 활용해 유네스코 무형유산 전문기구를 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 무형유산 분야 한국 정부의 영향력 및 지역 내 문화 역량 강화에 기여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무형문 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의 설치)
 - ①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이행을 장려하고, 아시아 · 태평양 지역 등의 무형문화유산 보호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유네스코 아시아 · 태평양 무형문화유산 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 (이하 "유네스코 아 · 태무형유산센터"라 한다)를 둔다.
 - ②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 ③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④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⑤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수 있다.
- ⑦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무형문화유산 정보공유의 체계 구축 및 활용을 위한 활동 지원
 - 2. 무형문화유산 보호 관련 교육, 출판, 학술조사·연구, 전시 및 콘텐츠 개 발과 활용
 - 3. 무형문화유산 관련 개인, 비정부기구·시민사회단체 등 단체 및 교육기관·학술기관 등 기관 간의 교류·협력체계의 구축과 이를 위한 행사의 개최
 - 4. 공유된 무형문화유산 정보의 국내 활용을 위한 사업
 - 5.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6.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설립에 관한 협정(조약 제2440호/'19.10.11.) 제12조

(제12조) 정부는 문화재청을 통해 센터의 운영과 적절한 기능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또는 현물 형태의 모든 자원을 제공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2006년
- 추진배경: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이행을 장려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무형유산 보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설립에 관한 협정」체결(2010.06.)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06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2,825	3,225	3,064	2,784	2,87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민간)
- 사업시행주체 :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무형문화재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특수법인)

-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무형유산 종사자, 아태지역 무형유산 공동체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4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유네스코아		유네스코			
태무형유산	보조	아태무형	2,874백만원	100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센터 운영		유산센터			

사 업 명

(4)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 (3331-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Ol મી. કો ગો	ㅁ 치 게 쳐	므칭케하요그		060	064
명칭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300	3331	304		
명칭	문화재국제교류	국제교류및세계유산등재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		

	□ 사업 성격											
<u>ال</u> م	1.7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ĺ	신규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0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0			0		정액, 70, 50, 3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세계유산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이예나	이상명, 김진희, 박지영, 임승범	이찬형, 손재영, 이은우, 이주영
일반관리		세계유산정책과	042-481-3180	042-481-4617,	042-481-4618, 3184,
2004 		게게Ⅱ건경격위	042-401-3100	3183, 3181, 3185	3182, 3186
	사업시행주체	직접, 민간단체, 지자체보조			
세계유산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보존관리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이예나	김진희	손재영
지원		세계유산정책과	042-481-3180	042-481-3183	042-481-3184
기번	사업시행주체	지자체보조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세계유산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이예나	이상명	이찬형
홍보 지원		세계유산정책과	042-481-3180	042-481-4617	042-481-4618
	사업시행주체	직접/지자체보조			
유네스코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의거이시 드게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이예나	이상명	이찬형
월경유산 등재		세계유산정책과	042-481-3180	042-481-4617	042-481-4618
국제기구 지원	사업시행주체	직접			
유네스코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71 -11-11-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이예나	박지영	이은우
세계유산		세계유산정책과	042-481-3180	042-481-3181	042-481-3182
국제해석설명	사업시행주체	민간단체	사무국장 이재순	실장 여희경	담당 이나연
센터 운영	기 H 기 영구 제	(국제해석설명센터)	044-251-1001	044-251-1010	044-251-1011
세계유산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이예나	박지영	이은우
한국의갯벌		세계유산정책과	042-481-3180	042-481-3181	042-481-3182
2단계 등재	사업시행주체	민간단체(공모)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	202	4년	중감	
71 H G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세계유산등재 및	46.626	20.792	20.266	25.052	^ 4 721	۸ 11 0
보존관리	46,636	39,783	29,266	35,052	△4,731	△11.9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	23.12월	말)			
	പിചിവി	וג ווג	집행액				וג ווג	집행액	전년도 제		A) 6)	H 0	2024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 기능별 분류(합계)	46,770	46,693	46,636 [32,946]	-	56	39,783	39,785	39,752 [15,540]	39,785	39,752 [15,540]	-	33	35,052
· 세계유산 일반관리	1,392	1,376	1,319 [1,027]	-	56	1,396	1,404	1,379 [1,011]	1,404	1,379 [1,011]	-	25	1,399
· 세계유산 보 존 관리 지원	34,395	34,395	34,395 [22,024]	-	_	29,495	29,495	29,495 [6,589]	29,495	29,495 [6,589]	-	-	26,433
· 세계유산 홍보 지원	7,719	7,718	7,718	-	_	4,879	4,879	4,871	4,879	4,871	_	8	2,979

			2022					2023(′	23.12월	말)			
										이월액			
	예산액	예산	집행액				예산	집행액		외	이월	불용	2024
	예산책 (추경)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상액		예산
			[7,154]					[4,098]		[4,098]			
· 유네스코 월경유산 등재 국제가구 지원 · 유네스코 세계유산	1,000	940		-	-	1,000	994	994	994		-	-	1,000
국제해석설명센터 운영 · 세계유산 한국의갯벌	2,264	2,264	2,264 [1,801]	-	-	2,383	2,383	2,383 [2,218] 630	2,383	2,383 [2,218] 630	-	-	2,611
2단계 등재	-	-	-	-	-	630	630	[630]	630	[630]	-	-	630
○ 비목별 분류(합계)	46,770	46,693	46,636 [32,946]	-	56	39,783	39,785	39,752 [15,540]	39,785	39,752 [15,540]	-	33	35,052
· 상용임금(110-03)	80	80	65	-	15	82	75	74	75	74	-	1	85
· 일용임금(110-04)	-	-	-	-	-	-	13	13	13	13	-	-	-
· 일반수용비(210-01)	190	558	557	-	1	188	967	967	967	967	-	-	172
· 공공요금(210-02)	3	3	2	-	1	3	2	2	2	2	-	-	3
· 특근매식비(210-05)	2	2	2	-	-	2	2	2	2	2	-	-	2
· 임차료(210-07)	-	13	13	-	-	-	42	41	42	41	-	1	-
· 복리후생비(210-12)	1	1	1	-	-	1	1	1	1	1	-	-	1
· 일반용역비(210-14)	850	449	449	-	-	1,050	230	222	230	222	-	8	850
· 국내여비(220-01)	29	37	37	-	-	30	34	34	34	34	-	-	35
· 국외업무여비(220-02)	59	54	53	-	1	60	58	58	58	58	-	-	70
· 사업추진비(240-01)	7	7	7	-	-	8	8	8	8	8	-	-	8
· 일반연구비(260-01)	217	217	197	-	20	217	217	203	217	203	-	14	217
· 민간경상보조(320-01)	2,514	2,514	2,498 [2,033]	-	16	3,263	3,263	3,256 [3,058]	3,263	3,256 [3,058]	-	7	3,491
· 민간위탁시업비(320-02)	200	200	200	-	-	200	200	200	200	200	-	-	200
· 고용부담금(320-09)	15	15	13	-	2	16	16		16	14	-	2	17
· 자치단체장상보조(33001)	4,165	4,165	4,165 [3,607] 37,435	-	-	4,165	4,165	4,165 [3,057] 29,495	4,165	4,165 [3,057] 29,495	-	-	2,465
· 자치단체자본보조(30008)	37,435	37,435	[24,768]	-	-	29,495	29,495	[6,589]	29,495	[6,589]	-	-	26,433
·국제부담금(340-02)	1,000	940	940	-	-	1,000	994	994	994	994	-	-	1,000
· 자산취득비(430-01)	3	3		-	1	3	3	3	3	3	-	-	3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46,770	46,693	46,636 [32,946]	-	56	39,783	39,785	[15,540]	39,785	39,752 [15,540]	-	33	35,052
• 세계유산 일반관리	1,392	1,376	1,319 [1,027]	-	56	1,396	1,404	1,379 [1,011]	1,404	1,379 [1,011]	-	25	1,399
- 상용임금(110-03)	80	80	65	-	15	82	75	74	75	74	-	1	85
- 일용임금(110-04)	-	-	-	-	-	-	13	13	13	13	-	-	-
- 일반수용비(210-01)	190	558	557	-	1	188	147	147	147	147	-	-	172
- 공공요금(210-02)	3	3	2	-	1	3	2	2	2	2	_	-	3

			2022					2023(′	23.12월	 말)			
									전년도	이월액			
	예산액	예산	집행액	പരിവ	불용액	H 세치.	예산	집행액	제	외	이월	불용	2024 예산
	(추경)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물용색	본예산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상액	예상액	예산
- 특근매식비(210-05)	2	2	2	-	-	2	2	2	2	2	-	-	2
- 임차료(210-07)	-	13	13	-	-	-	42	41	42	41	_	1	-
- 복리후생비(210-12)	1	1	1	-	-	1	1	1	1	1	-	-	1
- 국내여비(220-01)	29	37	37	-	-	30	34	34	34	34	-	-	35
- 국업무예(22002)	59	54	53	-	1	60	58	58	58	58	-	-	70
- 사업추진비(240-01)	7	7	7	-	-	8	8	8	8	8	-	-	8
- 일반연구비(260-01)	217	217	197	-	20	217	217	203	217	203	-	14	217
- 민간당상보조(32001)	250	250	250 [232]	-	-	250	250	243 [210]	250	243 [210]	-	7	250
- 만위탁(32002)	200	200	200	-	-	200	200	200	200	200	-	-	200
- 고용부담금(320-09)	15	15	13	-	2	16	16	14	16	14	-	2	17
-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336	336	336 [46]	-	-	336	336	336 [1]	336	336 [1]	-	-	336
- 자신취득비(430-01)	3	3	2	-		3	3	3	3	3	-	-	3
·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	34,395	34,395	34,395 [22,024]	-	-	29,495	29,495	29,495 [6,589]	29,495	29,495 [6,589]	-	-	26,433
-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34,395	34,395	34,395 [22,024]	-	-	29,495	29,495	29,495 [6,589]	29,495	29,495 [6,589]	-	-	26,433
• 세계유산 홍보 지원	7,719	<i>7,7</i> 18	7,718 [7,154]	-	-	4,879	4,879	4,871 [4,098]	4,879	4,871 [4,098]	-	8	2,979
- 일반수용비(210-01)	-	400	400	-	-	-	820	820	820	820	-	-	-
- 일반용역비(210-14)	850	449	449	-	-	1,050	230	222	230	222	_	8	850
-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3,829	3,829	3,829 [3,561]	-	-	3,829	3,829	3,829 [3,056]	3,829	3,829 [3,056]	-	-	2,129
-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3,040	3,040	3,040 [2,744]	-	-	-	-	-	-	-	-	-	-
· 유네스코 월경유산 등재 국제가구 지원	1,000	940	940	-	-	1,000	994	994	994	994	-	-	1,000
- 국제부담금(34002)	1,000	940	940	-	-	1,000	994	994	994	994	-	-	1,000
·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운영	2,264	2,264	2,264 [1,801]	-	-	2,383	2,383	2,383 [2,218]	2,383	2,383 [2,218]	-	-	2,611
- 민간당상보조(32001)	2,264	2,264	2,264 [1,801]	_	-	2,383	2,383	2,383 [2,218]	2,383	2,383 [2,218]	_	_	2,611
· 세계유산 한국의 첫벌 2단계 등재	-	-	-	-	-	630	630	630 [630]	630	630	-	-	630
- P.F. P. P. P. (3200I)	-	-	-	-	-	630	630	630 [630]	630	630	-	_	63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 유네스코 유산(세계유산, 인류무형유산, 세계기록유산) 등재 확대 추진 및 등재된 세계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관리로 세계유산적 가치의 온전한 보존 및 문화국가 이미지 제고
- (세계유산 일반관리) 세계유산정책과 기본 운영, 유네스코 유산 등재와 보존을 위한 연구 등
-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국내 10개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 (세계유산 홍보 지원) 세계유산 홍보 활성화
- (유네스코 월경유산 등재 국제기구 지원) 유네스코 협력을 통한 남북공동의 세계유산 유네스코 공동등재 및 개도국, 미보유국 등 대상 세계유산 등재 역량강화
-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 운영) 전 세계 유산(1,157건) 해석·설명 분야에서의 선도적 역할 수행 및 군함도, 사도광산 등 유산별 해석·설명 현안 대응
- (세계유산 한국의갯벌 2단계 등재) 세계유산 '한국의갯벌' 2단계 등재 기초조사 연구 수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재정지원)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1. 보존·관리 및 활용사업
 - 2. 세계유산 관련 기록의 작성·유지 및 정기점검
 - 3. 협의회의 운영
 - 4. 잠정목록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된 연구 및 추진활동
 - 5. 세계유산 등재·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술조사·연구·기술개발 및 국내외 교류 활동
 - 6. 그 밖에 국내외 세계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 석설명센터의 설립) ① 세계유산협약을 바탕으로 세계유산 해석 분야의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세계유산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를 설립한다.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문화재보호법 제15조(문화재보호활동의 지원 등)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보호·보 존·보급 또는 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 문화재보호법 제19조(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호) ① 문화재청장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또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프로그램에 따라 국내의 우수한 문화재를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재 신청 대상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의 규정을 참작하여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국제연합교육학교육과학문화기구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된 문화재(이하 이 조에서 "세계유산등"이라 한다)를 비롯한 인류 문화재의 보존과 문화재의 국외 선양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1988년 가입)
-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2005년 가입)
- ② 추진경위
- '68년 세계문화유산보존 및 복구연구센터(ICCROM) 규약 가입
- '88년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가입
- '95년 석굴암·불국사, 종묘, 해인사 장경판전 등 세계유산 첫 등재
- '97년 훈민정음 및 조선왕조실록 세계기록유산 첫 등재
- '01년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 첫 선정
- '05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가입
- '0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예규 제50호) 제정
- '07년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세계자연유산 첫 등재
- '08년 무형유산협약 위원국 진출
- '09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문화재청 가입
- '09년 무형유산협약 심사보조기구 진출
- '09년 조선왕릉 세계유산 등재
- '09년 동의보감 세계기록유산 등재
- '09년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영산재,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처용무 인류무형유산 등재
- '10년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 세계문화유산 등재
- '11년 일성록, 5·18관련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 '12년 아리랑, 인류무형유산 등재/ 일성록, 5·18관련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 '13년 난중일기, 새마을운동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 '13년 김장문화 인류무형유산 등재
- '14년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 '14년 농악 인류무형유산 등재
- '15년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 '15년 KBS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한국의 유교책판 세계기록유산 등재
- '15년 줄다리기 인류무형유산 등재
- '16년 제주해녀문화 인류무형유산 등재
- '17년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조선통신사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 '17년 제12차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간 위원회 (제주, 12.4~12.8)
- '18년 씨름 인류무형유산 등재
- '18년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세계유산 등재
- '18년 유네스코 국제해석센터(카테고리Ⅱ급) 설립 제안서 제출
- '19년 5월 '한국의 서원'(9개소) 세계유산 등재권고
- '19년 5월 유네스코 국제해석센터 타당성 현지실사
- '19년 7월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
- '19년 11월 유네스코 국제해석센터 설립 승인
- '20년 12월 연등회 인류무형유산 등재
- '21년 7월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 '22년 11월 한국의 탈춤 인류무형유산 등재
- '23년 5월 4.19혁명 기록물, 동학농민혁명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 '23년 9월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04~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44,203	42,702	46,770	39,783	35,052

- 기타: 세계유산 16건, 인류무형유산 22건, 세계기록유산 18건, 잠정목록 13건에 대한 홍보 관리사업 및 신규 세계유산 등재 추진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4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	보조	지자체 보조	336	50	문화재보호법 제19조, 51조, 세계유산특별법 제22조보조금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 73호 및 122호
세계유산 등 관련단체 지원	보조	이코모스 한국위원 회 등	50	100	ㅇ 문화재보호법 제15조, 19조, 34조, 51조
무형유산 관리역량 강화 (무형유산지속 가능발전 진흥 사업)	보조	아태무형 유산센터	200	100	ㅇ 문화재보호법 제19조, 34조, 51조, 무형문 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7조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	보조	지자체 보조	26,433	70.50.30	 문화재보호법 제19조, 51조, 세계유산특별법 제22조 보조금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 73호 및 122호
세계유산 홍보 지원	보조	지자체 보조	2,129	50	문화재보호법 제19조, 51조, 세계유산특별법 제22조보조금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 73호 및 122호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 센터 운영	보조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 해석설명 센터	2,611	100	 문화재보호법제19조, 34조, 51조, 세계유 산특별법 제18조2
세계유산 한국의갯벌 2단계 등재	보조	민간공모	630	100	 문화재보호법 제19조, 51조, 세계유신특별법 제22조 보조금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1] 73호 및 122호

사 업 명

(5) 국외문화재환수및활용 (3331-3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Ol મો. જો ગો	ㅁ쉵케ᅱ	므칭 케칭 O 그		060	064
명칭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300	3331	306
명칭	문화재국제교류	국제교류및세계유산등재	국외문화재환수및활용

[그 사	·업성	격				
	λl 7.	계속	o) =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21円	계숙	[전묘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0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7.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0			0		10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외문화재	소관부처	문화재활용국	조동주	백현민	박지연
환수 및		국제협력과	042-481-4730	042-481-4734	042-481-4738
활용	기어기체즈케	문화재청	국제협력과	백현민 사무관	042-481-4734
	사업시행주체	국외소재문화재재단	기획조정부	김동현 부 장	02-6902-0711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	202	4년	증감	
71 भ उ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국외문화재	7 422	6.075	9 (22	9 (22	1 (50	22.0
환수 및 활용	7,433	6,975	8,633	8,633	1,658	23.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	23.12월				
			집행액					집행액	전년도 제	이월액 이			2024
	예신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적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 산	예산 현액	집행국 [실집 행액]	^시 예산 현액	기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 기능별 분류(합계)	7,459	7,456	7,433 [7,139]	-	23	6,975	6,975	6,971 [6,721]	6,975	6,971 [6,721]	-	4	8,633
·국외소재문화재 재단 조사 및 환수활용 사업	6,274	6,274	6,274 [6,106]	-	-	5,578	5,578	5,578 [5,359]	5,578	5,578 [5,359]	-	-	5,621
· 주미대한제국 공사관관리 및 운영	951	951	951 [825]	-	-	1,159	1,159	1,159 [1,128]	1,159	1,159 [1,128]	-	-	1,171
· 국외문화재환수 및 활용정책기반 구축	234	231	208	-	23	238	238	234	238	234	_	4	241
· K-공유유산 활용 기반 구축													1,600
○ 비목별 분류(합계)	7,459	7,456	7,433 [7,139]	-	23	6,975	6,975	6,971 [6,721]	6,975	6,971 [6,721]	-	4	8,633
· 상용임금(110-03)	81	81	76	-	5	84	76	75	76	75	-	1	86
· 일용임금(110-04)							14	14	14	14	-	-	-
· 일반 수용 비(210-01)	47	44	29	-	15	47	47	47	47	47	-	-	37
· 공공 요금및제세 (210-02)	1	4	2	-	2	1	1	1	1	1	-	-	1
· 임차료(210-07)	6	6	6	-	-	6	6	6	6	6	-	-	6
· 복리후생비(210-12)	1	1	1	-	-	1	1	1	1	1	-	-	1
· 국내여비(220-01)	21	18	18	-	_	21	21	21	21	21	_	-	21
· 국외업무여비 (220-02)	51	51	51	-	-	52	46	46	46	46	-	-	62
· 사업추진비(240-01)	8	8	8	-	-	8	8	8	8	8	-	-	8
· 민간경상보조 (320-01)	7,225	7,225	7,225 [6,931]	-	-	6,737	6,737	6,737 [6,487]	6,737	6,737 [6,487]	-	-	8,392
· 고용부담금(320-09)	16	16	15	-	1	16	16	13	16	13	-	3	17
· 자산취득비(430-01)	2	2	2	-	_	2	2	2	2	2	_	_	2

2022							2023(′	23.12월	말)				
								-3-20-20	전년도	. – .			2024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이월액	불용액	본예 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제 예산	외 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2024 예산
	(4/8)	প্ৰ	행액]				22 24	행액	연안 현액	[실집 행액]	Mr8 =	পাধন	
○ 가능비목별 분류 (합계)	7,459	7,456	7,433 [7,139]	-	23	6,975	6,975	6,971 [6,721]	6,975	6 071	-	4	8,633
· 국외소재문화재 재단 조사 및 환수활용 사업	6,274	6,274	6,274 [6,106]	-	-	5,578	5,578	5,578 [5,359]	5,578	5,578 [5,359]	-	-	5,621
- 민간경상보조 (320-01)	6,274	6,274	6,274 [6,106]	-	-	5,578	5,578	5,578 [5,359]	5,578	5,578 [5,359]	-	-	5,621
· 주미대한제국 공시관관리 및 운영	951	951	951 [825]	-	-	1,159	1,159	1,159 [1,128]	1,159	1,159 [1,128]	-	-	1,171
- 민간경상보조 (320-01)	951	951	951 [825]	-	-	1,159	1,159	1,159 [1,128]	1,159	1,159 [1,128]	-	-	1,171
· 국외문화재환수 및 활용정책기반 구축	234	231	208	1	23	238	238	234	238	234	-	4	241
- 상용임금(110-03)	81	81	76	-	5	84	76	<i>7</i> 5	76	75	-	1	86
- 일용임금(110-04)							14	14	14	14	-	-	-
- 일반수용비(210-01)	47	44	29	-	15	47	47	47	47	47	-	-	37
- 공공요금및제세 (210-02)	1	4	2	-	2	1	1	1	1	1	-	-	1
- 임차료(210-07)	6	6	6	-	-	6	6	6	6	6	-	-	6
- 복리후생비 (210-12)	1	1	1	1	-	1	1	1	1	1	-	-	1
- 국내여비 (220-01)	21	18	18	-	-	21	21	21	21	21	-	-	21
- 국외업무여비 (220-02)	51	51	51	-	-	52	46	46	46	46	-	-	62
- 사업추진비 (240-01)	8	8	8	-	-	8	8	8	8	8	-	-	8
- 고용부담금 (320-09)	16	16	15	-	1	16	16	13	16	13	-	3	17
- 자산취득비 (430-01)	2	2	2	-	-	2	2	2	2	2	-	-	2
· K-공유유산 활용 기반 구축	-	-	-	-	-	-	-	-	-	-	-	-	1,600
- 민간경상보조 (320-01)	-	-	-	-	-	-	-	-	-	-	-	-	1,6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조사 및 환수활용 사업)
 -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기본 인프라 구축 및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통하여 향후 국외문화재 조사, 환수 및 활용의 중추적인 역할 수행

- (주미대한제국공사관 관리 및 운영)
 - · 주미대한제국공사관(미국 워싱턴DC 소재)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우리의 역사의식을 제고하고, 전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홍보 활성화
- (국외문화재환수 및 활용정책기반 구축)
 - · 국외로 불법·부당하게 반출된 문화유산은 환수를 통해 국민의 정체성 회복의 계기로 삼고, 적법·정당하게 반출된 문화유산은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는 정책 기반 마련
- (K-공유유산 활용기반 구축)
 - · 국외소재문화유산 중에서 K-공유유산(현지 상대국과 가치를 공유하는 우리유산)을 적극 발굴 및 조사·연구하여 우리 주권 밖에 위치한 유산을 국제협력을 통해 실질적으로 보호·활용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문화재보호법 제67조(국외소재문화재의 보호) 국가는 국외소재문화재의 보호·환 수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여 야 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68조(국외소재문화재의 조사·연구) ①문화재청장은 국외소재문 화재의 현황, 보존·관리 실태, 반출 경위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박물관, 한국국 제교류재단, 국사편찬위원회 및 각 대학 등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정보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69조(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 활동의 지원) 문화재청장은 국 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육 성할 수 있다.
- 문화재보호법 제69조의3(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설립) ① 국외소재문화재의 현황 및 반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연구, 국외소재문화재 환수·활용과 관련한 각종 전 략·정책 연구 등 국외소재문화재와 관련한 제반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 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하 "국외문화재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국외문화재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 ③ 국외문화재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④ 국외문화재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⑤ 국가는 국외문화재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⑥ 국외문화재재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 1. 국외소재문화재의 현황, 반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 · 연구
 - 2.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보호 · 활용에 관한 연구
 - 3. 국외소재문화재의 취득 및 보전 · 관리
 - 4.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 및 활용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교류 및 국제연대 강화
 - 5.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관련 홍보·교육·출판 및 보급
 - 6. 외국박물관 한국실 운영 지원
 - 7. 한국담당 학예사의 파견 및 교육 훈련
 - 8. 국외소재문화재의 보존처리 및 홍보 지원
 - 9. 국외문화재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 이 경우 수익사업은 문화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10. 그 밖에 국외문화재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 ⑦ 국외문화재재단은 문화재청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이나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ㅇ 2007년 : 국외문화재 환수 및 활용 사업 개시

ㅇ 2012년 7월 :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설립

ㅇ 2012년 12월 : 주미대한제국공사관 국유재산 등록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07~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5,758	6,653	7,459	6,975	8,633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국외소재문화재재단

- 사업 수혜자 :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관련 단체, 국내외 박물관·미술관, 일반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4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국외소재문화재 재단 조사 및 환수활용 사업	보조	국외소재 문화재재단	5,621	100	문화재보호법 제69조의 3 제5항
주미대한제국 공사관 관리 및 운영	보조	국외소재 문화재재단	1,171	100	문화재보호법 제69조의 3 제5항
K-공유유산 활용 기반 구축	보조	국외소재 문화재재단	1,600	100	문화재보호법 제69조의 3 제5항

문화재활용

사 업 명

(1) 문화유산 활용 진흥 (34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コヒ	이 비장기	ㅁ 최 케 ᅯ	문화재		060
명칭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활용국	명칭	문화및관광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400	3431	301
명칭	문화재활용	문화재활용활성화	문화유산 활용 진흥

□ 사업 성격

۸۱ユ	계소			예비타당성			사업소관 변경정보				
신규 계속 완료	せ立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0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О			О		40~5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유산	소관부처	문화재활용국	여성희	이광구	이기홍
방문캠페인		활용정책과	042)481-4740	042)481-4745	042)481-4746
	사업시행주체	한국문화재재단	콘텐츠활용팀	김현성 팀장	02)2270-1271
문화유산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글로컬	문화재청	활용정책과	여성희	이순미	이재우, 김은희
활용사업		25°8'44	042-481-4740	042-481-4742	042-481-4744, 4747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지역문화유산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여성희	이순미	김은희
활용		활용정책과	042-481-4740	042-481-4742	042-481-4747
인지도제고	사업시행주체	(사)한국문화유산 활용단체연합회	사무국장	박은수	042-489-1118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세계유산	문화재청		여성희	이광구	최지선	
축전	L47110	활용정책과	042-481-4740	042-481-4745	042-481-4808	
1 古他	사업시행주체	한국문화재재단	콘텐츠활용팀	김현성 팀장	02)2270-1271	
	1 1 1 0 1 7 11	실·국·과(팀)	<u> </u>	사무관	주무관	
문화유산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여성희	이광구	최지선	
미디어아트		활용정책과	042-481-4740	042-481-4745	042-481-4808	
1-1 1 1—	사업시행주체	한국문화재재단	콘텐츠활용팀	김현성 팀장	02)2270-1271	
세계유산	1 1 1 1 1	실·국·과(팀)	<u>과 장</u>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이예나	김진희	이찬형	
활용프로		활용정책과	042-481-3180	042-481-3183	042-481-4618	
그램	사업시행주체	10개 시도				
문화유산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스토리텔링	소관부처	문화재활용국	여성희	이광구	이기홍	
등 활성화		활용정책과	042)481-4740	042)481-4745	042)481-4746	
0 6 0-1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취약계층	소관부처	문화재활용국	여성희	이광구	이기홍	
문화유산		활용정책과	042-481-4740	042-481-4745	042-481-4746	
향유지원	사업시행주체	(사)한국문화유산 활용단체연합회	사무국장	박은수	042-489-1118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궁중문화	소관부처	문화재활용국	여성희	이광구	이기홍	
체험운영		활용정책과	042-481-4740	042-481-4745	042-481-4746	
	사업시행주체	한국문화재재단	문화사업팀	윤세용	032-743-0361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유산활용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여성희	이순미	김은희	
		활용정책과	042-481-4740	042-481-4742	042-481-4747	
व्याधिक	사업시행주체	(사)한국문화유산 활용단체연합회	사무국장	박은수	042-489-1118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유산	소관부처	문화재활용국	여성희	이순미	이재우	
관람환경		활용정책과	042-481-4740	042-481-4742	042-481-4744	
개선	사업시행주체	시)한국문화유산 활용단체연합회	사무국장	박은수	042-489-1118	
7-1 0 11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유산	소관부처	문화재활용국	여성희	이순미	이재우	
광역활용		활용정책과	042-481-4740	042-481-4742	042-481-4744	
기반구축	사업시행 주 체	미정	-	-	-	
	1 H 1 7 0 1 7 11	1개 시도	-	-	-	
사업운영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경비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여성희	이광구	최지선	
\Q HI		활용정책과	042-481-4740	042-481-4745	042-481-4808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사업명 2.2		2023년 예산	202	4년	중감	
71 11 6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문화유산 활용 진흥	51,192	50,827	42,483	43,083	△7,744	△15.2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23.12월말)							
			المالحال					المالحات	전년도 제	이월액			2024
	예산액	예산	집행액 [실집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집행액 [<u>실</u> 집	세		이월	불용	2024 예산
	(추경)	현액	행액	기원과	504	근세간	현액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상액	예상액	-11-12
○ 기능별 분류(합계)	51,277	51,277	51,192	0	85	50,827	50,827	49,465	50,827	49,465	0	0	43,083
• 문화유산 방문캠페인	7,274	7,274	7,274			8,047	8,047	8,047	8,047	8,047	0	0	6,797
·문화유산 글로컬 활용사업	21,703	21,703	21,684 [20,568]			22,203	22,203	21,879 [7,494]	22,203	21,879 [7,494]	0	0	17,574
·지역문화유산 활용 인지도 제고	500	500	490 [340]		10	500	500	440 [279]	500	440 [279]	0	0	400
•세계유산축전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0	0	6,000
·문화유산미다아트	7,200	7,200	7,250 [7,024]			7,200	7,200	7,200	7,200	7,200	0	0	6,712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2,000		1,992 [1,871]			2,000	2,000	1,990 [726]	2,000	1,990 [726]	0	0	1,500
·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등 활성화	711	711	708			901	901	54	901	54	0	0	901
·취약계층 문화유산 관람 서비스 구축	500	500	500			500	500	490	500	490	0	0	400
• 북악산 한양도성 탐방	1,427	1,427	1,427			1,227	1,227	1,227	1,227	1,227	0	0	-
· 궁중문화체험 운영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0	0	1,600
·문화유산 활용 전문인력 교육	270	270	[270]			270	270	270 [146]	270	270 [146]	0	0	216
· 문화유산 관람환경 개선	2,500	2,500	2,463 [1,988]		37	800	800	800 [168]	800	800 [168]	0	0	-
·국가유산 광역활용 기반구축	0	0	0	0	0	0	0	0	0	0	0	0	600
·사업운영 경비	392	392	334		38	379	379	268	379	268	0	0	383
○ 비목별 분류(합계)	51,277	51,277	51,192	0	85	50,827	50,827	49,465	50,827	49,465	0	0	43,083
· 상용임금(110-03)	87	87	85		2	90	90	51	90	51			93

	2022					2023(′23.12월말)							
	3.0.0			전년도 이월액 지행액 제외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외 집행액	이월	불용	2024 예산
	(추경)	연백	행액]				연액	행액]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예상액	예상액	
· 일반수용비 (210-01)	285	285	235		26	187	187	103	187	103			251
· 공공요금및제세 (210-02)	5	5	3		2	5	5	5	5	5			3
· 특근매식비 (210-05)	3	3	1		2	3	3	2	3	2			2
· 임차료(210-07)	10	10	8		2	10	10	10	10	10			10
· 복리후생비 (210-12)	1	1	1			1	1	1	1	1			1
· 일반용역비 (210-14)	1,291	1,291	1,311		1	1,461	1,461	362	1,461	362			1,361
· 국내여비(220-01)	31	31	37			31	31	29	31	29			31
· 국외업무여비 (220-02)	24	24	16		2	24	24	24	24	24			24
· 사업추진비 (240-01)	10	10	10			10	10	10	10	10			10
· 일반연구비 (260-01)	160	160	125		48	60	60	28	60	28			0
· 포상금(310-03)	55	55	55			55	55	0	55	0			0
・민간경상보조 (320-01)	1,010	1,010	1,000			1,010	1,010	1,010	1,010	1,010			556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15,991	15,991	15,991			23,764	23,764	23,764	23,764	23,764			21,799
· 고용부담금 (320-09)	16	16	16			18	18	5	18	5			18
·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30,298	30,298	30,298			23,598	23,598	23,561	23,598	23,561			18,924
·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2,000	2,000	2,000			500	500	500	500	500			0
○ 기능비목별 분류 (합계)	51,277	51,277	51,192	0	85	50,827	50,827	49,465		49,465	0	0	43,083
·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7,274	7,274	7,274			8,047	8,047	8,047	8,047	8,047			6,797
-민간위탁사업비 (320-02)	7,274	7,274	7,274			8,047	8,047	8,047	8,047	8,047			6,797
·문화유산 글로컬 활용사업	21,684	21,684	21,684 [20,568]			22,203	22,203	21,879	22,203	21,879			17,574
-일반용역비 (210-14)	491	491	491			510	510	268	510	268			400
-포상금(310-03)	45	45	45			45	45	0	45	0			0
-자치단체 경상 보조(330-01)	21,148	21,148	21,148 [20,568]			21,648	21,648	21.611	21,648	21.611			17,174
·지역문화유산 활용 인지도 제고	500	500	490 [340]		10	500	500	440	500	440			400

	2022					2023('23.12월말)											
								2020(-				
	22.22	.9.1					집행액				ול ווג	집행액	제외		A) 0)	но	2024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 산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일반수용비 (210-01)	60	60	51		9	60	60	0	60	0			60				
-일반용역비 (210-14)	100	100	99		1												
-민간경상보조 (3 2 0-01)	340	340	340 [340]			440	440	440	440	440			340				
• 세계유산축전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민간위탁사업비 (320-02)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 문화유산 미디어 아트	7,250	7,250	7,250 [7,024]			7,200	7,200	7,200	7,200	7,200			6,712				
-일반용역비 (210-14)	50	50	50														
-민간위탁비 (320-02) -자치단체 경상	5.0 00	F 2 00	7 ,2 00			7,200	7,200	7,200	7,200	7,200			6,712				
보조(330-01) · 세계유산 활용	7,200	7,200	[7,024] 1,992														
프로그램	1,992	1,992	[1,871]			2,000	2,000	1,990	2,000	1,990			1,500				
-일반용역비 (210-14)	42	42	42			50	50	40	50	40			50				
-자치단체 경상 보조(330-01)	1,950	1,950	1,950 [1,871]			1,950	1,950	1,950	1,950	1,950			1,450				
·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등 활성화	708	708	708			901	901	54	901	54			901				
-일반수용비 (210-01)	616	616	616														
-일반용역비 (210-14)	92	92	92			901	901	54	901	54			901				
·취약계층 문화유산 관람 서비스 구축	500	500	500			500	500	490	500	490			400				
-일반용역비 (210-14)													10				
-포상금 (310-03)	10	10	10			10	10	0	10	0			0				
-민간위탁사업비 (320-02)	490	490	490			490	490	490	490	490			390				
· 북악산 한양도성 탐방	1,427	1,427	1,427			1,227	1,227	1,227	1,227	1,227			0				
-민간위탁사업비 (320-02)	1,427	1,427	1,427			1,227	1,227	1,227	1,227	1,227			0				
· 궁중문화체험 운영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1,600				
-민간위탁사업비 (320-02)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1,600				

			2022			2023(*23.12월말)							
						전년도 이월액							
			집행액					집행액	제외			2024	
	예신액 (추경)	예산 현액	B 0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 액	본예산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문화유산 활용 전문인력 교육	270	270	270 [270]			270	270	270	270	270			216
-민간경상보조 (320-01)	270	270	[270]			270	270	270	270	270			216
·문화유산 관람 환경 개선	2,500	2,500	2,463 [1,988]		37	800	800	800	800	800			0
-일반수용비 (210-01)	100	100	86		14								0
-일반연구비 (260-01)	10	10	77		23								0
-민간경상보조 (320-01)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0
-자치단체 자본 보조(330-03)	2,000	2,000	2,000 [1,688]			500	500	500	500	500			0
·국가유산 광역활용 기반구축	0	0	0	0	0	0	0	0	0	0			600
-민간위탁사업비 (320-02)	0	0	0	0	0	0	0	0	0	0			300
-자치단체 경상 보조(330-01)	0	0	0	0	0	0	0	0	0	0			300
·사업운영 경비	372	372	334		38	379	379	268	379	268			383
-상용임금 (110-03)	87	87	85		2	90	90	51	90	51			93
-일반수용비 (210-01)	125	125	122		3	127	127	103	127	103			191
-공공요금및제세 (210-02)	5	5	3		2	5	5	5	5	5			3
-특근매식비 (210-05)	3	3	1		2	3	3	2	3	2			1
-임차료(210-07) -복리후생비	10	10 1	8 1		2	10 2	10 2	10	10 2	10 1			10 2
(210-12) -국내여비	37	37	37			31	31	29	31	29			31
(220-01) -국외여비					2								
(220-02) -사업추진비	18	18	16		2	24	24	24	24	24			24
(240-01) -일반연구비	10	10	10			10	10		10				10
(260-01) -고용부담금	60	60	35		25	60	60	28	60	28			0
(320-09)	16	16	16			17	17	5	17	5			1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문화유산 방문캠페인)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국문화의 바탕이 된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국내외 관광객들의 관심이 실제 해당 지역 방문으로 이어지고 다시찾고 싶도록 새롭고 흥미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이를 알리는 사업임.
- (문화유산 글로컬 활용사업) 지역에 소재한 문화재를 역사교육장 및 프로그램형 문화관광상품으로 재탄생시켜, 문화혜택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현상을 극복하고, 문화 향유 서비스 균등화 실현
- (지역문화유산 활용 인지도 제고) 지역문화유산 활용 사업에 대한 전 국민 공감 및 인지도 제고, 내·외국인 맞춤형 콘텐츠 생성 및 배포를 통한 국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통합 홍보
- (세계유산 활용사업) 인류 자산인 유네스코 등재 세계유산을 활용한 축전, 활용 프로그램 등을 운영함으로써 이들 문화유산이 가진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모든 국민과 더불어 향유할 수 있는 고품질 복합 콘텐츠을 보급하는 사업임
- (문화유산 미디어아트) 미디어·디지털 기술을 국가유산에 접목하여 지역의 대표 유산 으로써의 가치를 보다 쉽게 알리 수 있는 야간 특화·지역 체류형 활용 콘텐츠 개발
-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활용 활성화)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이야기 자원을 웹툰, 웹드라마, 영상 맵핑, 가상세계(메타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가공·활용함으로써 문화유산의 산업화 및 문화유산의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임.
- (취약계층 문화유산 향유 서비스) 문화유산 접근 기회가 적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계층별 유형, 제약여건, 취향을 반영한 맞춤형 문화유산 향유 서비스 지원
- (궁중문화체험 운영) 조선시대 왕가의 산책을 재현한 정통 퍼레이드에 공연을 가미한 연중 상설 공연으로,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는 내외국인이 즐길 수 있는 관광상품 제공
- (문화유산 활용 전문인력 교육)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담당자(지자체 및 수행단체)의 기획 및 운영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통해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의 품질 제고
- (문화유산 관람환경 개선) 공공시설물(안내판) 및 관람편의시설 정비·확충을 통한 문화유산의 품격에 맞는 관람환경 개선으로 관람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
- (국가유산 광역활용 기반구축) <국가유산주간> 산발적·소규모로 운영되어 온 문화유산 활용사업을 통합 연결, <지역별 국가유산 방문의 해>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지역의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
- (사업운영경비) 보조인력 인건비, 여비, 자문위원 수당 등 문화유산 활용사업 기본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
 -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1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문화재보호법 제9조(한국문화재재단의 설치)
 -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
 - 문화재보호법 제82조(권한의 위임·위탁)
- ② 추진경위 사업 시작연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사업 시작년도 : 2007년
 - 사업 추진배경
 - ·문화재 보존과 활용은 문화재 정책의 기본 축으로 지속가능한 문화재의 적절한 활용이 바람직한 문화재 보존을 위한 중심과제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민의 삶의 수준이 향상되고 역사문화에 대한 향유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다양한 문화재 활용 사례와 바람직한 활용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적 요구 대두
 - · 국가차원의 문화재 활용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적극적인 문화재 활용사업 전개 기반 구축

□ 주요내용

-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7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40,133	51,162	51,467	50,827	43,083

- 기타 : 수혜자 규모
-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 문화유산 방문 코스 10개 코스, 76개 거점
- ·지역문화재 활용 사업(380건) : 생생문화재 150건, 살아숨쉬는 향교·서원 100건, 문화재야행 45건, 전통산사문화재 45건, 고택·종갓집 40건
- ·세계유산 활용 사업 : 세계유산축전 3개소,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21건
- · 문화유산 미디어아트 : 8개소
- ·취약계층 문화유산 향유 사업: 17개시도, 보호아동,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정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보조율 40~50%), 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지자체, 민간, 한국문화재재단

- 사업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2결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문화유산 방문캠페인	위탁	(재)한국문화재재단	7,274	100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9조(한국문화재재단의 설치), 제82조(권한의 위임·위탁)
문화유산 글로컬 활용시업	보조	지자체 보조	21,684	4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별표1, 71호, 73호)
세계유산축전	위탁	(재)한국문화재재단	6,000	100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9조(한국문화재재단의 설치), 제82조(권한의 위임·위탁)
문화유산 미디어아트	위탁	(재)한국문화재재단	7,200	100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9조(한국문화재재단의 설치), 제82조(권한의 위임·위탁)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보조	지자체 보조	1,992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별표1, 71호, 73호)
취약계층 문화유산 향유지원	위탁	(사)한국문화유산 활용단체연합회	500	100	문화재보호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51조(보조금), 국민참여 예산(*20년)
문화유신활용 전문인력 교육	보조	(시)한국문화유산 활용단체연합회	270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별표1, 122) 준용

(2)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개발보급 (3431-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O] HL 중] 게	ㅁ 치 게 쳐	기획조정관		060	064
명칭	일반회계	문화재청	기획조정관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400	3431	304
명칭	문화재활용	문화재활용활성화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 개발·보급

□ 사업 성격

,17	加入		റി ⊐	예비타당성			사업소관 변경정보
20分	계속	완됴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0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Ò						

	2 0 / 1								
사업명			구분						
디지털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유산	소관부처	기획조정관	신성희 팀장	이정엽	김지아				
콘텐츠		디지털문화유산팀	042-481-4777	042-481-4614	042-481-4751				
개발·보급	사업시행주체	문화재청	디지털문화유산팀	이정엽	042-481-4614				
디지털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유산	소관부처	기획조정관	신성희 팀장	이정엽	김지아				
콘텐츠시업		디지털문화유산팀	042-481-4777	042-481-4614	042-481-4751				
경상경비 (내역사업)	사업시행주체	기획조정관	디지털문화유산팀	이정엽	042-481-4614				

실감형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유산	소관부처	기획조정관	신성희 팀장	이정엽	김지아
콘텐츠		디지털문화유산팀	042-481-4777	042-481-4614	042-481-4751
제작및보급	사업시행주체	문화재활용국	문화유산협력팀	최연규	042-481-3142
(내역사업)	小月八名十小	기획조정관	디지털문화유산팀	임은경	042-481-3153
사회적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약자 배려	소관부처	기획조정관	신성희 팀장	이정엽	김지아
디지털		디지털문화유산팀	042-481-4777	042-481-4614	042-481-4751
기반조성 (내역사업)	사업시행주체	문화재활용국	문화유산협력팀	최연규	042-481-3142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신라왕경	소관부처	기획조정관	신성희 팀장	이정엽	김지아
디지털복원		디지털문화유산팀	042-481-4777	042-481-4614	042-481-4751
(내역사업)	사업시행주체	기획조정관	디지털문화유산팀	임은경	042-481-3153
대표유산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대표ㅠ산 디지털원형	소관부처	기획조정관	신성희 팀장	이정엽	김지아
데이터구축		디지털문화유산팀	042-481-4777	042-481-4614	042-481-4751
(내역사업)	사업시행주체	기획조정관	디지털문화유산팀	김용희	042-481-4752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	202	4년	증감	
71 19 6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디지털문화유산	14 226	17 022	12 777	12 777	^ 2 DEE	^ 10 1
콘텐츠 개발·보급	14,326	17,032	13,777	13,777	△ 3 <i>,</i> 255	△ 19.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	(*23.12 ⁻	월말)			
			-1-7.7					-1 -n .n		전년도 이월액		2024	
	예산액	예산	집행액		HOAI	ษาปรา	예산	집행액	제		이월	불용	2024 예산
	(추경)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u>실</u> 집 행액]	예상액	예상액	
○ 기능별 분류(합계)	14,552	14,552	14,326		226	17,032	17,032	16,788	17,032	16,788		244	13,777
·디지털문화유산 콘텐츠 사업 경상경비	252	252	180		72	252	252	171	252	171		81	257
·실감형 문화유산 콘텐츠 제작 및 보급	4,280	4,280	4,280			4,280	4,280	4,280	4,280	4,280			3,280
· 사회적 약자 배려 디지털 기반 조성													2,745
· 한양도성 타임머신	9,000	9,000	8,928		72								
• 신라왕경 다자털 복원						9,000	9,000	9,000	9,000	9,000			4,500
·대표유산 디지털 원형데이터 구축	1,020	1,020	938		82	3,500	3,500	3,337	3,500	3,337		163	2,995
○ 비목별 분류(합계)	14,552	14,552	14,326		226	17,032	17,032	16,788	17,032	16,788		244	13,777
・일반수용비 (210-01)	137	137	98		39	127	127	82	127	82		45	132
· 공공요금및제세 (210-02)	2	2	1		1	2	2	2	2	2			2
· 특근매식비 (210-05)	2	2	1		1	2	2	2	2	2			2
· 일반용역비 (210-14)	7,850	7 , 850	<i>7,7</i> 50		100	12,530	12,530	12,359	12,530	12,359		171	7,530
• 국내여비(220-01)	8	8	8			15	15	15	15	15			15
· 국외여비(220-02)	20	20	1		19	20	20	20	20	20			15
· 사업추진비 (240-01)	3	3	3			6	6	6	6	6			6
· 일반연구비 (260-01)	250	250	184		66	50	50	22	50	22		8	50
· 민간위탁시업비 (320-02)	6,280	6,280	6,280			4,280	4,280	4,280	4,280	4,280			6,025

			2022					2023	(*23.12 *	월말)			
									`	/ 이월액			
	ചിചിവി	וג ווג	집행액				וג ווג	집행액	제	외	A) 6)	ыo	2024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4,552	14,552	14,326		226	17,032	17,032	16,788	17,032	16,788		244	13,777
· 디지털문화유산 콘텐츠 사업 경상경비	252	252	180		72	252	252	171	252	171		81	257
-일반수용비 (210-01)	137	137	98		39	127	127	82	127	82		45	132
-공공요금및제세	2	2	1		1	2	2	2	2	2			2
(210-02) -특근매식비			1		1		2		2				
(210-05)	2	2	1		1	2	2	2	2	2			2
-일반용역비 (210.14)	50	50	47		3	50	50	42	50	42		8	50
(210-14) -국내여비(220-01)	8	8	8			15	15	15	15	15			15
-사업추진비	3	3	3			6	6	6	6	6			6
(240-01) -일반연구비	F0	F0	22		20	F0	50	22	F0.	22		20	F0
(260-01)	50	50	22		28	50	50	22	50	22		28	50
· 실감형 문화유산 콘텐츠 제작 및 보급	4,280	4,280	4,280			4,280	4,280	4,280	4,280	4,280			3,280
-민간위탁사업비 (320-02)	4,280	4,280	4,280			4,280	4,280	4,280	4,280	4,280			3,280
· 사회적 약자 배려													2,745
디지털 기반 조성 -민간위탁사업비													
(320-02)													2,745
· 한양도성 타임머신	9,000	9,000	8,928		72								
-일반용역비	6,800	6,800	6,766		34								
(210-14) -민간위탁사업비 (320-02)	2,000	2,000	2,000										
-일반연구비(260-01)	200	200	162		38								
· 신라왕경 디지털복원						9,000	9,000	9,000	9,000	9,000			
-일반용역비 (210-14)						9,000	9,000	9,000	9,000	9,000			
· 대표유산 디지털 원형데이터 구축	1,020	1,020	938		82	3,500	3,500	3,337	3,500	3,337		163	2,995
-일반용역비 (210-14)	1,000	1,000	937		63	3,480	3,480		3,480			163	2,980
-국외여비(220-02)	20	20	1		19	20	20	20	20	2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디지털문화유산콘텐츠 사업 경상경비)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문화유산의 디지털 콘텐츠화 및 일반 국민이 향유하기 어려운 문화유산 향유 콘텐츠 제공을 위한 경상경비

- (실감형 문화유산 콘텐츠 제작 및 보급)

- ·유형, 무형, 자연유산, 세계유산 등 유형별 특화된 최적의 실감콘텐츠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콘텐츠 개발 및 온오프라인 향유 기반 보급
- ·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유산과 관련된 지식·정보·디지털 콘텐츠를 공유하는 공간 조성을 통해 문화유산에 대한 능동적 관심과 참여기회 제공

- (사회적 약자배려 디지털기반 조성)

·디지털문화유산을 통한 디지털 격차, 문화유산 향유 사각지대 해소 및 새로운 문화적· 사회적 가치 창출

- (신라왕경 디지털복원)

- ·고증이 어려운 중요 건축문화재의 디지털 복원 및 훼손 시 보수복원 자료 활용, 가상 공간 체험 등을 통한 역사·문화 인식 및 향유기반 확대
-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제정('19.12.) 등으로 사업 추진근거 마련, 아날로그 방식 복원에 따른 비용·시간 과다 및 고증 한계에 따른 세계유산 협약 이행 어려움*
 - *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제86항 '복원은 완전하고 상세한 기록에 근거할 때만 수용될 수 있으며, 절대 추측에 근거해서는 안된다.' 에 따라 디지털 복원 추진 필요 (해외사례: 유럽연합 **'베니스 타임머신'**, 이탈리아 **'로마 디지털복원'** 프로젝트 추진)

- (대표유산 디지털원형데이터 구축사업)

·국보·보물 및 세계유산을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이 가능하도록 디지털 원천자원 구축 및 원천자원 구축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보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9조(한국문화재재단의 설치) 2호, 8호

- 문화재보호법 제11조(문화재 정보화의 촉진) 제1호
- 문화재보호법 제22조의2의제2호(문화재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의 개발·보급
- 문화재보호법 제22조의5(문화재교육의 지원)

② 추진경위

- 세종시 국립박물관단지 내 '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 건립에 관한 MOU 체결(문화재청-행복도시건설청/'11.3월)
- 디지털문화유산 영상관 건립방안 연구용역('11.11월)
- 세종시 국립박물관단지 조성 협약식 체결 (5개부처, '12.6월)
- 디지털문화유산 임시영상관 운영('12.7월~, 세종시)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추진 TF 운영('15.4.15.~16년, 행복청 공공건축추진단)
- 디지털문화유산 영상관 전시기본계획 및 공간구성 연구용역('16년)
-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제작 보급('11~'19년, 25편 제작, 21,932건 배포)
- 디지털문화유산나눔방 개관('20.2월, 국립고궁박물관 내)
- 한양도성 타임머신 용역 추진('20~' 22)
- 대표유산 디지털원형데이터 구축사업 추진('20~)
- 신라왕경 디지털복원 추진('23~)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2011년~계속 * 디지털문화유산나눔방 조성: '19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16,152	16,232	16,032	17,032	13,777

- 사업규모: 연차적으로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제작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직접수행, 민간위탁(100%)
- 사업시행주체: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재단
- 사업 수혜자: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 ·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비율(%)	법적근거
		문화재보호법 제9조(한국문화재재단의 설치) 제2호, 제8호
한국문화재재단	100	문화재보호법 제11조(문화재 정보화의 촉진) 제1호
		문화재보호법 제82조(권한의 위임·위탁)

(3) 한국문화재재단지원 (3431-3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 મો. ઢો ત્રો	ㅁ쉵케칭	므칭케하.ㅇ그		060	064
명칭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400	3431	306
명칭	문화재활용	문화재활용활성화	한국문화재재단지원

	□ 사업 성격									
λ	בו	계속	o). =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1	!π	게숙	[전묘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0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0		100	

사업명	구분								
-11 -1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한국문화재	소관부처	문화재활용국	여성희	김대열	권주향				
재단지원		활용정책과	042-481-4740	042-481-4741	042-481-4743				
" - ' - '	사업시행주체	한국문화재재단	미래전략팀	박재완 팀장	02-3011-2131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	202	4년	중감	
71 11 6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한국문화재재단지원	12,118	9,828	13,656	13,656	3,828	38.9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23.12월	말)			
										이월액			
	예산액	예산	집행액	343.5			예산	집행액	저	외	이월	불용	2024
	(추경)	^{개 L}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 L}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୩ଧଫ	예산
○ 기능별 분류(합계)	12,118	12,118	12,118 [12,118]	-	-	9,828	9,828	9,828 [9,828]	9,828	9,828 [9,828]	-	-	13,656
• 경상운영비	5,843	5,843	5,843 [5,843]	-	-	6,322	6,322	6,322 [6,322]	6,322	6,322 [6,322]	-	-	6,540
· 정보화사업	448	448	448 [448]	-	-	250	250	250 [250]	250	250 [250]	-	-	250
· 유네스코 무형유산 자문기구 활동	200	200	200 [200]	-	-	150	150	150 [150]	150	150 [150]	-	-	150
• 전통문화홍보사업	1,300	1,300	1,300 [1,300]	-	-	500	500	500 [500]	500	500 [500]	-	-	2,160
• 한국의 명인명창 공연	100	100	[100]	-	-	-	-	-	-	-	-	-	_
• 전통예술공연 홍보	200	200	200 [200]	-	-	-	-	-	-	-	-	-	-
·국유재산 관리위탁 및 시설보수	3,727	3,727	3,727 [3,727]	-	-	2,506	2,506	2,506 [2,506]	2,506	2,506 [2,506]	-	-	4,456
· 문화유산 도서 보급 활성화사업	300	300	300 [300]	-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ı	100
○ 비목별 분류(합계)	12,118	12,118	12,118 [12,118]	-	-	9,828	9,828	9,828 [9,828]	9,828	9,828 [9,828]	-	1	13,656
・민간경상보조 (320-01)	6,491	6,491	6,491 [6,491]	-	-	6,722	6,722	6,722 [6,722]	6,722	6,722 [6,722]	-	-	6,940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5,627	5,627	5,627 [5,627]	-	-	3,106	3,106	3,106 [3,106]	3,106	3,106 [3,106]	-	-	6,716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2,118	12,118	12,118 [12,118]	-	-	9,828	9,828	9,828 [9,828]	9,828	9,828 [9,828]	-	-	13,656
• 경상운영비	5,843	5,843	5,843 [5,843]	-	_	6,322	6,322	6,322 [6,322]	6,322	6,322 [6,322]	-	-	6,540
-민간경상보조 (320-01)	5,843	5,843	5,843 [5,843]	-	_	6,322	6,322	6,322 [6,322]	6,322	6,322 [6,322]	-	-	6,540
• 정보화사업	448	448	448 [448]	_	-	250	250	250 [250]	250	250 [250]	-	-	250

			2022					2023(′	23.12월	말)			
			الحالحات					المالجات	전년도	. – .			2024
	예산액	예산	집행액 [실집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집행액 [실집	제	의 집행액	이월	불용	2024 예산
	(추경)	현액	- 행액]				현액	행액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예상액	예상액	
-민간경상보조 (320-01)	448	448	448 [448]	-	-	250	250	250 [250]	250	250 [250]	-	-	250
· 유네스코 무형유산 자문기구 활동	200	200	200 [200]	-	-	150	150	150 [150]	150	150 [150]	-	-	150
-민간경상보조 (320-01)	200	200	200 [200]	-	-	150	150	150 [150]	150	150 [150]	-	-	150
• 전통문화홍보사업	1,300	1,300	1,300 [1,300]	-	-	500	500	500 [500]	500	500 [500]	-	-	2,160
-민간위탁사업비 (320-02)	1,300	1,300	1,300 [1,300]	-	-	500	500	500 [500]	500	500 [500]	-	-	2,160
• 한국의 명인명창 공연	100	100	100 [100]	-	-	-	-	-	-	-	-	-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100	100	100 [100]	-	-	-	-	-	-	-	-	-	-
• 전통예술공연 홍보	200	200	200 [200]	-	-	-	-	-	-	-	-	-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200	200	200 [200]	-	-	-	-	-	-	-	-	-	-
·국유재산 관리위탁 및 시설보수	3,727	3,727	3,727 [3,727]	-	-	2,506	2,506	2,506 [2,506]	2,506	2,506 [2,506]	-	-	4,456
-민간위탁사업비 (320-02)	3,727	3,727	3,727 [3,727]	-	-	2,506	2,506	2,506 [2,506]	2,506	2,506 [2,506]	-	-	4,456
·문화유산 도서 보급 활성화사업	300	300	300 [300]	-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	100
-민간위탁사업비 (320-02)	300	300	300 [300]	-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	1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경상운영비) 문화재 보호·보존·보급 및 활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재단의 경비지원
- (정보화사업) 재단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 및 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등
- (유네스코 무형유산 자문기구 활동) 유네스코 인가 무형문화유산 자문기구(NGO)로서 무형유산의 보호에 기여하고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 추진종목에 대한 홍보활동 추진
- (전통문화홍보사업)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공연 및 활성화, 한국문화의집 공연 문화유산 상품 유통지원,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통혼례 및 돌잔치 지원
- (국유재산 관리위탁 및 시설보수)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한국문화의집 관리위탁 및 국유시설 시설보수
- (문화유산 도서 보급 활성화사업) 기 발간 문화유산 도서 디지털전환 및 보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문화재보호법 제9조(한국문화재재단의 설치)

제9조(한국문화재재단의 설치) ①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및 활용과 전통생활 문화의 계발을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한국문화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⑥ 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1989년

- 추진배경 : 국민의 전통문화 향유기회를 증진하고 전통문화의 정체성확립을 통해

국민의 문화적 정체성 강화 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89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11,004	11,331	12,118	9,828	13,656

- 기타: 전국민 수혜 대상(경상운영 및 정보화 사업, 전통문화홍보사업, 유네스코 무형 유산 자문기구 활동, 국유재산 관리위탁 및 보수 등)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재재단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외국인, 무형문화재 전승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4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경상운영비			6,540백만원		
정보화사업	보조	한국문화 재재단	250백만원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유네스코 무형유산 자문기구 활동		기계년 	150백만원		

(4) 문화재 사회적 기업 육성 (3431-31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Ol મો. જો ગો	ㅁ쉵케ᅱ	므칭 케칭 O 그		060	064
명칭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400	3431	310
명칭	문화재활용	문화재활용활성화	문화재사회적기업육성

□ 1										
al ユ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21円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0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О		100%	

사업명	구분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	소관부처	문화재활용국	김재일	장영기	김인성					
		문화유산협력팀	042-481-3141	042-481-3150	042-481-3149					
사회적기업		(사)한국마이크								
육성	사업시행주체	로크레디트	창업육성팀	유인경 팀장	02-2135-1730					
		신나는 조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	202	4년	증감	
71 日 0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문화재	E00	E00	E00	E00		
사회적기업 육성	500	500	500	500	-	_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23.12월말)								
			المالحات					المالحات	전년도				2024
	예산액	예산	집행액	~]0]0]	보수제	비세치	예산	집행액	제		이월	불용	2024 예산
	(추경)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상액	예상액	게건
○ 기능별 분류(합계)	500	500	500	-	-	500	500	493 [490]	500	493 [490]	-	-	500
· 문화재형 시업개발비 지원	400	400	400 [395]	-	-	400	400	393 [390]	400	393 [390]	-	-	400
· 문화재형 전문지원 기관 운영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	100
○ 비목별 분류(합계)	500	500	500 [495]	-	-	500	500	493 [490]	500	493 [490]	-	-	500
・민간경상보조 (320-01)	500	500	500 [495]	-	-	500	500	493 [490]	500	493 [490]	-	-	500
○ 기능비목별 분류 (합계)	500	500	500 [495]	-	-	500	500	493 [490]	500	493 [490]	-	-	500
· 문화재형 시업개발비 지원	400	400	400 [395]	-	-	400	400	393 [390]	400	393 [390]	-	-	400
- 민간경상보조 (320-01)	400	400	400 [395]	-	-	400	400	393 [390]	400	393 [390]	-	-	400
· 문화재형 전문지원 기관 운영	100	100	100 [100]	-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	100
- 민간경상보조 (320-01)	100	100	100 [100]	-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	1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문화재형 사업개발비 지원)
 - 문화유산 상품개발·품질 개선, 유통·마케팅 활성화 등에 필요한 사업 개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문화유산 산업을 육성하는 것임

- (문화재형 전문지원기관 운영)
 - 문화유산 분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창업·경영을 지원함으로써 문화재형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안정적 자립기반 구축 및 문화유산 산업 모델을 개발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국가유산기본법」제27조(산업육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매개로 하는 콘텐츠나 상품의 개발·제작·유통 등을 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을 활용한 산업을 장려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취업 · 창업 등을 촉진시키고 국가유산분야 종사자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3조(사회서비스의 종류)

제3조(사회서비스의 종류)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5.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 관련 서비스
 -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 운영 지침」제10조(지원사업)

제10조(지원사업)

- ① 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청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문화재청에서 시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공공사업·연구용역 등의 위착 등을 우선적으로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2012년
- 추진배경
- ㅇ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지원 제도 시행('12년)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 제정('11.12월)
 - 교육부, 환경부, 산림청 등 11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운영
 - * 부처별 사업개발, 판로개척, 컨설팅 등 예산 지원중
- 0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현황('12~23년)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70개, 사회적기업 인증 28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니터링, 협의회 운영 등 기업운영 행정지원 중심 운영
 - * 부처별 사업개발, 판로개척, 컨설팅 등 예산 지원 중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21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	500	500	500	5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전문지원기관(공모 선정)

- 사업 수혜자 : 문화재 분야 예비사회적기업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4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문화재형 사업개발비 지원	보조	문화재 분야 사회적기업 등	400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문화재형 전문지원기관 운영	보조	문화재 창업·경영 전문지원 ⁷ 만	100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5) 문화유산 방문자센터 건립 (3431-31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O) મો. જો ગો	ㅁ쉵케ᅱ	므칭케하.ㅇ그		060	064
명칭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400	3431	312
명칭	문화재활용	문화재활용활성화	문화유산 방문자센터 건립

□ 사	□ 사업 성격									
x1 7.	괴소	۵) ¬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刊出	계속	전묘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0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0		5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문화유산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世界开心	소관부처	문화재활용국	여성희	이순미	이재우							
방문자센터		활용정책과	042-481-4740	042-481-4742	042-481-4744							
거립지워	사업시행주체	정읍시	관광과	우인성	063-539-5191							
신입시전	사업기생구세	신안군	세계유산과	고경남	061-240-865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	202	4년	중감	
사업명	결산	본예산(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문화유산 방문자 센터 건립지원	4,700	1,000	3,700	3,900	2,900	290.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	23.12월	말)			
	예산액 예산		집행액				예산	집행액	전년도 제		이월	불용	2024
	^{예간객} (추경)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 액	본예산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상액		예산
○ 기능별 분류(합계)	4,700	4,700	4,700 [4,700]	-	-	1,000	1,000	1,000 [87]	1,000	1,000 [87]	-	-	3,900
· 정읍 문화유산 방문자 센터 건립 지원	4,700	4,700	4,700 [4,700]	-	-	1,000	1,000	1,000 [87]]	1,000	1,000 [87]	-	-	3,700
· 산안 해져유물 방문자 센터 건립 지원	-	-	-	-	-	-	-	-	-	-	-	-	200
○ 비목별 분류(합계)		4,700	4,700 [4,700]	-	-	1,000	1,000	1,000 [87]	1,000	1,000 [87]	-	-	3,900
· 자치단체자본보조 (330-03)	4,700	4,700	4,700 [4,700]	-	-	1,000	1,000	1,000 [87]	1,000	1,000 [87]	-	-	3,90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4,700	4,700	4,700 [4,700]	-	-	1,000	1,000	1,000 [87]	1,000	1,000 [87]	-	-	3,900
· 정읍 문화유산 방문자 센터 건립 지원	4,700	4,700	4,700 [4,700]	-	-	1,000	1,000	1,000 [87]	1,000	1,000 [87]	-	-	3,700
-자치단체자본보 조(330-03)	4,700	4,700	4,700 [4,700]	-	-	1,000	1,000	1,000 [87]	1,000	1,000 [87]	-	-	3,700
· 신안 해져유물 방문자 센터 건립 지원	-	-	-	-	-	-	-	-	-	-	-	-	200
-자치단체자본보 조(330-03)	-	-	-	-	-	-	-	-	-	-	-	-	2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문화유산 방문자 센터 건립)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활용·관람·해설 등 정보 및 편의를 제공하고 문화재 관련 콘텐츠 및 프로그램 등을 전시·체험·공연하는 복합공간을 조성하여 문화유산 활용과 지역 문화유산 향유권 증대를 위한 지역 거점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문화재청에서 지방자치단체(정읍시/신안군)에 사업비를 보조(50%)하는 사업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1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 ·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그 문화재를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 2.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보호·수리·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를 하는 경우 그 문화재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를 감독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비에 대한 보조금은 시·도지사를 통하여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사용하게 한다. 다만,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에게 직접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② 추진경위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사업 시작년도 : 2021년
- 사업 추진배경
 - · 문화재 활용에 대한 수요자의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지역별 활용 사업 및 콘텐츠·프로 그램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전시·공연·체험할 수 있는 시설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 ·지역 문화유산 활용과 관련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구축 시범 사업을 통해 사업 효과성 검토 필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2021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350	4,700	1,000	3,900

- 기타: ① 정읍 문화유산 방문자 센터 1개소 건립 지원 195억원(국비 97.5, 지방비 97.5)
 - ② 신안 해저유물 방문자 센터 1개소 건립 지원 80억원(국비 40, 지방비 4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50%)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정읍시, 신안군)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4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정읍 문화유산 방문자센터 건립 지원	보조	지자체 보조	3,700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별표1, 71호, 73호)
신안 해저유물 방문자센터 건립 지원	보조	지자체 보조	200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별표1, 71호, 73호)

(6) 국립고궁박물관운영 (3433-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Ol મો. જો ગો	문화재청	그리 그 그니 ㅁ 히	OJ મી. સ્ટ્રી ગ્રી	060	064
명칭	일반회계	- 군와세경 	국립고궁박물관	일반회계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400	3433	301		
명칭	문화재 활용	국립고궁박물관 조성운영	국립고궁박물관 운영		

□ 사업 성격										
x1 7.	계속	o) =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也市	/	[전묘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0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0						

사업명			구분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운영과	윤태정	김지홍	정상헌
국립고궁	관 국립고궁 관 발묵과	서무	02-3701-7610	02-3701-7611	02-3701-7613
박물관		전시홍보과	노명구	홍인수	김예은
운영		교육	02-3701-7630	02-3701-7651	02-3701-7654
		유물과학과	정소영	손명희	임지윤
		조사연구	02-3701-7660	02-3701-7681	02-3701-7682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	202		중감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국립고궁박물관 운영	17,922	18,043	18,194	18,194	151	0.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	23.12월	말)			
									전년도	. – .			
	예산액	예산	집행액	343.55			예산	집행액	제		이월	불용	2024
	(추경)	^{개 년}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상액		예산
○ 기능별 분류(합계)	19,205 (18,688)	18,724	17,922	-	803	18,043	18,043	17,182	18,043	17,182	-	-	18,194
•왕실문화전시	6,068 (5,658)	5,720	5,304	-	416	6,893	6,923	6,450	6,923	6,450	-	-	6,252
• 왕실문화교육	835 (810)	767	686	-	81	841	768	722	768	722	-	-	1,390
·왕실문화재 보존 및 조사연구	4,580 (4,514)	4,474	4,386	-	86	4,869	4,854	4,672	4,854	4,672	-	-	5,470
·고궁박물관 운영 및 관리	4,302 (4,285)	4,341	4,120	-	221	3,940	3,998	3,838	3,998	3,838	-	-	4,082
・인천공항 미디어월 설치	3,420 (3,420)	3,420	3,420	-	-	1,500	1,500	1,500	1,500	1,500	-	-	1,000
○ 비목별 분류(합계)	19,205 (18,688)	18,724	17,922	-	803	18,043	18,043	17,182	18,043	17,182	-	-	18,194
· 상용임금(110-03)	2,909 (2,909)	2,909	2,802	-	107	2,998	2,973	2,698	2,973	2,698	-	-	3,084
· 일용임금(110-04)	125 (125)	125	57	-	68	85	73	64	73	64	-	-	117
· 일반수용비(210-01)	1,306 (1,202)	1,201	1,197	-	4	1,298	1,310	1,299	1,310	1,299	-	-	1,530
· 공공요금및제세 (210-02)	743 (743)	754	731	-	23	802	861	846	861	846	-	-	803
· 피복비(210-03)	27 (27)	27	26	-	1	30	30	30	30	30	-	-	34
· 특근매식비(210-05)	21 (21)	21	11	-	10	21	14	13	14	13	-	-	21
· 임차료(210-07)	161 (161)	141	130	-	11	183	151	150	151	150	-	-	183
· 시설장비유지비 (210-09)	205 (205)	244	229	-	15	245	195	190	195	190	-	-	235

		2022						2023(′	 23.12월	말)			
									전년도				
	예산액	예산	집행액	~10101J	보수에	Hallal	예산	집행액	제		이월	불용	2024 예산
	(추경)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상액	예상액	예산
・재료비(210-11)	60 (60)	60	60	-	-	60	60	60	60	60	-	-	60
· 복리후생비(210-12)	(39)	39	39	-	-	49	49	49	49	49	-	-	49
· 일반용역비(210-14)	3,403 (2,995)	3,138	2,929	-	209	4,174	4,192	3,950	4,192	3,950	-	-	4,426
· 관리용역비(210-15)	438 (438)	264	264	-	-	377	377	365	377	365	-	-	517
·국내여비(220-01)	(36)	37	37	-	-	43	72	72	72	72	-	-	48
· 국외업무여비 (220-02)	98 (98)	98	72	-	26	99	70	70	70	70	-	-	104
· 사업추진비(240-01)	16 (16)	16	16	-	-	16	16	16	16	16	-	-	16
· 일반연구비(260-01)	358 (358)	358	353	-	5	856	856	770	856	<i>7</i> 70	-	-	1,036
· 만위탁/업비(320·02)	3,720 (3,720)	3,720	3,718	-	2	1,800	1,800	1,800	1,800	1,800	-	-	1,000
·고용부담금(320-09)	562 (562)	563	563	-	-	583	620	620	620	620	-	-	604
· 실시설계비(420-02)	120 (120)	120	64	-	56	101	101	96	101	96	-	-	101
· 공사비(420-03)	1,989 (1,989)	2010	1,825	-	185	1,464	1,424	1,237	1,424	1,237	-	-	1,444
· 감리비(420-04)	(6)	21	19	-	2	5	45	44	45	44	-	-	28
· 시설부대비(420-05)	(9)	9	8	-	1	7	7	6	7	6	-	-	7
· 자산취득비(430-01)	2,848 2,848	2,848	2,773	-	<i>7</i> 5	2,747	2,747	2,737	2,747	2,737	-	-	2,748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9,205 (18,688)	18,724	17,922	-	803	18,043	18,043	16,835	18,043	16,835	-	-	18,194
· 왕실문화전시	6,068 (5,658)	5,720	5,304	-	416	6,893	6,923	6,450	6,923	6,450	-	-	6,252
-상용임금(110-03)	405 (405)	405	383	-	23	417	417	387	417	387	-	-	417
-일용임금(110 -04)	(45)	45	38	-	7	45	33	29	33	29	-	-	45
-일반수용비(210-01)	399 (358)	358	358	-	1	399	441	436	441	436	-	-	384
- 공공요금및제세 (21002)	(30)	30	26	-	4	30	30	30	30	30	-	-	30
-피복비(210-03)	(6)	6	6	-	-	6	6	6	6	6	-	-	6
-특근매식비(210-05)	$\begin{vmatrix} 4 \\ (4) \end{vmatrix}$	4	2	-	2	4	1	1	1	1	-	-	4

	2022							2023(″	23.12월	말)			
									전년도				
	예산액	예산	집행액				예산	집행액	제		이월	불용	2024
	(추경)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상액		예산
-임차료(210-07)	40 (40)	40	40	-	-	40	27	27	27	27	-	-	40
-시설정비유기(21009)	(30)	30	29	-	1	30	23	23	23	23	-	-	30
-일반용역비(210-14)	1,844 (2,474)	2,637	2,501	-	136	3,456	3,479	3,276	3,479	3,276	-	-	3,356
-쾬리용역비(210-15)	100 (100)	-	-	-	-	100	100	96	100	96	-	-	200
-국내여비(220-01)	(8)	8	8	-	-	8	37	37	37	37	-	-	8
- 국외업무여비 (220-02)	76 (76)	76	51	-	25	77	48	48	48	48	-	-	51
-시업추진비(240-01)	(6)	6	6	-	-	6	6	6	6	6	-	-	6
-일반연구비(260-01)	-		0	-	-	300	300	260	300	260	-	-	-
-만위탁(12002)	(300)	300	298	-	2	300	300	300	300	300	-	-	-
-실시설계비(420-02)	(80)	80	37	-	43	80	80	76	80	76	-	-	80
-공사비(420-03)	1,164 (1,164)	1,164	1,036	-	128	1,164	1,164	982	1,164	982	-	-	1,144
-감리비(420-04)	-	-	-	-	-	-	-	-	-	-	-	-	20
-시설부대비(420-05)	5 (5)	5	5	-	-	5	5	4	5	4	-	-	5
-자산취득비(430-01)	526 (526)	526	484	-	42	426	426	426	426	426	-	-	426
• 왕실문화교육	835 (810)	767	686	-	81	841	768	722	768	722	-	-	1,390
-상용임금(110-03)	184 (184)	184	170	-	14	190	190	150	190	150	-	-	190
-일반수용비(210-01)	376 (354)	321	320	-	1	350	263	263	263	263	-	-	550
- 공공요금및제세 (2100 2)	(6)	6	6	-	-	6	6	6	6	6	-	-	6
-피복비(210-03)	(2)	2	2	-	-	2	2	2	2	2	-	-	2
-특근매식비(210-05)	(2) 39	2	1	-	1	2	1	1	1	1	-	-	2
-임차료(210-07) 시설차비 유기비	(39)	29	17	-	12	40	30	30	30	30	-	-	40
- 시설장비유지비 (210-09)	(6)	6	0	-	6	6	-	-	-	-	-	-	6
-일반용역비(210-14)	165	165	118	-	47	140	171	169	171	169	-	-	520

		2022						2023(′	 23.12월	 말)			
								•	전년도				
	예산액	예산	집행액				예산	집행액	제		이월	불용	2024
	^{개진국} (추경)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상액	예산
-국내여비(220-01)	(165) 11 (8)	8	8	-	-	11	11	11	11	11	-	-	10
-국외업무여비(220-02)	-	-	-	-	-	-	-	-	-	-	-	-	-
-사업추진비(240-01)	(2) 30	2	2	-	-	2	2	2	2	2	-	-	2
-일반연구비(260-01)	(30)	30	30	-	-	80	80	76	80	76	-	-	50
-자산취득비(430-01)	12 (12)	12	12	-	-	12	12	12	12	12	-	-	12
·왕실문화재 보존 및 조사연구	4,580 (4,514)	4,474	4,386	-	86	4,869	4,854	4,672	4,854	4,672	-	-	5,470
-상용임금(110-03)	657 (657)	657	638	-	19	676	676	612	676	612	-	-	676
-일반수용비(210-01)	(306)	339	338	-	1	332	348	342	348	342	-	-	378
-공공요금및제세 (210-02)	76 (76)	87	85	-	2	136	136	121	136	121	-	-	136
-피복비(210-03)	9 (9)	9	9	-	-	9	9	9	9	9	-	-	9
-특근매식비(210-05)	5 (5)	5	1	-	4	5	2	2	2	2	-	-	5
-임차료(210-07)	70 (70)	60	60	-	-	70	55	54	55	54	-	-	70
- 시설장비유지비 (21009)	40 (40)	59	59	-	-	60	52	50	52	50	-	-	50
-일반용역비(210-14)	394 (356)	336	311	-	25	514	509	472	509	472	-	-	514
-관리용역비(210-15)	338 (338)	264	264	-	-	260	260	255	260	255	-	-	280
-국내여비(220-01)	15 (13)	13	13	-	-	15	15	15	15	15	-	-	20
- 국외업무여비 (220-02)	(20)	22	20	-	2	22	22	22	22	22	-	-	53
-사업추진비(240-01)	(4)	4	4	-	-	4	4	4	4	4	-	-	4
-일반연구비(260-01)	328 (328)	328	322	-	5	476	476	434	476	434	-	-	985
-지산취득비(430-01)	2,290 (2,290)	2,290	2,262	-	28	2,290	2,290	2,280	2,290	2,280	-	-	2,290
·고궁박물관운영 및 관리	4,302 (4,285)	4,341	4,120	-	221	3,940	3,998	3,838	3,998	3,838	-	-	4,082
-상용임금(110-03)	1,633 (1,633)	1,663	1,612	-	52	1,715	1,690	1,549	1,690	1,549	-	-	1,801
-일용임금(110-04)	80	80	20	-	60	40	40	35	40	35	-	-	72

		2022						2023("	23.12월	말)			
									전년도	이월액			
	예산액	예산	집행액				예산	집행액	제		이월	불용	2024
	#연기 (추경)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상액		예산
	(80)												
-일반수용비(210-01)	199 (183)	183	181	-	2	216	258	258	258	258	-	-	218
- 공공요금및제세 (210-02)	630 (630)	630	615	-	16	631	689	689	689	689	-	-	631
-피복비(210-03)	10 (10)	10	10	-	1	13	13	13	13	13	-	-	17
-특근매식비(210-05)	10 (10)	10	8	-	3	10	10	9	10	9	-	-	10
-임차료(210-07)	12 (12)	12	12	-	_	33	39	39	39	39	-	-	33
-시설장비유지비 (210-09)	129 (129)	149	141	-	8	149	120	117	120	117	-	-	149
-재료비(210-11)	60 (60)	60	60	-	-	60	60	60	60	60	-	-	60
-복리후생비(210-12)	39 (39)	39	39	-	-	49	49	49	49	49	-	-	49
-일반용역비(210-14)				-	-	64	33	33	33	33	-	-	36
-관리용역비(210-15)				-	-	17	17	14	17	14	-	-	37
-국내여비(220-01)	8 (7)	7	7	-	-	9	9	9	9	9	-	-	10
-사업추진비(240-01)	4 (4)	4	4	-	_	4	4	4	4	4	-	-	4
-고용부담금(320-09)	563 (563)	563	563	-	-	583	620	620	620	620	-	-	604
-실시설계비(420-02)	40 (40)	40	27	-	13	21	21	20	21	20	-	-	21
-공사비(420-03)	825 (825)	846	789	-	58	300	260	255	260	255	-	-	300
-감리비(420-04)	6 (6)	21	19	-	2	2	45	44	45	44	-	-	8
-시설부대비(420-05)	4 (4)	4	4	-	-	2	2	2	2	2	-	-	2
-자신취득비(430-01)	20 (20)	20	16	-	5	19	19	19	19	19	-	-	20
I I	3,420 (3,420)	3,420	3,420	-	-	1,500	1,500	1,500	1,500	1,500	-	-	1,000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3,420 (3,420)	3,420	3,420	-	_	1,500	1,500	1,500	1,500	1,500	-	-	1,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왕실문화 전시) 상설전시실 운영 및 왕실문화 특성을 살린 전시회를 개최하고, 전시실 시설을 정비하는 것임
- (왕실문화 교육) 국민을 대상으로 왕실문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것임
- (왕실문화 보존 및 조사연구) 소장유물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연구하고, 과학적인 보존처리와 분석을 하는 것임
- (고궁박물관 운영 및 관리) 박물관을 운영 및 관리하고, 노후시설 보수 등 동 시설을 관리하는 것임
- (인천공항 전통문화 미디어월 설치)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공항에 미디어월을 이용 하여 한국의 특색과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전통요소 및 한국문화를 홍보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3조(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11조(문화재정보화의 촉진) ①문화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조사 자료와 그 밖의 문화재 보존·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이 문화재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48조(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①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2항에 따라 해당 문화재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사유가 없으면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4조(사업)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박물관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
 - 2. 박물관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 · 학술적인 조사 · 연구
 - 3. 박물관자료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
 - 4. 박물관자료에 관한 강연회·강습회·영사회(映寫會)·연구회·전람회·전시회·발표회·감 상회·탐사회·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
 - 5. 박물관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 6.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박물관자료·미술관자료·간행물·프로그램과 정보의 교환,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

6의2.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7.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국가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재나 문화재의 보호물·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민은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국립중앙박물관 임시이전 계획 보고(대통령 결재, '93.10.19.)
- 조선왕실역사박물관 조성계획 수립·보고(문화재청장, '04.11.)
- 국립고궁박물관 개관(대통령령 제19001호, '05.08.15.)
- 국립고궁박물관 전관 개관('07.11.28.)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05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18,041	14,704	18,687	18,043	18,194

- 사업규모

- · 상설전시실(7실, 4,039m²), 기획전시실(4실, 1,384m²) 운영, 특별전 연2~3회 개최
- 대상자별 맞춤형 왕실문화 교육 개발, 운영(26종 481회)
- · 소장품(81,003여 점) 조사·연구·관리 및 보존처리
- · 박물관(연면적, 29,665㎡) 시설관리 및 운영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유

(7)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운영 (3433-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ㅁ 치 게 쳐	그리 그그바.므 하	이비처게	060	064
명칭	월만외계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일반회계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400	3433	302
명칭	문화재 활용	국립고궁박물관 조성운영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운영

	□ 사업 성격												
	17	계속	o) =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1	217	계숙	전묘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0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사업명			구분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운영과	윤태정	정현정		
국립조선왕조		관리1	02-3701-7610	02-3701-7621	
실록전사관운영		전시홍보과	노명구	박수희	
근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ㅋㄹ긴	전시2	02-3701-7630	02-3701-7641	
		유물과학과	정소영	김정임	서정민
		유물관리	02-3701-7660	02-3701-7661	02-3701-7684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	202	4년	증감	
71 日 0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국립조선왕조실록		1 540	2.761	E 261	2 710	241.2
전시관 운영	-	1,542	3,761	5,261	3,719	Z 4 1.Z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	23.12월	말)			
	מוגוניוני	ונ ווג	집행액				ור ווי	집행액	전년도 제	이월액	A) (i)	н о	2024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1,542	1,542	1,470	1,542	1,470	-	72	5,261
•전시관 관리운영	-	-	-	-	-	1,472	1,472	1,407	1,472	1,407	-	65	3,588
• 전시개최 및 운영	-	-	-	-	-	70	70	63	70	63	-	7	1,673
○ 비목별 분류(합계)	-	-	-	_	-	1,542	1,542	1,470	1,542	1,470	-	72	5,261
· 상용임금 (110-03)	-	-	-	-	-	-	-	-	-	-	-	-	199
· 일반 수용 비(210-01)	-	-	_	-	-	-	-	-	-	-	-	-	506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	_	-	-	110	110	73	110	73	-	-	74
· 피복비(210-03)	-	-	_	-	-	-	-	-	-	-	-	-	4
· 특근매식비(210-05)	-	-	_	-	-	-	-	-	-	-	-	-	2
· 임차료(210-07)	-	-	_	-	_	-	-	-	-	-	-	-	47
· 시설장비유지비 (21 009)	-	-	-	-	-	-	-	14	-	14	-	-	20
· 재료비(210-11)	-	-	_	-	_	-	-	-	-	-	-	-	5
· 복리후생비(210-12)	-	-	_	-	_	-	-	-	-	-	-	-	3
· 일반용역비(210-14)	-	-	_	-	_	70	70	63	70	63	-	7	755
· 관리용역비(210-15)	-	-	_	-	-	10	10	33	10	33	-	-	6
· 일반연구비(260-01)	-	-	_	-	-	-	-	-	-	-	-	-	250
・고용부담금(320-09)	-	-	_	-	-	-	-	-	-	-	-	-	39
· 실시설계비(420-02)	-	-	-	-	-	75	75	52	<i>7</i> 5	52	-	23	110
· 공사비(420-03)	-	-	-	-	-	1,250	1,250	1,208	1,250	1,208	-	42	2,954
· 감리비(420-04)	-	-	_	-	-	20	20	20	20	20	-	-	30

	2022				2023(′23.12월말)								
								,	전년도				2024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제 예산 현액	의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2024 예산
· 시설부대비(420-05)	-	-	-	-	-	7	7	7	7	7	-	-	12
· 자산취득비(430-01)	-	-	-	-	-	-	-	-	-	-	-	-	245
○ 기능비목별 분류 (합계)	-	-	-	-	-	1,542	1,542	1,470	1,542	1,470	-	72	5,261
· 전시관 관리운영	-	-	-	-		1,472	1,472	1,407	1,472	1,407	-	65	3,588
-상용임금 (110-03)	-	-	-	-	-	-	-	-	-	-	-	-	199
-일반 수용 비(210-01)	-	-	-	-	-	-	-	-	-	-	-	-	90
-공공요금및제세(21002)	-	-	-	-	-	110	110	73	110	73	-	-	57
-피복비(210-03)	-	-	_	-	_	-	-	-	-	-	-	-	4
-특근매식비(210-05)	-	-	_	_	_	-	-	-	-	-	-	-	2
-임차료(210-07)	-	-	_	-	_	-	-	-	-	-	-	-	7
-시설장비유지비 (22 009)	-	-	_	-	_	-	-	14	-	14	-	-	20
-재료비(210-11)	-	-	_	-	_	-	-	-	-	-	-	-	5
-복리후생비(210-12)	-	-	_	-	_	-	-	-	-	-	-	-	3
-일방용역비(210-14)	-	-	-	-	-	-	-	-	-	-	-	-	5
-관리용역비(210-15)	-	-	_	-	_	10	10	33	10	33	-	-	6
-고용부담금(320-09)	-	-	-	-	-	-	-	-	-	-	-	-	39
-실시설계비(420-02)	-	-	-	-	-	75	75	52	<i>7</i> 5	52	-	23	110
-공사비(420-03)	-	-	-	-	-	1,250	1,250	1,208	1,250	1,208	-	42	2,954
-감리비(420-04)	-	-	-	-	-	20	20	20	20	20	-	-	30
-시설부대비(420-05)	-	-	-	-	-	7	7	7	7	7	-	-	12
-자산취득비(430-01)	-	-	_	-	_	-	-	-	-	-	-	-	45
· 전시개최 및 운영	-	-	-	-	-	70	70	63	70	63	-	7	1,673
-일반 수용 비(210-01)													416
-공공요금및제서(21002)													17
-임차료 (210-07)													40
-일반용역비(210-14)	-	-	_	_	_	70	70	63	70	63	-	7	750
-일반연구비(260-01)	-	-	_	-	_	-	-	-	-	-	-	-	250
-자산취득비(43 0-01)	_	-	_	_	_	-	-	_	-	-	_	_	2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의궤의 평창 이관에 맞추어 국가지정문화재 소장·관리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조선왕조 기록 유산의 가치 확산
 - (전시관 관리운영) 동 내역사업은 중앙공조방식의 항온항습 설비 및 가스 소화설비 구축 등을 통해 유물의 안정적인 보존 여건을 마련하고자 지원하는 것임
 - (전시 개최 및 운영) 동 내역사업은 조선왕조실록·의궤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조사연구·전시·교육을 위해 조선왕조 기록유산의 우수성을 확산코자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3조(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 문화재보호법 제48조(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
 -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4조(사업)
-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② 추진경위
- 국립중앙박물관 임시이전 계획 보고(대통령 결재, '93.10.19.)
- 조선왕실역사박물관 조성계획 수립·보고(문화재청장, '04.11.)
- 국립고궁박물관 개관(대통령령 제19001호, '05.08.15.)
- 국립고궁박물관 전관 개관('07.11.28.)
-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 관리단체로 국립고궁박물관 지정('12.7.)
- 국회,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 월정사 봉안 관련 결의안 발의 및 의결('21.12~'22.2.14)
- 월정사 왕조실록·의궤 박물관 기부 채납 완료(월정사→문화재청, '22.10.)
-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신규 개관('23.11.12)

□ 주요내용

-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3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	-	-	1,542	5,261

- 사업규모
- · 박물관(연면적 3,537㎡) 시설관리(전시실(3개실, 870㎡), 어린이체험관(150㎡) 환경 개선) 및 운영
- · 소장품(1,200여 점) 조사·연구·관리 및 보존처리
- 상설전시 유물 주기 교체 및 교육 등 운영
-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사업 수혜자 : 모든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해양문화재연구소운영

(1) 해양문화재연구소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 (3502-1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Ol મો. જો ગો	ㅁ쉵케귕	국립해양문화재		060	064
명칭	일반회계	문화재청	연구소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500	3502	102
명칭	해양문화재연구소운영	해양문화재연구소인건비	해양문화재연구소인건비
	애정군와세친기소군정	이 장군와세 한기 조한산미	(총액인건비대상)

□ **사업 성격**| 시규 계속 왕류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신규 계속 완료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О						

사업명	구분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해양문화재연 구소인거비	소관부처	국립해양문화재 연구소	유재걸	박찬수	김화정						
' '		기획운영과	061-270-2021	061-270-2022	061-270-2027						
(총액인건비대상)	사업시행주체	국립해양문화재 연구소	기획운영과	박찬수	061-270-2022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	202	4년	증감	
77 च छ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해양문화재연구소						
인건비(총액인건	5,503	5 , 875	6,020	6,020	145	2.5
비대상)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23.12월말)								
	예산액	예산	집행액				예산	집행액	전년도 제	외	이월	불용	2024
	애선국 (추경)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상액		예산
○ 기능별 분류(합계)	5,742	5,742	5,503		239	5,875	5,875	5,651	5,875	5,651		224	6,020
· 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	5,742	5,742	5,503		239	5,875	5,875	5,651	5,875	5,651		224	6,020
○ 비목별 분류(합계)	5,742	5,742	5,503		239	5,875	5,875	5,651	5,875	5,651		224	6,020
· 보수(110-01)	5,058	5,028	4,821		207	5,192	5,167	4,963	5,167	4,963		204	5,296
· 기타직보수(110-02)	644	674	661		13	642	667	664	667	664		3	684
· 연가보상비(110-05)	40	40	21		19	41	41	24	41	24		17	40
○ 기능비목별 분류 (합계)	5,742	5,742	5,503		239	5,875	5,875	5,651	5,875	5,651		224	6,020
· 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	5,742	5,742	5,503		239	5,875	5 , 875	5,651	5,875	5,651		224	6,020
-보수(110-01)	5,058	5,028	4,821		207	5,192	5,167	4,963	5,167	4,963		204	5,296
-기타직보수(110-02)	644	674	661		13	642	667	664	667	664		3	684
-연가보상비(110-05)	40	40	21		19	41	41	24	41	24		17	4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동 내역사업은 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 등에 따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직원의 보수 지급을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ㅇ 국가공무원법 제5장 보수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
 - 제1항은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 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 다만,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매우 특수 하거나 결원을 보충하는 것이 곤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보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81. 08. 25. : 수중발굴 고선박 '신안선'의 보존처리를 위해 국립문화재연구소 부설 『목포보존처리장』개설
- '90. 01. 03. : 『목포해양유물보존처리소』 개소
- '94. 05. 04. : 『국립해양유물전시관』으로 직제개편(4급/1과1실/32명)
- '07. 03. 15. : 직제개편(4급, 2과/37명 ⇒ 고위, 4과/46명)
- '09. 04. 06.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직제개편
- '11. 05. 30. : 직제개편(고위, 4과/50명 ⇒ 고위, 4과/58명)
- '11. 06. 28. : 태안보존센터 준공 및 보존처리 업무 시작
- '12. 08. 28. : 직제개편(고위, 4과/58명 ⇒ 고위, 4과/59명)
- '13. 05. 29 . : 290톤급 수중발굴전용 인양선 「누리안호」 운영
- '16. 03. 01. : 책임운영기관 지정
- '17. 06. 20. : 직제개편(고위, 5과/72명), 서해문화재과 신설
- '18. 12. 14. :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개관
- '21. 08. 10. : 직제개편(고위, 5과1팀/74명), 유물과학팀 신설, 전시홍보과 ⇒ 전시 교육과 명칭 변경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5,280	5,667	5,742	5,875	6,020

- 기타 : 해당없음

-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사업 수혜자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직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2) 해양문화재연구소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3518-212)

□ 사업 코드 정보

	-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부문
코드	OJ HJ' ક્રી ગો	ㅁ칡케칭	국립해양문화		060	064
명칭	명칭 일반회계 문화재청		재연구소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500	3518	212
명칭	해양문화재연구소운영	해양문화재연구소기본경비	해양문화재연구소기본경비
70 70	에 3 단위계 한 그 단 3	에 8 한외계 한 기소기는 78 미	(총액인건비대상)

□ 사업 성격

<u>۱</u> ۱ ۲	게소	റി =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선1	신규 계속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0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О						

사업명	구분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해양문화재연 구소기본경비	소관부처	국립해양문화재 연구소	유재걸	박찬수	김화정				
		기획운영과	061-270-2021	061-270-2022	061-270-2027				
(총액인건비대상)	사업시행주체	국립해양문화재 연구소	기획운영과	박찬수	061-270-2022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		202	4년	증감	
71 11 6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해양문화재연구소						
기본경비(총액인	271	298	301	301	3	1.0
건비대상)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2022					2023(″23.12월	월말)				
			집행액				ולג וויב	집행액	전년도 제		이월	н о	2024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 기능별 분류(합계)	289	289	271		18	298	298	280	298	280		18	301
· 인건비(110)	101	101	95		6	105	105	94	105	94		11	108
· 운영비(210)	128	128	118		10	131	131	125	131	125		6	128
· 직무수행경비(250)	33	33	32		1	33	33	33	33	33			34
· 민간이전(320)	27	27	26		1	29	29	28	29	28		1	31
○ 비목별 분류(합계)	289	289	271		18	298	298	280	298	280		18	301
· 상용임금(110-03)	101	101	95		6	105	105	94	105	94		11	108
· 일.숙직비(210-06)	105	105	99		6	105	105	100	105	100		5	101
· 복리후생비(210-12)	6	6	2		4	6	6	5	6	5		1	6
· 기타운영비(210-16)	17	17	17		0	20	20	20	20	20			21
· 직책수행경비(250-02)	33	33	32		1	33	33	33	33	33			34
· 고용부담금(320-09)	27	27	26		1	29	29	28	29	28		1	31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89	289	271		18	298	298	280	298	280		18	307
• 인건비	101	101	95		6	105	105	94	105	94		11	108
-상용임금(110-03)	101	101	95		6	105	105	94	105	94		11	108
• 운영비	128	128	118		10	131	131	125	131	125		6	128
-일·숙직비(210-06)	105	105	99		6	105	105	100	105	100		5	101
-복리후생비(210-12)	6	6	2		4	6	6	5	6	5		1	6
-기타운영비(210-16)	17	17	17		0	20	20	20	20	20			21
· 직무수행경비	33	33	32		1	33	33	33	33	33			34
-직책수행경비(250-02)	33	33	32		1	33	33	33	33	33			34
· 민간이전	27	27	26		1	29	29	28	29	28		1	31
-고용부담금(320-09)	27	27	26		1	29	29	28	29	28		1	31

1) 사업목적·내용

- 동 사업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공무직 인건비(무기계약직,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등)를 지급하는 것임
- 「문화재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등에 따라 편성되는 인건비성 운영경 비로 행정업무지원 및 효율적 기관 운영을 도모함
- 그 외 기관·선박 운영에 소요되는 필수 기본경비인 일·숙직비 및 특근매식비를 지원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및 기타 개별법령에 의해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
- ② 추진경위
- '81. 08. 25. : 수중발굴 고선박 '신안선'의 보존처리를 위해 국립문화재연구소 부설 『목포보존처리장』개설
- '90. 01. 03. : 『목포해양유물보존처리소』 개소
- '94. 05. 04. : 『국립해양유물전시관』으로 직제개편(4급/1과1실/32명)
- '07. 03. 15. : 직제개편(4급, 2과/37명 ⇒ 고위, 4과/46명)
- '09. 04. 06.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직제개편
- '11. 05. 30. : 직제개편(고위, 4과/50명 ⇒ 고위, 4과/58명)
- '11. 06. 28. : 태안보존센터 준공 및 보존처리 업무 시작
- '12. 08. 28. : 직제개편(고위, 4과/58명 ⇒ 고위, 4과/59명)
- '13. 05. 29 . : 290톤급 수중발굴전용 인양선 「누리안호」 운영
- '16. 03. 01. : 책임운영기관 지정
- '17. 06. 20. : 직제개편(고위, 5과/72명), 서해문화재과 신설
- '18. 12. 14. :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개관
- '21. 08. 10. : 직제개편(고위, 5과1팀/74명), 유물과학팀 신설, 전시홍보과 ⇒ 전시 교육과 명칭 변경

□ 주요내용

-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261	284	289	298	301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사업 수혜자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해양문화재연구소기본경비(3518-25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Ol મો. જો ગો	ㅁ됬케귕	국립해양문화		060	064
명칭	일반회계	문화재청	재연구소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500	3518	252	
명칭	해양문화재연구소운영	해양문화재연구소기본경비	해양문화재연구소기본경비	

□ 사업 성격

	시그	괴소	o] =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신규		계속	[산뇨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0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О						

사업명		구분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소관부처	국립해양문화재	유재걸	박찬수	김화정						
해양문화재연	エピーハ	연구소	표시	771	11-10						
구소기본경비		기획운영과	061-270-2021	061-270-2022	061-270-2027						
	사업시행주체	국립해양문화재	기획운영과	박찬수	061-270-2022						
	/ T H / T & T / M	연구소	/17107	774	001-270-2022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	202	4년	증감	
71 म उ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해양문화재연구소	776	900	057	057	140	10.2
기본경비	776	809	957	957	148	18.3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2022					2023	″23.12ີ _ີ	 일말)			
									전년도	이월액			
	예산액	예산	집행액				예산	집행액	제		이월	불용	2024
	^{개인국} (추경)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상액	_	예산
○ 기능별 분류(합계)	800	800	776		24	809	809	803	809	803		6	957
· 인건비(110)	357	357	354		3	367	367	366	367	366		1	378
· 운영비(210)	292	292	283		9	287	287	286	287	286		1	423
· 여비(220)	52	52	43		9	49	49	49	49	49			49
· 관서업무추진비(240)	14	14	14		-	17	17	17	17	17			16
· 보전금(310)	7	7	7		-	7	7	7	7	7			7
· 민간이전(320)	68	68	65		3	72	72	68	72	68		4	74
· 기타유형자산(430)	10	10	10		-	10	10	10	10	10			10
○ 비목별 분류(합계)	800	800	776		24	809	809	803	809	803		6	957
· 상용임금(110-03)	357	357	354		3	367	367	366	367	366		1	378
· 일반수용비(210-01)	68	68	68		_	62	65	65	65	65			63
· 공공요금및제세 (210-02)	165	165	165		_	165	165	165	165	165			245
· 피복비(210-03)	9	9	8		1	9	9	9	9	9			9
· 특근매식비(210-05)													1
· 임차료(210-07)	2	2	2		_	2	1	1	1	1			17
· 유류비(210-08)	4	4	3		1	4	2	2	2	2			4
· 시설장비유지비 (210-09)	32	32	29		3	32	32	32	32	32			72
· 재료비(210-11)	6	6	2		4	6	6	6	6	6			6
· 복리후생비(210-12)	6	6	6		_	7	7	6	7	6		1	6
· 국내여비(220-01)	52	52	43		9	49	49	49	49	49			49
· 관서업무추진비 (240-02)	14	14	14		-	17	17	17	17	17			16
· 포상금(310-03)	7	7	7		_	7	7	7	7	7			7
· 고용부담금(320-09)	68	68	65		3	72	72	68	72	68		4	74
· 자산취득비(430-01)	10	10	10			10	10	10	10	10			10

			2022					2023	(′23.12ਊ	실말)			
									전년도	. — .			
	예산액	예산	집행액				예산	집행액	제	•	이월	불용	2024
	#년*1 (추경)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상액		예산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800	800	776		24	809	809	803	809	803		6	957
· 인건비(110)	357	357	354		3	367	367	366	367	366		1	378
-상용임금(110-03)	357	357	354		3	367	367	366	367	366		1	378
· 운영비(210)	292	292	283		9	287	287	286	287	286		1	423
-일반수용비(210-01)	68	68	68		_	62	65	65	65	65			63
- 공공요금및제세 (210-02)	165	165	165		_	165	165	165	165	165			245
-피복비(210-03)	9	9	8		1	9	9	9	9	9			9
-특근매식비(210-05)													1
-임차료(210-07)	2	2	2		_	2	1	1	1	1			17
-유류비(210-08)	4	4	3		1	4	2	2	2	2			4
-시설장비유지비 (210-09)	32	32	29		3	32	32	32	32	32			72
-재료비(210-11)	6	6	2		4	6	6	6	6	6			6
-복리후생비(210-12)	6	6	6		_	7	7	6	7	6		1	6
· 여비(220)	52	52	43		9	49	49	49	49	49			49
-국내여비(220-01)	52	52	43		9	49	49	49	49	49			49
· 관서업무추진비(240)	14	14	14		_	17	17	17	17	17			16
-관서업무추진비 (240-02)	14	14	14		_	17	17	17	17	17			16
· 보전금(310)	7	7	7		_	7	7	7	7	7			7
-포상금(310-03)	7	7	7		-	7	7	7	7	7			7
· 민간이전(320)	68	68	65		3	72	72	68	72	68		4	74
-고용부담금(320-09)	68	68	65		3	72	72	68	72	68		4	74
· 기타유형자산(430)	10	10	10		-	10	10	10	10	10			10
-자신취득비(430-01)	10	10	10		_	10	10	10	10	10			10

1) 사업목적·내용

- 동 사업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공무직 인건비(무기계약직,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등)를 지원함
 - 「문화재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등에 따라 편성되는 인건비성 운영경 비로 행정업무지원 및 효율적 기관 운영을 도모함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임
 - 전시관 환경관리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를 통해 유물의 안전한 보관·관리 및 관람객에 쾌적한 관람 환경을 제공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59조(국고귀속문화재의 보관, 관리)

② 추진경위

- '81. 08. 25. : 수중발굴 고선박 '신안선'의 보존처리를 위해 국립문화재연구소 부설 『목포보존처리장』개설
- '90. 01. 03. : 『목포해양유물보존처리소』개소
- '94. 05. 04. : 『국립해양유물전시관』으로 직제개편(4급/1과1실/32명)
- '07. 03. 15. : 직제개편(4급, 2과/37명 ⇒ 고위, 4과/46명)
- '09. 04. 06. : 국립해양유물전시관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직제개편
- '11. 05. 30. : 직제개편(고위, 4과/50명 ⇒ 고위, 4과/58명)
- '11. 06. 28. : 태안보존센터 준공 및 보존처리 업무 시작
- '12. 08. 28. : 직제개편(고위, 4과/58명 ⇒ 고위, 4과/59명)
- '13. 05. 29 . : 290톤급 수중발굴전용 인양선 「누리안호」 운영
- '16. 03. 01. : 책임운영기관 지정
- '17. 06. 20. : 직제개편(고위, 5과/72명), 서해문화재과 신설
- '18. 12. 14. : 『국립태안해양유물전시관』개관
- '21. 08. 10. : 직제개편(고위, 5과1팀/74명), 유물과학팀 신설, 전시홍보과 ⇒ 전시 교육과 명칭 변경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859	823	800	809	957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사업 수혜자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관람객, 관련 전문가 외 일반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궁능유적본부운영

(1) 궁능유적본부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 (3601-101)

□ 사업 코드 정보

•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그느ㅇ저ㅂㅂ		060	064
명칭] 글반외계	· 단와세성	궁능유적본부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600	3601	101
명칭	궁능유적본부운영	궁능유적본부인건비	궁능유적본부인건비 (총액인건비대상)

□시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o). =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2年	세숙	[전묘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2예산 시 소관					
	Ó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Ó						

사업명		구분								
궁능유적본부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0011 121	소관부처	궁능유적본부	송인헌	민병철	안미정					
인건비		궁능서비스기획과	02-6450-3820	02-6450-3821	02-6450-3824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 예산	202	4년	중감	
71 H 3	결산	본예산(A)	추경	정부안	확정(B)	(B-A)	(B-A)/A
궁능유적본부인건비 (총액인건비대상)	14,650	15,061	15,061	14,733	14,733	△328	△2.2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23.12월말)						
			집행액						전년도 제	이월액			2024
	예산액	예산	집생각 [실집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거 집행액	이월	불용	2024 예산
	(추경)	현액	행액]	,	1	- "-	현액	[실집행액]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예상액	୩୪୯୩	
○ 기능별 분류(합계)	14,650	14,650	13,711	-	939	15,061	14,874	13,716	14,874	13,716		1,158	14,733
· 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	14,650	14,650	13,711	-	939	15,061	14,874	13,716	14,874	13,716		1,158	14,733
○ 비목별 분류(합계)	14,650	14,650	13,711	-	939	15,061	14,874	13,716	14,874	13,716		1,158	14,733
· 보수(110-01)	13,544	13,544	12,666	-	878	13,825	13,789	12,695	13,789	12,695		1,093	13,773
· 기타직보수(110-02)	1,006	1,006	987	-	19	1,135	984	970	984	970		14	852
· 연가보상비(110-05)	100	100	59	-	42	101	101	51	101	51		51	10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ㅇ 공무워 보수 및 수당규정 등에 따른 궁능유적본부 직원의 보수 지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ㅇ 국가공무원법 제5장 보수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
 - 제1항은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 다만,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매우 특수하거나 결원을 보충하는 것이 곤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보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19.1.1.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신설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20년~계속

- 사업규모 : 궁능유적본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궁능유적본부

- 사업 수혜자 : 궁능유적본부

(2) 궁능유적본부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3618-21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OJ HL 최 괴	문화재청	그느ㅇ저ㅂㅂ		060	064
명칭	일반회계	- 군와세경 -	궁능유적본부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600	3618	211		
명칭	궁능유적본부운영	궁능유적본부기본경비	궁능유적본부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 사업 성격

x1 7	계소	아 ㄹ	이근	이근	이근	속 완료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신규	계측	[건뇨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0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0						

사업명			구분		
궁능유적본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부기본경비	소과부처	궁능유적본부	송이허	민병철	조혜연
(총액인건비	<u> </u>	00111121	000	606	2-11-0
대상)		궁능서비스기획과	02-6450-3820	02-6450-3821	02-6450-3825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	202	4년	증감	
71 日 0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궁능유적본부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195	214	220	21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2022							2023(23	3.7월말))			
			기념((시						전년도	. – .			2024
	예산액	예산	집행액 [실집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집행액	제	의 집행액	이월	불용	2024 예산
	(추경)	현액	행액	,_,		- "-	현액	[실집행액]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예상액	예상액	
○ 기능별 분류(합계)	206	206	195		11	214	214	196	214	196		18	214
· 궁능유적본부기본 경비(총액인건비 대상)	206	206	195		11	214	214	196	214	196		18	214
○ 비목별 분류(합계)	206	206	195		11	214	214	196	214	196		18	214
· 특근매식비(210-05)	2	2	1		1	2	2	1	2	1		1	2
· 일숙직비(210-06)	84	84	80		4	84	84	80	84	80		4	84
· 복리후생비(210-12)	5	5	4		1	5	5	5	5	5			5
· 기타운영비(210-16)	53	53	51		1	53	53	52	53	52		1	53
· 직책수행경비(250·02)	63	63	59		4	71	71	59	71	59		12	71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06	206	195		11	214	214	196	214	196		18	214
· 궁능유적본부기본 경비(총액인건비 대상)	206	206	195		11	214	214	196	214	196		18	214
- 특 근 매 식 비 (210-05)	2	2	1		1	2	2	1	2	1		1	2
- 일 숙 직 비 (210-06)	84	84	80		4	84	84	80	84	80		4	84
(210-00) - 복 리 후 생 비 (210-12)	5	5	4		1	5	5	5	5	5			5
- 기 타 운 영 비 (210-16)	53	53	51		1	53	53	52	53	52		1	52
- 직책수행경비 (250-02)	63	63	59		4	71	71	59	71	59		12	71

1) 사업목적·내용

o 궁능유적본부 및 4대궁·종묘, 세종대왕유적, 조선왕릉의 인원·직제 등에 따라 공통적 으로 편성되는 기준성 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 및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의9(궁 능유적본부)
- ② 추진경위
- '19.1.1.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신설

□ 주요내용

-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20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193	206	206	214	21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궁능유적본부

- 사업 수혜자 : 궁능유적본부

(3) 궁능유적본부기본경비 (3618-25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OJ HL 첫 기	ㅁ 치 게 쳐	그느ㅇ저ㅂㅂ		060	064
명칭	일반회계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600	3618	251		
명칭	궁능유적본부운영	궁능유적본부기본경비	궁능유적본부기본경비		

□ 사업 성격										
<u> ۱</u> ۱ ٦	계속	o) =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21年	계숙	[전묘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0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0						

사업명	구분								
궁능유적본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보기보격비	소관부처	궁능유적본부	송인헌	민병철	전회윤				
부기본경비		궁능서비스기획과	02-6450-3820	02-6450-3821	02-6450-3825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	202	4년	증감	
\ H \ 8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궁능유적본부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993	1,010	1,332	1,332	322	31.9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2022					2023(23	3.7월말))			
			집행액						전년도 제				2024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실집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예산	집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1.6)	и ¬	행액]				4.7	[enon]	^{비년} 현액	[실집 행액]	1107	107	
○ 기능별 분류(합계)	1,011	1,011	993		18	1,010	1,010	997	1,010	997		13	1,332
· 궁능유적본부기본 경비	1,011	1,011	993		18	1,010	1,010	997	1,010	997		13	1,332
○ 비목별 분류(합계)	1,011	1,011	993		18	1,010	1,010	997	1,010	997		13	1,332
・상용임금(110-03)	90	90	86		4	93	93	91	93	91		2	95
· 일반수용비(210-01)	178	223	221		1	226	226	225	226	225		1	416
· 공공요금및제세(210·02)	149	107	102		4	139	139	139	139	139			219
・임차료(210-07)	232	235	235			246	246	246	246	246			315
• 유류비(210-08)	5	5	5			5	5	5	5	5			5
· 시설장비유지비(21009)	21	16	15		2	21	21	13	21	13		8	21
· 복리후생비(210-12)	3	3	3			3	3	3	3	3			3
·기타운영비(210-16)	14	14	11		2	14	14	12	14	12		2	14
· 국내여비(220-01)	22	22	22			43	43	43	43	43			43
· 관서업무추진비(240·02)	19	19	19			18	18	18	18	18			17
· 포상금(310-03)	2	2	2			2	2	2	2	2			2
· 고용부담금(320-09)	17	17	15		2	18	18	18	18	18			19
· 자산취득비(430-01)	59	59	58		1	183	183	182	183	182		1	163
· 무형자산(440-00)	200	200	20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011	1,011	993		18	1,010	1,010	997	1,010	997		13	1,332

			2022					2023(23	3.7월말)			
									전년도	이월액			
	예산액	예산	집행액				예산	집행액	제		이월	불용	2024
	" ^근 (추경)	" C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현액	[실집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୩ଧଫ	예산
· 궁능유적본부기본 경비	1,011	1,011	993		4	1,010	1,010	997	1,010	997		13	1,332
- 상 용 임 금 (110-03)	90	90	86		1	93	93	91	93	91		2	95
- 일 반 수 용 비 (210-01)	178	223	221		4	226	226	225	226	225		1	416
- 공공요금및제세 (210-02)	149	107	102			139	139	139	139	139			219
- 임차료(210-07)	232	235	235			246	246	246	246	246			315
- 유류비(210-08)	5	5	5		2	5	5	5	5	5			5
- 시설장비유지비 (210-09)	21	16	15			21	21	13	21	13		8	21
- 복리후생비 (210-12)	3	3	3		2	3	3	3	3	3			3
- 기 타 운 영 비 (210-16)	14	14	11			14	14	12	14	12		2	14
- 국 내 여 비 (220-01)	22	22	22			43	43	43	43	43			43
- 관서업무추진비 (240-02)	19	19	19			18	18	18	18	18			17
- 포상금(310-03)	2	2	2		2	2	2	2	2	2			2
- 고 용 부 담 금 (320-09)	17	17	15		1	18	18	18	18	18			19
- 자 산 취 득 비 (430-01)	59	59	58			183	183	182	183	182		1	163
- 무 형 자 산 (440-00)	200	200	200										

1) 사업목적·내용

o 궁능유적본부 및 4대궁·종묘, 세종대왕유적, 조선왕릉의 인원·직제 등에 따라 공통적 으로 편성되는 기준성 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 및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의9(궁 능유적본부)
- ② 추진경위
- '19.1.1.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신설

□ 주요내용

-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20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543	841	1,048	1,010	1,332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궁능유적본부

- 사업 수혜자 : 궁능유적본부

문화재행정지원

(1) 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 (7101-1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Ol મો. જો ગો	ㅁ칡케칭	기 히 フ 지 기		060	064
명칭	일반회계	문화재청	기획조정관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01	101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문화재청인건비	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2	17.	괴소	റി =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ĺ	<u>υ</u> π	게숙	[전묘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0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О						

사업명	구분								
인건비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きからり)	소관부처	기획조정관	변지현	조현수	정희량				
(총박(건바다)		기획재정담당관	042-481-4780	042-481-4784	042-481-4790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	202	4년	증감	
7180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인건비	22.250	26.464	26.017	26.017	452	1.0
(총액인건비대상)	33,352	36,464	36,917	36,917	453	1.2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2022						2023(′	23.12월	[말)			
	מארג וויא	ול ווי	집행액				ול ווי	집행액		<u>이월액</u> 외	41.01	но	2024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 산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 기능별 분류(합계)	36,140	36,120	33,352		2,768	36,464	36,449	33,983	36,449	33,983		2,466	36,917
・인건비 (총액인건비대상)	36,140	36,120	33,352		2,768	36,464	36,449	33,983	36,449	33,983		2,466	36,917
○ 비목별 분류(합계)	36,140	36,120	33,352		2,768	36,464	36,449	33,983	36,449	33,983		2,466	36,917
· 보수 (110-01)	34,559	34,559	32,275		2,284	35,041	35,026	32,881	35,026	32,881		2,145	35,733
·기타직보수 (110-02)	1,289	1,269	922		347	1,169	1,169	952	1,169	952		217	901
· 연가보상비 (110-05)	292	292	155		137	254	254	150	254	150		104	283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6,140	36,120	33,352		2,768	36,464	36,449	34,045	36,449	34,045		2,466	36,917
· 인건비 (총액인건비대상)	36,140	36,120	33,352		2,768	36,464	36,449	34,045	36,449	34,045		2,466	36,917
-보수 (110-01)	34,559	34,559	32,275		2,284	35,041	35,026	32,881	35,026	32,881		2,145	35,733
-기타직보수 (110-02)	1,289	1,269	922		347	1,169	1,169	952	1,169	952		217	901
-연가보상비 (110-05)	292	292	155		137	254	254	150	254	150		104	283

1) 사업목적·내용

- (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 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 등에 따른 문화재청(본청 및 소속기관) 직원 보수 지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가공무원법 제5장 보수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
 - ·제1항은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 다만,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매우 특수하거나 결원을 보충하는 것이 곤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보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추진경위: 해당사항 없음

□ 주요내용

-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33,730	35,329	36,140	36,464	36,91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사업 수혜자 :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

(2)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인건비(총액인건비대상) (7101-1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OJ HJ' ક્રી ગો	ㅁ쉵케ᅱ	한국전통문화		060	064
명칭	일반회계	문화재청	대학교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01	102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문화재청인건비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인건비
70'70'	· 단위세 생성시전	판坏세정원인미 	(총액인건비대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예비타닷섯	계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2年	세숙	전묘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0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0						

사업명	구분							
한국전통문화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대학교인건비	소관부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조주성	이안재	이명하			
(총박건비대상)								
(7101-102)		총무과	041-830-7200	041-830-7210	041-830-7215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	202	4년	증감	
71 11 6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인건비(총액인건	7,007	7,701	7,440	7,440	△261	△3.3
비대상)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2022						2023(′	23.12월	말)			
			الحالحات					المالحات		이월액			2024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i>세</i> 예산	외 집행액	이월	불용	2024 예산
	(추경)	연액	행액]				연백	행액]	예간 현액	[실집 행액]	예상액	예상액	
○ 기능별 분류(합계)	7,378	7,398	7,007		391	7,701	7,701	7,018	<i>7,</i> 701	7,018		683	7,440
・인건비(총액대상)	7,378	7,398	7,007		391	7,701	<i>7,7</i> 01	7,018	<i>7,</i> 701	7,018		683	7,440
○ 비목별 분류(합계)	7,378	7,348	7,007		391	7,701	7,701	7,018	7,701	7,018		683	7,440
· 보수(110-01)	7,348	7,348	6,970		378	7,667	7,667	7,001	7,667	7,001		666	7,408
· 기타직보수(110-02)	0	20	19		1	0	0	0	0	0		0	0
· 연가보상비(110-05)	30	30	18		12	34	34	17	34	17		17	31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7,378	7,398	7,007		391	7,701	7,701	7,018	7,701	7,018		683	7,440
· 보수(110-01)	7,348	7,348	6,970		378	7,667	7,667	7,001	7,667	7,001		666	7,408
· 기타직보수(110-02)	0	20	19		1	0	0	0	0	0		0	0
· 연가보상비(110-05)	30	30	18		12	34	34	17	34	17		17	31

1) 사업목적·내용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인건비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 등에 따른 직원 보수 지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ㅇ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 제2조 (소속기관) 제1항 문화재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재 청장소속하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현충사 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궁·종묘관리소, 조선왕릉관리소 및 국립 무형유산원을 둔다.
- ② 추진경위
 - ㅇ 사업 시작년도 : 2000년
 - ㅇ 추진배경
 - 한국전통문화대학교직제 제정(대통령령 제16347호)('94. 5. 24)
 -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개교('00. 3. 2)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정('11.7.14 제정/'12.7.15 시행)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원 개원(2개 대학원 3개학과)('13. 3)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개설('14.10)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00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7,113백만원	7,376백만원	7,398백만원	7,701백만원	7,440백만원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사업 수혜자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3) 본청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7111-2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운영지원과		060	064
명칭	근단거기	L 47/11/0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01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단위사업명	본청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 사	□ 사업 성격										
217	加入	완료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신규	계속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0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0						

사업명			구분		
본청기본경비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총액인건비	소관부처	문화재청	박정섭	이상원	김현아
		운영지원과	042-481-4620	042-481-4630	042-481-4631
대상)	사업시행주체	문화재청	운영지원과	이상원	042-481-4630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	202	4년	증감	
71 日 0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본청기본경비	1 200	1 404	1 404	1 404		
(총액인건비대상)	1,288	1,494	1,494	1,494	-	_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2022						2023(′	23.12월				
									전년도	이월액			
	예산액	예산	집행액				예산	집행액	제		이월	불용	2024
	애산택 (추경)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상액		예산
○ 기능별 분류(합계)	1,494	1,494	1,288	1	206	1,494	1,333	1,213	1,333	1,213	-	-	1,494
• 기관운영	312	313	305	-	8	314	310	296	310	296	-	-	312
· 직원복리후생	1,182	1,181	983	-	198	1,180	1,023	917	1,023	917	_	-	1,182
○ 비목별 분류(합계)	1,494	1,494	1,293	1	206	1,494	1,333	1,213	1,333	1,213	-	-	1,494
· 특근매식비 (210-05)	17	17	11	-	6	17	17	8	17	8	-	-	17
· 일숙직비 (210-06)	19	19	18	-	1	19	19	19	19	19	-	-	19
· 복리후생비 (210-12)	1,182	1,181	983	-	198	1,182	1,023	917	1,023	917	-	-	1,182
· 기타운영비 (210-16)	54	54	54	-	0	54	54	54	54	54	-	-	54
· 직책수행경비 (250-02)	203	204	203	-	1	203	201	195	201	195	-	-	203
· 특정업무경비 (250-03)	19	19	19	-	0	19	19	19	19	19	-	-	19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494	1,494	1,288	-	206	1,494	1,333	1,213	1,333	1,213	-	-	1,494
• 기관운영	312	313	305	-	9	314	310	296	310	296	-	-	312
· 특근매식비 (210-05)	17	17	11	-	6	17	17	8	17	8	-	-	17
· 일숙직비 (210-06)	19	19	18	-	1	19	19	19	19	19	-	-	19
· 기타운영비 (210-16)	54	54	54	-	0	54	54	54	54	54	-	-	54
· 직책수행경비 (250-02)	203	204	203	-	1	203	201	195	201	195	-	-	203
· 특정업무경비 (250-03)	19	19	19	-	0	19	19	19	19	19	-	-	19
· 직원복리후생	1,182	1,181	983	-	198	1,182	1,023	917	1,023	917	-	-	1,182
· 복리후생비 (210-12)	1,182	1,181	983	-	198	1,182	1,023	917	1,023	917	-	-	1,182

1) 사업목적·내용

- 동 세부사업은 기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복지향상을 위해 경상경비 및 복리후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본청 기본경비 중 일부비목을 총액인건비 대상으로 편성· 운영, 경직적 정원·보수관리방식을 탈피하고 예산 운영의 자율성 부여하고 있음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
 - ·제5조 (하부조직) 제1항 문화재청에 운영지원과·문화재정책국·문화재보존국 및 문화재활용국을 둔다.
- ② 추진경위 해당사항 없음

□ 주요내용

-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1,230	1,230	1,494	1,494	1,49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운영지원과

- 사업 수혜자 : 문화재청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4) 본청기본경비 (7111-25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Ol મો. જો ગો	ㅁ쉵케ᅱ	이어카이카		060	064
명칭	일반회계	문화재청	운영지원과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51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단위사업명	본청기본경비

	□ 사업 성격										
,1 ~	7 訓入	۵) =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신규	계속	완됴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0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0						

사업명	구분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본청기본경	소관부처	문화재청	박정섭	이상원	김현아			
비		운영지원과	042-481-4620	042-481-4630	042-481-4631			
	사업시행주체	문화재청	운영지원과	이상원	042-481-4630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	202	4년	증감	
71 11 6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본청기본경비	2,394	2,755	2,696	2,696	△59	△2.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2022					2023(′23.12월말)							
									전년도 이월액				
	예산액	예산	집행액				예산	집행액	제외		이월	불용	2024
	#연기 (추경)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상액		예산
○ 기능별 분류(합계)	2,494	2,494	2,394	-	100	2,755	2,763	2,719	2,763	2,719	-	-	2,696
• 기관운영지원	1,643	1,754	1,687	-	67	1,769	1,902	1,864	1,902	1,864	-	-	1,486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530	490	469	-	21	617	583	577	583	577	-	-	724
· 문화자장작국 7본경비	42	36	34	-	2	56	26	26	26	26	-	-	53
· 문화제보존국 7본경비	46	27	27	-	0	58	42	42	42	42	-	-	164
· 문화활국기본경비	44	33	33	-	0	60	47	47	47	47	-	-	61
· 산명하단기행	98	83	82	-	1	101	95	95	95	95	-	-	107
· 박제왕도추자기본(최)	91	71	62	-	9	94	68	68	68	68	-	-	101
○ 비목별 분류(합계)	2,494	2,494	2,394	-	100	2,755	2,763	2,719	2,763	2,719		-	2,696
・상용임금(110-03)	223	223	208	-	15	229	229	222	229	222	-	-	236
· 일반수용비(210-01)	564	558	554	-	4	711	728	727	728	727	-	-	829
· 공공요금맞세(21002)	70	88	84	-	4	70	86	82	86	82	-	-	71
· 특근매식비(210-05)	16	9	9	-		16	11	11	11	11	-	-	17
· 임차료(210-07)	257	260	252	-	8	257	199	199	199	199	-	-	278
· 유류비(210-08)	24	13	13	-	1	24	14	14	14	14	-	-	24
· 시설정비유지비(21009)	61	42	41	-	1	61	84	83	84	83	-	-	105
· 복리후생비(210-12)	185	185	135	-	50	11	11	4	11	4	-	-	11
· 일반용역비(210-14)	104	126	125	-	1	156	174	167	174	167	-	-	216
·기타운영비(210-16)	41	41	40	-		51	51	48	51	48	-	-	51
· 국내여비(220-01)	295	304	302	-	2	317	339	325	339	325	-	-	395
·국와업무여비(220·02)	41	32	19	-	13	38	21	21	21	21	-	-	38
·관업무추간(24002)	130	130	130	-		136	136	136	136	136	-	-	171
· 포상금(310-03)	39	39	38	-	2	39	39	39	39	39	-	-	44
· 고용부담금(320-09)	56	56	56	-		45	60	59	60	59	-	-	56
· 자산취득비(430-01)	89	89	89	-		294	283	283	283	283	-	-	84
· 무형자산(440-00)	300	300	300	-	0	300	300	300	300	300	-	-	70

1) 사업목적·내용

- 동 세부사업은 기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반경상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여비, 자산취득비 등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 2024년도 예산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지침, 2024년도 예산 작성 세부지 침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 ·제2조 (추진단의 설치 및 기능) ①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 ·제2조(추진단의 설치 및 기능) ①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추진경위 해당사항 없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2,545	2,487	2,604	2,755	2,696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운영지원과

- 사업 수혜자 : 문화재청

(5) 한국전통문화대학교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7118-2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OJ HJ જો ગો	ㅁ쉵케ᅱ	한국전통문화		060	064
명칭	일반회계	문화재청	대학교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01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한국전통문화대학교기본경비
79, 79,	군와세 영경시천 	소득기선기관성미	(총액인건비대상)

□ 사업 성격

	_ '											
	신규 계속	계소	o). =	예비타당성			사업소관 변경정보					
		계속	전뇨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0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0						

사업명			구분		
한국전통문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화대학교 인거비			조주성	이안재	이명하
(총액인건비 대상)		총무과	041-830-7200	041-830-7210	041-830-7215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	202	4년	증감	
71 11 6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한국전통문화						
대학교 기본경비	177	195	195	195	_	
(총액인건비대상)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	23.12월	말)				
	예산액	예산	집행액				예산	집행액	전년도 제	이월액 외	이월	불용	2024
	대산책 (추경)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상액	-	예산
○ 기능별 분류(합계)	195	195	181		14	195	195	192	195	192		3	195
· 운영경비	195	195	181		14	195	195	192	195	192		3	195
○ 비목별 분류(합계)	195	195	181		14	195	195	192	195	192		3	195
· 특근매식비(210-05)	19	19	9		10	19	19	19	19	19		0	12
· 일·숙직비(210-06)	20	20	19		1	20	20	19	20	19		1	19
·기타운영비(210-16)	39	39	39		0	39	39	39	39	39		0	42
· 직무수행경비(250-02)	117	117	114		3	117	117	115	117	115		2	122
○ 기능비목별 분류 (합계)	195	195	181		14	195	195	192	195	192		3	195
· 특근매식비(210-05)	19	19	9		10	19	19	19	19	19		0	12
· 일·숙직비(210-06)	20	20	19		1	20	20	19	20	19		1	19
·기타운영비(210-16)	39	39	39		0	39	39	39	39	39		0	42
· 직무수행경비(250·02)	117	117	114		3	117	117	115	117	115		2	12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조직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운영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ㅇ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 제2조 (소속기관) 제1항 문화재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재 청장소속하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현충사 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궁·종묘관리소, 조선왕릉관리소 및 국립 무형유산원을 둔다.

② 추진경위

- ㅇ 사업 시작년도 : 2000년
- ㅇ 추진배경
- 한국전통문화대학교직제 제정(대통령령 제16347호)('94. 5. 24)
-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개교('00. 3. 2)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정('11.7.14 제정/'12.7.15 시행)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원 개원(2개 대학원 3개학과)('13. 3)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개설('14.10)

□ 주요내용

-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00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195백만원	195백만원	195백만원	195백만원	195백만원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사업 수혜자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6) 국립고궁박물관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7118-2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Ol મી. જો ગો	ㅁ 치 게 쳐	그리ㅋ그바무히	이비청계	060	064
명칭	일반회계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일반회계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02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국립고궁박물관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 사	□ 사업 성격									
217	괴소	o) =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2年	계속	전뇨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0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0						

사업명			구분		
국립고궁박물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관기본경비 (총액인건비	국립고궁박물 관	기획운영과	윤태정	김지홍	정상헌
대상)		서무	02-3701-7610	02-3701-7611	02-3701-7613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	202	4년	중감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국립고궁박물관 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119	129	131	131	2	1.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	23.12월	말)			
	예산액	예산	집행액				예산	집행액	전년도 제	이월액 외	이월	불용	2024
	(추경)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상액		예산
○ 기능별 분류(합계)	126	126	119	-	7	129	129	124	129	124	-	_	131
· 국립고궁박물관 기본경비(총액인 건비대상)		126	119	-	7	129	129	124	129	124	-	-	131
○ 비목별 분류(합계)	126	126	119	-	7	129	129	124	129	124	-	-	131
· 상용임금(110-03)	58	58	55	-	3	60	60	58	60	58	-	_	61
· 일·숙직비(210-06)	19	19	19	-	-	19	19	19	19	19	-	-	19
· 복리후생비(210-12)	1	1	1	-	-	1	1	-	1	-	-	-	1
· 기타운영비(210-16)	13	13	13	-	-	13	13	13	13	13	-	_	13
· 월정직책급(250-02)	24	24	24	-	_	24	24	22	24	22	-	_	25
· 고용부담금(320-09)	11	11	7	-	4	12	12	12	12	12	-	_	1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매년 일정규모 이상 소요되는 경상적인 기관 운영 경비로 국립고궁박물관의 안정 적인 운영은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
 - ·문화재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 소속으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고궁박물관,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 및 국립무형유산원을 둔다.

② 추진경위

- 조선왕실역사박물관 조성계획 수립·보고(문화재청장, '04.11.)
- 국립고궁박물관 개관(대통령령 제19001호, '05.08.15.)
- 국립고궁박물관 전관 개관('07.11.28.)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09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122	125	126	129	131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사항 없음

(7) 현충사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7118-2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Ol મો. જો ગો	무취케팅	문화재보존국		060	064
명칭	일반회계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04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소속기관 기본경비	현충사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사	□ 사업 성격										
x1 7.	괴소	o) =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刊出	계속	전요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0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О						

사업명	구분								
현충사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본경비		문화재보존국	황상원(소장)	심유신	김진영				
(****!***)		현충사관리소	041-539-4601	041-539-4602	041-539-4605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	202	4년	증감	
71 日 0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현충사기본경비	458	400	494	494	12	2.0
(총액인건비대상)	438	482	494	494	12	2.9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	23.12월	말)				
									전년도	. – .				
	예산액	예산	집행액	343.0			예산	집행액	제		이월	불용	2024	
	"근 (추경)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 C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상액	예산
○ 기능별 분류(합계)	468	468	458		10	482	482	438	482	438	-	43	494	
· 현충사 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468	468	458		10	468	482	438	482	438	-	-	494	
○ 비목별 분류(합계)	468	468	458		10	482	482	438	482	438	-	44	494	
・상용임금(110-03)	364	364	358		6	374	374	340	374	340	-	34	385	
· 특근매식비(210-05)	3	3	3			3	2	-	2	-	-	2	1	
· 일숙직비(210-06)	13	13	13			14	14	14	14	14	-	-	13	
· 복리후생비(210-12)	5	5	5			6	6	6	6	6	-	-	5	
·기타운영경비(210·16)	7	7	5		2	7	7	6	7	6	-	1	6	
· 직책수행경비(250·02)	7	7	7			7	8	8	8	8	-	-	7	
· 고용부담금(320-09)	69	69	67		2	71	71	65	71	65	1	6	76	
○ 기능비목별 분류 (합계)	468	468	458		10	482	482	438	482	438	-	44	494	
· 현충사 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468	468	458		10	482	482	438	482	438	-	44	494	
-상용임금(110-03)	364	364	358		6	374	374	340	374	340	-	34	385	
-특근매식비(210-05)	3	3	3			3	2	-	2	-	-	2	1	
-일숙직비(210-06)	13	13	13			14	14	14	14	14	-	-	13	
-복리후생비(210-12)	5	5	5			6	6	6	6	6	-	-	5	
-기타운영경비(210-16)	7	7	5		2	7	7	6	7	6	-	1	6	
-직책수행경비(250-02)	7	7	7			7	8	8	8	8	_	_	7	
-고용부담금(320-09)	69	69	67		2	71	71	65	71	65	-	6	7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현충사관리소 인건비성 조직운영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1항

② 추진경위: 1969. 현충사관리소(문화공보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446	461	468	482	49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

- 사업 수혜자 : 국민

(8) 칠백의총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7118-2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Ol મો. જો ગો	ㅁ쉵케ᅱ	무취케H즈그		060	064
명칭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06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칠백의총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사	□ 사업 성격										
x1 7.	괴소	수 완료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刊出	계속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0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0						

사업명	구분							
칠백의총기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본경비(총액	소관부처	문화재청	윤찬균	-	원종완			
		칠백의총관리소	041-753-8701	-	041-753-8702			
인건비대상)	사업시행주체	문화재청	칠백의총관리소	윤찬균	041-753-8701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	202	4년	증감	
71 11 6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칠백의총기본경비	10	10	10	10		
(총액인건비대상)	19	19	19	19	_	_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			2023('23.12월말)					
			3-9-9			예수	예산액		3-9-9		이월액			
	예산액	예산	집행액	343.53		·	- '	예산	집행액	제	외	이월	불용	2024
	··그 ((추경)	· · · ·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수정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상 액	예상 액	예산
○기능별 분류(합계)	19	19	19			19	19	21	20	21	20		1	19
· 칠백의총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19	19	19			19	19	21	20	21	20		1	19
○ 비목별 분류(합계)	19	19	19			19	19	21	20	21	20		1	19
· 특근매식비(210-05)	1	0	0			1	1	1	0	1	0		1	1
· 일·숙직비(210-06)	13	14	14			13	13	13	13	13	13		0	13
·기타운영비(210-18)	3	3	3			3	3	3	3	3	3		0	3
· 직책수행경비(250-02)	2	2	2			2	2	4	4	4	4		0	2
○ 기능 비목별 분류(합계)	19	19	19			19	19	21	20	21	20		1	19
· 칠백의총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19	19	19			19	19	21	20	21	20		1	19
-특근매식비(210-05)	1	0	0			1	1	1	0	1	0		1	1
-일·숙직비(210-06)	13	14	14			13	13	13	13	13	13		0	13
-기타운영비(210-18)	3	3	3			3	3	3	3	3	3		0	3
-직책수행경비(250-02)	2	2	2			2	2	4	4	4	4		0	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칠백의총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칠백의총관리소 조직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운영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
 - ·문화재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 소속으로 한국전통문화 대학교, 국립고궁박물관,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 및 국립 무형유산원을 둔다.
- ② 추진경위: 해당없음

□ 주요내용

-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19	19	19	19	19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칠백의총관리소

- 사업 수혜자 : 공무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9) 무형유산원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7118-2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그리므처ㅇ시이		060	064
명칭	를 반의 <i>게</i>	[포와세경 	국립무형유산원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07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무형유산원기본경비
70 70	문화재 영경시된 	조득기선기관경미 	(총액인건비대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
	,1 7	-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	신규				관리대상		2022예산 시 소관
		0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Ó						

□ 사업 담당자

무형유산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문영철	김영미	박찬홍
` 대상)		기획운영과	063-280-1410	063-280-1421	063-280-1437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	. , ,
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	202	4년	중감	
/የਬਰ	결산	본예산(A)	요구안	조정안(B)	(B-A)	(B-A)/A
무형유산원기본경비	66	73	75	73		
(총액인건비대상)	66	/3	/3	/3	_	-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	.023(′23					
	예산액 예산		집행액	원		예석	산액	예산	집행액	전년도 제	이월액 외	이월	불용	2024
	^{애진곡} (추경)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수정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상액	예상액	예산
○ 기능별 분류(합계)	73	73	73		7	73	-	73	66	73	66		7	73
· 무형유산원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73	73	66		7	73	-	73	66	73	66		7	73
○ 비목별 분류(합계)	73	73	66		7	73	-	73	66	73	66		7	73
· 특근매식비(210-05)	3	3	3			3	-	3	3	3	3			3
· 일숙직비(210-06)	19	19	17		2	19	_	19	17	19	17		2	19
· 복리후생비(210-12)	6	6	6			6	-	6	6	6	6			6
· 기타운영비(210-16)	15	15	12		3	15	-	15	12	15	12		3	15
· 직책수행경비(250-02)	30	30	28		2	30	-	30	28	30	28		2	3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립무형유산원 인원, 직제 등에 따라 공통적으로 편성되는 기준성 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 ② 추진경위
- 2011년 : '아·태무형문화유산센터 운영 사업'에 포함하여 기획단 운영
- 2012년 : '무형문화유산전당 운영 활성화' 내역사업으로 문화재청 소속 국립무형 유산원설립추진단 운영(9.12.)
- 2013년 : 국립무형유산원 준공(4.30.) 및 정식출범(10.1.)
- 2014년 : 직제 확대(3.11.)
 - 4급기관(2과 14명) → 고위공무원(나급) 기관(4과 40명)
- 2016년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3.28.)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3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안)
사업비	73	73	73	73	73

- 사업규모 :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관서운영비, 직책급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무형유산원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10) 만인의총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7118-20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무칭케Hᅎ그		060	064
명칭	달반외계	문와세경 	문화재보존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09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만인의총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 사업 성격

	_ ,		•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0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0						

사업명			구분		
만인의총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본경비(총	소관부처	문화재청 -		장승호	노봉식
		만인의총관리소	-	063-636-9322	063-636-9337
액인건비대상)	사업시행주체	문화재청	만인의총관리소	장승호	063-636-9322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	202	4년	증감	
71 11 6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만인의총기본경비	10	10	10	10		
(총액인건비대상)	18	18	19	19	-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	23("23.1	2월말)			
			집행액					집행액		- 이월액 세외			2024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접행적 [실집 행액]	이월 액	불용 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력 [실집 행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9 예산
○ 기능별 분류(합계)	19	19	18			19	19	19	19	19			19
· 만인의총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19	19	18			19	19	19	19	19			19
○ 비목별 분류(합계)	19	19	18			19	19	19	19	19			19
· 특근매식비(210-05)	2	2	1			2	2	2	2	2			2
· 일숙직비(210-06)	13	13	13			13	13	13	13	13			13
·기타운영비(210-16)	2	2	2			2	2	2	2	2			2
· 직책수행경비 (250-02)	2	2	2			2	2	2	2	2			2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9	19	18			19	19	19	19	19			19
· 만인의총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19	19	18			19	19	19	19	19			19
-특근매식비 (210-05)	2	2	1			2	2	2	2	2			2
-일숙직비(210-06)	13	13	13			13	13	13	13	13			13
-기타운영비 (210-16)	2	2	2			2	2	2	2	2			2
-직책수행경비 (250-02)	2	2	2			2	2	2	2	2			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만인의총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만인의총관리소 조직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 되는 운영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1항
 - · 문화재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 소속으로 한국전통 문화대학교, 국립고궁박물관, 현충사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 궁·종묘관리소, 조선왕릉관리소 및 국립무형유산원을 둔다.
-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계속사업
- 추진배경
 - · 문화재청(국가)은 조선시대 궁궐과 왕릉을 시초로 정신사적 중요문화재를 직접 관리 보존하고 있으며 만인의총도 사적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국가기관으로 관리 전환됨(전라북도 → 문화재청(2016.5.))

□ 주요내용

-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19	19	19	19	19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만인의총관리소

- 사업 수혜자 : 공무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 · 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11) 한국전통문화대학교기본경비 (7118-25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52	한국전통문화		060	064
명칭	일반회계	문화재청	대학교	_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51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한국전통전통문화대학교기본 경비

□ 사	□ 사업 성격										
ねユ	계소	완료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でサ	用等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Ò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0						

사업명			구분		
한국전통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대학교	소관부처	한국전통문화 대학교	조주성	송시경	김진수
기본경비		총무과	041-830-7200	041-830-7220	041-830-7221
(7118-251)		0 1 -1	011 000-7200	011 000-7220	011 000-7221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	202	4년	증감	
71 日 0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한국전통문화대학교	1 251	1 201	1 401	1 401	110	8.0
기본경비	1,351	1,381	1,491	1,491	110	8.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	23.12월	말)			
									전년도 이월액				
	예산액	예산	집행액				예산	집행액	제	외	이월 불	불용	2024
	#선기 (추경)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상액		예산
○ 기능별 분류(합계)	1,366	1,365	1,351		14	1,381	1,381	1,379	1,381	1,379		2	1,491
· 운영경비	1,366	1,365	1,351		14	1,381	1,381	1,379	1,381	1,379			1,491
○ 비목별 분류(합계)	1,366	1,365	1,351		14	1,381	1,381	1,379	1,381	1,379		2	1,491
· 일반수용비(210-01)	93	111	108		3	98	94	94	94	94			150
· 공공요금 및 제서(21002)	664	655	651		4	664	664	664	664	664			724
· 피복비(210-03)	22	22	22			22	22	22	22	22			22
· 임차료(210-07)	30	19	19			30	30	30	30	30			30
• 유류비(210-08)	165	165	164		1	165	165	165	165	165			165
· 시설장비유지비(21009)	131	123	123			131	131	131	131	131			131
· 재료비(210-11)	97	96	92		4	97	97	97	97	97			97
· 관리용역비(210-15)	125	136	136			125	129	129	129	129			125
· 국내여비(220-01)	22	21	21			32	32	32	32	32			32
· 업무추진비(240-02)		7	6		1	7	7	7	7	7			7
· 자산취득비(430-01)	10	10	10			10	10	9	10	9			1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조직운영 및 시설관리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연례·반복적 운영경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 ·제2조 (소속기관) 제1항 문화재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 재청장 소속하에 한국전통문화학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현충사 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궁·종묘관리소 및 능관리소를 둔다.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17조 1항(교육재정 등)
 - · 전통문화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② 추진경위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직제 제정(대통령령 제16347호)('94. 5. 24)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개교('00. 3. 2)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제정('11.7.14 제정/'12.7.15 시행)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원 개원(2개 대학원 3개학과)('13. 3)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개설('14.10)

□ 주요내용

-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00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1,417	1,397	1,366	1,381	1,491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사업 수혜자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등

(12) 국립고궁박물관기본경비(7118-25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Ol મો. જો ગો	문화재청	그리 그 그비 ㅁ 히	OJ મી. સ્ટ્રી ગ્રી	060	064
명칭	일반회계	- 군 와세경	국립고궁박물관	일반회계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52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국립고궁박물관기본경비

□ 사업 성격

۸۱ユ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20分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0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0						

사업명		구분							
국립고궁박물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관기본경비 (총액인건비	국립고궁박물관	기획운영과	윤태정	김지홍	정상헌				
대상)		서무	02-3701-7610	02-3701-7611	02-3701-7613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	202	4년	증감	
71 日 0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국립고궁박물관 기본경비	95	130	320	320	190	146.2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	23.12월	말)			
	예산액	예산	집행액				예산	집행액	전년도 제	이월액 외	이월	불용	2024
	애산택 (추경)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상액	예산
○ 기능별 분류(합계)	101	101	95	-	6	130	130	105	130	105	-	-	320
·국립고궁박물관 기본경비	101	101	95	-	-	130	130	105	130	105	-	-	320
○ 비목별 분류(합계)	101	101	95	-	6	130	130	105	130	105	-	-	320
· 일반수용비(210-01)	36	36	36	-	_	35	35	33	35	33	_	_	46
· 임차료(210-07)	22	22	20	-	2	32	32	26	32	26	_	_	129
· 유류비(210-08)	5	5	4	-	1	5	5	5	5	5	_	_	8
· 복리후생비(210-12)	5	5	5	-	_	5	5	2	5	2	_	_	5
·기타운영비(210-16)	6	6	6	-	_	6	6	6	6	6	_	_	10
· 국내여비(220-01)	13	13	10		3	12	12	12	12	12			24
·관서업무추진비(240·02)	4	4	4		_	3	3	3	3	3			6
· 자신취득비(430-01)	10	10	10		_	10	10	8	10	8			10
· 무형자산(440-00)	-	-	-	-	_	22	22	10	22	10	_	_	8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경상적 경비를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
 - ·문화재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 소속으로 한국전통문화 대학교, 국립고궁박물관,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 및 국립 무형유산원을 둔다.

② 추진경위

- 조선왕실역사박물관 조성계획 수립·보고(문화재청장, '04.11.)
- 국립고궁박물관 개관(대통령령 제19001호, '05.08.15.)
- 국립고궁박물관 전관 개관('07.11.28.)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09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127	115	101	130	32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

-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 · 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사항 없음

(13) 현충사기본경비 (7118-25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Ol મો. જો ગો	ㅁ쉵케귕	문화재보존국		060	064
명칭	일반회계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54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소속기관 기본경비	현충사 기본경비

□시	□ 사업 성격											
신규	괴소	; 원료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2年	세숙 	전묘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0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О						

사업명	구분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현충사 소관부처	소관부처	문화재보존국	황상원(소장)	심유신	김진영			
기본경비		현충사관리소	041-539-4601	041-539-4602	041-539-4605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	202	4년	증감	
71 11 6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현충사기본경비	314	326	336	336	10	3.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	23.12월	말)			
									전년도				
	예산액	예산	집행액				예산	집행액	제		이월	불용	2024
	(추경)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상액		예산
○ 기능별 분류(합계)	326	326	314		11	326	321	315	321	315		6	336
• 현충사 기본경비	326	326	314		11	326	321	315	321	315		6	336
○ 비목별 분류(합계)	326	326	314		11	326	321	315	321	315		6	336
· 일반수용비(210-01)	64	57	57			65	60	60	60	60	-	-	65
· 공공요금및제세(21002)	137	137	137			138	138	138	138		-	-	143
· 피복비(210-03)	10	10	10			10	10	10	10	10	-	1	10
・임차료(210-07)	12	18	18			12	17	17	17	17	-	-	12
· 유류비(210-08)	10	10	10			9	9	9	9	9	-	-	9
· 시설장비유지비(21009)	14	13	12		1	14	14	14	14	14	-		19
• 관리용역비(210-15)	40	42	41		1	41	41	37	41	37	-	4	41
·국내여비(220-01)	17	17	17		_	16	11	11	11	11	-	-	16
·국외업무여비(22002)	8	8			8	8	8	7	8	7	-	1	8
· 업무추진비(240-02)	4	4	3		1	3	3	3	3	3	-	-	3
· 자산취득비(430-01)	10	10	10		44	10	10	10	10	10	-	-	1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됨 총 시 - 기보 거 비	·····	326	314		11	326	321	315	321	315		6	336
• 현충사 기본경비	326	326	314		11	326	321	315	321	315		6	336
-일반수용비(210-01)	64	57	57			65	60	60	60	60	-	-	65
-공공요금및제세(21002)	137	137	137			138	138	138	138	138	-	-	143
-피복비(210-03)	10	10	10			10	10	10	10	10	-	1	10
-임차료(210-07)	12	18	18			12	17	17	17	17	-	-	12
-유류비(210-08)	10	10	10			9	9	9	9	9	-	-	9
-시설장비유지비(21009)	14	13	12		1	14	14	14	14	14	-		19
-관리용역비(210-15)	40	42	41		1	41	41	37	41	37	-	4	41
-국내여비(220-01)	17	17	17			16	11	11	11	11	-	-	16
-국외업무여비(22002)	8	8			8	8	8	7	8	7	-	1	8
-업무추진비(240-02)	4	4	3		1	3	3	3	3	3	-	-	3
-자산취득비(430-01)	10	10	10			10	10	10	10	10	-	-	1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현충사관리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매년 일정 규모로 소요되는 경상 기관운영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1항

② 추진경위: 1969. 현충사관리소(문화공보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388	344	326	326	336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

- 사업 수혜자 : 국민

(14) 칠백의총기본경비 (7118-25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Ol મો. જો ગો	ㅁ됬게친	므청케버즈그		060	064
명칭	일반회계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56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칠백의총기본경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괴소	o) =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用午	[판뇨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0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0						

사업명	구분							
-1 -2 -1 - 1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칠백의총기	소관부처	문화재청	윤찬균	-	원종완			
본경비		칠백의총관리소	041-753-8701	-	041-753-8702			
	사업시행주체	문화재청	칠백의총관리소	윤찬균	041-753-8701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	202	4년	증감	
71 11 6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칠백의총기본경비	50	71	81	81	10	14.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	023(*23	.12월밀	<u>t)</u>			
						예신	- 액		-3-20.00		이월액	3 43		
	예산액	예산	집행액	المالمال	HOAI	" -	- '	예산	집행액	제	외	이월	불용	2024
	(추경)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수정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상 액	예상 액	예산
○기능별 분류(합계)	71	67	50			71	71	68	58	68	58		10	81
· 칠백의총기본경비	71	67	50			71	71	68	58	68	58		10	81
○ 비목별 분류(합계)	71	67	50			71	71	68	58	68	58		10	81
· 일반수용비(210-01)	11	11	9			11	11	11	10	11	10		1	11
· 공공요금및제세(210-02)	5	5	4			6	6	6	6	6	6		0	14
· 피복비(210-03)	12	12	12			12	12	12	9	12	9		3	12
· 유류비(210-08)	3	3	2			3	3	3	0	3	0		3	3
· 시설장비유지비(210-09)	10	10	1			10	10	10	10	10	10		0	12
· 복리후생비(210-12)	1	1	1			1	1	1	0	1	0		1	1
· 국내여비(220-01)	15	11	8			14	14	11	11	11	11		0	14
· 관서업무추진비(240-02)	3	3	3			3	3	3	3	3	3		0	3
· 자산취득비(430-01)	11	11	10			11	11	11	9	11	9		2	11
○ 기능 비목별 분류(합계)	71	67	50			71	71	68	58	68	58		10	81
· 칠백의총기본경비	71	67	50			71	71	68	58	68	58		10	81
-일반수용비(210-01)	11	11	9			11	11	11	10	11	10		1	11
-공공요금및제세(210-02)	5	5	4			6	6	6	6	6	6		0	14
-피복비(210-03)	12	12	12			12	12	12	9	12	9		3	12
-유류비(210-08)	3	3	2			3	3	3	0	3	0		3	3
-시설장비유지비(210-09)	10	10	1			10	10	10	10	10	10		0	12
-복리후생비(210-12)	1	1	1			1	1	1	0	1	0		1	1
-국내여비(220-01)	15	11	8			14	14	11	11	11	11		0	14
-관서업 무추 진비(240-02)	3	3	3			3	3	3	3	3	3		0	3
-자산취득비(430-01)	11	11	10			11	11	11	9	11	9		2	1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칠백의총기본경비) 매년 일정규모 이상 소요되는 경상적인 기관운영 경비로(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칠백의총관리소의 안정적인 운영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
 - ·문화재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 소속으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고궁박물관,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 및 국립무형유산원을 둔다.
- ② 추진경위: 해당없음

□ 주요내용

-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80	77	71	71	81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칠백의총관리소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15) 무형유산원기본경비(7118-25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문화재청	그리므처ㅇ시이		060	064
명칭	를 반의 <i>게</i>	[포와세경 	국립무형유산원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57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무형유산원기본경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 (•	'
,1 7	-11 A	م) ہ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신규	계속	완료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Ó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Ó						

□ 사업 담당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무형유산원 기본경비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문영철	김영미	박찬홍
		기획운영과	063-280-1410	063-280-1421	063-280-1437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	202	4년	중감	
71日 3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무형유산원기본경비	67	66	68	67	1	1.5

□ 기능별(세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	023(′23	.12월밀	<u>t)</u>			
			집행액			예선	·		집행액	전년도 제	이월액 외			2024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수정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 기능별 분류(합계)	66	71	67		4	66		66	40	66	40		26	67
· 무형유산원기본경비	66	71	67		4	66		66	40	66	40		26	67
○ 비목별 분류(합계)	66	71	67		4	66		66	40	66	40		26	67
· 일반수용비(210-01)	42	42	42		0	44		44	18	44	18		26	46
· 국내여비(220-01)	15	20	16		4	14		14	14	14	14			14
·관사업무추진비(240-02)	9	9	9		0	8		8	8	8	84			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매년 일정규모 이상 소요되는 경상적인 기관 운영 경비로 무형유산원의 안정적인 운영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② 추진경위

- 2011년 : '아·태무형문화유산센터 운영 사업'에 포함하여 기획단 운영
- 2012년 : '무형문화유산전당 운영 활성화' 내역사업으로 문화재청 소속 국립무형 유산원설립추진단 운영(9.12.)
- 2013년 : 국립무형유산원 준공(4.30.) 및 정식출범(10.1.)
- 2014년 : 직제 확대(3.11.)
 - 4급기관(2과 14명) → 고위공무원(나급) 기관(4과 40명)
- 2016년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3.28.)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3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안)
사업비	82	75	66	66	67

- 사업규모 :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관서업무추진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국립무형유산원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16) 만인의총기본경비 (7118-26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익바회계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060	064
명칭		- 단와세경 -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8	260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소속기관기본경비	만인의총기본경비

□ 사업 성격

	, 11					
x1 7.	그게소	o) =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신규	A 4	[판뇨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0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0						

사업명		구분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만인의총기	소관부처	문화재청	문화재청 -		노봉식								
본경비		만인의총관리소	-	063-636-9322	063-636-9337								
	사업시행주체	문화재청	만인의총관리소	장승호	063-636-9322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	202	4년	증감	
71.4.8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만인의총기본경비	25	28	38	38	10	35.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7	2022					2023("2	23.12월	 말)		2 11.	76.6
										이월액			
	예신액	예산	집행액	이월	불용		예산	집행액	제		이월		2024
	(추경)	현액	[실집행 액]	액	액	본예 산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상 액	예상 액	예산
○ 기능별 분류(합계)	29	29	25		3	28	32	32	32	32			38
• 만인의총기본경비	29	29	25		3	28	32	32	32	32			38
○ 비목별 분류(합계)	29	29	25		3	28	32	32	32	32			38
· 일반 수용 비(210-01)	2	7	7			2	2	2	2	2			4
· 공공요금및제세(210-02)	1	0				1	1	1	1	1			10
· 피복비(210-03)	4	4	4			4	4	4	4	4			4
· 임차료(210-07)													
· 유류비(210-08)	3	3	3			1	1	1	1	1			1
· 시설장비유지비(210-09)	2	2	2			2	2	2	2	2			2
· 국내여비(220-01)	9	5	3		2	8	12	12	12	12			8
· 관서업무추진비(240-02)	3	3	3			4	4	4	4	4			4
· 자산취득비(430-01)	5	5	5		1	6	6	6	6	6			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9	29	25			28	32	32	32	32			38
• 만인의총기본경비	29	29	25		3	28	32	32	32	32			38
-일반 수용 비(210-01)	2	7	7			2	2	2	2	2			4
-공공요금및제서(210-02)	1	0				1	1	1	1	1			10
-피복비(210-03)	4	4	4			4	4	4	4	4			4
-임차료(210-07)													
-유류비(210-08)	3	3	3			1	1	1	1	1			1
-시설장비유지비(210-09)	2	2	2			2	2	2	2	2			2
-국내여비(220-01)	9	5	3		2	8	8	8	8	8			8
-관서업무추진비(240-02)	3	3	3			4	4	4	4	4			4
-자산취득비(430-01)	5	5	5		1	6	6	6	6	6			5

1) 사업목적·내용

- (만인의총기본경비) 매년 일정규모 이상 소요되는 경상적인 기관운영 경비로(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만인의총관리소의 안정적인 운영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1항
 - · 문화재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 소속으로 한국전통 문화대학교, 국립고궁박물관, 현충사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칠백의충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 궁·종묘관리소, 조선왕릉관리소 및 국립무형유산원을 둔다.
-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계속사업
- 추진배경
 - · 문화재청(국가)은 조선시대 궁궐과 왕릉을 시초로 정신사적 중요문화재를 직접 관리 보존하고 있으며 만인의총도 사적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국가기관으로 관리 전환됨(전라북도 → 문화재청(2016.5.))

□ 주요내용

-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28	28	28	28	38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만인의총관리소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17) 문화재 정책대변 (7132-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회계코드	소관코드	계정코드	060	064	
명칭	(2자리)	(2자리)	(1~3자리)	060	일반회계	문화재청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2	301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문화재행정제도개선	문화재 정책대변		

□사	□ 사업 성격									
x1 7.	괴소	o) =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刊出	신규 계속 완료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0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3 - 3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	소관부처	대변인실	정영훈	김수현	김지혜			
정책대변			042-481-4670	042-481-4674	042-481-4675			
0 7 11 12	사업시행주체	대변인실	정영훈	김수현	김지혜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기시대	2022년		202	4년	증감	
사업명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문화재	1 271	1 472	1 470	1 470	5	0.2
정책대변	1,371	1,473	1,478	1,478	5	0.3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	23.12월	말)			
								Ì	전년도	이월액			202
	예산액	예산	집행액 [실집	이원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집행액 [실집	제	외 집행액	이월	불용	2024 예산
	(추경)	현액	행액	, 2	20 1	- "-	현액	행액	예산 현액	급실집 행액]	예상액	예상액	
○ 기능별 분류(합계)	1,408	1,408	1,371		37	1,473	1,473	1,431	1,473	1,431		42	1,478
· 문화재청 홍보 및 소식지 제작	681	681	674		7	740	735	722	735	722		13	740
·소통능력 강화	260	260	252		8	260	265	258	260	258		7	260
·대변인실 운영	257	257	245		12	263	263	260	263	260		3	268
·영상촬영 및 편집실 운영	210	210	200		10	210	210	191	210	191		19	210
○ 비목별 분류(합계)	1,408	1,408	1,371		37	1,473	1,473	1,431	1,473	1,431		42	1,478
・상용임금(110-03)	151	151	150		1	155	154	154	154	154			160
· 일반수용비(210-01)	695	586	586			600	605	605	605	605			595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218	218	211		7	241	236	223	236	223		13	241
· 특근매식비(210-05)	8	8	5		3	8	8	5	8	5		3	8
・임차료(210-07)	2	2			2	2	2	2	2	2			2
· 복리후생비(210-12)	2	2	2			2	2	2	2	2			2
· 일반용역비(210-14)	216	324	307		18	344	344	318	344	318		26	344
·국내여비(220-01)	32	32	32			33	33	33	33	33			33
· 국외업무여비(220-02)	3	3			3	4	4	4	4	4			8
· 사업추진비(240-01)	9	9	9			9	9	9	9	9			9
· 포상금(310-03)	3	3	3			5	5	5	5	5			5
• 고용부담금(320-09)	29	29	26		3	30	31	31	31	31			31
· 자신취득비(430-01)	40	40	40			40	40	40	40	40			40
○ 가능비목별 분류(합계)	1,408	1,408	1,372		37	1,473	1,473	1,431	1,473	1,431			1,478

			2022					2023(′	23.12월	말)			
			322					3-0-0	전년도				2024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제 예산 현액	의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2024 예산
· 문화재청 홍보 및 소식지 제작	681	681	674		7	740	735	722	735	722		13	740
-일반수용비(210-01)	463	425	425			461	461	461	461	461			461
- 공공유급 및 재 (21002)	218	218	211		7	241	236	223	236	223		13	241
-일반용역비(210-14)		38	38			38	38	38	38	38			38
· 소통능력 강화	260	260	252		8	260	265	258	265	258		7	260
-일반수용비(210-01)	220	150	150			130	135	135	135	135			130
-일반용역비(210-14)		70	62		8	90	90	83	90	83		7	90
-자산취득비(430-01)	40	40	40			40	40	40	40	40			40
·대변인실 운영	257	257	245		12	263	263	260	263	2 60		3	268
-상용임금(110-03)	151	151	150		1	155	154	154	154	154			160
-일반수용비(210-01)	12	12	12			10	10	10	10	10			4
-특근매식비(210-05)	8	8	5		3	8	8	5	8	5		3	8
-임차료(210-07)	2	2	0		2	2	2	2	2	2			2
-복리후생비(210-12)	2	2	2			2	2	2	2	2			2
-일반용역비(210-14)	6	6	6			6	6	6	6	6			6
-국내여비(220-01)	32	32	32			33	33	33	33	33			33
-국와업무여비(220-02)	3	3	0		3	4	4	4	4	4			8
-사업추진비(240-01)	9	9	9			9	9	9	9	9			9
-포상금(310-03)	3	3	3			5	5	5	5	5			5
-고용부담금(320-09)	29	29	26		3	30	31	31	31	31			31
· 영통영및편집실운영	210	210	200		10	210	210	191	210	191		19	210
-일반용역비(210-14)	210	210	200		10	210	210	191	210	191		19	210

1) 사업목적·내용

- 문화재청의 주요 정책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에게 문화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문화유산 애호의식을 높이고자 함
- (문화재청 홍보 및 소식지 제작) 문화유산 정보 제공 및 주요정책 홍보를 위한 문화재청 소식지 등의 지속적인 발간 필요
- (소통능력 강화) 코로나19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SNS 등 뉴미디어 활용 홍보 수요 및 중요성 증가(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등)
- (대변인실 운영) 공무직 인건비 및 대변인실 운영비(수용비, 공공요금, 여비 등)
- (영상촬영 및 편집실 운영) 문화유산 향유 접근성 및 가치의 확산 도모를 위해 설치된 '문화유산 영상촬영 및 편집실' 운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 제5조의3
 - ·제5조(하부조직) ② 청장 밑에 청내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 1명을 둔다.
 - ·제5조의3(대변인)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 1. 정책홍보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 2. 대국민 홍보 및 만족도 조사·분석
 - 3. 언론기관과의 협조 및 언론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 4.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② 추진경위

- 문화재청 정책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재 관련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를 위하여 '04. 5. 24. 홍보담당관실 신설 후 2008년 대변인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요정책 대외 홍보 활동 추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05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931	1,404	1,408	1,473	1,478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사 업 명

(18) 문화재행정효율성증진및성과관리 (7132-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OJ HL 중] 게	ㅁ칡케ᅯ	기히고려고.		060	064
명칭	일반회계	문화재청	기획조정관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2	302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문화재행정제도개선	문화재행정효율성증진및성과관리		

□ 사	업 성	격				
<u> ۱</u> ۱ ٦	계속	o) =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つ 田	계숙	[전묘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0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문화재행정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효율성증진	문화재청	기획조정관	정규연	김영아	이동진
및성과관리		혁신행정담당관	042)481-4710	042)481-4855	042)481-4719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	202	4년	증감	
71 日 0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문화재행정효율성	269	2.427	1 000	1 000	∧ 1 /110	EO E
증진및성과관리	368	2,427	1,008	1,008	△1,419	58.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	23.12월	말)			
			וואוובור					المائدات		이월액			2024
	예산액	예산	집행액 [실집	പളിങ	불용액	본예산	예산	집행액 [실집	제	외 집행액	이월	불용	2024 예산
	(추경)	현액	[결심 행액]	이끌대	골공식	eu re	현액	[결심 행액]	예산 현액	집생칙 [실집 행액]	예상액	예상액	7112
○ 기능별 분류(합계)	425	425	368	0	57	2,427	2,427	391	2,427	391			1,008
·정부혁신 행정효 율성증진	182	182	175	0	7	184	184	167	184	167			185
·성과관리 및 정 부업무평가 운영 ·문화재기록물 활	243	243	193	0	50	223	223	185	223	185			323
용 및 관리체계기반 마련						2,020	2,020	39	2,020	39			500
○ 비목별 분류(합계)	425	425	368	0	57	2,427	2,427	391	2,427	391			1,008
· 상용임금(110-03)	29	29	28	0	1	30	30	17	30	17			31
· 일반수용비 (210-01)	113	113	113	0	0	114	114	114	114	114			134
· 공공요금및제세 (220-02)	2	2	0	0	2	2	2	2	2	2			2
· 특근매식비 (210-05)	2	2	2	0	0	2	2	2	2	2			3
・임차료(210-07)	12	12	7	0	5	12	12	12	12	12			12
· 시설장비유지비 (210-09)	1	1	0	0	1	1	1	1	1	1			1
· 복리후생비 (210-12)						1	1	1	1	1			1
· 일반용역비 (210-14)						18	368	18	368	18			60
· 관리용역비 (210-15)	60	60	22	0	38	22	22	11	22	11			40
· 국내여비(220-01)	35	35	33	0	2	35	35	35	35	35			35
· 국외업무여비 (220-02)	19	19	18	0	1	19	19	19	19	19			19

			2022					2023(′	23.12월	말)			
									전년도	이월액			
	예산액	예산	집행액 [실집	이원앤	불용액	본예 산	예산	집행액 [실집	제	의 집행액	이월	불용	2024 예산
	(추경)	현액	행엑	16 1	20 1		현액	행액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예상액	예상액	, _
· 관서업무추진비 (240-02)	18	18	18	0	0	17	17	17	17	17			16
· 일반연구비 (260-01)	100	100	93	0	7	100	100	73	100	73			120
· 포상금(310-03)	25	25	25	0	0	25	25	25	25	25			25
· 고용부담금 (320-09)	6	6	6	0	0	6	6	2	6	2			6
・실시설계비 (420-02)						40	40	39	40	39			0
· 공사비(420-03)						1,480	1,108	0	1,108	0			0
· 감리비(420-04)						0	22	0	22	0			0
· 자산취득비 (430-01)	3	3	3	0	0	503	503	3	503	3			503
○ 가능비목별 분류(합계)	425	425	368	0	57	2,427	2,427	391	2,427	391			1,008
·정부혁신 행정효 율성증진	182	182	175	0	7	184	184	167	184	167			185
- 상용임금(110-03)	29	29	28	0	1	30	30	17	30	17			31
- 일반수용비 (210-01)	74	74	74	0	0	75	<i>7</i> 5	<i>7</i> 5	75	75			<i>7</i> 5
- 공공요금및제세 (220-02)	2	2	0	0	2	2	2	2	2	2			2
- 특근매식비 (210-05)	2	2	2	0	0	2	2	2	2	2			2
- 임차료(210-07)	6	6	3	0	3	6	6	6	6	6			6
- 복리후생비 (210-12)						1	1	1	1	1			1
- 국내여비(220-01)	16	16	16	0	0	16	16	16	16	16			16
- 국외업무여비 (220-02)	19	19	18	0	1	19	19	19	19	19			19
- 관서업무추진비 (240-02)	9	9	9	0	0	8	8	8	8	8			8
- 포상금(310-03)	18	18	18	0	0	18	18	18	18	18			18
- 고용부담금 (320-09)	6	6	6	0	0	6	6	2	6	2			6
- 자산취득비 (430-01)	1	1	1	0	0	1	1	1	1	1			1
·성과관리 및 정 부업무평가 운영	243	243	193	0	50	223	223	185	223	185			323
- 일반수용비 (210-01)	42	42	40	0	0	39	39	39	39	39			58
- 특근매식비 (210-05)													1

			2022					2023(′	23.12월	말)			
			الحالحات					기원이	전년도 제	이월액			2024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세 예산 현액	<u>의</u>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9 예산
- 임차료(210-07)	6	6	5	0	2	6	6	6	6	6			6
- 시설장비유지비 (210-09)	1	1	0	0	1	1	1	1	1	1			1
- 일반용역비 (210-14)						18	18	18	18	18			60
- 관리용역비 (210-15)	60	60	22	0	38	22	22	11	22	11			40
- 국내여비(220-01)	19	19	17	0	2	19	19	19	19	19			19
- 관서업무추진비 (240-02)	8	8	9	0	0	9	9	9	9	9			9
- 일반연구비 (260-01)	100	100	93	0	7	100	100	73	100	73			120
- 포상금(310-03)	7	7	7	0	0	7	7	7	7	7			7
- 자산취득비 (430-01) · 문화재기록물 활						2	2	2	2	2			2
용 및 관리체계기반 마련						2,020	2,020	39	2,020	39			500
- 일반용역비 (210-14)						0	350	0	350	0			0
- 실시설계비 (420-02)						40	40	39	40	39			0
- 공사비(420-03)						1,480	1,108	0	1,108	0			0
- 감리비(420-04)						0	22	0	22	0			0
- 자산취득비 (430-01)						500	500	0	500	0			500

1) 사업목적·내용

- (정부혁신 행정효율성 증진)
 - 사회적 가치 등을 실현하는 정책 발굴 및 제도개선을 통해 실용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문화재 행정 구현
 - 정부 혁신으로 문화유산 관리체계 정상화 위한 중점과제 지속 추진
 - 조직분야 과제 추진(기능강화 마련 및 업무기능 분류(BRM)사용자 교육 등 체계적 관리), 부서 사업추진을 위한 경상경비 필요
-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운영)
-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 운영으로 문화재 정책품질 향상 및 문화재 행정의 대국민 업무품질 제고
- (문화재기록물 활용 및 관리체계 기반 마련)
 - 문화재행정기록물과 민간수집기록물을 통합관리하여 행정효율성 증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4조(성과관리의 원칙)
 - ①성과관리는 정책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 ②성과관리는 정부업무의 성과ㆍ정책품질 및 국민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 ②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책임 운영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28조
 - ①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별 시설·장비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②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장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기록물관리기관에 대하여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공무원제안 규정(대통령령/2022.7.12.), 국민제안 규정(대통령령/2022.7.12.)
- ⑤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2022.2.22.)

⑥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계속사업
- 추진배경
- 정부혁신 추진방침에 따라 과제별 혁신추진을 시작('04년 ~ '07년)
- 실용정신과 변화관리 강조 [대통령 취임사('08.2.20.)]
- 행안부 「공무원제안 활성화 지침」 및 「행정제도 선진화 추진지침」 시달 ['11. 2월]
- · 국정과제 「정부3.0」 구상발표('12.7.11.)
- · 안행부 「정부3.0」 추진 기본계획 시달('13. 5월)
- · 2006년 성과 중심 정부운영방침에 부응하여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 제정되고, 정부업무 평가 수행 및 성과관리 운영 시작
- ·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 및 시스템 구축 등 정부업무평가와 성과관리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문화재 행정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고객 만족도 조사 등 지속 시행
- · 사회적 가치 등을 실현하는 정부혁신 필요성[대통령 신년기자회견('18.1.10.)], 국무회의 대통령 모두말씀('18.1.16.)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수립·발표('18.3.19.)
- · 2022년 정부업무(특정평가·자체평가) 운영계획 및 평가 발표('22.5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385	543	425	2,427	1,00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사업 수혜자 : 문화재청 및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사 업 명

(19) 전산운영경비(정보화) (7133-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52			060	064
명칭	일반회계	문화재청	기획조정관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3	303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본청운영경비	전산운영경비(정보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이근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他们	게득	七五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0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전산운영경비	소관부처	기획조정관	최재혁	도레미	서유진			
(정보화)		정보화담당관	042-481-4750	042-481-4760	042-481-4754			
,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	202	4년	증감	
7113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전산운영경비	804	939	2.047	2.047	1 100	118.0
(정보화)	804	939	2,047	2,047	1,108	116.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	23.12월	•			
									전년도				
	예산액	예산	집행액				예산	집행액	제		이월	불용	2024
	" ^년 (추경)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상액	예산
○ 기능별 분류(합계)	934	934	804	-	130	939	879	847	879	847	-	32	2,047
· 공무직 상용임금 및 사업자부담금	264	264	217	-	47	274	274	254	274	254	-	20	282
·전산장비 유지보 수관리	415	415	351	-	64	415	348	348	348	348	-	-	415
· 장비구입	64	64	62	-	2	64	64	64	64	64	-	-	64
• 전산운영	191	191	174	-	17	186	193	181	193	181	_	12	1,247
·기록물 보존시설 관리운영													39
○ 비목별 분류(합계)	934	934	804	-	130	939	879	847	879	847	-	32	2,047
· 상용임금(110-03)	219	219	179	-	40	226	226	210	226	210	_	16	265
· 일용임금(110-04)	11	11	6	-	5	10	10	1	10	1	-	9	11
· 일반 수용 비(210-01)	77	77	72	-	5	77	72	72	72	72	_	-	77
· 공공요금및제세 (210-02)	49	49	44	-	5	49	61	61	61	61	-	-	1,111
· 특근매식비(210-05)	3	3	2	-	1	3	3	3	3	3	-	-	3
· 시설장비유지비 (210-09)	3	3	3	-	-	3	3	-	3	-	-	3	3
· 복리후생비(210-12)	3	3	3	-	-	4	4	4	4	4	-	-	4
· 관리용역비(210-15)	415	415	351	-	64	415	348	348	348	348	-	-	415
· 국내여비(210-01)	23	23	23	-	_	21	23	23	23	23	_	-	20
· 국외여비(210-02)	14	14	13	-	1	13	11	11	11	11	_	-	12
· 사업추진비(240-01)	7	7	7	-	_	6	6	6	6	6	_	-	6
· 포상금(310-03)	4	4	4	-	-	4	4	4	4	4	-	-	4

			2022					2023(′	23.12월				
			וואוובוד					المالحات	전년도				2024
	예산액	예산	집행액 [실집	이원애	불용액	본예산	예산	집행액 [실집	제	외 집행액	이월	불용	202 4 예산
	(추경)	현액	행엑	127	207	C 11C	현액	행액	예산 현액	B 6 7 [실집 행액]	예상액	예상액	,, _
· 고용부담금(320-09)	42	42	35	-	7	44	44	40	44	40	-	4	52
· 자산취득비(430-01)	64	64	62	-	2	64	64	64	64	64	-	_	64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934	934	803	-	130	939	879	847	879	847	-	32	2,047
· 공무직 상용임금 및 사업자 부담금	264	264	217	-	47	274	274	254	274	254	-	20	321
-상용임금(110-03)	219	219	179	-	40	226	226	210	226	210	-	16	265
-복리후생비(210-12)	3	3	3	-	-	4	4	4	4	4	_	-	4
-고용부담금(320-09)	42	42	35	-	7	44	44	40	44	40	_	4	52
· ट्रिंग क्राप्ट िय ा	415	4 15	351	-	64	41 5	348	348	348	348	_	-	415
-관리용역비(210-15)	415	415	351	-	64	415	348	348	348	348	-	-	415
· 장비구입	64	64	62	-	2	64	64	64	64	64	-	-	64
-자산취득비(430-01)	64	64	62	-	2	64	64	64	64	64	-	-	64
· 전산운영	191	191	174	-	17	186	193	181	193	181	-	12	1,247
-일용임금(110-04)	11	11	6	-	5	10	10	1	10	1	-	9	11
-일반수용비(210-01)	77	77	72	-	5	77	72	72	72	72	_	-	77
- 공공요금및제세 (210-02)	49	49	44	-	5	49	61	61	61	61	-	-	1,111
-특근매식비(210-05)	3	3	2	-	1	3	3	3	3	3	-	-	3
- 시설장비유지비 (210-09)	3	3	3	-	-	3	3	-	3	-	-	3	3
-국내여비(210-01)	23	23	23	-	-	21	23	23	23	23	-	-	20
-국외여비(210-02)	14	14	13	-	1	13	11	11	11	11	_	-	12
-사업추진비(240-01)	7	7	7	-	-	6	6	6	6	6	_	-	6
-포상금(310-03)	4	4	4	-	_	4	4	4	4	4	_	-	4

1) 사업목적·내용

- ㅇ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 정보시스템, PC 및 SW 운영· 교체
- o 문화유산 보존.복원의 핵심자료인 도면, 사진필름, 음성영상, 전문도서 등 공공저 작물 및 아카이브 수집.보존연구
- ㅇ 문화재청 정보화담당관실 및 기록관 운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제11조(문화재 정보화의 촉진), 제43조(기록의 작성.보존)
- 「전자정부법」45조(정보기술아키텍처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6조(기관별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제47조(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운영 촉진)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기록물관리의 원칙)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3항(정수·상태점검)
- 「도서관법」제7조, 41조, 43조(도서관의 이용 제공)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5조(정보공개의 원칙) 및 제6조

② 추진경위

- '05.08.16 기록관리담당관실 신설(이전 : 문화재교류과 정보화계)
- '08.03.03 정보화팀으로 명칭변경
- '09.04.27 정보화기획팀으로 명칭변경
- '11.05.25 직제시행규칙 개정(문화체육관광부령 제86호)으로 '문화재 공간정보 활용체계구축' 업무 소관 변경(발굴제도과→정보화기획팀)
- '13.03.23 정보화담당관으로 명칭 변경
- '21.11.17 직제개편으로 디지털문화유산팀이 분과됨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03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907	917	934	939	2,047

- 사업규모: 행정지원인력 인건비, 통신회선 사용료 등 경상운영, 행정업무용 노후 PC 및 프린터 교체, 프린터 토너 등 전산소모품 구매, 소프트웨어 구매 보급, 전산장비 유지보수, 기록정보자원 관리업무 수행 및 기록관·자료실 운영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사업 수혜자 : 문화재청, 지자체, 공공기관, 전국 박물관, 도서관, 문화재 조사연구기관,

문화재 관련단체, 문화재 소장자 등 문화재 유관기관 전체 및 일반국민

사 업 명

(20) 문화재 행정정보 융합체계 구축(정보화)(7134-5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OJ HJ' ક્રી ગો	ㅁ칡케칭	기하고자기		060	064
명칭	일반회계	문화재청	기획조정관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4	503
rd 칭	문화재행정지원	문화재 전자행정 구축	문화재 행정정보 융합체계
명칭	문화계 영경기된 	문화재 전자병경 기록 	구축(정보화)

□시	□ 사업 성격									
,1 7	-11 A	ما ٦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신규	계속	완됴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0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문화재 행정정보 융합체계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소관부처	기획조정관	최재혁	도레미	권윤정
구축(정보		정보화담당관	042-481-4750	042-481-4760	042-481-4762
화)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문화재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전자행정	소관부처	기획조정관	최재혁	이태호	김영진
구축		정보화담당관	042-481-4750	042-481-4755	042-481-4772
내역사업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문화재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록물	소관부처	기획조정관	최재혁	김성철	송소현
관리·활용 체계		정보화담당관	042-481-4750	042-481-4971	042-481-4767
구축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문화유산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정보서비	소관부처	기획조정관	최재혁	이태호	황성환
스 개선		정보화담당관	042-481-4750	042-481-4755	042-481-4628
내역사업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무하재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정보시스템	소관부처	기획조정관	최재혁	이태호	황성환
위탁운영		정보화담당관	042-481-4750	042-481-4755	042-481-4628
스 개선 내역사업 사업시행주 문화재청 정보시스템 소관부처 위탁운영 내역사업 사업시행주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정보보안.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소관부처	기획조정관	최재혁	도레미	이정곤
		정보화담당관	042-481-4750	042-481-4760	042-481-4776
내역사업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정보화시업	소관부처	기획조정관	최재혁	이태호	황성환
통합감리 내역사업		정보화담당관	042-481-4750	042-481-4755	042-481-4628
네크기업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	202	4년	중감	
71 ዓ ሪ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문화재 행정정보	2.064	E 000	7 1 0 0	7 100	1 120	107
융합체계 구축(정보화)	2,964	5,989	7,109	7,109	1,120	18.7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	(*23.12	 월말)			
									전년도	. — .			
	예산액	예산	집행액				예산	집행액	제	외	이월	불용	2024
	"연기 (추경)	현액	[실집 행액]	이왈액	불용액	본예산	# C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상액	예상액	예산
○ 기능별 분류(합계)	3,006	3,006	2,964		42	5,989	6,049	5,510	6,049	5,510	525	14	7,109
· 문화재 전자행정 구축	221	221	218		3	3,659	3,641	3,115	3,641	3,115	525	1	4,948
·문화유산정보셔스개선	169	169	165		4	169	150	149	150	149		1	0
· 문화재청 정보시스템 위탁운영	1,183	1,183	1,179		4	738	738	737	738	737		1	738
· 정보보안·정보시스템 인프라 고도화	1,023	1,023	1,020		3	1,023	1,108	1,102	1,108	1,102		6	1,023
· 정보화사업 통합감리	60	60	35		25	50	62	58	62	58		4	50
· 문화재 기록물 관리· 활용체계 구축	350	350	347		3	350	350	349	350	349		1	350
○ 비목별 분류(합계)	3,006	3,006	2,964		42	5,989	6,049	5,510	6,049	5,510		14	7,109
· 관리용역비(210-15)	1,636	1,636	1,629		7	1,191	1,276	1,275	1,276	1,275		1	1,191
· 일반연구비(260-01)	800	800	765		35	4,065	4,040	3,509	4,040	3,509	525	6	3,896
· 자산취득비(430-01)	570	570	570		0	733	733	726	733	726		7	2,022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006	3,006	2,964		42	5,989	6,049	5,510	6,049	5,510	525	14	7,109
· 문화재 전자행정 구축	221	221	218		3	3,659	3,641	3,115	3,641	3,115	525	1	4,948
-일반연구비(260-01)	221	221	218		3	3,496	3,478	2,953	3,478	2,953	525	0	3,496
-자산취득비(430-01)						163	163	162	163	162		1	1,452
·문화유산 정보서비스 개선	169	169	165		4	169	150	149	150	149		1	0
-일반연구비(260-01)	169	169	165		4	169	150	149	150	149		1	0
· 문화재청 정보시스템 위탁운영	1,183	1,183	1,179		4	738	738	737	738	737		1	738
-관리용역비(210-15)	1,183	1,183	1,179		4	738	738	737	738	737		1	738
· 정보보안·정보시스템 인프라 고도화	1,023	1,023	1,020		3	1,023	1,108	1,102	1,108	1,102		6	1,023
-관리용역비(210-15)	453	453	450		2	453	538	538	538	538		0	453
-자산취득비(430-01)	570	570	570		0	570	570	564	570	564		6	570
· 정보화사업 통합감리	60	60	35		25	50	62	58	62	58		4	50

			2022			2023(′23.12월말)							
			집행액			고. 집행액		전년도 제	이월액 외			2024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이율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일반연구비(260-01)	60	60	35		25	50	62	58	62	58		4	50
·문화재 기록물 관 리·활용체계 구축	350	350	347		3	350	350	349	350	349		1	350
-일반연구비(260-01)	350	350	347		3	350	350	349	350	349		1	350

1) 사업목적·내용

- (문화재 전자행정 구축) 문화재청과 지자체, 협업기관 등의 문화재 행정 및 민원 업무 처리 효율향상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 국가유산 미래 정책환경 변화에 맞춰 업무절차와 데이터 관리체계를 혁신적으로 재설계하고 지능정보기술 반영 등 차세대 시스템으로 전면 재구축 추진
- **(문화유산 대국민 서비스)** 문화재정보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통한 문화유산향유 기회 확대
- (문화재청 정보시스템 위탁운영) 문화재청 정보시스템의 전문 민간업체 위탁을 통한 효율적·안정적 시스템 운영
- (정보보안·정보시스템 인프라 고도화) 정보보안 강화, 개인정보보호를 통한 사이 버 침해사고의 효율적 예방 및 안정적 정보관리 체계 구축
- **(정보화사업 통합감리)**「전자정부법」제57조(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에 의 거 문화재청 정보화사업에 대한 감리 실시
- (문화재 기록물 관리·활용체계 구축) 국가유산 보존관리 분야에서 축적한 민간소 장 문화재기록물의 체계적 수집과 전자적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개방서비스 기반마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제10조(문화재 기초조사), 제11조(문화재 정보화의 촉진), 제43조 (기록의 작성·보존)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7조(문화재정보체계 구축 범위 및 운영 등)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0조(발굴허가의 신청), 제15조(발굴조사 보고서), 제16조(매장문화재 현상변경), 제17조(발견신고 등), 제24조(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등록), 제28조(매장문화재의 기록작성 등)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범위 등), 제5조(지표조사 보고서 등), 시행규칙 제15조(발굴조사보고서 제출)
-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6조(문화재수리 보고서의 작성)
-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변경신고), 제17조(문화재 수리기 술자의 현장배치 확인)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기록물관리의 원칙), 제21조(중요 기록물의 이중보존)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기록물 관리의 원칙) 제3항, 제39조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기록물 보존매체 수록) 제1항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제31356호)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지침)
- 「문화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문화재청훈령 제602호)
-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제29조(안전조치의 의무)
- 「전자정부법」제56조(정보통신망 보안대책 수립·시행)

② 추진경위

- "문화재 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업무효율화를 위한 총체적 관리체제 구축" 필요 성 감사원 지적, 문화재 보존관리 및 정보화 중장기계획 수립('02~'11)
- 문화재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03.1), 문화재 전자행정 예산확보
- '04.6월 '전자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시작
- '05년~'06년 : 문화재 행정업무 재설계 실시(BPR)
- '04년~'07년 : 문화재 24개 행정업무 시스템 구축
- '07.6월 : 문화재 조사제도 개선 관련 관계부처 협의(BH 민원제도혁신비서관실)

- '07.12월 : 문화재청 출토유물 전자태그(RFID) 표준안 마련
- '08.3월: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계획 수립(문화재 분포정보 구축)
- '08.12월 : 차세대 문화재 정보화전략계획(U-ISP) 및 문화유산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 •기록정보자원의 표준화와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 대두
- '09.4월~12월 문화유산 기록체계 합리화 방안 보고(총 6회)
- '10.1.27. 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 관리체계 합리화방안 연구용역 추진계획 보고
- '10.3~12월 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 관리체계 합리화방안 연구용역 추진
- '10.3월 :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10~'15)(국토해양부)
- '11.1월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개정(국가정보원)
- '11.5월 : 문화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개정
- '11.3월 : 개인정보보호법 공포
- '11.4~12월 '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관리 ISP 수립' 사업 추진
- '11.9월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암호화 예산 관련 자료 제출(행정안전부)
- '12.1월 : 2012년 문화재청 정보보안업무 추진계획 보고
- '12.3월 : 문화재청 2012~2013년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수립
- '12.12월 : 문화재 전자행정 기반 32종의 정책정보 제공
- '13.1월 : 2013년 문화재청 정보보안업무 추진계획 보고
- '13.3월 : 문화재청 2014년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수립
- '13.6월: 「정부 3.0 기본계획」, 「문화유산 3.0 세부추진계획」수립
- '14.1월 : 2014년 문화재청 정보보안업무 추진계획 보고
- '14.3월 : 문화재청 2015년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수립
- '15.6-9월 : 문화재청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추진
- '16.2월 : 문화재청 정보보호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 '12년~'19년 문화유산 아날로그 기록정보자원 디지털화 추진
- '09년~'19년 : 지표·발굴, 출토유물,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 무형문화재 관리 등 문화재 행정업무 시스템 개발
- '18.4월 : '문화유산 아카이브 수집보존관리 및 활용 기초연구' 추진
- '20.6~12월 : 문화재 행정정보시스템 재구축 ISP·BPR 수립
- '21.10월 : 제2보존서고 공간배정(405㎡)
- '22.12월 : 차세대 문화재 전자행정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
- '23.2월~ : 제2보존서고 환경개선 공사 설계용역 및 공사실시(진행중)
- '23.5월~ : 문화재청 어린이/청소년 홈페이지 전면개편

□ 주요내용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04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5,626	17,716	17,612	5,989	7,109

- 기타(사업규모):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 지자체, 문화재 지표·발굴 및 조사·연구기관, 건설사업 시행자,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및 전승자, 천연기념물(동물) 치료소 및 구조센터, 대한수의사협회 등 문화재 관련 기관·단체 전체, 소장자, 일반국민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사업 수혜자 :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 지자체, 지표·발굴 조사기관 등 문화재 유관

기관·단체, 소장자, 일반국민 등

-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사 업 명

(21) 문화재디지털대전환(정보화) (7134-50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Ol મી. કો ગો	ㅁ 치 게 쳐	기히고려고.		060	064
명칭	일반회계	문화재청	기획조정관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4	508
명칭	문화재행정지원	문화재 전자행정 구축	문화재디지털대전환(정보화)

□ 사업 성격

			•				
	신규 계속	-11 人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계약	완료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0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 디지털	소관부처	기획조정관	신성희 팀장	이정엽	김지아
대전환 (정보화)		디지털문화유산팀	042-481-4777	042-481-4614	042-481-4751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문화재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공간정보 활용체계	소관부처	기획조정관	신성희 팀장	이정엽	김지아
구축		디지털문화유산팀	042-481-4777	042-481-4614	042-481-4751
내역사업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T = 1 () 1)					
문화유산 기록정보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자원	소관부처	기획조정관	신성희 팀장	김용희	한 현
통합DB		디지털문화유산팀	042-481-4777	042-481-4752	042-481-4757
구축 내역사업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디지털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유산	소관부처	기획조정관	신성희 팀장	이정엽	김지아
정보시스템 위탁운영		디지털문화유산팀	042-481-4777	042-481-4614	042-481-4751
내역사업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문화유산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공공데이터	소관부처	기획조정관	신성희 팀장	조훈	황선목
개방확대 및 품질관리		디지털문화유산팀	042-481-4777	042-481-4774	042-481-4775
내역사업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디지털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유산	소관부처	기획조정관	신성희 팀장	이정엽	김지아
정보화시업 통합감리		디지털문화유산팀	042-481-4777	042-481-4614	042-481-4751
내역사업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ㅁ숙l-il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 지능정보화	소관부처	기획조정관	신성희 팀장	이정엽	김지아
기반구축		디지털문화유산팀	042-481-4777	042-481-4614	042-481-4751
내역사업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2023년 예산	202	4년	증감	
71월 3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문화재 디지털	14 240	15 170	14.055	14 055	^ O1.4	۸.(
대전환(정보화)	14,340	15,169	14,255	14,255	△ 914	△ 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	2023(*23	3.12월밑	<u>l</u>)			
	예신액	예산	집행액			예각	<u></u> 산액	예산	집행액	전년도 제	이월액 외	이월	HΔ	2024
	예산책 (추경)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수정	현액	[실집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 기능별 분류(합계)	14,615	14,615	14,340	148	127	15,169	15,169	15,317	15,301	15,169	15,153		16	14,255
· 문화유산 기록정보 자원 통합 DB구축	14,174	14,174	13,966	148	60	14,174	14,174	14,322	14,321	14,174	14,173		1	13,467
· 문화재 공간정보 활용체계 구축 · 디지털 문화유산 정보사스템 위탁운영	300	300	293		7	300 445				300 445	296 440		4 5	293 445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품질관리	51	51	44		7									
· 디지털 문화유산 정보화시업 통합리	90	90	37		53	50	50	50	44	50	44		6	50
· 문화재 지능정보화 기반 구축						200	200	200	200	200	200			
○ 비목별 분류(합계)	14,615	14,615	14,340	148	127	15,169	15,169	15,317	15,301	15,169	15,153		16	14,255
· 일반수용비(210-01)	30	30	624	148	18	30	30	178	178	30	30			30
· 공공요금맞제서(210-02)														810
· 관리용역비(210-15)						445	445	445	440	445	440		5	445
· 일반연구비(260-01)	14,504	14,504	13,644		100	14,664	14,664	14,664	14,654	14,664	14,654		10	12,940
· 자산취득비(430-01)	81	81	72		9	30	30	30	29	30	29		1	3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4,615	14,615	14,340	148	127	15,169	15,169	15,317	15,301	15,169	15,153		16	14,255
· 문화유산 기록정보 자원 통합DB구축	14,174	14,174	13,966	148	60	14,174	14,174	14,322	14,321	14,174	14,173		1	13,467
-일반수용비 (210-01) -공공요금 및 제세	30	30	624	148	18	30	30	178	178	30	30			30
- 8 8 교급 및 지기에 (210-02) -일반연구비 (260-01)	14,114	14,114	13,314		40	14,114	14,114	14,114	14,114	14,114	14,114			810 12,597
-자산취득비 (430-01)	30	30	28		2	30	30	30	29	30	29		1	30
· 문화재 공간정보 활용체계 구축	300	300	293		7	300	300	300	296	300	296		4	293
-일반연구비 (260-01)	300	300	293		7	300	300	300	296	300	296		4	293
· 디지털 문화유산 정보시스템 위탁운영						445	445	445	440	445	440		5	445

			2022					2	023('23	3.12월밑	<u>ł</u>)			
	പ്പിവി	예산	집행액			예신	산액	예산	집행액	전년도 이월 ⁹ 제외		이월 불용		2024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수정	^{게 년} [실집 현액 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 예상액		예산	
-관리용역비 (210.15)						445	445	445	440	445	440		5	445
(210-15) · 문화유산 공공 데이터 개방 확대 및 품질관리 -일반연구비 (260-01)	51	51	44		7									
-자산취득비 (430-01)	51	51	44		7									
· 디지털 문화유산 정보화시업 통합감리	90	90	37		53	50	50	50	44	50	44		6	50
-일반연구비 (260-01)	90	90	37		53	50	50	50	44	50	44		6	50
· 문화재 지능정보화 기반 구축						200	200	200	200	200	200			
-일반연구비 (260-01)						200	200	200	200	200	200			

1) 사업목적·내용

- (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 통합 DB구축)
 - 문화유산의 원형 보존·복원을 위해 전국에 산일된 기록정보자원 수집, DB구축, 영구보존, 공유 활용, 문화콘텐츠 자원화
 - 연구자, 협회, 단체 등 민간 소장 도면, 사진필름, 음성영상, 전문도서 등 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 수집, 목록화 등
- (문화재 공간정보 활용체계 구축)
 - 지정 및 매장문화재 구역 보호, 체계적 관리, 규제지역 안내를 위한 문화재 지리 정보체계(GIS), 공간DB 구축 운영
- (디지털 문화유산 정보시스템 위탁운영)
 - 디지털 문화유산 운영 정보시스템의 전문 민간업체 위탁을 통한 효율적·안정적 시스템 운영
- (디지털 문화유산 정보화사업 통합감리)
 - 「전자정부법」 제57조(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 감리)에 의거 디지털 문화유산 정보화 사업에 대한 감리법인을 통한 감리실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0조(문화재 기초조사), 제11조(문화재 정보화의 촉진), 제43조(기록의 작성·보존)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7조(문화재정보체계 구축 범위 및 운영 등)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발굴허가의 신청), 제15조(발굴조사 보고서), 제16조(매장문화재 현상변경), 제17조(발견신고 등), 제24조(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등록), 제28조(매장문화재의 기록작성 등)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범위 등), 제5조(지표조사 보고서 등), 시행규칙 제15조(발굴조사보고서 제출)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수립), 제7조(국가공간정보정 책시행계획), 제21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제25조(공간정보의 활용 등)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 제21조(공간 정보의 활용 등)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 제9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내용의 제공)
-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18~'22)
- 2020년 국가공간정보 시행계획
- 정부 3.0 기본계획(국민이 원하는 정보 사전공개), 문화유산 3.0 실행계획(매장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정보공유)
- 『공공데이터법』제14조(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 『문화유산 디지털 대전환 2030』 계획('21. 7. 5.)
- 문화재보호법 제22조의9(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의 추진), 제22조의10(문화재데이터 관련 사업의 추진), 제22조의11(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등), 제22조의12(문화재지능정보 서비스플랫폼의 구축·운영)
- ② 추진경위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00.6월 :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 제정, 시행
- '00.12월 : 제2차 국가GIS기본계획('01~'05) 수립(건교부)
- "문화재 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업무효율화를 위한 총체적 관리체제 구축" 필요 성 감사원 지적, 문화재 보존관리 및 정보화 중장기계획 수립('02~'11)
- 문화재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03.1), 문화재 전자행정 예산확보
- '05.6월 : 국토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지시(대통령 지속가능발전비전 선언)
- '05.12월 :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06~'10) 수립(건교부)

- '06.6월 : 토지규제개혁 일환으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정, 시행
- '08.3월: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계획 수립(문화재 분포정보 구축)
- '08.4월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보고(문화재 GIS 구축 추진)
- '08. 12월 문화유산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 · 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의 표준화와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 대두
- '09.4월~12월 문화유산 기록체계 합리화 방안 보고(총 6회)
- '10.1.27. 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 관리체계 합리화방안 연구용역 추진계획 보고
- '10.3~12월 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 관리체계 합리화방안 연구용역 추진
- '10.3월: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10~'15)(국토해양부)
- '10.4월 :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 보고사항(문화재 GIS의 지속적 확대·활용 추진)
- '11.4~12월 '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관리 ISP 수립' 사업 추진
- '13.6월: 「2014년 국가공간정보시행계획」(국토교통부)
- '13.6월 : 「정부 3.0 기본계획」, 「문화유산 3.0 세부추진계획」
- '13.9월: 제5차 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13~'17)(국토해양부)
- '12년~'22년 문화유산 디지털세트 3차원 DB구축, 문화유산 아날로그 기록정보자원 디지털화 추진
- '18.4월 : '문화유산 아카이브 수집보존관리 및 활용 기초연구' 추진
- '19.9월 : 「제3차(20-22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기본계획」수립
- '21.7월 : 「문화재 디지털 대전환2030」계획 수립
- '21.11월: 문화재청 기획조정관 디지털문화유산팀 신설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04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2,580	14,774	14,615	15,169	14,255

- 사업규모 :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 지자체, 문화재 지표·발굴 및 조사·연구기관, 건설사업 시행자, 문화재 관련 기관·단체 전체, 일반국민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사업 수혜자 : 문화재청 및 소속기관, 지자체, 지표·발굴 조사기관 등 문화재 유관 기관·단체, 일반국민 등

- 454 -	
---------	--

Ⅲ.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Ⅲ.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 총 괄

가. 2024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그 법	2022결산	2023예산	2024예산		증 감	
구분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
총 계	132	-	902	902	902	순증
지역지원계정 소계	132	-	902	902	902	순증
54. 기타이자수입및재산수입	114	-	117	117	117	순증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	114	-	117	117	117	순증
59. 경상이전수입	18	_	7 85	785	7 85	순증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18	_	785	785	785	순증

나. 2024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7 11	2022결산	2023	2024예산		증 감	
구분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
총 계	9,675	2,100	-	-	△2,100	순감
지원계정 소계	9,675	1,200	-	-	△1,200	순감
광주 세계유산 남한산성 박물관 건립(3237-303)	6,000	-	-	1	-	
보은 법주사 성보박물관 건립(3237-304)	3,075	900	-	-	△900	순감
양산 통도사 문화공간 건립(3237-307)	600	_	-	-	-	
천년 유교문화 경전각 건립(3237-308)	_	300	-	-	△300	순감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소계	_	900	_	_	△ 900	순감
제주 해녀의 전당 건립(3238-301)	-	900	-	-	△900	순감



_	462	_

지역지원계정



2. 세 입

기타재산이자수입	
54-546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2023년 예산액	202	4년	증감	
70	결산액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기타재산이자 수입	114	-	117	117	117	순증

가. 법적 근거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86조(한국은행등의 국고금출납) 제5항
 - 금융기관은 금융기관에 예치된 국고예금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보통예금의 금리수준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세입 개요

○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 정산결과 국고보조금에 대한 정산이자 반납금

다. 2024년 세입예산안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구체적인 산식 및 수치 적시)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3예산	_	• 미편성
2024예산	114,000	• 2022년 결산액(114백만원) 보다 상향 편성

기타경상이전수입 59-596

(단위: 백만원, %)

2022년		2023년 예산액	202	4년	증감	
목명	결산액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기타경상이전 수입	18	-	785	785	785	순증

가. 법적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조금의 반환) 제1항, 제2항
 -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 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세입 개요

○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 정산결과 국고보조금에 대한 정산반환금

다. 2024년 세입예산안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구체적인 산식 및 수치 적시)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3예산	_	■ 미편성
2024예산	785	 최근 5년간('18~22년) 평균 결산액 평균액(785백만원) 수준으로 편성

Ⅳ. 문화재보호기금





1. 총 괄

가. 2024년도 문화재보호기금 수입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결산 -	2023계획액		2024년도		증 감	
一 七	2022결산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
총 계	167,775	168,955	168,955	169,982	169,982	1,027	0.6
51 관유물대여료	2						
건물대여료 (51-512)	2						
54 기타이자수입 및재산수입	350	340	340	340	340	0	0.0
기타재산이지수입 (54-546)	350	340	340	340	340	0	0.0
57 변상금및위약금	27						
위약금 (57-572)	27						
59 기타경상 이전수입	5,681	3,000	3,000	5,526	5,526	2,526	84.2
기타경상이전수입 (59-596)	5,681	3,000	3,000	5,526	5,526	2,526	84.2
64 입장료수입	3,787	4,000	4,000	8,000	5,000	1,000	25.0
입장료수입 (64-641)	3,787	4,000	4,000	8,000	5,000	1,000	25.0
69 잡수입	1						
기타잡수입 (69-691)	1						
85 정부예금회수	17,283	3,276	3,276	3,505	6,505	3,229	98.6
한국은행예치금화수 (85-851)	3,402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85-853)	13,880	3,276	3,276	3,505	6,505	3,229	98.6
91 전입금	140,643	158,339	158,339	152,611	152,611	△5, 72 8	△3.6
기금전입금 (91-913)	140,643	158,339	158,339	152,611	152,611	△5,728	△3.6
94 예수금	0	0	0	0	0	0	0.0
기금예수금 (94-943)	0	0	0	0	0	0	0.0

나. 2024년도 문화재보호기금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7 11	2022 71 11	20237	획액	2024	년도	 증 :	감
구 분	2022결산 -	당초	수정(A)	정부안	확정(B)	В-А	%
총 계	167,775	168,955	168,955	169,982	169,982	1,027	0.6
1136 민간보 존 역량강화	12,400	18,875	18,875	20,901	20,901	2,026	10.7
문화재보호 민긴 참여 활성화 (1136-301)	2,428	2,191	2,191	2,327	2,327	136	6.2
남북간 문화재 교류 협력(1136-302)	644	632	632	450	450	△182	△28.8
천안 남물 보호만 단체 지원 (1136-303)	1,088	1,238	1,238	1,013	1,013	△225	△18.2
일반문화재 조사 및 보존관리지원 (1136-304)	4,800	10,164	10,164	11,306	11,306	1,142	11.2
문화재 정책연구 된 운영지원(1136-307)	570	650	650	346	346	△304	△46.8
불교문화재연구 시설건립(1136-308	7 870	4,000	4,000	5,459	5,459	1,459	36.5
1138 문화유산 보존 및 교육	4,287	4,248	4,248	5,444	5,444	1,196	28.2
문화유신교육 활성회 (1138-302)	1,612	1,585	1,585	1,585	1,585	0	0.0
문화유산채널 구축· 운영(1138-303)	2,675	2,663	2,663	3,659	3,659	996	37.4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1138-311)				200	200	200	100.0
1236 문화유산연구	35,366	36,252	36,252	35,315	35,315	△ 937	△2.6
문화원구상운항원 (R&D)(1236-301)	111455	10,941	10,941	10,782	10,782	△159	△1.5
문화유산 조사연구 (R&D)(1236-302	1 74 911 1	25,311	25,311	24,533	24,533	△778	△3.1
2133 문화재 상사보호 및 <i>조</i> 사	20,882	22,277	22,277	18,962	18,962	△3,315	△14.9
문화재 돌봄사업 (2133-301)	19,266	20,651	20,651	18,962	18,962	△1,689	△8.2
폐사지 등 비지정 문화재조사 (2133-302)	1,616	1,626	1,626	0	0	△1,626	△100.0

л н	2022 7 3	2023겨]획액	2024	년도	증 7	' }-
구 분	2022결산 -	당초	수정(A)	정부안	확정(B)	В-А	%
2331 예방적 문화재 안전관리	40,141	43,070	43,070	42,348	42,348	△722	△1.7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2331-301)	25,286	26,606	26,606	26,012	26,012	△594	△2.2
궁능방재시스템 구축(2331-303)	14,855	16,464	16,464	16,336	16,336	△128	△0.8
2332 국내외 문화재 긴급보호	8,621	<i>7,7</i> 10	7,710	7,710	8,076	366	4.7
문화재 긴급보수 사업(2332-301)	4,121	3,710	3,710	3,710	4,076	366	9.9
국내외 문화재 긴급 매입 및 관리지원 (2332-302)	4,500	4,000	4,000	4,000	4,000	0	0.0
2334 매장문화재 조사지원	24,279	28,317	28,317	28,017	28,017	△300	△1.1
군부대 주둔자문화재 조사 보호 (2334-301)	347	385	385	385	385	0	0.0
소규모·긴급 매장 문화재 조사 지원(2334-302)	23,932	27,932	27,932	27,632	27,632	△300	△1.1
2376 기금운영비	114	120	120	116	116	△4	△3.3
기금운영비 (2376-201)	114	120	120	116	116	$\triangle 4$	△3.3
8990 기금간대	1,581	1,581	1,581	1,585	1,585	4	0.3
광타 예약사환 (8990-891)	1,581	1,581	1,581	1,585	1,585	4	0.3
8999 복권기금빈환금	2,500	3,000	3,000	4,000	4,000	1,000	33.3
복권기금전출금 (8999-840)	2,500	3,000	3,000	4,000	4,000	1,000	33.3
9701 여유자금운용	17,605	3,505	3,505	5,584	5,218	1,713	48.9
비통화금융기관예치 (9701-972)	17,605	3,505	3,505	5,584	5,218	1,713	48.9

다. 최근 3년 내 기획재정부의 기금운용평가결과 및 개선사항

지적 및 권고사항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비고
• 자산운용과 위험관리 이슈는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으며 위험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권고	용과 디스크판디 /성과평가 무눈 을 부리한 것을 요구 기금규모와	인력확대방안 등 개선방안 마련
 기금의 장기재정목표를 추계하는 방식을 통해 목표수익률이 설정될 필요가 있음. ●허용위험 한도설정의 근거 혹은 합리성이 다소 부족하며 시장 환경 등을 고려한 기간별 자산 Shortfall Risk의 다양한 적정성 분석이 이루어져야할 필요가 있음. ●벤치마크지수의 적정성 요건이 충분히 검토되어야할 필요가 있으며, 적극적인 투자전략을 취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중장기자산은 투자 가능자산 유형별로 구분하여 기준수익률을 정하여야함. 	• ALM을 통한 목표수익률 설정 방 안 도입 검토 및 중장기 자산 투 자가능 자산유형별로 기준수익률 규정을 위한 개선방향 추진	IPS 개정추진 및 자산유형별 기준수익률 개선방향 마련
• 자금운용계획과 실적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적정 현금성 자금 의 규모를 조정한 합리적인 근거가 다소 부족해 보임	• 적정 현금성 자금 규모를 조정하	IPS 개정사항 및 자금운용계획 수립 시 반영추진
• 주요이슈 및 경제지표 등 실시간 모 니터링을 통해 투자환경 변화를 분 석하고, 일일 위험관리 및 운용성과 보고를 통해 투자환경 변화에 대응 하고자 이를 모니터링할 전문인력에 도 한계가 있어 보임	● 내내외식으로 무사완성을 누기식 으로 검토하고, 해당 내용을 자산 운용에 반영한 근거자료로 제시하 느 바아으 거트	

라. 기획재정부의 기금존치평가결과 및 개선사항(가장 최근)

종합평가결과	기타권고사항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비고
존치	기금의 설치목적은 문화재가 지닌 공공성, 예산 및 타 기금과 차별성으로 인해 유효성이 인정됨. 개별사업들도 기금의 설치목적에 대체로 부합하여 존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기금운용성과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토대로 중기운영계획과 세부사업전략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일부 개별사업의 체계성이 낮아 사업성과 향상을 제약할수 있어 세부사업의 통합, 사업규모 및 내용 개선 등 사업의 체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금으로서의 차별화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중장기계획 및 사업전략을 재정립하고, 이에 기반한 사업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기존사업 중 중복되는 사업에 대한 조정을 통하여 통합·폐지 등을 실시 - 폐사지 등 비지정문화재조사 사업과 일반문화재조사 사업과 일반문화재조사 및 보존관리 사업 통합을통하여 폐사지 등 비지정문화재조사 사업 폐지 - 남북간 문화재교류협력사업의 추진 미흡으로 감축 및단계적 폐지 실시	
	2022년부터는 공자기금예수금 도 조달하지 않음에 따라 향 후 정부내부수입과 차입금 없 이 운영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자체수입 중 복권기 금전입금 의존율이 매우 높다 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문화 재관람료 인상 등 판매수입 증대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 음.	○ 문화재관람료 징수비율 확대(국가 10%→20%, 지자 체 10%→15%)를 위한 법안 상정 계류 중 ○ 문화재보호기금 기부금 도입을 위한 법안 상정계류	

마. 문화재보호기금 여유자금 운용현황

(단위: 백만원, %)

연 도	구 분	구 분	계획	실 적	수익률
	フレントコ	현금 등			
	직접투자	주식/채권 등			
2021	기기무기	확정금리형			
	간접투자	실적배당형	3,100	25,070	0.80
		계	3,100	25,070	0.80
	기기무기	현금 등			
	직접투자	주식/채권 등			
2022	간접투자	확정금리형			
		실적배당형	3,276	14,620	2.20
		계	3,276	14,620	2.20
	ココヒコ	현금 등			
	직접투자	주식/채권 등			
2023	기자 티 기	확정금리형			
	간접투자	실적배당형	3,505	14,525	3.87
		계	3,505	14,525	3.87

바. 문화재보호기금 재정상태표(대차대조표)

(단위 : 백만원)

- v	2022년말	2023년 및	발 계획	2024년말	중감
구 분	실적	당초	수정(A)	계획(B)	(B-A)
1. 유동자산	20,094	14,015	14,015	10,510	△3,505
○ 현금및현금성자산	17,887	13,880	13,880	9,375	△4,505
○ 단기투자증권	0				
○ 미수채권증권	1,066				
○ 기타유동자산	1,141	135	135	1,135	1,000
2. 고정자산	181,715	178,923	178,923	177,434	△1,489
(1) 투자자산	1,060				
○ 기타투자자산	1,060				
(2) 유형자산	178,556	176,824	176,824	175,335	△1,489
○ 토지	5,477	5,477	5,477	5,477	
○ 건물	150,471	148,966	148,966	147,477	△1,489
○ 구축물	1,820	1,820	1,820	1,820	
○ 기계장치	9,617	9,617	9,617	9,617	
○ 집기.비품.차량운반구	4,205	4,205	4,205	4,205	
○ 기타일반유형자산	6,692	6,465	6,465	6,465	
○ 건설중인유형자산	274	274	274	274	
(3) 무형자산	2,099	2,099	2,099	2,099	
○ 소프트웨어	2,099	2,099	2,099	2,099	
자산총계(가)	201,809	192,938	192,938	187,944	△4,994
1. 유동부채	314	284	284	284	
○ 기타유 동 부채	314	284	284	284	
2. 장기차입부채	91,600	91,600	91,600	91,600	
○ 정부내장기차입금	91,600	91,600	91,600	91,600	
부채합계(나)	91,914	91,884	91,884	91,884	
1. 자 본 금					
2. 자 본 잉여금	104,116	101,054	101,054	96,060	△4,994
3. 이익잉여금					
4. 자 본 조정					
자본합계(다)	109,895	101,054	101,054	96,060	△4,994
자본 및 부채 총계	201,809	192,938	192,938	187,944	△4,994

사. 문화재보호기금 재정운용표(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7 H	2022년말	2023년 '	말 계획	2024년말	중감 (B-A)	
구 분	실적	당초	수정(A)	계획(B)		
1. 사업수익						
2. 사업비용	145,975	160,749	160,749	159,063	△1,686	
3. 사업총이익(1-2)	△145,975	△160,749	△160,749	△159,063	1,686	
4. 사업관리비	114	120	120	116	△4	
5. 사업이익(3-4)	△146,089	△160,869	△160,869	△159,179	1,690	
6. 사업외 수익	9,849	7,340	7,340	10,866	3,526	
7. 사업외 비용						
8. 경상이익	△136,240	△153,529	△153,529	△148,313	5,216	
9. 특별이익	140,643	158,339	158,339	152,611	△5,728	
10. 특별손실						
11. 법인세차감전순 이익	4,403	4,810	4,810	7,664	2,854	
12. 법인세비용						
13. 당기순이익	4,403	4,810	4,810	7,664	2,854	

아. 문화재보호기금 순자산변동표(자본변동표)

(단위 : 백만원)

¬ н	000014 = 117	2023년	도 계획	00041년 레 전 (P)	중(△)감	
구 분	2022년도실적	당초	수정(A)	2024년계획(B)	(B-A)	
1. 기초순자산	93,435	109,896	109,896	101,054	△8,842	
2. 재정운영결과	(17,137)				0	
3. 조정항목	(676)	(8,842)	(8,842)	(4,994)	△3,848	
4. 기말순자산 (1-2+3)	109,896	101,054	101,054	96,060	△4,994	

_	480	_



- 482	_
-------	---

2. 수 입

기타재산이자수입
54 - 546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22년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7 8	결산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기타재산이자 수입	350	340	340	340	340	0	0

가. 법적 근거

- 국가재정법 제63조(기금자산운용의 원칙)제2항 및 자산운용지침
 - 기금관리주체는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자산운용지침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 문화재보호기금법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 2.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 3.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4. 제2항에 따른 납부금
 - 5. 기금의 운용수익금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나. 수입 개요

○ 여유자금 운용(연기금투자풀) 및 국고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등

다. 2024년 수입계획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3계획(수정)	340,000	○ 여유자금운용 수익, 국고보조금 이자수입 340,000천원
2024계획	340,000	○ 여유자금운용 수익, 국고보조금 이자수입 340,000천원

기타경상이전수입 59 - 596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년 2023년 계획		2024년		중감	
7 0	결산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기타경상이전 수입	5,681	3,000	3,000	5,526	5,526	2,526	84.2

가. 법적 근거

- 제31조 (보조금의 반환) 제1항, 제2항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 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나. 수입 개요

○ 국고보조금 정산 반환금 등

다. 2024년 수입 계획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3계획(수정)	3,000,000	ㅇ '23년도 수납예정 국고보조금 정산반환금 3,000,000천원				
2024계획	5,526,000	'24년도 수납예정 국고보조금 정산반환금 5,526,000천원* 최근 5년간 평균 징수결정액(6,141백만원)×90%				

입장료수입
64 - 641

(단위: 백만원, %)

2022년 목명		2023년 계획		2024년		중감	
7 8	결산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입장료수입	3,787	4,000	4,000	8,000	5,000	1,000	25.0

가. 법적 근거

○ 문화재보호기금법 제4조 제2항 : 「문화재보호법」 제44조 및 제75조에 따라 지정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10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나. 수입 개요

ㅇ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관람료 징수금액의 10%

다. 2024년 수입 계획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3계획(수정)	4,000,000	ㅇ국가·지방자치단체 문화재관람료 징수금액의 10%
2024계획	5,000,000	ㅇ국가·지방자치단체 문화재관람료 징수금액의 10%

여유자금회수(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5 - 853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2023년 계획		2024년		중감	
7 0	결산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비통화금용기	12 000	2 276	2 276	2 505	6 E0E	2 220	00.6
관예치금회수	13,880	3,276	3,276	3,505	6,505	3,229	98.6

* 여유자금 회수 중 한국은행 예치금 회수('22년 3,402백만원) 제외

가. 법적 근거

- 국가재정법 제63조(기금자산운용의 원칙)제2항 및 자산운용지침
 - 기금관리주체는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자산운용지침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 「문화재보호기금법시행령」제6조(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문화재청장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 1.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및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의 예치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 4. 그 밖의 금융상품의 매입

나. 수입 개요

○ '23년도 자산운용계획에 의거 운용중인 여유자금의 회수금액

다. 2024년 수입 계획 내역

ㅇ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3계획(수정)	3,276,000	전년도 여유자금 3,276백만원 회수
2024계획	6,505,000	전년도 여유자금 6,505백만원 희수

기금전입금(복권기금) 91 - 913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7 0	결산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기금전입금	140,643	158,339	158,339	152,611	152,611	△5,728	△3.6

가. 법적 근거

- 문화재보호기금법 제4조(기금의 조성) 제3호
 -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같은법시행령 제17조(복권수 익금의 배분 및 용도)
 -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 6. 「문화재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기금

나. 수입 개요

○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3조 제1항 제5의2에 의한 복권기금수익금의 5%

다. 2024년 수입 계획 내역

○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연 도	금 액	편성근거 및 산출내역
2023계획(수정)	158,339,000	ㅇ '23년 복권수익 전입금
2024계획	152,611,000	ㅇ '24년 복권수익 전입금

- 488 -	-
---------	---



-	490	-
---	-----	---

3. 지 출

사 업 명 (1) 문화재보호 민간참여 활성화(1136-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재	ㅁ 최 케 ᅯ	ㅁ칡케하요그	기그	060	064
명칭	보호기금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기급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프로그램 단위사업	
코드	1100	1136	301
명칭	문화재정책기반구축	민간보존역량강화	문화재보호 민간참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1 7	-11 人	ما ت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신규	계속	완됴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0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circ			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문화재보호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민간참여	소관부처	문화재활용국	김재일	장영기	김인성			
1 건건점역		문화유산협력팀	042-481-3141	042-481-3150	042-481-3149			
활성화	사업시행주체	문화재청	문화유산협력팀	장영기	042-481-3150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지킴이	소관부처	문화재활용국	김재일	장영기	김인성			
활동지원		문화유산협력팀	042-481-3141	042-481-3150	042-481-3149			
(내역사업)	사업시행주체	(사)한국문화재 지킴이단체연합회	사무국	황소정 과장	042-489-8850			
문화유산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민신탁	소관부처	문화재활용국	김재일	장영기	김인성			
법인지원		문화유산협력팀	042-481-3141	042-481-3150	042-481-3149			
(내역사업)	사업시행주체	(특)문화유산 국민신탁	기획운영부	김영경 부장	02-752-9298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2023년	! 계획	202	4년	증감	
7.0	결산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문화재보호							
민간참여	2,428	2,191	2,191	2,327	2,327	136	6.2
활성화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2	3.12월 '	 建)			
			기분하다			계호	草액		기취이	전년도	. – .			2024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 액	불용 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제 계획 현액	의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계획
○ 기능별 분류(합계)	2,444	2,444	2,428 <2,401>	-	16	2,191	2,191	2,191	2,176 [2,174]	2,191	2,176 [2,174]	-	-	2,327
· 문화재지킴이 운 영경비	209	209	193	-	16	200	200	200	185	200	185	-	-	202
· 문화재지킴이 활 동 지원	1,051	1,051	1,051 <1,025>	-	-	950	950	950	950 [950]	950	950 [950]	-	-	950
· 문화유산국민신 탁법인 지원	1,184	1,184	1,184 <1,183>	-	1	1,041	1,041	1,041	1,041 [1,039]	1,041	1,041 [1,039]	-	-	1,175
○ 비목별 분류(합계)	2,444	2,444	2,428 <2,401>	-	16	2,191	2,191	2,191	2,176 [2,174]	2,191	2,176 [2,174]	-	-	2,327
· 상용임금(110-03)	33	33	25	-	8	34	34	34	28	34	28	-	-	35
· 일반 수용 비(210-01)	51	51	51	-	-	49	49	49	48	49	48	_	-	52
· 공공 요금및제세(21002)	1	1	1	-	-	1	1	1	1	1	1	-	-	1
· 임차료(210-07)	4	4	1	-	3	2	2	2	1	2	1	-	-	2
· 복리후생비(210-12)	1	1	-	-	1	1	1	1	1	1	1	_	-	1
· 국내여비(220-01)	19	19	19	-	-	19	19	19	19	19	19	-	-	19
· 사업추진비(240-01)	9	9	9	-	-	9	9	9	9	9	9	_	-	7
· 일반연구비(260-01)	75	75	74	-	1	69	69	69	63	69	63	_	-	69
· 포상금(310-03)	10	10	8	-	2	10	10	10	10	10	10	_	-	10
· 민간경상보조(32001)	2,235	2,235	2,235 <2,208>	-	-	1,991	1,991	1,991	1,991 [1,989]	1,991	1,991 [1,989]	_	-	2,125
· 고용부담금(320-09)	6	6	5	-	1	6	6	6	3	6	3	_	-	6
○ 기능비목별 분류 (합계)	2,444	2,444	2,428 <2,401>	-	16	2,191	2,191	2,191	2,176 [2,174]	2,191	2,176 [2,174]	-	-	2,327

		2022					2023('23.12월말)							
			집행액			계획	백		집행액	전년도 제	이월액			2024
	계획액	계획	집00 ⁵⁴ [실집	이월	불용			계획	십생백 [실집		거 집행액	이월	불용	202 4 계획
	(수정)	현액	행액	액	액	당초	수정	현액	행액]	계획 현액	190 [실집 행액]	예상액	예상액	,,,,
· 문화재지킴이 운 영경비	209	209	193	-	16	200	200	200	185	200	185	-	-	202
- 상 용 임 금 (110-03)	33	33	25	-	8	34	34	34	28	34	28	-	-	35
- 일 반 수 용 비 (210-01)	51	51	51	-	-	49	49	49	48	49	48	-	-	52
-공공요금및제세 (210-02)	1	1	1	-	-	1	1	1	1	1	1	-	-	1
-임차료(210-07)	4	4	1	-	3	2	2	2	1	2	1	_	-	2
- 복리후생비 (210-12)	1	1	-	-	1	1	1	1	1	1	1	-	-	1
- 국 내 여 비 (220-01)	19	19	19	-	-	19	19	19	19	19	19	-	-	19
- 사업추진비 (240-01)	9	9	9	-	-	9	9	9	9	9	9	-	-	7
- 일 반 연 구 비 (260-01)	75	<i>7</i> 5	74	-	1	69	69	69	63	69	63	-	-	69
-포상금(310-03)	10	10	8	-	2	10	10	10	10	10	10	_	-	10
- 고 용 부 담 금 (320-09)	6	6	5	-	1	6	6	6	3	6	3	-	-	6
· 문화재지킴이 활 동 지원	1,051	1,051	1,051 <1,025>	-	-	950	950	950	950 [950]	950	950 [950]	_	-	950
- 민간경상보조 (320-01)	1,051	1,051	1,051 <1,025>	-	-	950	950	950	950 [950]	950	950 [950]	_	-	950
· 문화유산국민신 탁법인 지원	1,184	1,184	1,184 <1,183>	-	-	1,041	1,041	1,041	1,041 [1,039]	1,041	1,041 [1,039]	_	-	1,175
- 민간경상보조 (320-01)	1,184	1,184	1,184 <1,183>	-	-	1,041	1,041	1,041	1,041 [1,039]	1,041	1,041 [1,039]	-	-	1,17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문화재지킴이활동지원) 민간차원의 문화재 보호활동,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관리 도모하고자 민간단체의 문화재보호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것임
- (문화유산국민신탁법인지원) 문화유산국민신탁운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문화유산 국민신탁법인 운영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ㅇ 문화재보호법 제15조(문화재보호활동의 지원 등)
 - ㅇ 문화재보호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제5호(민간의 문화재 보호 활동 육성, 지원)
 - ㅇ 국가유산기본법 제7조(국가유산 보호 정책의 기본원칙)
 - ㅇ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16조(재정지원)
 - ㅇ 자원봉사활동기본법
 - ㅇ 청년기본법, 청소년기본법
 - 0 문화재지킴이 활동 조례(경남, 충북, 충남 등)
 - ㅇ 지역문화진흥법 제12조(협력활동지원)
 - 0 문화예술후원활성화법
 - ㅇ 문화재지킴이 활동 조례(경남, 충북, 충남 등 12개 지자체)
- ② 추진경위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ㅇ 2004. 11. 1문화재 1지킴이 운동 추진계획 수립
 - ㅇ 2005. 4. 1문화재 1지킴이 신규 위촉
 - ㅇ 2005. 12. 국무회의 혁신사례 보고업무
 - ㅇ 2006. 1. '명예관리인', '문화재행정모니터'를 1문화재 1지킴이로 통합 운영
 - ㅇ 2007. 4. 문화유산국민신탁법인 설립
 - 2018. 적극행정 우수사례(인사혁신처장상): 국외문화재보호 민간협력
 '문화재지킴이 날(6.22)' 선포
 - ㅇ 2019. 정부혁신 경진대회(행안부장관상) : 문화유산 디지털 복원 활용 민간협력
 - ㅇ 2021. 청년정책 유공(국무조정실장상)
 - ㅇ 2022. 문화유산국민신탁 설립 15주년
 - o 2023. 12. 라이엇게임즈 등 62개 기업 등과 협약 체결, 청소년 문화재지킴이 및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 위촉 운영 문화재지킴이 약6만5천여명 활동 중

□ 주요내용

-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05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2,308	3 2,559	2,444	2,191	2,32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특)문화유산국민신탁, 문화재지킴이단체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문화재지킴이 자원봉사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4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	보조	문화재지 킴이 민간단체	950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문화유산 국민신탁 법인 지원	보조	문화유산 국민신탁	1,175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사 업 명

(2) 남북간 문화재 교류협력 (1136-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무취케Hᇂ키ㄱ	ㅁ칡케칭	므칭 케칭 O 그		060	064
명칭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6	302		
명칭	문화재정책기반구축	민간보존역량강화	남북간 문화재 교류협력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u>, </u>		I			1012 101 5 2 1)
	신규 계속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l신뉴		완료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0		10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남북간	소관부처	문화재활용국	조동주	박가연	채혜련				
문화재		국제협력과	042-481-4730	042-481-4732	042-481-4736				
교류협력	사업시행주체	기관명	조직명	이 름	연락처				
	사업시행주체	(사)남북역사학	자협의회	김경순	02-725-7705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2023년	! 계획	202	4년	증감	
7.0	결산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남북간 문화재교류 협력	644	632	632	450	450	△182	△28.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	023(′23	.12월밀	t)			
			기원이			계혹	계획액		그 최 집행액		이월액 외			2024
	계획액 (수정)	계 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적 [실집 행액]	기획 현액	기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계획
○ 기능별 분류(합계)	847	847	644		203	632		632	631 [617]	632	631 [617]		1	450
· 남북공동문화유산 조사연구 및 보존	800	800	600 [579]		200	600		600	600 [586]	600	600 [586]		-	450
· 남북 문화재 교류 사업운영비	47	47	44		3	32		32	31 [31]	32	31 [31]		1	
○ 비목별 분류(합계)	847	847	644		203	632		632	631 [617]	632	631 [617]		1	450
· 일반 수용 비(210-01)	47	47	44		3	32		32	31 [31]	32	31 [31]		1	
· 민간경상보조(320-01)	800	800	600 [579]		200	600		600	600 [586]	600	600 [586]		-	45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847	847	644		203	632		632	631 [617]	632	631 [617]		1	450
· 남북공동문화유산 조사연구 및 보존						600		600	600 [586]	600	600 [586]		-	
-민간경상보조(320-01)	800	800	600 [579]		200	600		600	600 [586]	600	600 [586]		-	450
· 남북 문화재 교류 사업운영비						32		32	31 [31]	32	31 [31]		1	
-일반수용비(210-01)	47	47	44		3	32		32	31 [31]	32	31 [31]		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민족공동유산이자 세계유산인 북한 개성 만월대, 평양 고구려고분군 등에 대한 공동조사와 학술자료 축적을 통해 민족문화유산 보호 및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ㅇ「문화재보호법」제18조(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 협력), 동법 시행령 제9조
 - * 법 제18조(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 협력) ①국가는 남북한 간 문화재분이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청장은 남북한 간 문화재분이의 상호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북한의 문화재 관련 정책·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하여야 한다. ③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 협력사업과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관련 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시행령 제9조(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 협력) ①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남북한 간 문화재분야 교류 협력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북한 문화재 공동조사연구 및 수리 2 남북한 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정보와 기술의 교류 3. 문화재분야 관계 전문가 인적 교류 4. 국제연합교육과학 문화기구 세계유산에 북한 문화재 등재 지원 5. 그 밖에 남북한 문화재 교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남북한 간 문화재분야 교류 협력사업과 조사·연구 등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문화재 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이 끝난 후 2개월 안에 사업실적보고서를 문화 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ㅇ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제8조(민족동질성 회복)
 - * 법 제8조(민족동질성 회복) ①정부는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도록 노력한다. ②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의 교류협력을 확대·발전시켜 남한과 북한 간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민족의 전통문화 창달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남북교류·협력의 지원)
 - * 법 제24조(남북교류·협력의 지원)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에 따라 행하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문화재보호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 * 법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5. 민간의 문화재 보호활동 육성, 지원

② 추진경위

- '05.12.13~16 :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
 - 개성역사유적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 및 보존관리 사업 상호협력 합의
- '06.1.22 : 남측(남북역사학자협의회)과 북측(민족화해협의회)간 합의서 체결
 - 민족 공동의 역사문화유적 발굴 및 보존관리 사업 협력 추진 합의
 - 세계유산 등재 추진 일환으로 개성역사유적 1곳 시범적 공동 발굴 실시 합의
- ㅇ '06.3.18 : 남북 실무검토 회의 개최
 - (남측)문화재청, 통일부,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북측)문화보존지도국, 민족화해협의회
- '06.4.19~5.2 : 고구려고분군 공동 실태조사 실시
- ㅇ '06.4.24 :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남과 북 문화유적 보존 협력사업 추진 합의)
- '07.5.15~7.13 :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시굴조사 실시(1차)
- '07.5.30~6.9 : 고구려 벽화고분 2기 공동 보존사업(벽화내벽 탈락 보존조치 등)
- '07.9.3~11.9 :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긴급발굴조사 실시(2차)
- o '08.11.4~12.23 :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실시(3차)
- ㅇ '09.2.23~12.31 :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조사 출토유물 보존관리사업 실시
- ㅇ '10.1.26 : 개성 만월대 3개년(2010-2012년) 공동발굴조사 합의서 체결
- '10.3.23~5.18 :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조사 실시(4차)
- ㅇ '11.11.14~12.31 : 개성 만월대 유적 수해 피해복구 및 유적 보존 실시(5차)
- ㅇ '13. 6 : 개성 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 o '14.7.23~8.16 :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재개(6차)
 - 대형계단 2개소, 출입문지(門址) 확인, 대형배수로 4기, 출토유물 1,800여점
- ㅇ '15.3.24. : 남북 실무협의(고구려고분 발굴합의서 초안 제시)
- '15.6.1~11.30 :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7차/6개월)
 - 건물지 19동 및 금속활자, 용두 등 중요유물 포함 약 3,500여점 발굴
- ㅇ '15.10~11 : '만월대 출토유물 남북공동 특별전 및 학술회의' 남북 동시 개최
 - 서울(고궁박물관, 10.13.~11.6.), 개성(고려박물관, 10.15.~11.15.) 약 600여명 남측 인원 방북
- ㅇ '16~'17 :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교류사업 잠정 중단)
- ㅇ '17. 7 : 정부 100대 국정과제 채택

[국정과제 🖾]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 ◆ (교류협력 재개) 체육·종교 분야 우선적 교류 재개 추진, <u>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남북</u> 교류(겨레말 큰사전 편찬사업, 개성 만월대 발굴 등)도 재개
- '18. 1~: 2018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참가 계기로 남북간 상호 적극적 교류 시작
 - * 판문점 연락채널 복원(1.3), 남북 고위급회담 개최(1.9),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 및 북 고 위급 대표단 방남(2.9~3.18), 남북 예술단 평양 합동공연(4.3)
- ㅇ '18.3.19 : 북측에 만월대 공동발굴 재개를 위한 남북 실무협의 개최 제안
- '18.4.2.: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남측 예술단 평양 공연차 방북시 박춘남문화상에 개성 만월대 발굴 재개 제의
- ㅇ '18.4.27. : 남북정상회담 개최
 -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조사 사업' 판문점 선언 후속 이행과제에 포함
 - * 4.27 판문점 선언: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해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함"
- ㅇ '18.5.26. : 2치 남북정상회담 개최
- ㅇ '18.9.19. : 군사 분야 합의서 체결
- '18.9.27.~12.27. :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8차)

< '07~'18년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성과 >

- ❖ '07년 1차 조사(시굴조사) 시작으로 '18년까지 총 8차 발굴 추진
 - ·전체 조사면적 33,000㎡ 중 약19,770㎡(약 60%) 조사 완료
- ·전각 40여동, 대형계단 2개소 등 19,770㎡ 조사, 금속활자·고려청자 등 유물 17,900점 수습
- •투입예산: 총 80억 원(문화재보호기금 31억,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49억)
- ㅇ '19.3. : 문화재청 남북문화재교류사업단 구성 및 운영
- ㅇ '19.4.16. : 유엔 안보리,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조사 사업' 대북 제재 면제 결정
- '19.7.11. : DMZ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문화재청-경기도-강원도 업무협약(MOU) 체결
- '19.9.24.: 유엔총회 VIP 기조연설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 조성을 위한 실행방안으로 세계유산 남북 공동 등재 추진' 선언
- '19.11.8.~11.28. : 개성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성과전시회(덕수궁 선원전 터)
 * 총 관람인원 20,771명, 만월대 출토 금속활자 6점 최초공개
- ㅇ '19.11.15. : 개성만월대 남북공동조사성과 학술회의 개최('고려 도성 개경 궁성 만월대')
- '19.12.12.: DMZ세계유산 남북공동등재를 위한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DMZ.전쟁에서 평화로')
- ㅇ '20.1.14. : '한반도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원 입법 발의
- '20.5.~'21.12. : 세계유산등재를 위한 한반도 비무장지대(DMZ) 실태조사 실시

○ '21.2.~ : 개성만월대 디지털복원사업 실시(VR, AR제작)

○ '22.4.~'22.10.: 개성만월대 열두해의 발굴 순회전시 후원

○ '22.9.~'22.12.: DMZ실태조사 성과공개 국내순회전 개최('22년)

ㅇ '22.4.~'22.12.: 북한 소재 문화재 역사문화 기초조사 신규 사업 실시(1차, 800개소)

ㅇ '23.4.28. : 개성만월대 디지털복원 상반기 학술대회 개최

○ '23.5.~12. : 개성 만월대 열두 해의 발굴 전시 (전국 4개소 순회전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7년~계속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등 남북교류사업 추진 민간단체

- 사업 수혜자 : 전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3년 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남북간 문화재 교류협력	민간 경상 보조	남북 역사학자 협의회, 경기문화재단 등	600백만원	100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 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3) 천연기념물 보호관리단체 지원 (1136-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재	ㅁ칡케칭	ㅁ敖케ㅂ조그		060	064
명칭	보호기금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6	303
명칭	문화재정책기반구축	민간보존역량강화	천연기념물 보호관리단체 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예비타닷섯			사업소관 변경정보
신규	계속	완료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0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0			0			

사업명			구분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1 <1 =1 > 1 =	소관부처	문화재보존국	이상협	김도형	김세연
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과	042-481-4980	042-481-4992	042-481-4983
보호관리		(시)한국조류보호협회	사무총장	권혁두	02-797-4765
단체 지원	사업시행주체	(시)한국수달보호협회	-	김대산	033-441-9798
	 	(시)한국산양보호협회	사무국장	안재용	033-480-7261
		(८) राज्यस्था ।	대표	남상헌	0471-417-0980
천연기념물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동물치료	소관부처	문화재보존국	이상협	김도형	김세연
,		천연기념물과	042-481-4980	042-481-4992	042-481-4983
경비 지원	사업시행주체	(사)대한수의사회	경영지원국	김은수	031-702-8686
자연유산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소관부처	문화재보존국	이상협	이근영	김보미
민속행사		천연기념물과	042-481-4980	042-481-4986	042-481-4990
지원	사업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2023년	· 계획	2024년		증감	
778	결산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천연기념물 보호관단체 자원	1,088	1,238	1,238	1,013	1,013	△225	△18.2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	023('23	.12월밀				
						계호] 애			전년도				
	계획액	계획	집행액	. 141.9		/ -	1 7	계획	집행액	제		이월	불용	2024
	(수정)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현액	[실집 행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상핵		계획
○ 기능별 분류(합계)	1,088	1,088	1,088 [1,066]		- [22]	1,238	1,238	1,238	1,238 [1,158]	1,238	1,238 [1,158]			1,013
· 천연기념물 보호관 리단체 지원	723	723	723 [721]		- -	873	873	873	873 [801]	873	873 [801]			698
-천연기념물 조수류관리단체 지원	384	384	384 [384]		- -	384	384	384	384 [328]	384	384 [328]			334
-천연기념물 수달 관리단체 지원	194	194	194 [194]		- -	194	194	194	194 [191]	194	194 [191]			169
-천연기념물 산양 관리단체 지원	145	145	145 [143]		[2]	145	145	145	145 [132]	145	145 [132]			125
-천연기념물 남생이 관단체 <i>자</i> 원	-	-	-		_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70
·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경비 지원	230	230	[225]		[5]	230	230	230	230 [228]	230	230 [228]			193
·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	135	135	135 [120]		- [15]	135	135	135	135 [129]	135	135 [129]			122
○ 비목별 분류(합계)	1,088	1,088	1,088 [1,066]		- [22]	1,238	1,238	1,238	1,238 [1,158]	1,238	1,238 [1,158]			1,013
· 민간경상보조 (320-01)	953	953	953 [946]		- [7]	1,103	1,103	1,103	1,103 [1,029]	1,103	1,103 [1,029]			891
· 자치단체 경상보조 (330-01)	135	135	135 [120]		[15]	135	135	135	135 [129]	135	135 [129]			122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088	1,088	1,088 [1,066]		- [22]	1,238	1,238	1,238	1,238 [1,158]	1,238	1,238 [1,158]			1,013
· 천연기념물 보호 관리단체 지원	723	723	723 [721]		[2]	873	873	873	873 [801]	873	873 [801]			698
-민간경상보조 (320-01)	723	723	723 [721]		[2]	873	873	873	873 [801]	873	873 [801]			698
•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경비 지원	230	230	[225]		- [5]	230	230	230	230 [228]	230	230 [228]			193
-민간경상보조 (320-01)	230	230	[225]		- [5]	230	230	230	230 [228]	230	230 [228]			193
·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	135	135	135 [120]		- [15]	135	135	135	135 [129]	135	135 [129]			122
-자치단체 경상보조 (330-01)	135	135	135 [120]		- [15]	135	135	135	135 [129]	135	135 [129]			12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천연기념물 보호관리단체 지원)
 - · 동 내역사업은 최근 난개발과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천연기념물 동물 보호를 위해 체계적인 구조·치료·보호 및 홍보 등의 활동으로 민·관 네트워크를 활성화함으로써 국민들의 천연기념물 보호의식 확산에 기여하고자 천연기념물 관리단체를 지원하는 것임
-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경비 지원)
 - · 동 내역사업은 조난된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를 위하여 민간 전문인력(대한수의사회)과 연계한 전국적인 보호 네트워크 구축으로 체계적인 구조·치료 시스템 기반 조성 하고자 지원하는 것임
-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
 - · 동 내역사업은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자연유산(천연기념물, 명승) 보존 및 민속행사 재현으로 향토문화 구심점 역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ㅇ 천연기념물 관리단체 지원
 - 천연기념물 동물은 이동성이 강하여 소유자나 관리자가 불분명하므로 문화재보호법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에 의거 관리단체(3개 단체)를 지정하여 천연기념물의 전문적인 관리를 수행하게 하고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에 따라 경비를 지원함
- ㅇ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경비 지원
 - 문화재보호법 제38조(천연기념물 동물의 치료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동물치료 경비 지급 등)에 따라 대한수의사회를 대행지급법인으로 지정·고시하여 동물치료소의 치료경비를 지급토록 함
- ㅇ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
 -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에 의거 천연기념물 및 명승 관련 민속행사 재현에 필요한 개최 경비를 지원함

② 추진경위

- ㅇ 천연기념물 조수류 관리단체 지원
 - 사업시작년도 : 1998년
 - 추진배경 : 천연기념물(조수류) 관리단체 지정('96. 6. 11. 고시)
- ㅇ 천연기념물 수달 관리단체 지원
 - 사업시작년도 : 2005년
 - 추진배경 : 천연기념물(수달) 관리단체 지정('05. 6. 10. 고시)
- ㅇ 천연기념물 산양 관리단체 지원
 - 사업시작년도 : 2009년
 - 추진배경 : 천연기념물(산양) 관리단체 지정('09. 4. 10. 고시)
- ㅇ 천연기념물 남생이 관리단체 지원
 - 사업시작년도 : 2023년
 - 추진배경 : 천연기념물(남생이) 관리단체 지정('22. 6. 7. 고시)
- ㅇ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경비 지원
 - 사업시작년도 : 2005년
 - 추진배경
 -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경비 지원제도 근거 마련('00. 1.12.)
 -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경비 지급대행 법인 지정·고시('05.10.25.)
 -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경비 지급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법령 명시('08.12.14.)
- ㅇ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
 - 사업시작년도 : 2003년('12년부터 국고보조 자치단체 경상보조 시행)
 - 추진배경 : 지역주민의 문화재 애호의식 고취, 자발적인 문화재 보존·관리로 피해 발생 이후 사후조치 보다 사전 예방적 보존·관리 협력 도모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1998년 ~ 계속
 - · 천연기념물 조수류 관리단체 지원(1998년~계속)
 - · 천연기념물 수달 관리단체 지원(2005년~계속)
 - · 천연기념물 산양 관리단체 지원(2009년~계속)
 - · 천연기념물 남생이 관리단체 지원(2023년~계속)
 - ·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경비 지원(2005년~계속)
 - ·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2012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968	1,168	1,088	1,238	1,013

※ 2016년부터 일반예산 사업이었던 '천연기념물 보호(보조)'사업(천연기념물 동물치료경비 지원,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이 기금 사업인'천연기념물 보호관리단체 지원' 사업으로 통합되어 운영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100%), 자치단체경상보조(70%)

- 사업시행주체 : (사)한국조류보호협회, (사)한국수달보호협회, (사)한국산양보호협회,

(사)한국남생이보호협회, (사)대한수의사회, 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4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사)한국조류 보호협회	334	100	
천연기념물 보호관리	нσ	(사)한국수달 보호협회	169	100	
보오판디 단체 지원	보조	(사)한국산양 보호협회	125	100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한국남생이 보호협회	70	100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천연기념물 동물 치료경비 지원	보조	(사)대한수의 사회	193	100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	보조	지자체 보조	122	70	

(4) 일반문화재 조사 및 보존관리 지원(1136-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ㅁ칡케ㅂ츳키그	문화재청	ㅁ칭케ㅂ조그		060	064
명칭	문화재보호기금	군와세경	문화재보존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6	304
명칭	문화재정책기반구축	민간보존역량강화	일반문화재 조사 및 보존관리 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17	계소 이근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신규	l규 계속 완료	원됴 -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0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0				

사업명			구분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소관부처	문화재보존국	배민성	이연재	김범준
ㅂㄱㅁ칡ᆌ		유형문화재과	042-481-4910	042-481-4685	042-481-4687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재)불교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실	리송재 팀장	02-735-9945
	사업시행주체	(재)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불교중앙박물관	최학 행정관	02-2011-1670
		공모 및 경쟁입찰	미정	미정	미정
		실·국·과(팀)		사무관	주무관
대형불화	소관부처	문화재보존국	배민성	이연재	김범준
정밀조사		유형문화재과	042-481-4910	042-481-4685	042-481-4687
	사업시행주체	(시)성보문화재연구원		김정민 팀장	02-701-6830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소관부처	문화재보존국	배민성	신상민	여찬원
다량소장처 보존관리 지원		유형문화재과	042-481-4910	042-481-4920	042-481-4684
	사업시행주체	(재)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불교중앙박물관	장혜경 팀장	02-2011-1967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 사찰	소관부처	문화재보존국	배민성	신상민	여찬원
보존지원		유형문화재과	042-481-4910	042-481-4920	042-481-4684
	사업시행주체	(재)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문화부	유대호 팀장	02-3064-5111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소관부처	문화재보존국	배민성	신상민	여찬원
비기저무히게		유형문화재과	042-481-4910	042-481-4920	042-481-4684
비지정문화재 보존관리 강화	사업시행주체	(재)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불교중앙박물관	장혜경 팀장	02-2011-1967
		(재)간송미술문화재단	유물보존팀	이선형 팀장	02-744-7834
		(재)한국국학진흥원	국학자료팀	최은주 팀장	054-851-0765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2023년 계획		202	4년	중감	
70	결산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일반문화재 조사	4 200	10.164	10.164	11 206	11 206	1 1 1 1 2	11.2
및 보존관리 지원	4,800	10,164	10,164	11,306	11,306	1,142	11.2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2	3.12월밑	<u>ł)</u>			
	계획액	계획	집행액			계호	빅액	계획	집행액	전년도 제		이월	불용	2024
	/사력적 (수정)	현액	[실집행 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현액	[실집행 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 액	에서에 에서	물용 예상액	/4124 L
○ 가능별 분류(합계)	4,800	4,800				10,164	10,164	10,164		10,164				11,306
			[4,671]	[129]					[7,131]		[7,002]			
· 불교문화재 일제	833	833	833			833	833	833	833	833	833			2,333
조사			[833]						[833]		[833]			
· 대형불화 정밀	473	473	473			473	473	473	473	473	473			473
조사			[473]						[473]		[473]			
· 다량소장처 보	1,494	1,494	1,494			1,758	1,758	1,758	1,758	1,758	1,758			1,758
존관리 지원			[1,494]						[1,758]		[1,758]			
· 문화재 사찰						5,400	5,400	5,400	5,400	5,400	5,400			5,192
보존지원									[2,238]		[2,238]	[3,162]		
· 비지정문화재	2,000	2,000	2,000			1,700	1,700	1,700		1,700	1,700			1,550
보존관리 강화	,	ŕ	[1,871]	[129]		,	,	,	[1,829]	,	[1,700]			,
○ 바목별 분류(합계)	4,800	4,800				10,164	10,164	10,164		10,164				11,306
1,122,1(1,1)	,	,	[4,671]	[129]		,	,	,	[7,131]	•	[7,002]			,
· 민간경상보조	4,800	4,800				10,164	10,164	10,164		10,164				11,006
(320-01)		,	[4,671]	[129]			,		[7,131]	,	[7,002]			
· 민간위탁사업 비(320-02)														3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동 내역사업은 향후 학술연구 기초자료와 보존관리 대책 수립을 위해 전국 사찰 소장 불교문화재를 대상으로 원형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임
- (대형불화 정밀조사) 동 내역사업은 재난·재해 등 훼손에 대비하고 원형복원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대형불화를 대상으로 인문학적·보존과학적 조사를 지원하는 것임
- (다량소장처 보존관리 지원) 동 내역사업은 문화재 다량소장처의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관리자(소장자) 대상 문화재 관리교육, 거점별 다량소장처 중심 학예 인력 지원 배치, 항온항습기 가동 및 정밀조사·보존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경상경비 지원하는 것임
- (문화재 사찰 보존지원) 동 내역사업은 고비용의 전기요금으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 에 처해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유 사찰에 일반용 전기요금과 교육용 전기요금의 차 액만큼 지원하는 것임
- (비지정문화재 보존관리 강화) 동 내역사업은 문화재 다량소장처 대상 지정 및 비지 정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다량소장처의 비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선제적 예방처리와 표준유물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소장유물을 등록 관리 할 수 있도록 하여 도난 및 절도 등을 선제적으로 예방 관리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10조(문화재 기초조사), 제15조(문화재보호활동의 지원 등),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제51조(보조금)
- 「문화재보호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제5호(민간의 문화재 보호 활동 육성 지원)

② 추진경위

- 2010. 2. 비지정문화재 기초조사 근거를 「문화재 보호법」에 반영
- 조계종 요구('12.9월) : 사찰 등의 문화재다량소장처 예방적 관리 지원 필요
- 사찰·문화재 보존에 최선('12.12.5 현대불교 등) 보도자료
- 문화재청 조계종 정책협의회 개최('12.9월, '13.1월 등)
 - * 보존센터 건립 등 불교계 숙원사업 추진 요청

- 문화재 다량소장처 특별점검 결과('14) 보존관리를 위한 지원 추진 * 유물 보존 적정환경 조성을 위한 항온항습시설 가동비용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02년 ~ 계속

- 사업규모 : 불교문화재 일제조사(불단, 고승진영, 복장유물, 폐사지, 금석문), 대형불화 정밀조사(6~7점/년), 문화재 다량소장처 보존관리지원(61개소), 문화재 사찰 보존지원(319개소), 비지정문화재 보존처리(연 14~15점)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2,740	3,540	4,800	10,164	11,306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재)불교문화재연구소, (사)성보문화재연구원, (재)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재)간송미술문화재단, (재)한국국학진흥원 등 민간 전문기관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관련기관 연구자, 문화재 소장자 · 관리자

-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국비 100%, 문화재보호법 및 문화재보호기금법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 피 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4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민간 경상 보조	(재)불교문화 재연구소	833	100%	
불교문화재	민간 경상 보조	(재)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400	100%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10조(문화재 기초조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일제조사	민간 경상 보조	미정 (공모)	800	100%	이행정위임위탁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제 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민간 위탁	미정 (경쟁입찰)	300	100%	
대형불화 정밀조사	민간 경상 보조	(사)성보문화 재연구원	473	100%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10조(문화재 기초조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다량소장처 보존관리 지원	민간 경상 보조	(재)대한불교 조계종 유지재단	1,758	100%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10조(문화재 기초조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문화재 사찰 보존지원	민간 경상 보조	(재)대한불교 조계종 유지재단	5,192	100%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10조(문화재 기초조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민간 경상 보조	(재)대한불교 조계종 유지재단	550	100%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10조(문화재 기초조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비지정문화재 보존관리 강화	민간 경상 보조	(재)간송미술 문화재단	500	100%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10조(문화재 기초조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민간 경상 보조	(재)한국국학 진흥원	500	100%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10조(문화재 기초조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5) 문화재 정책연구기관 운영지원 (1136-3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므칭게 H 중기그	문화재청	ㅁ칡케저케그		060	064
명칭	문화재보호기금	군와세성	문화재정책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6	307
명칭	문화재정책기반구축	민간보존역량강화	문화재 정책연구기관
53	군와세정색기반下국	[인간보근학당정와 	운영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217	-1) A	완료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신규	계 속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0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0		100	

사업명	구분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	소관부처	문화재정책국	김종승	홍영주	최민규				
정책연구기관		정책총괄과	042-481-4810	042-481-3115	042-481-3116				
운영지원	사업시행주체	국가유산 정책연구원	연구지원팀	강미정	02-3156-1107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2023년	! 계획	202	4년	증감	
7.0	결산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문화재							
정책연구기관	570	650	650	346	346	△304	△46.8
운영지원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	023(′23	.12월밀	t)			
			-1-22			계획	및 액		-1 = 11 + 11	전년도	. – .			2024
	계획액	계획	집행액	. 161.17	22 6 .23	·			집행액			이월	불용	2024
	(수정)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1	당초	수정	현액	[실집 행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상액	계획
○ 기능별 분류(합계)	570	570	570			650	650	650	650	650	650			346
70221(11)			[570]						[650]		[650]			2 10
· 문화재 정책연구	570	570	570			650	650	650	650	650	650			346
기관 운영지원			[570]						[650]		[650]			
○ 비목별 분류(합계)	570	570	570			650	650	650	650	650	650			346
	370		[570]				000	000	[650]	000	[650]			510
· 민간경상보조	570	570	570			650	50 650	650	650	650	650			346
(320-01)	370	370	[570]						[650]	030	[650]			34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570	570	570			650	650	650	650	650	650			346
	370	370	[570]			030	030	030	[650]	030	[650]			346
· 문화재 정책연구	570	570	570			650	6 5 0	6 5 0	650	650	650			346
기관 운영지원	570	370	[570]			650	650	650	[650]	630	[650]			346
-민간경상보조	570	570 570	570			(50	6E0 6E0	650	650	650	650			346
(320-01)	370	370	[570]			650	650	030	[650]	030	[650]			34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문화재 정책연구기관 운영지원) 문화재보호기금법 제5조에 따라 문화재 보존·관리 및 안전정책을 연구하는 정책연구기관에 대한 운영경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문화재보호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문화재 보존·관리 및 안전 정책을 연구하는 단체의 운영 경비 지원
- ② 추진경위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2012년 국정감사 시 설립 필요성 지적 / 문방위 조해진 의원('12년)
- 핵심문화재 관리체계 개선 계획의 수립·보고 지시 / VIP('13.4.22.)
- 문화재정책연구원 설립 등 관리체계 개선 BH 보고('13.10.14.)
- 문화재정책 전문연구기관 설립방안 연구용역(한국행정학회, '13.12월)
- 문화재보호기금법 개정('16.2.3.)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19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350	600	570	650	346

- 기타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국가유산정책연구원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4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문화재		국가유산			
정책연구기관	보조	정책연구원	346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운영지원		0711			

(6) 불교문화재 연구시설 건립 (1136-30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재	문화재청	므청케버즈그		060	064
명칭	보호기금	- 군와세경 -	문화재보존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프로그램 단위사업		
코드	1100	1136	308	
명칭	문화재정책기반구축	민간보존역량강화	불교문화재 연구시설 건립	

	□ 사업 성격											
,17	加人	완료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신규	계속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0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0		7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불교문화재	소관부처	문화재보존국	배민성	이아람	문지혜					
	연구시설		유형문화재과	042-481-4910	042-481-4911	, , _					
	건립	기어기체즈케	(재)대한불교		司 人曰	02 720 7004					
		사업시행주체	조계종유지재단		최승택	02-730-7884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ㅁᆎ	2022년	2023년	! 계획	202	4년	증감	
목명	결산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불교문화재	2 970	4 000	4 000	E 4E0	E 4E0	1 450	26.5
연구시설 건립	2,870	4,000	4,000	5,459	5,459	1,459	36.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	023(′23	.12월밀	<u>t)</u>			
						계획액 .		전년도 이월액						
	계획액	계획	집행액			계탁곡		계획	집행액	제외		이월	불용	2024
	/11억억 (수정)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현액	[실집 행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상액	1	계획	
○ 기능별 분류(합계)	기능별 분류(합계) 2,870 2,870 4,	4,000	4,000	4,000	4,000	4,000				5,459				
- 10 E E M(B 11)		_, =, =	[2,870]			_,,,,,,			[3,580]		[3,580]	[420]		-, -, -,
·불교문화재	2,870	2,870	2,870	_	_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5,459
연구시설 건립			[2,870]						[3,580]		[3,580]	[420]		-,,
○ 비목별 분류(합계)	2,870	2,870	2,870	-	_	4,000	4,000	4,000	4,000	4,000				5,459
			[2,870]				-/		[3,580]		[3,580]	[420]		- /
· 민간자본보조	2,870	2,870	2,870	_	_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5,459
(320-07)		_,0.0	[2,870]				1,000	1,000	[3,580]		[3,580]	[42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870	2,870	2,870	_	_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5,459
○ / 10 17 E E II(B/II)	2,070	2,010	[2,870]			1,000	1,000	1,000	[3,580]		[3,580]	[420]		0,100
·불교문화재	2.870	2.870	2,87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5,459
연구시설 건립	2,870	2,870 2,870	[2,870]	_	_	- 4,000	4,000	4,000	[3,580]		[3,580]	[420]		3,439
-민간자본보조	2,870	2,870	2,870	_	_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5,459
(320-07)	2,070	2,070	[2,870]	1	_	4,000	1,000	±, 000	[3,580]		[3,580]	[420]		5,43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사찰 소장 불교문화재의 진단·보존·복원 등 전문 연구시설 건립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치단체 등의 책무)
 - 문화재보호법 제51조 제1항(보조금)
 - 문화재보호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보조금의 대상 사업)

② 추진경위

- ('16.12.)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 및 운영계획 수립·시행

- ('17.11.) 건축허가 신청 및 보류*(조계종→하남시청)
- *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종교용지 허용용도 해석 차이
- ('18. 4.~10.) 대체부지(21개소) 및 기존부지 대상 적정성 검토
- ('18.11.) 기존 부지로 사업부지 확정(조계종)
- ('19. 6.) 하남시 건축심의 원안 통과
- ('19.12) 사업대상 부지 변경* 신청(조계종→문화재청)
- * (당초) 하남 위례시 → (변경) 화성시 용주사 템플스테이부지
- * 종교시설 건립 재원조달 곤란 및 시설물 운영문제
- ('19.12.) 사업계획변경 신청관련 보완요청(문화재청→조계종)
- ('20. 4.) 용주사 템플스테이에 대한 처분 곤란(문체부→조계종)
- ('20. 9.) 사업대상 부지 변경* 신청(조계종→문화재청)
- * (당초) 하남 위례시 → (변경) 경기도 양평군
- ('20. 9.) 사업계획변경 조건부 승인(문화재청→조계종)
- ('21. 4.~7.) 실시설계 및 건축인허가·설계적정성 검토 완료
- ('21.10.) 건축, 전기, 통신, 소방공사 계약체결(조달청)
- ('22. 1.) 감리업체 선정 및 계약, 착공허가 승인(양평군청)
- ('22. 4.) 건립공사 착공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7년 ~ 2024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4,872	-	2,870	4,000	5,459

- 기타 : 연면적 6,769㎡(1동 지하 2층, 지상 2층) / 수장고, X-ray실, 대형불화처리실 등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민간자본보조

- 사업시행주체 : (재)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및 관계 전문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 · 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4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불교문화재 연구시설 건립	보조	(재)대한 불교조계종 유지재단	5,459	7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

(7) 문화유산교육 활성화 (1138-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재보호기금	ㅁ칡ᆌᅯ	ㅁ칡케하Ω그		060	064
명칭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8	302		
명칭	문화재정책기반구축	문화유산 보존 및 교육	문화유산교육 활성화		

		н о	, (0	0 - 1 1 - 2	2 1011 11	0 11 11 , ,	1012 1011 0 - 11
>1	刀刚人	训人	완료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신	11	계속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0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				,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50, 100	

사업명			구분		
맞춤형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무취이지	소관부처	문화재활용국	김재일	최연규	김윤경
문화유산		문화유산협력팀	042-481-141	042-481-3142	042-481-3145
교육	사어 시해즈눼	한국문화재재단	문화교육팀	박용순	02-3011-1701
활성화	/ [1] 시 영구 세	인격단와세계인	正对此刊品	401	02-3011-1701
기어 다 된 이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지역문화유	소관부처	문회재활용국	김재일	최연규	김윤경
산교육		문화유산협력팀	042-481-141	042-481-3142	042-481-3145
활성화	사업시행주체	지자체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2023년	! 계획	202	4년	증감	
	결산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문화유산교육 활성화	1,612	1,585	1,585	1,585	1,585	-	-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	023(′23	.12월밀	<u>t)</u>			
						계획	빌앤			전년도				2024
	계획액	계획	집행액	المامار .	200	- "	' '	계획	집행액	제	•	이월	불용	2024
	(수정)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현액	[실집 행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상액	- 1	계획
○ 기능별 분류(합계)	1,640	1,640	1,612 [1,478]		28	1,585	1,585	1,585	1,579 [1,553]	1,585	1,579 [1,553]		6	1,585
·문화유산교육 진흥 기반 조성	106	106			2	101	101	101	95	101	95		6	254
·맞춤형 문화유산 교육 활성화	555	555	555 [555]		-	505	505	505	505 [505]	505	505 [505]		-	505
·지역문화유산교육 활성화	979	979	953 [9 2 3]		26	979	979	979	979 [953]	979	979 [953]		-	826
○ 비목별 분류(합계)	1,640	1,640	1,612 [1,478]		28	1,585	1,585	1,585	1,579 [1,553]	1,585	1,579 [1,553]		6	1,585
· 일반수용비(210-01)	62	57	57		-	57	57	57	51	57	51		6	57
· 임차료(201-07)	1	6	6		-	1	1	1	1	1	1		-	6
· 국내여비(220-01)	10	10	9		1	10	10	10	10	10	10		-	10
· 사업추진비(240-01)	3	3	3		-	3	3	3	3	3	3		-	3
· 일반연구비(260-01)	30	30	29		1	30	30	30	30	30	30		-	178
· 민간경상보조(320-01)	555	555	555 [555]		-	505	505	505	505 [505]	505	505 [505]		-	505
· 자리는체당상보조(33001)	979	979	953 [9 2 3]		26	979	979	979	979 [953]	979	979 [953]		-	826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640	1,640	1,612		28	1,585	1,585	1,585	1,579 [1,553]	1,585	1,579 [1,553]		6	1,585
·문화유산교육 진흥 기반 조성	106	106	104		2	101	101	101	95	101	95		6	57
- 일 반 수 용 비 (210-01)	62	57	57		-	57	57	57	51	57	51		6	57
- 임차료(201-07)	1	6	6		-	1	1	1	1	1	1		-	6
- 국 내 여 비 (220-01)	10	10	9		1	10	10	10	10	10	10		-	10
- 사업추진비	3	3	3		-	3	3	3	3	3	3		-	3

			2022					2	023(′23	.12월밑	<u>l</u>)			
	_11-21-11	11 -=21	집행액			계획	単액	_11 -21	집행액	전년도 제	<u>이월</u> 액 외	.1.01	77.	2024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실집 행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계획
(240-01)														
- 일 반 연 구 비 (260-01)	30	30	29		1	30	30	30	30	30	30		-	178
· 맞춤형 문화유산 교육 활성화	555	555	555 [555]		-	505	505	505	505 [505]	505	505 [505]		-	505
- 민간경상보조 (320-01)	555	555	555 [555]		_	505	505	505	505 [505]	505	505		-	505
 지역문화유산교육 활성화 	979	979	953 [923]		26	979	979	979	979 [953]	979	979		-	826
-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979	979	953		26	979	979	979	979 [953]	979	979		-	82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전 연령대의 국민들이 우리 국가유산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국가유산 보존, 관리, 역사관 확립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콘텐츠를 제공 및 정책을 지원하는 사업.
- (내역1. 문화유산교육 진흥 기반 조성)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 및 제도적 지원을 위한 사업설명회, 프로그램 북 제작·보급 등 직접운영
- (내역2. 맞춤형 문화유산교육 활성화) 민간에서 청소년, 교원 등 다양한 교육대상 맞춤형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문화유산교육 확산에 기여
- (내역3. 지역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지자체 및 민간에서 지역민을 대상으로 지역의 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지역정체성 강화 및 문화재 애호의식 함양에 기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문화재보호법 제22조의2~7
- 문화재보호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호(문화유산 의 보존 및 교육지원)

② 추진경위

- 추진배경

- · 동북공정, 군함도 등 주변국과의 역사갈등이 사회적 이슈로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연령대의 국민들이 우리 역사·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역사·문화 정체성을 수립하도록 문화유산교육 지원 확대 필요
- · 교육(자유학년제 전면시행('23년), 고교학점제 도임('25년))·사회 환경(교육환경의 디지털 전환, 저출산·고령화 등) 변화에 대응하여 지원 사업(홍보, 교육콘텐츠 제작 등) 다각화 필요
- · 문화유산교육 필요성 설문조사(2021년) 관련 **전연령대의 시민 571명* 중 496명** (86.8%)이 '문화재교육은 매우 필요하다/필요하다' 긍정 응답
- * 문화재교육 참여경험이 있는 사람 295명(51.3%), 참여경험이 없는 사람 280명(48.7%)
- 사업시작연도 : 2006년 ~ 계속

- 추진경과

- · 국정과제 선정(67-5-4 문화유산교육 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교육 프로그램 확대)
- · 「문화유산교육 발전 5개년 계획」 수립('17.10.)
- · 지자체연계 문화유산교육 시행('18~계속 / 누적 240여개 프로그램 지원)
- · 「문화재보호법」개정('19.11.26.) 및 하위법령 개정시행('20.5.27.)
- · 문화재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20.5.22.), 주요 법정사무인 인증제, 실태조사 등 연구용역 추진('19~'20.)
- 문화재교육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연구('20.2~6월)
- 인증제 시범운영('21년~ / 누적 25개 프로그램 인증), 실태조사 실시('21년, '22년)
- <미래유망 신직업 발굴 및 활성화 방안>에 '문화유산교육사' 신직업군 선정('21년, 기재부)
- 「문화유산교육 진흥 기본계획(2022~2026)」 수립('22.5.11.)
- 문화재교육지원센터 시범지정('22.6.30. / 2개소)
- 「문화재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세칙(고시)」제정('22.7.20.)

□ 주요내용

-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6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1,739	1,929	1,640	1,585	1,585

- 기타: 연평균 17개 시·도 40여개 지역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경상보조(100%), 민간위탁, 자치단체경상보조(50%)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재단, 지자체, 민간단체
- 사업 수혜자 : 전연령대의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4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민간문화유산	보조	한국문화	EOE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교육사업	上公	재재단	505	100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지역문화유산	보조	지자체	926	FO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교육사업	보조	보조	826	50	같은법 시행령 제4조

(8) 문화유산채널 구축·운영(1138-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ㅁ칡케ㅂ츳키그	ㅁ칡케ᅯ	므칭케하요그		060	064
명칭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8	303
명칭	문화재정책기반구축	문화유산 보존 및 교육	문화유산채널 구축·운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예비타닷섯			사업소관 변경정보
20分	계속	완됴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0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0					100	

사업명			구분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유산채널	소관부처	문화재활용국	김재일	임은경	최효선
구축·운영		문화유산협력팀	042-481-3141	042-481-3142	042-481-3143
	사업시행주체	문화재청	문화유산협력팀	임은경	042-481-3142
문화유산채널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운영	소관부처	문화재활용국	김재일	임은경	최효선
		문화유산협력팀	042-481-3141	042-481-3142	042-481-3143
(내역사업)	사업시행주체	문화재청	문화유산협력팀	임은경	042-481-3142
문화유산채널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시스템 구축 운영	소관부처	문화재활용국	김재일	임은경	최효선
		문화유산협력팀	042-481-3141	042-481-3142	042-481-3143
(내역사업)	사업시행주체	한국문화재재단	미디어콘텐츠팀	김한태 팀장	02-2270-1261
글로벌 문화유산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型之称以出	소관부처	문화재활용국	김재일	임은경	최효선
,,,,		문화유산협력팀	042-481-3141	042-481-3142	042-481-3143
(내역사업)	사업시행주체	한국문화재재단	미디어콘텐츠팀	김한태 팀장	02-2270-1261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2023년	! 계획	202	4년	증감	
7.0	결산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문화유산채널	2,675	2,663	2,663	3,659	3,659	996	37.4
구축. 운영	2,073	2,003	2,003	3,039	3,039	990	37.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	023("23	.12월밀	t)			
						계획	길 액		-3-22.22	전년도				2024
	계획액	계획	집행액	المالمال	HOAI	- "	' '	계획	집행액	제	•	이월	불용	2024 계획
	(수정)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현액	[실집 행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상액	예상액	계획
○ 기능별 분류(합계)	2,676	2,676	2,675		1	2,663	2,663	2,663	2,662	2,663	2,662			3,659
• 문화유산채널 운영	63	63	62		1	62	62	62	61	62	61			63
·문화유산채널 시 스템 구축·운영	2,613	2,613	2,613			2,227	2,227	2,227	2,227	2,227	2,227			2,227
· 글로벌 문화유산콘 텐츠 제작 및 보급	-	-	-			374	374	374	374	374	374			1,369
○ 비목별 분류(합계)	2,676	2,676	2,675		1	2,663	2,663	2,663	2,662	2,663	2,662			3,659
·상용임금(110-03)	27	27	27			28	28	28	28	28	28			29
·일반수용비(210-01)	20	20	19		1	18	18	18	17	18	17			18
·복리후생비(210-12)	1	1	1			1	1	1	1	1	1			1
·국내여비(220-01)	5	5	5			5	5	5	5	5	5			5
·사업추진비(240-01)	5	5	5			5	5	5	5	5	5			5
·민간위탁사업비 (320-02)	2,613	2,613	2,613			2,601	2,601	2,601	2,601	2,601	2,601			3,596
·고용부담금(320-09)	5	5	5			5	5	5	5	5	5			5
○ 기능비목별 분류 (합계)	2,676	2,676	2,675		1	2,663	2,663	2,663	2,662	2,663	2,662			3,659
· 문화유산채널 운영	63	63	62			62	62	62	61	62	61			63
-상용임금(110-03)	27	27	27			28	28	28	28	28	28			2
-일반수용비(210-01)	20	20	19		1	18	18	18	17	18	17			18
-복리후생비(210-12)	1	1	1			1	1	1	1	1	1			1
-국내여비(220-01)	5	5	5			5	5	5	5	5	5			5
-사업추진비(240-01)	5	5	5			5	5	5	5	5	5			5

		2022 2023('23.12월말)									t)				
	계획액	계획	집행액			계후	릭액	계획	집행액	전년도 제		V) 6)	불용	2024	
	계획약 (수정)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세력 현액	[실집 행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 예상액	예상액	계획	
-고용부담금(320-09)	5	5	5			5	5	5	5	5	5			5	
· 문화유산채널 시스템 구축 · 운영	2,613	2,613	2,613			2,227	2,227	2,227	2,227	2,227	2,227			2,227	
-민간위탁사업비 (320-02)	2,613	2,613	2,613			2,227	2,227	2,227	2,227	2,227	2,227			2,227	
· 글로벌 문화유산 콘텐츠 제작 및 보급	-	-	-			374	374	374	374	374	374			1,369	
-민간위탁사업비 (320-02)	-	-	-			374	374	374	374	374	374			1,36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문화유산채널 운영)
 - 동 내역사업은 문화유산채널 콘텐츠 기획·제작 및 모니터링 등 사업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경상경비임

- (문화유산채널 시스템 구축·운영)

- 동 내역사업은 문화유산 애호의식 함양을 위해 다양한 문화재 가치와 아름다움을 영상·사진·이야기 등 콘텐츠로 제작하여 문화유산채널 웹사이트 및 국내외 30여 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보급하고 있는 사업임
-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유산채널 콘텐츠를 통해 문화유산을 접하고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유산콘텐츠 대중화와 미래 가치를 창출하고자 지원함

- (글로벌 문화유산콘텐츠 제작 및 보급)

• 동 내역사업은 우리 문화유산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고 그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 해외 시청자들을 겨냥한 고품질 글로벌 콘텐츠(K-Heritage 콘텐츠)를 제작하여 글로벌 OTT, 해외 방송사, 해외 보급기관 등에 보급하는 사업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9조(한국문화재재단의 설치) 제3항 제2호 문화재 관련 교육, 출판, 학술조사·연구 및 콘텐츠 개발·활용
- 문화재보호법 제9조(한국문화재재단의 설치) 제3항 제8호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문화재보호법 제15조(문화재보호활동의 지원 등)
- 문화재보호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기금의 용도) 제3호(문화유산의 보존 및 교육 지원)

② 추진경위

- 2009년 헤리티지채널 설립 타당성 및 수요예측 연구용역
- 2009년 10월 헤리티지채널 시범사이트 구축 및 콘텐츠 제작
- 2010년 8월 헤리티지채널 웹사이트 오픈
- 2012년 헤리티지채널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3년 업무협약 체결(구글 등 14개 기관)로 콘텐츠 대국민 서비스 확대
- 2014년 업무수행 체계개선(단기용역 방식→한국문화재재단)
- 2014년 6월 명칭변경(헤리티지채널→문화유산채널)
- 2015년 UCI 기반 동영상분할시스템 개발
- 2022년 문화유산채널 홈페이지(k-heritage.tv) 개편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10~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2,273	2,674	2,676	2,663	3,659

- 기타: 2022년말 기준 콘텐츠 제작·보급 현황('10년~누적) 동영상 2,949편, 이야기 3,619편, 사진 6,595편 제작 / 총 23,346편 보급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재단(100%)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9)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1138-31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ㅁ칡게 ㅂ 중기 그	ㅁ쉬 레리	ㅁ칡 캐 저 케 그		060	064
명칭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구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8	311		
명칭	문화재정책기반구축	문화유산 보존 및 교육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17	-11 人	완료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신규	계속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bigcirc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				,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100	

사업명	구분								
국가무형유산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전수교육관	소관부처	문화재정책국	이재필	박선영	윤지현				
		무형문화재과	042-481-4960	042-481-4964	048-481-4965				
건립	사업시행주체	무형문화재과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2023년	<u></u> 계획	202	4년	증감	
7 0	결산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	-	-	200	200	200	순증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23.12월말)														
	계획액 (수정)	- 기 중	집행액 계획 [실집 현액 행액]			계획	획액	-1) -1)	계획 연액 연액 행액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ما دا	불용	2024
		현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 예상액	예상액	계획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_	-	_	-	_	_	200
·국가무형유산 전 수교육관 건립	-	-	-	-	-	-	-	-	-	-	-	_	-	200
○ 비목별 분류(합계)	_	-	_	-	-	-	_	_	-	_	_	_	_	200
· 일반연구비 (260-01)	-	-	-	-	-	-	-	-	-	-	-	_	-	20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_	-	_	_	-	-	_	_	-	_	-	_	_	200
·국가무형유산 전 수교육관 기본 계획 수립	-	-	-	-	-	-	-	-	-	-	-	-	-	200
-일반연구비 (260-01)	_	_	_	_	_	-	_	_	-	_	-	_	_	2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세부사업명)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 (내역사업명)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기본계획 수립
- · 전수교육관 건립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필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전승지원 등)
- 「국유재산법」제13조(기부채납), 제16조(국유재산의 관리전환)
- 「문화재보호기금 시행령」제4조(기금의 용도) 제3호(문화유산의 보존 및 교육 지원)
- ② 추진경위
 - 1962년 문화재보호법에 무형문화재 보호 근거 마련
- 1963년 문화재보호법 1차 개정(국가무형문화재 공개시 보조금 지원조항 신설)
- 1965년 전승활동 지원(구호비, 치료비 등)
- 1968년 60세이상 보유자에게 생계보조금지급 시작
- 1974년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시작
- 2015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2016.3.28. 시행)
- 2022년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을 위한 개인 토지 기부채납 완료

□ 주요내용

-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사업기간 : 2024~2028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	-	-	-	200

- 기타

- · 건물(연면적 8,246m²), 지하2층, 지상4층
- · 국가무형문화재 155종목, 전승자 7,000여명
- ·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1개소 건립
-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사업 수혜자 :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전승자, 일반국민

(10) 문화재연구원운영지원(R&D) (1236-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재	문화재청	국립문화재		060	064
명칭	보호기금	- 문와 세성	연구원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6	301		
명칭	문화유산교육연구	문화유산연구	문화재연구원운영지원(R&D)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지규 계속 와류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21 7	-11 人	\\ \\ \\ \\ \\ \\ \\ \\ \\ \\ \\ \\ \\	11.1-100		0 1/11 0	1 1 2 2 0 0 2
신규	계속 	완료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0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				,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0						

사업명	구분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연구원	소관부처	국립문화재연구원	박형빈	김행덕	박민경						
운영지원(R&D)		연구기획과	042-860-9130	042-860-9131	042-860-9132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2023년	<u></u> 계획	202	4년	중감		
	결산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문화재연구원 운영지원(R&D)	111/155	10,941	10,941	10,782	10,782	△159	△1.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3("23.12월말)														
			3-0-0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2024		
	계획액	계획액	계획액	계획	집행액	المالمال	HAM	- " , ,		계획	집행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2024 계획
	(수정)	저시 뭐에 니	[실집 행액]	이월액	물공색	당초	수정	현액	[실집 행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0,768	10,804	10,455	-	349	10,941	10,941	10,941	10,583	10,941	10,583	-	358	10,782		
· 문화재연구원본원운영	4,462	4,367	4,283		84	2,275	2,275	2,560	2,491	2,560	2,491		69	2,404		
· 천연기념물센터운영	1,281	1,358	1,327		31	474	474	532	532	532	532		-	474		
· 문화유산연구종합자료관운영	3,093	2,984	2,856		128	2,560	2,560	2,562	2,507	2,562	2,507		55	2,577		
· 지방문화재연구소운영	1,332	1,536	1,440		96	1,010	1,010	925	916	925	916		9	981		
· 출토유물분석연구센터운영	600	559	549		10								-			
· 문화재연구원 지원인력 운영						3,102	3,102	2,982	2,795	2,982	2,795		187	3,196		
· 문화재연구원 시설개선						1,520	1,520	1,380	1,342	1,380	1,342		38	1,150		
○ 비목별 분류(합계)	10,768	10,804	10,455	-	349	10,941	10,941	10,941	10,583	10,941	10,583	-	358	10,782		
· 상용임금(110-03)	2,476	2,476	2,328	-	148	2,561	2,561	2,441	2,293	2,441	2,293		148	2,637		
· 일용임금(110-04)	15	15	15	-	-	15	15	135	122	135	122		13	134		
· 일반수용비(210-01)	1,183	1,182	1,180	-	2	1,405	1,405	1,219	1,203	1,219	1,203		16	1,303		
· 공공요금및제세(210-02)	1,019	1,020	1,016	-	4	922	922	1,264	1,262	1,264	1,262		2	1,353		
· 피복비(210-03)	7	7	7	-	-	7	7	7	7	7	7		-	7		
· 특근매식비(210-05)	7	7	6	-	1	7	7	7	7	7	7		-	7		
· 일숙직비(210-06)	24	24	22	-	2	24	24	22	22	22	22		-	24		
· 임차료(210-07)	88	88	82	-	6	118	118	106	104	106	104		2	217		
· 유류비(210-08)	6	6	3	-	3	6	6	6	6	6	6		-	7		
· 시설장비유지비(21009)	1,113	1,112	1,109	-	3	955	955	815	810	815	810		5	890		
· 재료비(210-11)	4	4	4	-	-								-	-		
· 복리후생비(210-12)	34	34	34	-	-	43	43	43	40	43	40		3	43		
· 일반용역비(210-14)	531	531	509	-	22	619	619	661	620	661	620		41	570		
· 관리용역비(210-15)	167	167	165	-	2	473	473	429	413	429	413		16	425		
· 국내여비(220-01)	126	125	124	-	1	127	127	128	127	128	127		1	133		

			2022					2	023('23	.12월밀	t)			
						~i) *	ti vii			전년도				
	계획액	계획	집행액			계혹	44	계획	집행액	제		이월	불용	2024
	/144 (수정)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현액	[실집 행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상액		계획
· 국외업무여비(220-02)	34	34	31	-	3	34	34	34	34	34	34		-	34
· 사업추진비(240-01)	5	5	5	-	_	5	5	5	5	5	5		-	5
· 관사업무추진비(24002)	5	5	5	-	-	5	5	5	5	5	5		-	5
· 일반연구비(260-01)	1,622	1,622	1,503	-	119	1,871	1,871	1,871	1,829	1,871	1,829		42	1,680
· 포상금(310-03)	20	20	20	-	_	20	20	20	20	20	20		-	20
· 고용부담금(320-09)	477	478	456	-	22	498	498	498	462	498	462		36	521
· 실시설계비(420-02)	-	-	-	-	_	38	38	38	38	38	38		-	-
· 공사비(420-03)	646	645	641	-	4	521	521	514	494	514	494		20	260
· 감리비(420-04)	4	4	-	-	4	-	-	7	-	7	-		7	-
· 시설부대비(420-05)	2	2	1	-	1	6	6	6	-	6	-		6	-
· 자산취득비(430-01)	1,153	1,191	1,189	-	2	661	661	660	660	660	660		-	507
○ 가능비목별 분류(합계)	10,768	10,804	10,455	-	349	10,941	10,941	10,941	10,583	10,941	10,583	-	358	10,782
· 문화재연구원 본원 운영	4,496	4,367	4,283	-	84	2,275	2,275	2,560	2,491	2,560	2,491	-	69	2,404
- 상용임금(110-03)	1,132	1,105	1,063		42									-
- 일용임금(110-04)	15	15	15			15	15	135	122	135	122		13	134
- 일반 수용 비(210-01)	578	622	621		1	626	626	528	514	528	514		14	585
- 공공요금및제세(21002)	369	384	383		1	488	488	787	787	787	787		-	611
- 특근매식비(210-05)	3	3	2		1	3	3	4	4	4	4		-	3
- 일숙직비(210-06)	24	24	22		2	24	24	22	22	22	22		-	24
- 임차료(210-07)	46	46	45		1	45	45	43	43	43	43		-	94
- 시설장비유지비(21009)	908	828	825		3									-
- 복리후생비(210-12)	15	15	15											-
- 일반용역비(210-14)	458	372	352		20	502	502	548	510	548	510		38	434
- 관리용역비(210-15)	47	47	45		2	58	58	57	57	57	57		-	88
- 국내여비(220-01)	54	53	52		1	54	54	56	56	56	56		-	57
- 국외업무여비(220:02)	34	34	31		3	34	34	34	34	34	34		-	34
- 사업추진비(240-01)	3	3	3			3	3	3	3	3	3		-	3
- 관서업무추진비(24002)	5	5	5			5	5	5	5	5	5		-	5
- 일반연구비(260-01)	200	221	221			200	200	120	116	120	116		4	200
- 포상금(310-03)	20	20	20			20	20	20	20	20	20		-	20
- 고용부담금(320-09)	218	202	202											5
- 실시설계비(420-02)														-
- 공사비(420-03)	296	307	306		1									-
- 감리비(420-04)	4	4			4									-
- 시설부대비(420-05)	2	2	1		1									-
- 자산취득비(430-01)	65	55	54		1	198	198	198	198	198	198		-	107
· 천연기념물센터운영	1,281	1,358		-	31	474	474	532	532	532	532	-	-	474
- 상용임금(110-03)	491	518	495		23									-

			2022					2	023('23	.12월밀	h)			
							9 .9			전년도				
	~기중]스기	-1) 2)	집행액			계후	[백	નો ક ો	집행액	제		A) 6)	но	2024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실집 행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계획
- 일반 수용 비(210-01)	173	173	173			171	171	165	165	165	165		-	171
- 공공요금및제세(21002)	149	194	193		1	155	155	219	219	219	219		-	167
- 피복비(210-03)	7	7	7			7	7	7	7	7	7		-	7
- 특근매식비(210-05)	4	4	4			4	4	3	3	3	3		-	3
- 임차료(210-07)	12	12	9		3	12	12	13	13	13	13		-	12
- 유류비(210-08)	6	6	3		3	6	6	6	6	6	6		-	6
- 시설장비유지비(21009)	32	32	32											-
- 재료비(210-11)	4	4	4											-
- 복리후생비(210-12)	7	7	7											-
- 일반용역비(210-14)	53	44	44			53	53	53	53	53	53		-	53
- 관리용역비(210-15)	22	22	22			27	27	27	27	27	27		_	27
- 국내여비(220-01)	5	5	5			7	7	7	7	7	7		-	7
- 사업추진비(240-01)	2	2	2			2	2	2	2	2	2		-	2
- 일반연구비(260-01)														-
- 고용부담금(320-09)	95	112	111		1									-
- 실시설계비(420-02)														-
- 공사비(420-03)	190	189	189											-
- 감리비(420-04)														-
- 시설부대비(420-05)														-
- 자산취득비(430-01)	29	27	27			30	30	30	30	30	30		-	19
· स्ट्रोभेटिन खोगडेस्टि	3,059	2,984	2,856	-	128	2,560	2,560	2,562	2,507	2,562	2,507	-	55	2,577
- 상용임금(110-03)	255	255	247		8									-
- 일반수용비(210-01)	61	61	61			190	190	167	166	167	166		1	190
- 공공요금및제세(21002)	155	127	126		1	62	62	49	49	49	49		-	323
- 특근매식비(210-05)													-	1
- 임차료(210-07)													_	53
- 시설장비유지비(21009)	147	117	117											-
- 복리후생비(210-12)	3	3	3											-
- 관리용역비(210-15)	98	98	98			377	377	336	320	336	320		16	275
- 국내여비(220-01)													-	5
- 관사업무추진비(24002)													-	1
- 일반연구비(260-01)	1,422	1,401	1,282		119	1,671	1,671	1,751	1,713	1,751	1,713		38	1,480
- 고용부담금(320-09)	49	49	49											_
- 공사비(420-03)	10	9	9											_
- 자산취득비(430-01)	859	864	864			260	260	259	259	259	259		_	249
· 지방문화재연구소운영	1,332	1,536	1,440	-	96	1,010	1,010	925	916	925	916	-	9	981
- 상용임금(110-03)	546	546	477		69									_
- 일반수용비(210-01)	317	311	311			418	418	359	358	359	358		1	357

			2022					2	023(*23	.12월밀	<u>ł</u>)			
						계획	പ് വി				이월액			
	계획액	계획	집행액				4 74	계획	집행액	제		이월	불용	2024
	/#국 (수정)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현액	[실집 행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상액		계획
- 공공요금및제세(21002)	145	141	140		1	217	217	209	207	209	207		2	251
- 임차료(210-07)	25	25	23		2	61	61	50	48	50	48		2	57
- 유류비(210-08)													-	1
- 시설장비유지비(21009)	19	135	135											-
- 복리후생비(210-12)	8	8	8											-
- 일반용역비(210-14)		103	101		2	64	64	60	57	60	57		3	84
- 관리용역비(210-15)						11	11	9	9	9	9		-	35
- 국내여비(220-01)	67	67	67			66	66	65	64	65	64		1	64
- 일반연구비(260-01)														-
- 고용부담금(320-09)	105	105	84		21									-
- 공사비(420-03)														-
- 자산취득비(430-01)	100	95	94		1	173	173	173	173	173	173		-	132
·출토유물분석연구센터운영	600	559	549	-	10	-	-	_	-	-	_	-	-	-
- 상용임금(110-03)	52	52	46		6									-
- 일반수용비(210-01)	54	15	14		1									-
- 공공요금및제세(21002)	201	174	174											-
- 임차료(210-07)	5	5	5											-
- 시설장비유지비(21009)	7													-
- 복리후생비(210-12)	1	1	1											-
- 일반용역비(210-14)	20	12	12											-
- 고 용 부담금(320-09)	10	10	10											-
- 공사비(420-03)	150	140	137		3									-
- 자산취득비(430-01)	100	150	150											-
·문화재구원 자완력 운영	-	-	-	-	-	3,102	3,102	2,982	2,795	2,982	2,795	-	187	3,196
- 상용임금(110-03)						2,561	2,561	2,441	2,293	2,441	2,293		148	2,637
- 복리후생비(210-12)						43	43	43	40	43	40		3	43
- 고 용 부담금(320-09)						498	498	498	462	498	462		36	516
· 문화재연구원 시설개선	-	-	_	-	-	1,520	1,520	1,380	1,342	1,380	1,342	-	38	1,150
- 시설장비유지비(21009)						955	955	815	810	815	810		5	890
- 실시설계비(420-02)						38	38	38	38	38	38		-	-
- 공사비(420-03)						521	521	514	494	514	494		20	260
- 감리비(420-04)						-	-	7	-	7	-		7	-
- 시설부대비(420-05)						6	6	6	-	6	_		6	-

1) 사업목적·내용

- (문화재연구원 본원 운영) 문화재연구원 본원 연구 환경 기반구축 및 고품질 성과관리를 위한 책임운영기관 운영 지원
- (천연기념물센터 운영) 자연유산 전시·교육을 위한 천연기념물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 (문화유산연구종합자료관 운영) 문화유산 연구정보 공개 등을 통한 연구정보 대국민 서비스 및 문화재연구원 정보시스템 운영
- (지방문화재연구소 운영) 지방문화재연구소 연구 환경 기반구축 및 시설관리
- (문화재연구원 지원인력 운영) 문화재연구원 행정지원인력 운영
- (문화재연구원 시설개선) 문화재연구원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유지보수 및 시설 개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정부조직법」 제2조
- 「문화재보호법」 제1조(목적) 문화재 보존 및 민족문화 계승 등
- 「문화재보호법」 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 「문화재보호법」 제6조의2(문화재의 연구개발)
- 「문화재보호법」 제11조(문화재 정보화의 촉진)
- 「문화재보호법」 제43조(기록의 작성·보존)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 국가정보화시행계획 / 연구원정보화전략계획
- 문화유산연구 종합정보관(아카이브) 운영 중장기 발전방안

② 추진경위

- '04. 12. :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대전으로 이전됨에 따라 자체관리
- '06. 04. : 국립문화재연구소 자연문화재연구실 신설
- '07. 01. : 책임운영기관 지정
- '07. 04. : 천연기념물센터 전시관 개관
- '08.~'09. : 나주출토유물보관센터 건립 지원
- '11.~ : 천연기념물센터, 본소 운영, 정보화 사업 통합

- '11.~'14. : 중원출토유물보관센터 건립 지원

- '13.~'15. : 부여·나주(증축)출토유물보관센터 건립 지원

- '16.~'17. : 가야출토유물보관센터 건립 지원

- '17. 01. :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신설

- '17.~'20. : 출토유물분석연구센터 건립 지원

- '19. 07. :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신설

- '21. 06. : 출토유물분석연구센터 건립

- '22. 02. : 국립문화재연구원으로 기관 명칭 변경

- '22. 12. : 강화연구소 → 국립서울문화재연구소로 명칭 변경 디지털문화재연구정보팀 신설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04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7,924	9,418	10,768	10,941	10,782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원)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문화유산관계자 및 전문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 · 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11) 문화유산조사연구(R&D) (1236-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재	ㅁ칡케칭	국립문화재		060	064
명칭	보호기금	문화재청	연구원		문화및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200	1236	302
명칭	문화유산교육연구	문화유산연구	문화유산조사연구(R&D)

□ 사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표시)											
,1 7	-11 A	<u>ما</u> ت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신규	계속	완됴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				,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circ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유산조사	소관부처	국립문화재연구원	박형빈	김행덕	박민경								
연구(R&D)		연구기획과	042-860-9130	042-860-9131	042-860-9132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2023	<u></u> 계획	202	4년	증감	
7.0	결산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문화유산조사 연구(R&D)	24,911	25,311	25,311	24,533	24,533	△778	△3.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2022					2	023("23	3.12월밀	<u>t)</u>			
						계획	빌앤			전년도	. – .			
	계획액	계획	집행액	ചിറിപ്പി	ലറത	/ 11 -	7 1	계획	집행액	제		이월	불용	2024 계획
	(수정)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현액	[실집 행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상액	예상액	,,,,
○ 기능별 분류(합계)	25,471	25,471	24,911	0	560	25,311	25,311	25,311	24,679	25,311	24,679	-	632	24,533
• 고대문화유산연구	14,680	14,807	14,477	0	330	13,492	13,492	13,446	13,061	13,446	13,061		385	7,887
· 미술문화유산연구	1,038	1062	1027	0	35	942	942	983	957	983	957		26	606
·건축문화유산연구	742	767	746	0	21	729	729	725	696	725	696		29	248
·문화재안전방재 기술개발연구	1,085	930	914	0	16	860	860	822	817	822	817		5	445
·자연유산 보존복원연구	1,311	1,284	1,248	0	36	1,327	1,327	1,330	1,318	1,330	1,318		12	813
·문화유산교류협력	170	126	124	0	2	172	172	193	193	193	193		-	195
·문화유산 과학적 보존처리	1,487	1,493	1,474	0	19	1,633	1,633	1,678	1,661	1,678	1,661		17	798
·문화유산 및 중요출토 자료 과학적분석	0	0	0	0	0	1533	1533	1,544	1,465	1,544	1,465		79	767
· 透驅 磐 및 野 附 ଫ	1765	1727	1716	0	11	1,600	1,600	1,544	1,522	1,544	1,522		22	804
·국가유산보존활용연구개발	812	832	809	0	23	1555	1555	1,555	1,507	1,555	1,507		48	809
·조사연구장비운용	843	853	851	0	2	1468	1468	1,491	1,482	1,491	1,482		9	1,468
·원유산조연구원력원													-	9,693
· रिकारि एतेले व्यक्तियां	1,538	1,590	1,525	0	65	0	0						_	-
○ 비목별 분류(합계)	25,471	25,471	24,911	0	560	25,311	25,311	25,311	24,679	25,311	24,679	0	632	24,533
· 상용임금(110-03)	7,552	7,552	7,128	0	424	7,778	7,777	7,777	7,378	7,777	7,378		399	8,000
· 특근매식비(210-05)	31	31	19	0	12	31	31	30	25	30	25		5	29
• 유류비(210-08)	12	12	9	0	3	0	0						-	
· 복리후생비(210-12)	100	101	101	0	0	125	125	125	125	125	125		-	126
· 시험연구비(210-13)	11,351	11,350	11,325	0	25	10,272	10,273	10,243	10,114	10,243	10,114		129	9,727
· 일반용역비(210-14)	99	99	95	0	4	1020	1020	1,050	1,024	1,050	1,024		26	1,120
· 관리용역비(210-15)	0	0	0	0	0	14	14	14	14	14	14		-	24
·사업추진비(240-01)	83	83	83	0	0	83	83	84	84	84	84		-	80
· 일반연구비(260-01)	2,255	2,255	2,194	0	61	2,205	2,205	2,205	2,152	2,205	2,152		53	1,649
· 고용부담금(320-09)	1,460	1,460	1,441	0	19	1,512	1,512	1,512	1,512	1,512	1,512		-	1,567

			2022					2	023(′23	.12월밑	<u>t)</u>			
						계획	5) O)		·		이월액			
	계획액	계획	집행액			7414	7 7	계획	집행액	제	외	이월	불용	2024
	/개국국 (수정)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현액	[실집 행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상액	예상액	계획
· 실시설계비(420-02)	0	0	0	0	0	15	15	15	15	15	15		-	15
• 공사비(420-03)	390	390	381	0	9	170	170	170	161	170	161		9	132
· 자산취득비(430-01)	2,138	2,138	2,135	0	3	2,086	2,086	2,086	2,075	2,086	2,075		11	2,064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5,471	25,471	24,911	0	560	25,311	25,311	25,311	24,679	25,311	24,679	0	632	24,533
· 고대문화유산연구	14,680	14,807	14,477	0	330	13,492	13,492	13,446	13,061	13,446	13,061	0	385	7,887
- 상용임금(110-03)	4,582	4,492	4,234		258	4,627	4,627	4,625	4,381	4,625	4,381		244	-
- 특근매식비(210-05)	20	20	12		8	19	19	19	16	19	16		3	19
- 복리후생비(210-12)	61	61	61			76	76	76	76	76	76		-	-
- 시험연구비(210-13)	7,023	7,282	7,276		6	6,414	6,414	6,330	6,216	6,330	6,216		114	6,031
- 일반용역비(210-14)						662	662	727	710	727	710		17	662
- 사업추진비(240-01)	54	54	54			55	55	53	53	53	53		-	53
- 일반연구비(260-01)	1,150	1,150	1,118		32	430	430	430	426	430	426		4	870
- 고용부담금(320-09)	885	894	875		19	899	899	893	893	893	893		-	-
- 공사비(420-03)	330	330	324		6	110	110	110	109	110	109		1	52
- 자산취득비(430-01)	575	524	523		1	200	200	183	181	183	181		2	200
·미술문화유산연구	1,038	1,062	1,027	0	35	942	942	983	957	983	957	0	26	606
- 상용임금(110-03)	203	230	195		35	237	237	233	211	233	211		22	-
- 특근매식비(210-05)	1	1	1			1	1	1	1	1	1		_	1
- 복리후생비(210-12)	3	3	3			4	4	4	4	4	4		_	-
- 시험연구비(210-13)	766	767	767			570	570	619	619	619	619		_	354
- 일반용역비(210-14)						60	60	60	56	60	56		4	220
- 관리용역비(210-15)						14	14	14	14	14	14		_	24
- 사업추진비(240-01)	4	4	4			4	4	4	4	4	4		_	3
- 고용부담금(320-09)	39	40	40			46	46	46	46	46	46		_	-
- 자산취득비(430-01)	22	17	17			6	6	2	2	2	2		_	4
• 건축문화유산연구	742	767	746	0	21	729	729	725	696	725	696	0	29	248
- 상용임금(110-03)	168	168	155		13	173	173	173	148	173	148		25	_
- 특근매식비(210-05)	1	1	1		0	3	3	3	2	3	2		1	1
- 복리후생비(210-12)	2	2	2			3	3	3	3	3	3		_	_
- 시험연구비(210-13)	216	241	241			186	186	182	182	182	182		_	167
- 일반 용 역비(210-14)	99	99	95		4	70		70	68				2	70
- 사업추진비(240-01)	3	3	3			3	3	3	3	3	3		_	3
- 일반연구비(260-01)	200	200			4	250			249				1	-
- 고 용 부담금(320-09)	33	33	33			34	34	34	34	34			_	_
- 자산취득비(430-01)	20	20	20			7	7	7	7	7	7		_	7
· 문화재안전방재 기술개발연구	1,085	930	914	0	16	860			817	822	817	0	5	445
- 상용임금(110-03)	261	261	246		15	269		272	271	272	271		1	-
- 특근매식비(210-05)	2	2				3			2					2

			2022					2	023('23	.12월밑	<u>ł)</u>			
						-ചി 🕏	ല്പ				<i>,</i> 이월액			
	계획액	계획	집행액			계후	박액	계획	집행액	제		이월	불용	2024
	/144 (수정)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현액	[실집 행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상액		계획
- 복리후생비(210-12)	4	4	4			4	4	4	4	4	4		-	-
- 시험연구비(210-13)	551	426	425		1	449	450	399	396	399	396		3	360
- 일반용역비(210-14)						40	40	40	39	40	39		1	40
- 사업추진비(240-01)	3	3	3			3	3	3	3	3	3		_	3
- 고용부담금(320-09)	50	50	50			52	52	57	57	57	57		-	-
- 자산취득비(430-01)	214	184	184			40	40	45	45	45	45		-	40
· 자연유산 보존복원연구	1,311	1,284	1,248	0	36	1,327	1,327	1,330	1,318	1,330	1,318	0	12	813
- 상용임금(110-03)	412	412	394		18	425	425	425	416	425	416		9	_
- 유류비(210-08)	6	6	6			-	_						-	-
- 복리후생비(210-12)	5	5	5			6	6	6	6	6	6		_	-
- 시험연구비(210-13)	766	721	704		17	722	722	722	720	722	720		2	721
- 일반용역비(210-14)						50	50	50	49	50	49		1	50
- 사업추진비(240-01)	4	4	4			3	3	4	4	4	4		_	4
- 일반연구비(260-01)		40	39		1	-	_						_	-
- 고용부담금(320-09)	80	58	58			83	83	83	83	83	83		_	_
- 자산취득비(430-01)	38	38	38			38	38	40	40	40	40		_	38
·문화유산교류협력	170	126	124	0	2	172	172	193	193	193	193	0	0	195
- 상용임금(110-03)	65	66	65		1	67	67	68	68	68	68		_	_
- 특근매식비(210-05)	1	1	1										_	_
- 복리후생비(210-12)	1	1	1			1	1	1	1	1	1		_	_
- 시험연구비(210-13)	89	44	43		1	90	90	107	107	107	107		_	194
- 사업추진비(240-01)	1	1	1			1	1	3	3	3	3		_	1
- 고용부담금(320-09)	13	13	13			13	13	14	14	14	14		_	_
·문화유산 과학적 보존처리	1,487	1,493	1,474	0	19	1,633	1,633	1,678	1,661	1,678	1,661	0	17	798
- 상용임금(110-03)	669	669	655		14	689	689	690	682	690			8	_
- 특근매식비(210-05)	3	3	1		2	1	1	1	1	1	1		_	1
- 복리후생비(210-12)	9	9	9			11	11	11	11	11	11		_	_
- 시험연구비(210-13)	563	563	563			587	587	623	622	623			1	586
- 일반용역비(210-14)						58	58	64	64	64			_	58
- 사업추진비(240-01)	4	4	4			3	3	3	3	3			_	3
- 고용부담금(320-09)	129	135	135			134	134		136	136			_	_
- 실시설계비(420-02)						15	15	15	15	15			_	15
- 공사비(420-03)	60	60	57		3	60	60		52	60			8	80
- 자산취득비(430-01)	50	50	50			75	75	75	75	75				55
·BM23332244	0	0	0	0	0	1,533	1,533	1,544	1465	1,544		_	79	767
- 상용임금(110-03)			J			633	633	633	565	633			68	-
- 특근매식비(210-05)						2	2	2	1	2	1		1	2
- 복리후생비(210-12)						10	10							_

			2022					2	023('23	.12월밀	<u>ł)</u>			
						-11 4	e an			전년도				
	계획액	계획	집행액			계획	박액	계획	집행액	제	외	이월	불용	2024
	/144 (수정)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현액	[<u>실</u> 집 행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상액	계획	
- 시험연구비(210-13)						472	472	524	515	524	515		9	533
- 일반용역비(210-14)						80	80	39	38	39	38		1	20
- 사업추진비(240-01)						3	3	3	3	3	3		-	2
- 고용부담금(320-09)						123	123	123	123	123	123		-	-
- 자산취득비(430-01)						210	210	210	210	210	210		-	210
·惩呢 磐 및 野性 연	1,765	1,727	1,716	0	11	1,600	1,600	1,544	1,522	1,544	1,522	0	22	804
- 상용임금(110-03)	639	639	633		6	658	658	658	636	658	636		22	-
- 특근매식비(210-05)	2	2	1		1	2	2	2	2	2	2		-	2
- 유류비(210-08)	6	6	3		3								_	-
- 복리후생비(210-12)	8	8	8			10	10	10	10	10	10		-	-
- 시험연구비(210-13)	835	759	759			757	757	712	712	712	712		-	757
- 사업추진비(240-01)	3	3	3			3	3	3	3	3	3		-	3
- 일반연구비(260-01)	22	22	21		1								-	-
- 고용부담금(320-09)	124	124	124		0	128	128	126	126	126	126		-	-
- 자산취득비(430-01)	126	164	164			42	42	33	33	33	33		-	42
·국가유산보존활용연구개발	812	832	809	0	23	1555	1,555	1,555	1,507	1,555	1,507	0	48	809
- 시험연구비(210-13)	25	45	45			25	25	25	25	25	25		-	25
- 사업추진비(240-01)	4	4	4			5	5	5	5	5	5		-	5
- 일반연구비(260-01)	783	783	760		23	1,525	1,525	1,525	1477	1,525	1477		48	779
·조사연구장비운용	843	853	851	0	2	1468	1468	1,491	1,482	1,491	1,482	0	9	1,468
- 자산취득비(430-01)	843	853	851		2	1,468	1,468	1,491	1482	1,491	1482		9	1,468
문화유산조사연구지원인력	0	0	0	0	0	0	0	0	0	0	0	0	0	9,693
- 상용임금(110-03)														8,000
- 복리후생비(210-12)														126
- 고용부담금(320-09)														1,567
· एके अपेर प्रतिष्ठ अपेर प्रतिष्ठ	1,538	1,590	1,525	0	65	0	0	0	0	0	0	0	0	0
- 상용임금(110-03)	553	615	551		64									-
- 특근매식비(210-05)	1	1			1									-
- 복리후생비(210-12)	7	8	8											-
- 시험연구비(210-13)	517	502	502											-
- 사업추진비(240-01)	3	3	3											-
- 일반연구비(260-01)	100	60	60											-
- 고용부담금(320-09)	107	113	113											-
- 자산취득비(430-01)	250	288	288											-

1) 사업목적·내용

- (고대문화유산연구) 고대 문화유산 종합 학술 조사연구를 통한 역사 규명 및 가치 확산
- (미술문화유산연구) 미술문화유산의 학술적 가치를 규명하고 정책자료 확보 및 연구결과 대국민서비스 제공
- (건축문화유산연구) 전통전승 기술 및 재료연구를 통한 전통 건축기술 연구, 건축 문화재 수리·복원 기준 마련
- (문화재안전방재기술개발연구) 문화재 안전관리 및 재해대응 기술연구를 통한 사전 예방적 보존관리체계 실현
- (자연유산보존복원연구) 자연유산(천연기념물·명승) 기초연구를 통한 문화재의 학술적· 역사적 실체를 규명 및 학술·정책자료 확보
- (문화유산교류협력) 문화재 전문기관과 학술연구교류를 통한 선진기술 조사연구 등
- (문화유산 과학적 보존처리) 중요 문화재(국가지정문화재 및 출토 유물) 보존처리 및 조사
- (문화유산 및 중요출토자료 과학적 분석) 문화유산 및 중요출토자료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고대 생활문화 복원 및 체계적 보관체계 마련
- (전통재료 활용 및 기술 연구) 한지, 전통공예소재 전통 건축소재 등 전통재료의 활용 및 기술연구
- (국가유산보존활용연구개발) 문화유산의 원형 보존을 위한 인문사회학적 기초 연구 및 과학기술적 응용연구
- (조사연구장비운용) 문화유산 특성 분석 및 보존관리를 위한 연구장비의 고도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문화재보호법」 제1조(목적) 문화재 보존 및 민족문화 계승 등
- 「문화재보호법」 제6조의2(문화재의 연구개발)
- 「문화재보호법」 제10조(문화재 기초조사), 제17조(문화재 국제교류협력의 촉진 등), 제 43조(기록의 작성·보존), 제45조(직권에 의한 조사), 제54조(등록문화재의 관리)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제13조(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 제15조(발굴조사 보고서), 제24조(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등록), 제28조(매장문화재의 기록 작성 등)

- 「문화재보호기금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기금의 용도)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의2(직무)
- ② 추진경위
- 사업시작년도 : 1990년도
- 추진배경
- · 문화유산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종합적인 문화재연구 사업 추진
- · 발굴조사, 미술·건축 조사연구, 문화재의 과학적인 보존 및 복원에서 자연유산 조사 연구까지 연구영역 확대
- · 문화재의 과학적인 보존처리를 위한 문화재 보존과학센터 건립
- · 문화재 훼손 증가에 따른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 필요성 대두, 문화재 조사·관리 등에 보존 과학기술을 접목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필요성 증가에 따라 융복합연구 시행(2006년)
- · 문화유산융복합연구 맞춤형 융합연구 추진(2008년)
- · 중요문화권고대문화연구 및 문화유산융복합연구를 문화유산조사연구로 통합 추진 (2016년)
- · 매장문화재법 개정으로 문화유산 외 중요출토자료(뼈, 고생물유체 등)까지 연구영역 확대(2022년)

□ 주요내용

-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1990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26,104	25,021	25,471	25,311	24,533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원)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문화유산관계자 및 전문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12) 문화재 돌봄사업 (2133-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므칭게 H 중기그	문화재청	므칭케Hᅎ그		060	064
명칭	문화재보호기금	군와세성	문화재보존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3	301
명칭	문화재보존관리	문화재 상시보호 및 조사	문화재 돌봄사업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0		50	

□ 사업 담당자

0

사업명			구분		
		실·국·과(팀)	과 장	서기관	주무관
문화재	소관부처	문화재보존국	김명준	정도균	이석진
돌봄사업		보존정책과	042-481-4830	042-481-4843	042-481-4833
	사업시행주체	지자체보조	-	-	-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소관부처	문화재보존국	김명준	정도균	최선호
돌봄지원		보존정책과	042-481-4830	042-481-4843	042-481-3162
사업		전통건축수리	중앙문화재	황민혜 팀장	042-710-0186
71 日	사업시행주체	기술진흥재단	돌봄센터	정신에 담경	042-710-0100
	/Y 日/1 8/丁/4	한국문화재	사무국	탁정은	054-743-1950
		돌봄협회	イエカ	사무국장	004-745-1900

가. 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2023년	! 계획	202	4년	증감	
7.0	결산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문화재돌봄 사업	19,266	20,651	20,651	18,962	18,962	△1,689	△8.2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2022						2	023("23	3.12월밑	<u>l</u>)			
			المالحات			계획	획액		المالحات		이월액			2024
	계획액	계획	집행액	المالمالم	H 0 AN			계획	집행액	제		이월	불용	2024 계획
	(수정)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현액	[실집 행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상액	예상액	7114
○ 기능별 분류(합계)	19,286	19,286	19,266 [18,755]		20	20,651	20,651	20,651	20,651 [20,181]	20,651	20,651 [20,181]			18,962
· 문화재돌봄사업	17,111	17,111	17,092 [16,668]		19	18,476	18,476	18,476	18,476 [18,037]	18,476	18,476 [18,037]			16,886
· 돌봄지원사업	2,100	2,100	2,100 [2,087]			2,100	2,100	2,100	2.100	2,100	2 100			2,001
· 자체운영비	75	75	75		1	75	75	75	75 [75]	75	75 [75]			<i>7</i> 5
○ 비목별 분류(합계)	19,286	19,286	19,266 [18,755]		20	20,651	20,651	20,651	20,651 [20,181]	20,651	20,651 [20,181]			18,962
· 일 반 수 용 비 (210-01)	47	47	47		1	42	42	42	32	42	32			34
· 임차료(210-07)						5	5	5	3	5	3			5
· 국내여비(220-01)	7	7	7			7	7	7	6	7	6			7
· 사업추진비 (240-02)	11	11	11			11	11	11	9	11	9			16
· 보전금(310-03)	10	10	10			10	10	10		10				13
・민간경상보조 (320-01)	700	700	700 [697]			700	700	700	700 [691]	700	700 [691]			713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1,400	1,400	1,400 [1,390]			1,400	1,400	1,400	1,400 [1,378]	1,400	1,400 [1,378]			1,288
·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17,111	17,111	17,092 [16,668]		19	18,476	18,476	18,476	18,476 [18,037]	18,476	18,476 [18,037]			16,886
○ 가능비목별 분류(합계)	19,286	19,286	19,266 [18,755]		20	20,651	20,651	20,651	20,651 [20,181]	20,651	20,651 [20,181]			18,962
· 문화재돌봄사업	17,111	17,111				18,476	18,476	18,476	18,476	18,476	18,476			16,886
-자치단체경상보 조(330-01)	17,111	17,111	17,092 [16,668]		19	18,476	18,476	18,476	18,476 [18,037]	18,476	18,476 [18,037]			16,886

			2022					2	023('23	.12월밑	<u>l</u>)			
			וואוובוד			계혹	릭액		تاجالماا		이월액			2024
	계획액	계획	집행액	المالمال	HOAT			계획	집행액	저	외기케이	이월	불용	2024 계획
	(수정)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현액	[실집 행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상액		계획
•돌봄 지원사업	2,100	2,100	2,100 [2,087]			2,100	2,100	2,100	2,100	2,100	2,100			2,001
- 민간경상보조 (320-01)	700	700	700 [697]			700	700	700	700 [691]	700	700 [691]			713
-민간위탁사업비 (320-02)	1,400	1,400	1,400 [1,390]			1,400	1,400	1,400	1,400 [1,378]	1,400	1,400 [1,378]			1,288
· 자체운영비	75	75	<i>7</i> 5			<i>7</i> 5	75	75	75 [75]	75	75 [75]			75
-일반수용비 (210-01)	47	47	47		1	42	42	42	42	42	42			34
-임차료(210-07) -국내여비	7	7	7			5 7	5 7	5 7	5 7	5 7	5			5 7
(220-01) -사업추진비	,		-			,		,	,		7			
(240-02)	11	11	11			11	11	11	11	11	11			16
-보전금(310-03)	10	10	10			10	10	10	10	10	10			13

1) 사업목적·내용

- (문화재돌봄사업) 국가지정(등록), 시도지정(등록) 및 보존가치가 있는 비지정문화유 산에 대한 상시적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사전 예방적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주변 환 경의 적극적 개선
- (돌봄 지원사업) 돌봄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현장 중심의 전문교육,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 및 돌봄사업 홍보·성과교류 등 돌봄사업 지원을 통한 효율적 사업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문화재보호법 제10장의2 문화재의 상시적 예방관리
- 문화재보호법 제80조의3(문화재돌봄사업)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상시적인 예방관리 사업(이하 "문 화재돌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 1. 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2. 등록문화재
- 3. 임시지정문화재
- 4. 그 밖에 역사적·문화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추진경위
 - 시행연도 : 2010년(계속 사업)
 - 추진배경
 - · 전국 각지에 국가지정(등록)유산이 산재해 있으나, 폐사지·산간오지 등에 위치한 경우 국가유산 및 주변지역의 관리가 매우 열악한 상태임
 - · 지자체별 국가유산 전담인력(평균 2명) 부족으로 훼손 가속화 등 시도지정 및 보존 가치가 큰 비지정문화유산에 대한 상시·예방적 관리 필요성 증대
 - · 소유자의 노령화로 빈집 증가, 이농, 생활 불편 등으로 공가 발생 등 대부분의 가옥이 일상적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급속한 훼손 진행

□ 주요내용

-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10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14,703	16,205	19,286	20,651	18,962

- 기타: '23년 관리대상문화재 9,102개소
-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보조/민간보조/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한국문화재돌봄협회
- 사업 수혜자 : 문화재 소유자 및 관리자,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 · 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4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문화재돌봄 사업	보조	지자체 보조	16,886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사업·기준 보조율 등)
돌봄	보조	전통건축 수리기술	713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사업·기준 보조율 등)
	위탁	진흥재단	700	100	문화재보호법 제80조의4(중앙문화재돌봄센터)
지원사업	위탁	한국문화재 돌봄협회	588	100	문화재보호법 제80조의7(지역문화재돌봄 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

(13)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23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재	ㅁ쉵케ᅱ	므청 케거케그		060	064
명칭	보호기금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31	301		
명칭	문화재보호	예방적 문화재 안전관리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		

나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			I			가신 3 리 버거기니
刈 ユ	계소	6). =	예비타당성	종사업비	종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2年	계숙	완료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				,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0		70, 5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문화재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재난안전	소관부처	문화재정책국	이재원	서민석	이용석				
		안전기준과	042-481-4933	042-481-4820	042-481-4845				
관리	사업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	-	-	-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П нд	2022년	2023년	l 계획	202	4년	증감	
목명	결산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문화재						, ,	
재난안전	25,286	26,606	26,606	26,012	26,012	△594	△2.2
관리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2022					2023('23.12월말)							
						-11 7	ti Aii				이월액			
	~기중]A)]	-제 취	집행액			계획	44	ᆒᅔ	집행액	제	외	A) 6)	но	2024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실집 행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계획
○ 기능별 분류(합계)	25,341	25,341	25,286 [20,614]		55	26,606	26,606	26,606	26,575 [18,940]	26,606	26,575 [18,344]			26,012
· 문화재 재난방지 시설 구축	10,702	10,702	10,702 [7,637]			12,130	12,130	12,130	12,130 [7,050]	12,130	12,130 [6,454]			11,123
· 문화재 IoT시스 템 구축	1,687	1,687	1,687 [1,100]			-	-	-	-	-	-	-	-	-
·문화재 안전경비 원 배치	8,608	8,608	[8,073]			10,132	10,132	10,132	[8,926]	10,132	10,132 [8,926]			10,688
·문화재 재난방지 시설 유지관리	3,374	3,374	3,374 [2,889]			3,374	3,374	3,374	[2,707]	3,374	[2,707]			3,274
· 문화재 재난안전 활동	970	970	[915]		55	970	970	970	[257]	970	[257]			927
○ 비목별 분류(합계)	25,341	25,341	25,286 [20,614]		55	26,606	26,606	26,606	26,575 [18,940]	26,606	26,575 [18,344]			26,012
· 일반수용비 (210-01)	24	24	23		1	24	24	24	24	24	24			24
· 임차료(210-07)	10	10	7		3	10	10	10	10	10	10			10
· 일반용역비 (210-14)	17	17	17			17	17	17	17	17	17			17
· 관리용역비 (210-15)	502	502	462		40	502	502	502	473	502	473			250
· 국 내 여 비 (220-01)	8	8	7		1	8	8	8	8	8	8			8
· 국외교육여비 (220-03)	9	9	-		9	9	9	9	9	9	9			9
· 일 반 연 구 비 (260-01)	100	100				100		100		100				100
· 포상금(310-03)	10	10				10	10	10		10				10
· 민간경상보조 (320-01)	270	270	270 [270]			270	270	270	270 [257]	270	270 [257]			0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	-	-	-	-	-	-	-	-	-	-	-	-	227
· 자치단체경상보 조(330-01)	11,982	11,982	11,982 [10,962]			13,506	13,506	13,506	[11,633]	13,506	13,506 [11,633]			13,962
· 자치단체자본보 조(330-03)	12,389	12,389	12,389 [8,737]			12,130	12,130	12,130	12,130 [7,050]	12,130	12,130 [6,454]			11,123
· 공사비(420-03)	-	-	-	-	-	-	-	-	-	-	-	-	-	252
· 자 산 취 득 비 (430-01)	20	20	19		1	20	20	20	20	20	20			20

			2022					2	023(*23	3.12월밀	h			
									020(2	전년도				
			집행액			계획	틱액		집행액	제		, ,,	,,,	2024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실집 행액]	계획 현액	-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계획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5,341	25,341	25,286 [20,614]		60	26,606	26,606	26,606	26,575 [18,940]	26,606	26,575 [18,344]			26,012
· 문화재 재난방지 시설 구축	10,702	10,702	10,702 [7,637]			12,130	12,130	12,130	12,130 [7,050]	12,130	12,130 [6,454]			11,123
-자치단체 자본 보조(330-03)	10,702	10,702	10,702 [7,637]			12,130	12,130	12,130	12,130 [7,050]	12,130	12,130 [6,454]			11,123
· 문화재 IoT시스 템 구축	1,687	1,687	1,687 [1,100]			-	-	-	-	-	-	-	-	-
-자치단체 자본 보조(330-03)	1,687	1,687	1,687 [1,100]			-	-	-	-	-	-	-	-	-
·문화재 안전경비 원 배치	8,608	8,608	8,608 [8,073]			10,132	10,132	10,132	10,132 [8,926]	10,132	10,132 [8,926]			10,688
-자치단체 경상 보조(330-01)	8,608	8,608	8,608 [8,073]			10,132	10,132	10,132	10,132 [8,926]	10,132	10,132 [8,926]			10,688
·문화재 재난방지 시설 유지관리	3,374	3,374	3,374 [2,889]			3,374	3,374	3,374	[2,707]	3,374	3,374 [2,707]			3,274
-자치단체 경상 보조 (330-01)	3,374	3,374	3,374 [2,889]			3,374	3,374	3,374	[2,707]	3,374	3,374 [2,707]			3,274
·문화재 재난안전 활동	970	970	915 [915]		55	970	970	970	939 [257]	970	939 [257]			927
- 일 반 수 용 비 (210-01)	24	24	23		1	24	24	24	24	24	24			24
-임차료(210-07)	10	10	7		3	10	10	10	10	10	10			10
- 일 반 용 역 비 (210-14)	17	17	17		0	17	17	17	17	17	17			17
- 관 리 용 역 비 (210-15)	502	502	462		40	502	502	502	473	502	473			250
- 국 내 여 비 (220-01)	8	8	7		1	8	8	8	8	8	8			8
-국외교육여비 (220-03)	9	9	0		9	9	9	9	9	9	9			9
- 일 반 연 구 비 (260-01)	100	100	100		0	100	100	100	98	100	98			100
-포상금(310-03)	10	10			0	10	10	10		10				10
- 민간경상보조 (320-01)	270	270	270 [270]		0	270	270	270	270 [257]	270	270 [257]			-
- 민간위탁사업 비(320-02)	-	-	-	-	-	-	-	-	-	-	-	-	-	227
- 공사비 (420-03)	-	-	-	-	-	-	-	-	-	-	-	-	-	252
- 자 산 취 득 비 (430-01)	20	20	19		1	20	20	20	20	20	20			20

1) 사업목적·내용

-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화재 및 각종 재난으로부터 취약한 목조문화재 등을 위해 국가지정 문화재 등을 대상으로 재난방지(소방, 방범, 전기·ICT, IoT 등)시설을 구축하는 사업
-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 기 구축된 재난방지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사업
-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화재 및 도난 등 인위적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목조문화 재를 대상으로 현장의 방재력 강화를 위한 지원임
- (문화재 재난안전 활동) 문화재 방재교육 및 모니터링, 방재정보 통합시스템 운영· 개선,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방안 마련 연구(과학적 상황관리 및 기준마련을 위한 방제 고도화), 문화재 방재의 날 및 안전한국훈련 행사 개최(문화재 안전 인식 개 선 및 유공포상), 문화재 안전상황실 장비 개선 등 안전관리 체계 강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4조(화재등 방지 시책 수립과 교육훈련·홍보 실시)
 - 문화재보호법 제14조의2(화재등 대응매뉴얼 마련 등)
 - 문화재보호법 제14조의3(화재등 방지 시설 설치 등)
 - 문화재보호법 제14조의4(금연구역의 지정 등)
 - 문화재보호법 제14조의5(관계 기관 협조 요청)
- 문화재보호법 제14조의6(정보의 구축 및 관리)
- 문화재보호법 제17조(문화재 국제교류협력의 촉진 등)
-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특정 소방대상물에 설 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 ② 추진경위
- 국정과제(V-20-98)로 추진

- 문화재 화재('05년 낙산사, '08년 숭례문)를 계기로 방재를 위한 종합방재시스템 구축 추진
- 숭례문 방화('08.2.10)에 의한 훼손을 계기로 중요 목조문화재에 대하여 안전경비 워 배치 추진
- 문화재 전담인력의 부족(여론 및 언론)으로부터 사전 예방적 필요성 제기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경기침체 극복 필요
- 비상시 및 일상관리를 포함한 문화재현장의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상황관리 및 합리적인 기준 정비 필요성 제기
- 최근 세계적으로 대규모 지진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등 기후변화 심화 및 방재 사업의 획일적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발생
- 목조건축물 화재의 주원인은 전기와 난방에 기인하며 발화시에는 단시간에 확산 되어 전소되는 특성으로 조속한 대책 수립 필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7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25,835	24,482	25,341	26,606	26,012

- 기타: 2007~2009년 일반예산으로 편성, 2010년부터 문화재보호기금으로 전환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지자체보조(70%, 50%), 민간보조(100%)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 사업수혜자 : 일반국민, 문화재소유자(관리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4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재난방지시설구축	보조	지자체 보조	11,123백만원	70,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문화재안전경비원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보조	지자체	10,688백만원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배치		보조	,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보조	지자체	3,274백만원	7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유지관리	حلاخك	보조	3,2/47 1 1	70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문화재 재난안전	нσ	미기사고	227HJ TJ. Ol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	민간보조	227백만원	100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활동	직접	직접수행	700백만원	-	-

(14) 궁능방재시스템구축(2331-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므칭게 H 중기그	문화재청	그느ㅇ저ㅂㅂ		060	064
명칭	문화재보호기금	군와세경	궁능유적본부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31	303
명칭	문화재보호	예방적 문화재 안전관리	궁능방재시스템구축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표시)
---------	-------------	---------------	-----------------

_ '	п о	1 (0	0 == 1 - 1 == 1	1 0 11 - 1 1	0 1. [10-12 10 11 = 32 1)
,1 ¬	_11 A	ما حا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신규	계속	완료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circ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방재인력	소관부처	궁능유적본부	송인헌	민병철	조혜연
운영		궁능서비스기획과	02-6450-3820	02-6450-3821	02-6450-3825
	사업시행주체	직접	-	-	-
મો.નો કો કદ્યો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방재시스템	소관부처	궁능유적본부	송인헌	민병철	고ᅰ어
운영 및	그런구시	० ठ म य स्म	중한번	민정설	조혜연
유지		궁능서비스기획과	02-6450-3820	02-6450-3821	02-6450-3825
11 / 1	사업시행주체	직접	-	-	-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방재시스템	소관부처	궁능유적본부	조은경	전의건	배수경
개선		복원정비과	02-6450-3840	02-6450-3849	02-6450-3848
711 -	사업시행주체	직접	-	-	-

소 방 시 설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라트 기원	소관부처	궁능유적본부	조은경	전의건	배수경
		복원정비과	02-6450-3840	02-6450-3849	02-6450-3848
및 개선	사업시행주체	직접	-	-	-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2023년	! 계획	202	4년	중감	
7 0	결산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궁능방재 시스템구축	14,855	16,464	16,464	16,336	16,336	△128	△0.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2022					2	023(′23	.12월밀	t)			
			집행액			계획	単액		집행액	전년도 제				2024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설생각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적 [실집 행액]	게 계획 현액	커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계획
○ 기능별 분류(합계)	15,233	15,233	14,855		378	16,464	16,464	16,464	16,016	16,464	16,016		448	16,336
· 방재인력 운영	11,193	11,210	10,959		250	11,691	11,691	11,697	11,364	11,697	11,364		333	12,292
· 방재시스템 운영 및 유지	2,618	2,601	2,542		59	2,618	2,618	2,612	2,587	2,612	2,587		25	2,712
· 방재시스템 개선	1,422	1,355	1,355		67	1,222	1,222	1,222	1,222	1,222	1,222			776
· 소방시설 성능시 험 및 개선						933	933	933	843	933	843		90	556
○ 비목별 분류(합계)	15,233	15,233	14,855		378	16,464	16,464	16,464	16,016	16,464	16,016		448	16,336
· 상용임금(110-03)	8,992	8,992	8,794		199	9,380	9,380	9,380	9,120	9,380	9,120		260	9,819
· 일용임금(110-04)	79	79	79			79	79	79	75	79	75		4	79
· 일반 수용 비(210-01)	143	207	203		4	143	143	201	200	201	200		1	143
· 공공요금 및 제서 (21002)	422	608	596		12	588	588	726	722	726	722		4	436
· 피복비(210-03)	44	44	43		1	44	44	44	44	44	44			44
· 특근매식비(210-05)	69	22	16		6	69	69	17	12	17	12		5	69
· 유류비(210-08)	10	10	7		3	10	10	10	7	10	7		3	10
· 시설장비유지비(21009)	708	617	609		8	738	738	565	564	565	564		1	708
· 복리후생비(210-12)	140	140	138		2	177	177	177	169	177	169		8	179
· 일반용역비(210-14)	20	20	11		9	20	20	20	19	20	19		1	20

			2022					2	023("23		•			
			المالحات			계획	[백		المالحات		이월액			2024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제 계획 현액	의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2024 계획
· 관리용역비(210-15)	1,468	1,356	1,326		30	1,468	1,468	1,497	1,478	1,526	1,478		48	1,548
· 고용부담금(320-09)	1,691	1,691	1,656		35	1,765	1,765	1,765	1,714	1,765	1,714		51	1,924
· 실시설계비(420-02)	72	72	65		7	92	92	92	50	92	50		42	58
· 공사비(420-03)	1,325	1,325	1,282		43	1,840	1,840	1,840	1,798	1,840	1,798		42	1,242
· 감리비(420-04)	22	22	5		17	20	20	20	15	20	15		5	29
· 시설부대비(420-05)	3	3	3			7	7	7	6	7	6		1	3
· 자산취득비(430-01)	25	25	23		2	25	25	25	22	25	22		3	2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5,233	15,233	15,233		378	16,464	16,464	16,464	16,016	16,464	16,016		448	16,336
· 방재인력 운영		11,210							11,364				333	12,292
- 상용임금 (110-03)	8992	·			199								260	9,819
- 일용임금 (110-04)	79	79	79			79	79	<i>7</i> 9	75	79	75		4	79
- 일반수용비 (210-01)	143	207	203		4	143	143	201	200	201	200		1	143
- 피복비 (210-03)	44	44	43		1	44	44	44	44	44	44			4 4
- 특근매식비	69	22	16		6	69	69	17	12	17	12		5	69
(210-05) - 유류비	0)	22				0)	07	17	12	17	12			0,
- 세계리 (210-08) - 복리후생비	10	10	7		3	10	10	10	7	10	7		3	10
- 국더우 8 미 (210-12)	140	140	138		2	176	176	176	169	176	169		7	179
- 고용부담금 (320-09)	1691	1,691	1,656		35	1,765	1,765	1,765	1 <i>,7</i> 15	1,765	1 <i>,</i> 715		50	1,924
- 자산취득비 (430-01)	25	25	23			25	25	25	22	25	22		3	25
· 방재시스템 운영 및 유지	2,618	2,618	2,542		59	2,618	2,618	2,612	2,587	2,612	2,587		25	2,712
- 공공요금및제세 (210-02)	422	422	596		12	422	422	560	556	560	556		4	436
- 시설장비유지비 (210-09)	708	649	609		8	708	708	535	534	535	534		1	708
- 일반용역비 (210-14)	20	20	11		9	20	20	20	19	20	19		1	20
- 관리용역비 (210-15)	1,468	1,527	1,326		30	1,468	1,468	1,497	1,478	1,497	1,478		19	1,548
· 방재시스템 개선	1,422	1422	1,355		67	1,222	1,222	1,222	1,222	1,222	1,222			766
- 실시설계비 (420-02)	72	72	65		7	30	30	30	30	30	30			11
- 공사비	1,325	1,325	1,282		43	1,180	1,180	1,180	1,180	1,180	1,180			764

			2022					2	.023(*23	 3.12월밀	<u>l^t)</u>			
			المالحات			계혹	릭액		المائدات	전년도				2024
	계획액	계획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	집행액	세	의 집행액	이월	불용	202 4 계획
	(수정)	현액	[실집 행액]	이혈액	골중직	당초	수정	현액	[실집 행액]	계획 현액	접생각 [실집 행액]	예상액	예상액	7114
(420-03)											_			
- 감리비	22	22	5		17	10	10	10	10	10	10			
(420-04)		22	3		17	10	10	10	10	10	10			
- 시설부대비	3	3	3			2	2	2	2	2	2			1
(420-05)		3								_	_			1
· 소방시설 성능시						933	933	933	843	933	843		90	556
험 및 개선						700	700	700	010)555				330
- 공공요금및제세						166	166	166	166	166	166			
(210-02)														
- 시설장비유지비						30	30	30	30	30	30			
(210-09)														
- 실시설계비						62	62	62	20	62	20		42	47
(420-02)														
- 공사비 (420,02)						660	660	660	618	660	618		42	478
(420-03) - 감리비														
(420-04)						10	10	10	5	10	5		5	29
(420-04) - 시설부대비														
(420-05)						5	5	5	4	5	4		1	2

1) 사업목적·내용

- (방재인력 운영) 궁·능·유적기관의 국가지정문화재 등 주요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방재인력(359명) 배치 및 운영
- (방재시스템 운영 및 유지) 궁·능·유적기관의 국가지정문화재 등 주요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방재시스템 운영 및 유지
- (방재시스템 구축) 궁·능·유적기관의 국가지정문화재 등 주요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종합경비시스템 등 방재시스템 개선
- (소방시설 성능시험 및 개선) 숭례문 화재 이후 궁능에 설치된 노후 소방시설에 대한 성능시험 및 노후 설비 개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4조(화재 및 재난방지)

② 추진경위

- '04. 4월 : 국민의 문화재향유권 신장을 위해 이긴개방 시범추진(덕수궁, 주2회)

- '06. 11월 : 야간개방 시범운영 확대(덕수궁, 주 6회)

- '07. 7월 : 선릉 추가 야간 개방

- '08.02.10. : 숭례문 화재로 인한 전소

- '08.02.11. : 숭례문 복구 합동대책본부 발족

- '08.02월 : 문화재청, 소방방재청 합동 목조문화재 점검

- '08.03.18. : 문화재청장 지시로 활용에 앞서 소방인프라 사전구축 노력

- '08.11월~'09.6월 : 4대궁·종묘 종합경비시스템 구축 완료(리스사업)

- '09.10월~'10.1월 : 4대궁·종묘·세종유적 소방시설 구축 완료

- '09.12월~'10.11월 : 조선왕릉 종합경비시스템 구축 완료(리스사업)

- '11년~ : 궁능 방재시스템(CCTV) 개선사업 추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16,137	14,689	15,233	16,464	16,336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사업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 · 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15)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2332-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재	ㅁ쉵케ᅱ	므칭키거케그		060	064
명칭	보호기금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32	301
명칭	문화재보호	국내외 문화재 긴급보호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17	-11 人	완료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신규	用等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0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				,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circ			0		10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	소관부처	문화재정책국	이재원	서민석	박중인						
긴급보수사업		안전기준과	042-481-4933	042-481-4820	042-481-4907						
	사업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	-	-	-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2023년	! 계획	202	4년	중감	
7.0	결산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4,121	3,710	3,710	3,710	4,076	366	9.9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2022					2	023(′23	.12월밀	t)			
			집행액			계획	박		집행액	전년도 제				2024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1993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적 [실집 행액]	게획 현액	거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계획
○ 기능별 분류(합계)	4,121	4,121	4,121 [2,362]			3,710	4,076	4,076	4,076 [4,265]	4,076	4,076 [1,800]			4,076
· 문화재 긴급보수	4,121	4,121	4,121 [2,362]			3,710	3,710	3,710	4,076 [4,265]	3,710	4,076 [1,800]			4,076
○ 비목별 분류(합계)	4,121	4,121	4,121 [2,362]			3,710	4,076	4,076	4,076 [4,265]	4,076	4,076 [1,800]			4,076
-일반수용비 (210-01)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국내여비 (220-01)	5	5	5			5	5	5	5	5	5			5
-자치단체 자본보조 (330-03)	4,106	4,106	4,106 [2,362]			3,695	4,061	4,061	4,061 [4,265]	4,061	4,061 [1,800]			4,061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4,121	4,121	4,121 [2,362]			3,710	4,076	4,076	4,076 [4,265]	4,076	4,076 [1,800]			4,076
· 문화재 긴급보수	4,121	4,121	4,121 [2,362]			3,710	4,076	4,076	4,076 [4,265]	4,076	4,076 [1,800]			4,076
-일반수용비 (210-01)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국내여비 (220-01)	5	5	5			5	5	5	5	5	5			5
-자치단체 자본보조 (330-03)	4,106	4,106	4,106 [2,362]			3,695	4,061	4,061	4,061 [4,265]	4,061	4,061 [1,800]			4,061

1) 사업목적·내용

- (문화재 긴급보수) 문화재가 재난(풍수해, 화재), 퇴락 및 훼손 등으로 인해 피해 발생 시즉시 예산(긴급보수비)을 투입, 신속한 복구를 통해 문화재 추가 훼손 방지와 보수지연에 따른 예산의 과다소요를 방지함으로써, 문화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문화재보호기금법 제5조 (기금의 용도) 제2호(훼손·유실 등으로 인한 문화재의 긴급 보수 또는 복원)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 문화재보호법 제3조(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
-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2004년 ~ 계속
 - 추진경과
 - · '04~'07년 : 갈수록 대형화되고 빈번해지는 재난으로부터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 하기 위하여 복권기금으로 추진(국비 100%)
 - · '08~'09년 : 복권기금 축소로 동 사업이 제외되어 문화재보수정비 예산으로 편 성하여 추진(국비 70%)
 - · '10년~ : 문화재보호기금으로 편성, 긴급보수사업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고자 전액 보조로 변경(국비 100%)
 - · '13년~ : 복권기금으로 추진(국비 100%)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4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4,121	4,121	4,121	3,710	4,076

- 기타: 재난으로 인한 문화재 피해 발생 시 복구, 연 평균 50여건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국비 100%)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문화재 소유자·관리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3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문화재	нэ	지자체	3,695백만원	1009/	H Z 그 코크에 코침 버르지체터 제4Z
긴급보수	보조	보조	3,093백단권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16) 국내외 문화재 긴급매입 및 관리 지원 (2332-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재	ㅁ칡케칭	므칭키거케그		060	064
명칭	보호기금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32	302		
명칭	문화재보호	국내외 문화재 긴급보호	국내외 문화재 긴급매입 및 관리 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1 7	-11 A	ما تا	예비타당성 신시여부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신규	用等	완료	시시성브	과리대사	레사사어	2023예산 시 소과				

,17	司人	01 =	예비타당성	송사업비	종액계상	사업소판 변경정보
신규	계속	완됴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0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7.11.61	소관부처	문화재활용국	조동주	백현민	박지연	
국내외 문화재		국제협력과	042-481-4730	042-481-4734	042-481-4738	
긴급매입 및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관리지원	소관부처	문화재활용국	김재일	장영기	김인성	
		문화유산협력팀	042-481-3141	042-481-3150	042-481-3149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2023년	! 계획	202	4년	증감	
7 0	결산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국내외 문화재 긴급매입 및 관리지원	4,500	4,000	4,000	4,000	4,00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2022					2	2023("23	3.12월밑	<u>ł)</u>			
	괴취이	-J) * J)	집행액			계획	획액	-J) *)	집행액	I	이월액 외	A) 0)	불용	2024 계획
	계 획 액 (수정)	계획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실집 행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 예상액		
○ 기능별 분류(합계)	4,500	4,500	4,500 [4,500]			4,000	3,634	3,634	3,606 [3,606]	3,634	3,606 [3,606]		28	4,000
· 국내외문화재 긴급매입 및 관리지원	4,500	4,500	4,500 [4,500]			4,000	3,634	3,634	3,606 [3,606]	3,634	3,606 [3,606]		28	4,000
○ 비목별 분류(합계)	4,500	4,500	4,500 [4,500]			4,000	3,634	3,634	3,606 [3,606]	3,634	3,606 [3,606]		28	4,000
· 법정민간대행 사업비(320-08)	4,500	4,500	4,500 [4,500]			4,000	3,634	3,634	3,606 [3,606]	3,634	3,606 [3,606]		28	4,000
○ 기능비목별 분류 (합계)	4,500	4,500	4,500 [4,500]			4,000	3,634	3,634	3,606 [3,606]	3,634	3,606 [3,606]		28	4,000
· 국내외문화재 긴급매입 및 관리지원	4,500	4,500	4,500 [4,500]			4,000	3,634	3,634	3,606 [3,606]	3,634	3,606 [3,606]		28	4,000
- 법정민간대행 사업비(320-08)	4,500	4, 500	4,500 [4,500]			4,000	3,634	3,634	3,606 [3,606]	3,634	3,606 [3,606]		28	4,000

1) 사업목적·내용

- (국내외 문화재 긴급매입 및 관리지원)
 - · 외국 경매에 출품되거나 외국의 개인 등이 소장하고 있는 중요한 한국문화재를 매입 하여 국외소재문화재 환수에 기여
 - · 멸실 위기에 처해 있는 국내 비지정문화재 매입을 통해 미래의 문화재 사전 확보 및 문화재 보존관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문화재보호기금법 제5조(기금의 용도) 제8호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의 긴급매입
- ② 추진경위
- '06년 국정감사 지적 : "해외 소재 우리문화재 환수를 위해 직접 구입 방법 강구" 필요
- '10년 : 국내외 문화재 긴급매입 및 관리지원 사업 최초 편성
- '17년 : 국내외→국외문화재 긴급매입으로 사업규모 조정(사유: 집행실적 부진)
- '19년 : 국외→국내외문화재 긴급매입으로 사업규모 재조정 및 예산확대 (범위확대: 국내문화재 매입, 국외 오프라인 유통조사 매입대상 발굴)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10년~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5,000	5,000	4,500	4,000	4,0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및 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및 대행기관

- 사업 수혜자 : 전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17) 군부대 주둔지 문화재조사 보호 (2334-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문화재	ㅁ칡케칭	므청 케거케그		060	064
명칭	보호기금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34	301
명칭	문화재보호	매장문화재조사지원	군부대 주둔지문화재조사 보호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1 ¬	月 司 司 人	43 —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신규	계속	완됴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군부대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주둔지	소관부처	문화재정책국	김동대	전용호	황지윤								
문화재조사		발굴제도과	042-491-4940	042-481-4947	042-481-4948								
보호	사업시행주체	문화재청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2023년	! 계획	202	4년	증감	
7 7	결산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군부대 주둔지문화 재조사 보호	347	385	385	385	385	_	-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2022					2	023(′23	.12월밀	<u>t</u>)			
						계획	 빌 앤		,	전년도	이월액			
	계획액	계획	집행액	المالمال	HOM	/ 11 -	7 ' 1	계획	집행액	제		이월	불용	2024 계획
	(수정)	현액	[실집 행액]	이철액	불용액	당초	수정	현액	[실집 행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상액	예상액	714
○ 기능별 분류(합계)	385	385	347	-	38	385	-	385	376	385	376		9	385
· 군부대 주둔지 문화재조사	313	313	280	-	33	313	-	313	309	313	309		4	313
· 군부대 문화재조 사 경상관리	72	72	67	-	5	72	-	72	67	72	67		5	72
○ 비목별 분류(합계)	385	385	347	-	38	385	-	385	376	385	376		9	385
· 일반수용비 (210-01)	37	37	37	-	-	37	-	37	37	37	37		-	38
· 임차료(210-07)	23	23	21	-	2	23	-	23	20	23	20		3	23
· 국내여비(220-01)	6	6	3	-	3	6	-	6	4	6	4		2	6
· 사업추진비 (240-01)	6	6	6	-	-	6	-	6	6	6	6		-	5
· 일반연구비 (260-01)	313	313	280	-	33	313	-	313	309	313	309		4	313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85	385	347	-	38	385		385	376	385	376		9	385
· 군부대 문화재조 사 경상관리	72	72	67	-	5	72	-	72	67	72	67		5	385
-일반수용비 (210-01)	37	37	37	-	-	37	-	37	37	37	37		-	38
-임차료(210-07)	23	23	21	-	2	23	-	23	20	23	20		3	23
-국내여비 (220-01)	6	6	3	-	3	6	-	6	4	6	4		2	6
-사업추진비 (240-01)	6	6	6	-	-	6	-	6	6	6	6		-	5
· 군부대 주둔지 문화재조사	313	313	280	-	33	313	-	313	309	313	309		4	313
-일반연구비 (260-01)	313	313	280	-	33	313	-	313	309	313	309		4	31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전국 우리 군 및 주한 미군기지 내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를 통한 문화재 확인, 모니터링·안내판 설치 등 지속적 보호·관리 도모
- 군부대 내 각종 훈련 및 시설 사업 시 문화재 보존을 위한 기초 자료 활용
- 군 문화재 관리 교육 정기 실시로 군 자체의 문화재 보호·관리 역량 강화
- 주한 미군기지 이전 추진에 따른 문화재 보호방안 마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ㅇ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 SOFA합동위원회「주한미군기지 시설 및 구역 내 대한민국 문화재 보호를 위한 지표조사 및 합동 절차에 관한 합의권고」('05.12.30)
- ② 추진경위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o SOFA 합동위원회 내 문화재보호분과위원회 설치 ('05.7.7)
 - ㅇ 「주한미군기지 문화재 조사 절차서」체결 ('05.12.30)
 - 「주한미군기지 시설 및 구역 내 대한민국 문화재 보호를 위한 지표조사 및 합동 절차에 관한 합의권고」서명 ('10.12.1, 제187차 SOFA합동위원회)
 - '06~'23 우리군 주둔지 및 주한 미군기지 문화재 지표조사(총 1,342건), 모니터링(총 591건), 군문화재 안내판 제작 및 설치(총 154개소), 군문화재 관리교육(총 15회), 업무편람 제작 및 배포(1회/2023년)

□ 주요내용

-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6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385	385	385	385	385

- 기타: 조사대상 총 14억 m²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

-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18) 소규모·긴급 매장문화재 조사 지원 (2334-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므칭케H중키그	문화재청	ㅁ칡케저케그		060	064
명칭	문화재보호기금	군와세정	문화재정책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34	302
명칭	문화재보호	매장문화재조사지원	소규모 · 긴급 매장문화재조사 지원

						당하는 사항에 "○".	표시)
,17	训人	۵) =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カユ	계수	이근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他们	규 계속 완료	世五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0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0		100	

사업명			구분		
		실·국·과(팀)	과 장	서기관	주무관
소규모ㆍ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김동대	임동훈	김용준
긴급		발굴제도과	042-481-4940	042-481-4950	042-481-4946
매장문화재조사		한국문화재재단	조사기획팀	지은덕	054)760-8460
지워	사업시행주체	(재)불교문화재연구소	폐사지팀	김진덕	02-735-9944
16		지자체 보조	-	-	-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2023년	! 계획	202	4년	증감	
7.0	결산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소규모·긴급							
매장문화재	23,932	27,932	27,932	27,632	27,632	△300	△1.1%
조사 지원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	23.12월	 말)			
										이월액			
	계획액	계획	집행액	പ്രിവ	ലകര	무기원	계획	집행액	제	외	이월	불용	2024 계획
	(추경)	현액	[실집 행액]	이철액	불용액	본계획	현액	[실집 행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상액	예상액	계획
○ 기능별 분류(합계)	23,932	23,932	23,932 [23,932]			27,932	27,932	27,932 [22,391]	27,932	27,932 [22,391]			27,632
· 소규모 발굴조사 자원	21,168	21,168	21,548 [21,548]			24,168	24,168	24,168 [19,168]	24,168	24,168 [19,168]		[5,000]	19,168
・ 민간 지표조사 지원	1,793	1,793	1,413 [1,413]			1,793	1,793	1,793 [1,793]	1,793	1,793 [1,793]			1,493
· 긴급발굴조사지원	343	343	343 [343]			1,343	1,343	1.343	1,343	1,343 [802]	[541]		1,343
· 중요폐사기사발굴조사	608	608	608 [608]			608	608	608 [608]	608	608 [608]			608
· 소규모 긴급빌굴조사 지원 경상경비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 매장문화재 진단 조사 비용 지원	0	0	0 [0]			0	0	[0]	0	0 [0]			5,000
○ 비목별 분류(합계)	23,932	23,932	23,932 [23,932]			27,932	27,932	27,932 [22,391]	27,932	27,932 [22,391]			27,632
· 일반수용비(210-01)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 민간경상보조(320-01)	608	608	608 [608]			608	608	608 [608]	608	608 [608]			608
· 만۴탁함 (3002)	22,961	22,961	22,961 [22,961]			25,961	25,961	25,961 [20,961]	25,961	25,961 [20,961]		[5,000]	25,661
· 자타하는 (3001)	343	343	[343]			1,343	1,343	[802]	1,343	1,343 [802]	[541]		1,343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3,932	23,932	23,932 [23,932]			27,932	27,932	[22,391]	27,932	27,932 [22,391]			27,632
· 소규모 발굴조사자원	21,168	21,168	21,548 [21,548]			24,168	24,168	24,168 [19,168]	24,168	24,168 [19,168]		[5,000]	19,168
- 만胖 附 (3002)	21,168	21,168	21,548			24,168	24,168	24,168	24,168	24,168			19,168

			2022					2023("	23.12월	말)			
									전년도				
	계획액	계획	집행액				계획	집행액	제		이월	불용	2024
	/#국국 (추경)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계획	현액	[실집 행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상액		계획
			[21,548]					[19,168]		[19,168]		[5,000]	
· 민간 지표조사지원	1,793	1,793	1,413 [1,413]			1,793	1,793	1,793 [1,793]	1,793	1,793 [1,793]			1,493
- 만泮사업 (32002)	1,793	1,793	1,413 [1,413]			1,793	1,793	1,793 [1,793]	1,793	1,793 [1,793]			1,493
· 긴급 발굴조사지원	343	343	343			1,343	1,343	1,343 [802]	1,343	1 343	[541]		1,343
- 쟈타방난조(3001)	343	343	343			1,343	1,343	1,343 [802]	1,343	1,343 [802]	[541]		1,343
· 중요화기발로사원	608	608	608 [608]			608	608	608 [608]	608	608 [608]			608
-민간경상보조(320-01)	608	608	608 [608]			608	608	608 [608]	608	608 [608]			608
·소규모긴급발굴조사 경상관리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일반수용비(210-01)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 매장문화재 진단 조사 비용 지원	0	0	0 [0]			0	0	0 [0]	0	0 [0]			5,000
-만위科(320.02)	0	0	0 [0]			0	0	0 [0]	0	0 [0]			5,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 소규모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비용지원을 통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효율적인 매장문화재 보존·관리 도모
- ·소규모사업자 경제적 부담 해소 및 효율적인 매장문화재 보존·관리 도모
- (민간 지표조사 지원) 민간 시행 건설공사의 지표조사 비용을 지원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발굴조사 회피 예방
- (긴급 발굴조사 지원) 수해, 사태, 도굴 및 유물·유적 발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발굴 조사 지원으로 매장 문화재 보호의 적시성 확보
- (중요폐사지 발굴조사 지원) 전국에 산재한 중요 폐사지에 대한 역사적·학술적 가치 규명
- (매장문화재 진단조사 비용 지원) 기존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 대상 외 생활밀접형 건설공사(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창고 등) 표본·시굴조사 비용 전액지원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
-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등)
-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0조(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민간 지표조사 지원>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지표조사 절차 등)
-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5항(지표조사 절차 등) <긴급발굴조사 지원>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8조(매장문화재의 기록 작성 등)
-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매장문화재의 보호방안)
- <중요 폐사지 시·발굴 조사 지원>
- 문화재보호법 제10조(문화재 기초조사)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3호(폐사지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지역) <매장문화재 진단조사 비용 지원>
-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등)
-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0조(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 · 긴급 발굴조사 지원 : 1993년
 - ·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 : 2004년
 - · 중요 폐사지 시·발굴 조사 지원 : 2010년
 - · 지표조사 지원 : 2015년
 - ・ 매장문화재 진단조사 비용 지원: 2023년
- 추진배경
 - · 수해, 사태, 도굴 및 해저유물 발견 등 긴급상황 발생에 따른 수습조사 지원 필요성 대두
 - · 2010년도부터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내 소규모발굴전담팀 운영
 -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 개정에 따른 3만㎡ 미만의 지표조사 국비지원
 - · 국정과제(62-3) 추진에 따른 매장문화재 조사비용 지원 근거 마련 및 대국민 지원 점진적 확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93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18,234	23,256	23,932	27,932	27,632

- 사업규모

· 단독주택 및 공장, 농어민시설 등 소규모 건축공사 발굴조사 400건 내외 지원

· 지자체 긴급발굴조사 10건 내외 지원

· 민간시행 건설 공사의 지표조사 300건 내외 지원

· 중요 폐사지 3개소 발굴조사 지원

· 매장문화재 진단조사 250여건 지원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중요폐사지), 지자체보조(긴급발굴), 민간위탁(소규모 발굴 지원, 민간 지표조사지원, 진단조사 비용 지원), 직접시행(경상관리)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 민간단체(한국문화재재단, (재)불교문화재연구소) 등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농어업인, 영세상공업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4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긴급발굴조사	보조	지자체	1,343	100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지원		보조	·		법률」시행령 제31조제1항
중요폐사지	보조	(재)불교문	608	100	-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시·발굴조사	75:	화재연구소	000	100	법률」제13조제1항

(19) 기금운영비 (2376-2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므칭케Hᇂ키그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060	064
명칭	문화재보호기금	군와세경	- 군와세경색국 -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76	201
명칭	문화재보호	기금운영비	기금운영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1 —	-11 A	Δ) ¬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1	신규	계속	완료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0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 • - •				• • • • • • • • • • • • • • • • • • • •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0						

사업명	구분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금운영비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김종승	김병연	정석경				
		정책총괄과	042-481-4810	042-481-4853	042-481-4812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2023년	! 계획	202	4년	증감	
7 0	결산	당초(A) 수정		정부안	정부안 확정(B)		(B-A)/A
기금운영비	108	120	120	116	116	$\triangle 4$	△6.3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023(′2	3.12월 9	괄)			
						계획	티애		,	전년도	. — .			
	계획액	계획	집행액	이월	불용	711 =	7 -1	계획	집행액	제		이월	불용	2024
	(수정)	현액	[실집 행액]	액	액	당초	수정	현액	[실집 행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상액	계획
○ 기능별 분류(합계)	128	128	114		14	120	120	120	119 [119]	120	119 [119]		1	116
· 기금운영관리	128	128	114		14	120	120	120	119	120	119		1	116
○ 비목별 분류(합계)	128	128	114		14	120	120	120	119	120	119		1	116
· 상용임금 (110-03)	28	28	27		1	29	29	29	29	29	29			30
· 일 반 수 용 비 (210-01)	21	18	17		1	14	14	14	14	14	14			9
· 임차료(210-07)	0	3	3			0	0	0	0	0	0			0
· 복리후생비 (210-12)	0	0	0			0	0	0	0	0	0			0
· 일반용역비 (210-14)	33	33	33			33	33	33	33	33	33			33
· 국 내 여 비 (220-01)	9	9	9			8	8	8	8	8	8			8
국외업무여비 (220-02)	12	12	0		12	11	11	11	10	11	10		1	11
· 사업추진비 (240-01)	20	20	20			19	19	19	19	19	19			19
· 고용부담금 (320-09)	5	5	5			6	6	6	6	6	6			6
○ 기능·비목별 분 류(합계)	128	128	114		14	120	120	120	119	120	119		1	116
· 기금운영관리	128	128	114		14	120	120	120	119	120	119		1	116
- 상용임금 (110-03)	28	28	27		1	29	29	29	29	29	29			30
- 일 반 수 용 비 (210-01)	21	18	17		1	14	14	14	14	14	14			9
-임차료(210-07)	0	3	3			0	0	0	0	0	0			0

			2022						2023(′2	3.12월 '	괄)			
	계획액	계획	집행액	이월	불용	계호	삑액	계획	집행액	전년도 제	외	이월	불용	2024
	계속적 (수정)	현액	[실집 행액]	액	액	당초	수정	계 곡 현액	[실집 행액]	계 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예상액		계획
- 복리후생비 (210-12)	0	0	0			0	0	0	0	0	0			0
- 일반용역비 (210-14)	33	33	33			33	33	33	33	33	33			33
- 국 내 여 비 (220-01)	9	9	9			8	8	8	8	8	8			8
- 국외업무여비 (220-02)	12	12	0		12	11	11	11	10	11	10		1	11
- 사업추진비 (240-01)	20	20	20			19	19	19	19	19	19			19
-고용부담금 (320-09)	5	5	5			6	6	6	6	6	6			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기금의 집행·평가·결산 및 여유자금관리 등을 위한 경상경비를 지원하여 문화재 보호기금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ㅇ 문화재보호기금법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 ② 추진경위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ㅇ 사업시작년도 : 2010년
 - ㅇ 추진배경
 - 기금자산·부채 등에 대한 관리·운영, 성과분석·평가
 - 부가금 징수를 위한 사업비 및 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운영경비
 - · 전국 시·도(약 60개소)로부터 문화재관람료 납부금·징수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사업기간 : 2010~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143	138	128	120	116

- 기타

② 사업추진체계

사업시행방법: 직접수행사업시행주체: 문화재청사업 수혜자: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4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20)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예수이자상환 (8990-89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ㅁ칡케ㅂ츳키그	ㅁ칡ᆌᅯ	무취케저케그		060	064
명칭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900	8990	891
명칭	히게기그가기게(저츠그)	기금간거래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53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기급선기대 	예수이자상환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217	-1) A	· 완료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신규	계속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0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0						

사업명	구분							
공공자금관리 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김종승	김병연	정석경			
		정책총괄과	042-481-4810	042-481-4853	042-481-4812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2023년	! 계획	202	4년	증감	
7.0	결산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공공관리기금							
예수이자	1,581	1,581	1,581	1,585	1,585	4	△0.3
상환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	023("23	3.12월밀	t)			
			וועוובוב			계획	틱액		المالجالح	전년도	. – .			2024
	계획액	계획	집행액	이월액	⊭ംഗബ			계획	집행액	제	의 집행액	이월	불용	2024 계획
	(수정)	현액	[실집 행액]	이혈액	불용액	당초	수정	현액	[실집 행액]	계획 현액	집행택 [실집 행액]	예상액	예상액	7114
○ 기능별	1,388	1,388	1,382			1 501	1,581	1,581	1,581	1,581	1,581			1 505
분류(합계)	1,300	1,300	1,362			1,581	1,361	1,361	[1,581]	1,361	[1,581]			1,585
· 공자기금 이자상환	1,388	1,388	1,382			1,581	1,581	1,581	1,581	1,581	1,581			1,585
○ 비목별 분류(합계)	1,388	1,388	1,382			1,581	1,581	1,581	1,581	1,581	1,581			1,585
· 예수금이자 (510-05)	1,388	1,388	1,382			1,581	1,581	1,581	1,581	1,581	1,581			1,585
○ 기능·비목별 분 류(합계)	1,388	1,388	1,382			1,581	1,581	1,581	1,581	1,581	1,581			1,585
· 공자기금 이자상환	1,388	1,388	1,382			1,581	1,581	1,581	1,581	1,581	1,581			1,585
- 예수금이자 (510-05)	1,388	1,388	1,382			1,581	1,581	1,581	1,581	1,581	1,581			1,58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관리기금의 다른 계정으로의 전출에 따른 이자 상환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ㅇ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7조제2항(예수기간 및 이자율)

"예수금에 대하여는 공개시장에서 시장금리로 발행되는 국·공채의 이자율 수 준과 기금등의 금융자산 운용 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제10조에 따른 공공자금 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등의 특성과 관리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 위원회에서 예수금의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추진경위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ㅇ 사업시작년도 : 2018년
 - ㅇ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문화재보호기금 재원으로 전출함에 따른 이자상환

□ 주요내용

-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사업기간 : 2018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884	1,388	1,581	1,581	1,585

- 기타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정책총괄과)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4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21) 복권기금 전출 (8999-84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므칭케H중키그	ㅁ칡케칭	ㅁ뒲케거케그		060	064
명칭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900	8999	840
명칭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복권기금 반환금	복권기금 전출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완료	예비타닷섯			사업소관 변경정보
	계속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0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circ						

사업명	구분							
복권기금 전출	문화재청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문화재정책국	김종승	김병연	정석경			
		정책총괄과	042-481-4810	042-481-4853	042-481-4812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2023년	! 계획	202	4년	증감	
7 0	결산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복권기금 전출	2,500	3,000	3,000	4,000	4,000	1,000	33.3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	023(*23	.12월밑	<u>ł)</u>			
	-11- 2 1-11	_n -n	집행액			계획	벽액	_11 21 1	집행액		이월액 외	4] 0]	н 6	2024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실집 행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계획
○ 기능별분류(합계)	2,500	2,500	2,5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4,000
· 복권기금 반환금	2,500	2,500	2,5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4,000
○ 비목별분류(합계)	2,500	2,500	2,5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4,000
· 공공기금전출금 (610-03)	2,500	2,500	2,5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4,000
○ 기능·비목별 분 류(합계)	2,500	2,500	2,5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4,000
· 복권기금 반환금	2,500	2,500	2,5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4,000
- 공공기금전출 금(610-03)	2,500	2,500	2,5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4,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ㅇ 해당 회계연도에 교부된 복권기금의 집행잔액을 복권위원회에 반환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ㅇ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9조의2(불용액의 복권기금에의 반납)
 - "기관의 장등은 해당 복권기금사업의 취소·축소·중단 등으로 인하여 불용액(부용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와 금액을 지체 없이 복권위원회에 통보하고 해당 금액을 복권기금에 반납하여야 한다"
 - " 불용액의 반납금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상 수입계획에 계 상하여야 한다"
- ② 추진경위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ㅇ 사업시작년도 : 2013년
 - 복권기금사업 불용액의 정산·반납은 2011년 결산부터 법정배분기관에 대해서 도 적용
 - 이 기금간 전출사업에서 발생한 불용액은 발생 연도의 다음다음 회계연도에 해당기금의 기금전출금 비목으로 편성하여 반납

□ 주요내용

-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13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2,500	2,500	3,000	3,000	4,000

- 기타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정책총괄과)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 · 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4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22) 비통화금융기관예치 (9701-97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므칭케H중키그	ㅁ칡케칭	ㅁ뒲케거케그		060	064
명칭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문화 및 관광	문화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700	9701	972
명칭	여유자금운영	여유자금운용	비통화금융기관예치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II-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1 0	7 (0	911/177 11	-1 -1011-171	3 4. E.L., 9	
,1 🗇	계속 완료	ما ما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신규	계속	완됴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0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0						

사업명	구분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비통화금융기관예치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김종승	김병연	정석경					
,,,,		정책총괄과	042-481-4810	042-481-4853	042-481-4812					

(단위: 백만원, %)

목명	2022년	2023년	! 계획	202	4년	증감	
7 0	결산	당초(A)	수정	정부안	확정(B)	(B-A)	(B-A)/A
비통화금융기 관예치	17,605	3,505	3,505	5,584	5,218	1,713	48.9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2					2	023(′23	.12월밀	<u>t)</u>			
		집행액				계호	백		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2024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실집 행액]	1	불용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실집 행액]	계획 현액	<u>기</u> 집행액 [실집 행액]	·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계획
○ 기능별 분류(합계)	3,276	3,276	17,605			3,505	3,505	3,505	17,800	3,505	17,800			5,218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3,276	3,276	17,605			3,505	3,505	3,505	17,800	3,505	17,800			5,218
○ 비목별 분류(합계)	3,276	3,276	17,605			3,505	3,505	3,505	17,800	3,505	17,800			5,218
·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470-03)	3,276	3,276	17,605			3,505	3,505	3,505	17,800	3,505	17,800			5,218
○ 기능·비목별 분 류(합계)	3,276	3,276	17,605			3,505	3,505	3,505	17,800	3,505	17,800			5,218
· 비통화금융기관예 치	3,276	3,276	17,605			3,505	3,505	3,505	17,800	3,505	17,800			5,218
-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470-03)	3,276	3,276	17,605			3,505	3,505	3,505	17,800	3,505	17,800			5,21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ㅇ 비통화금융기관 예치를 통한 여유자금 운용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 ㅇ 문화재보호기금법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 ② 추진경위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ㅇ 사업 시작년도 : 2010년
 - ㅇ '10년 문화재보호기금 도입운영에 따른 여유자금 운용 개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010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3,801	0	3,276	3,505	5,21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정책총괄과)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없음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4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 사업기간 : 2010년~계속

- 사업규모 :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청(정책총괄과)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